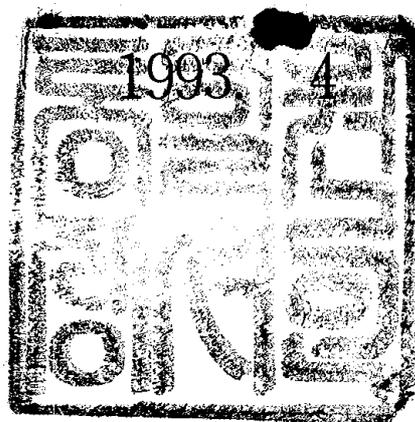


統一過程研究 93—II

# 獨逸統一 實態 資料集

—經濟・社會分野—



統一院

- 이 책자는 주독대사관이 제공한 통독실태자료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관이 송부한 각종 보고서 가운데 양독간 교류협력실태 및 통일이후 각종 현안문제에 관한 자료를 취합·발간한 것입니다.
  
- 당실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독일통일 관련 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본 자료집에는 1992년 8월부터 1993년 3월말까지 송부된 각종 보고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 목 차 》

## 〈 경제분야 〉

### = 통독이전 =

|  |     |
|--|-----|
| ◇ 상반된 이해관계하에 전개된 내독간 경제교류 .....                            | 3   |
| ◇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                                   | 35  |
| ◇ 구동독 경제의 몰락과 국가파탄 .....                                   | 50  |
| ◇ 구동독 경제의 파국적 실태 .....                                     | 74  |
| ◇ 통독직전 구동독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보고서<br>— 국가기획위 위원장의 정치국 보고서 — ..... | 93  |
| ◇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 ( '90.7 ) .....                        | 110 |

### = 통독이후 =

|  |     |
|--|-----|
| ◇ '92/'93 재정현황과 통독이후 재정정책상 문제점 .....                             | 151 |
| ◇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연방재정건실화 방안” .....                                 | 154 |
| ◇ 통일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br>—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전략 — .....                | 163 |
| ◇ 구동독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전환 .....                                       | 194 |
| ◇ 신연방주 재건지원 실무기획단 중간보고 및 건의안 .....                               | 207 |
| ◇ 연대협약(Solidarpakt) 합의문 .....                                    | 226 |
| ◇ 연대협약(Solidarpakt) 관련 논평 .....                                  | 229 |
| — 위험스런 협약(Franlfirter Allgememeine Zeitung,<br>'93. 3.15 ) ..... | 229 |
| — 놓쳐버린 좋은 기회(Die Zeit, '93. 3.19 ) .....                         | 232 |

|   |     |
|---|-----|
| — 공동합의 하에 과세 부과 ( Die Zeit, '93. 3.19 ) ..... | 235 |
|---|-----|

< 사회·복지분야 >

|                                |     |
|--------------------------------|-----|
| ◇ 과거 양육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  | 243 |
| ◇ 구동독 피난민 정착·지원문제 .....        | 247 |
| ◇ 내독간 상속재산의 반입·반출 .....        | 256 |
| ◇ 내독간 사채·유골의 반입·반출 .....       | 261 |
| ◇ 구동독 주택의 구체청산문제 .....         | 264 |
| ◇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 | 267 |

< 교육·문화분야 >

|   |     |
|---|-----|
| ◇ 양육간 청소년 교류문제 관련 담당자 면담록 .....         | 273 |
|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점 .....              | 281 |
| ◇ 내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사례 — 구동독 주민 면담록 — ..... | 310 |
| ◇ 내독관계에서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       | 317 |
| ◇ 동독주민 서독방문시 여행안내 .....                 | 320 |

< 언론분야 >

|                               |     |
|-------------------------------|-----|
|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I)             |     |
| — 내독간 우편·통신분야 교류협력 사례 — ..... | 327 |
|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II)            |     |
| — 선물용 소포 발송시 유의사항 — .....     | 343 |

|   |     |
|---|-----|
|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Ⅲ) — 내독간 우편·통신교류 — ……      | 350 |
| ◇ 동독이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                   | 365 |
| ◇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Der Spiegel, '93.1.18) …… | 374 |

< 기 타 >

|   |     |
|---|-----|
| ◇ 통독교훈과 한반도 (Die Zeit, '92.8.14) ……                       | 383 |
| ◇ 핵무기는 모든 국가들을 위한 것인가? (Der Spiegel,<br>'93.3.22) ……      | 389 |
| ◇ 러시아 사찰단의 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br>(Der Spiegel, '93.3.22) …… | 397 |
| ◇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가? (평화 및 분쟁연구를 위한<br>헤씨쉐재단) ……              | 401 |

# 경 제 분 야

# 상반된 이해관계하에 전개된 내독간 경제교류

## 1. 서론

내독간 경제교류는 외국인에게 정말 진기할 뿐더러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양독간 무역은 분명하게 허가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상품송장과 반입허가서가 필요했으며 교역 상품중 일부는 그 반입한도(Kontingente)가 언제나 제한되어 있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접적 지불교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동독의 국립은행(Staatsbank der DDR)과 서독의 연방은행(Bundesbank)과 같은 양국의 중앙은행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청산되었는데 양국의 중앙은행은 양국간의 지불교류만을 위해 특별히 청산구좌(Verrechnungskonto)를 마련해 놓고 부단하게 감독하였다. 태환가치가 있는 화폐의 지불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모든 거래는 순수한 채무청산용 화폐(Clearingwaehrung), 즉 소위 “청산단위”(Verrechnungseinheit)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산지가 외국인 상품은 여하간 형태의 거래도 금지되었으며, 공식적 내독경제교류의 품목으로서 단지 동독상품과 서독상품만의 교환이 허용되었다. 과거의 내독간 경제교류가 언제나 정치라는 경제외적인 요인, 특히 동서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특이한 점이다.

본론 전개의 목표는 내독 경제교류의 특수한 조건과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는 한계설정의 근거, 나아가 지난 수십년간 양독 경제교류가 어째서 그와같은 양상만을 띠고 전개되었으며, 그렇다면 장래전망은 어떠한가 등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허용된 지면때문에 복잡한 여러 규정 중 일부는 심하게 단순화되기도 하여 현실과 비교함에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음을 양해바란다.

\* Mainz 대학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 발표논문임.

## 2. 내륙 경제교류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조건

1945년 5월 8일 독일제국이 군사적으로 무조건 항복한 이후, 전승국은 1945년 6월 5일 포츠담 회담을 통해 피점령지역 확정에 관한 연합국결정을 취함에 있어, 비록 독일이 정치단위로서는 붕괴되었지만 종전과 다름없이 경제단위로서는 존속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이후 독일내 피점령지역간 경제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형성되어 온 역사적, 정치적인 특수한 관계에 덧붙여 연합국의 점령권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했다.

연합국은 “피점령지역 간의 무역”(Interzonenhandel)을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우선적인 목표로서 주요 품귀상품을 각 피점령지역에 되도록 골고루 분배하면서 수입을 대대적으로 제한하고 독일의 배상금지불을 계속 추진했다.(주 2)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이하 편의상 서독: 역자 주)이 건국된 다음 연합국의 점령권은 사실상 모든 정치분야에 걸쳐 독일의 법률규정으로 대체되었는 바, 특히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서독의 입법기관은 내륙 경제교류에 관한 근거 설정시 의식적으로 연합국의 외환관리법(Devisenbewirtschaftungsgesetz)을 고수하였다. 내륙간 경제교류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상태는 오늘날까지 이와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었다.

서독측이 이와같은 입장을 취한 근거는 독일이라는 땅에 2개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국가와 경제의 단일성이 존속되고 있고, 다만 그 단일성의 실현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을 뿐이지, 결코 법률적 장애는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일내에 관세경계선(Zollgrenze)을 설정한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서독에게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편의상 동독)은 비록 “자국”(Inland)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외국”(Ausland)이라고 간주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내륙간 무역과 지불청산을 규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불청산을 규정하기 위해 서독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미 발효상태에 있던 연합국의 피점령지역간 무역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서독측은 국제법에 입각한 동독의 사실상 인정을 “내독간 경제교류 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을 통해 회피하고자 꾀했다.

동독은 서독측이 주장하는 “내독간” 경제교류의 “복수상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2개의 독일이라는 국가간의 경제교류는 통상 대등한 주권 국가간의 경제교류 이외의 형태를 띠는 교류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실제로 이와같은 “복수상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진정으로 시도한 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내독간 경제교류에 따른 이점이 비록 양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경제적 의의가 막대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주 3).

### 3. 내독간 경제 및 재정관계의 법적 근거

오늘날까지 조약에 입각한 양독간 경제교류는 연합국의 점령권과 1949년 9월 19일자 군정법(Militaerregierungsgesetz) 제5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조건하에 허가”(Verbotsprinzip mit Erlaubnisvorbehalt)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바, 이는 분명하게 허가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뜻한다.

합법적인 내독무역은 베를린 봉쇄시점까지 점령국의 수중에 있다가 서독과 동독이 건국된 다음부터는 그 권한이 대대적으로 독일측에 위임되었다. 서방측 연합국은 서독측에 대하여 연방정부(소위 서독정부)로 하여금 전권을 위임받은 후 관계 기관을 설치할 것을 허용하였다. 그 이래로 내독무역에 필요한 허가는 연방경제성 내지 연방경제성 산하 연방산업청(Bundesamt fuer gewerbliche Wirtschaft)이 관장하게 되었다. 동독과의 회담은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베를린 소재 피점령지역간 무역 신탁관리처(기존의 Treuhandstelle fuer den Interzonenhandel

약: TSI로서 현재 상공신탁관리처 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Handel)가 주도하였다. 동독측은 대외무역성으로 하여금 동독정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내독간 무역과 지불교류에 관한 협약상의 근거는 1972년에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에도 1951년 9월 20일자 베를린 협정(1960년 8월 16일 개정)이다. 그밖에 내독간 경제교류는 양국간 주무부서와 중앙은행간의 각종 합의, 베를린 협정의 부속문서, 시행령, 내독무역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예외허가규정, 포고, 공지사항 등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주 4).

이와같이 각종 법률규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내독간 경제교류의 특수상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EEC 회원국들도 일부 회원국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서독은 GATT 회원국이지만 1951년도 GATT에 관한 Torquay 의정서 보완조치에 따라 서독에게는 내독간 경제교류의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EEC 회원국들은 1957년도 EEC 조약에 관한 의정서와 더불어 양독간 물품교류의 특수체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동독은 이와 같은 소위 “개방된 무역경계”(offene Handelsgrenze)를 통해 EEC 회원국인 서독과 관세장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EEC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대외무역에 지장이나 심지어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독과의 무역에 관한 사항을 협정을 통해 상호 보고하도록 합의하였다.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적절한 보호조치마저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 4. 내독무역

내독무역, 즉 동서간의 물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베를린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 모든 합의사항은 통화지역조항(Waehrungsgebietsklausel)에 근거, “서독 DM 통화지역”과 “동독 마르크 통화지역”간의 무역, 지불, 교류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적용과 더불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은 명확한 언급이 없이도 내독경제교류에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포함된다.
- 상품과 서비스의 반입과 반출은 상호지불거래시 불균형상태에 이르지 않고 중장기간에 걸쳐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된다.
- 상품거래는 예외없이 상품목록(Warenliste)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상품목록은, 무기한 유효하되 반출과 반입 가능성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비록 과거에 통용되던 반출과 반입에 관한 최대허용량 의미가 분명하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서독 반입상품중 상품가격기준으로 약 1/3은 종전과 다름없이 한도량이 정해져 있다. 모든 거래는 허가와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 파트너는 반입허가서와 상품송장을 제출해야 한다.
- 내독무역은 오로지 독일이 원산지인 상품의 교환만을 허용한다. 외국생산품은 특별허가를 요한다 (예컨대 서독의 원유공급에 대하여 동독은 석유류 제품은 서베를린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
- 구상무역은 내독간 무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일정방향으로 향하는 상품공급에 대하여 그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지불이 뒤따라야 한다. 상품과 상품의 직접 물물교환은 청산계정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내독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간의 지불거래는 연합국의 외환관리법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양독업체간 직접적인 송금거래 (Ueberweisungsverkehr)는 불가능하다.

- 동독의 상품공급에 대해 서독에서는 특별히 그 상품의 가격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로써 대량의 동독상품이 서독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어 국내생산분야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한다 (주 5).
- 내독무역에 따른 반입과 반출은 EEC 의정서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일반 관세 적용과 EC 농산물 수입 규제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혜가 부여된다.
- 내독무역은 서독에서 일반거래세(Umsatzsteuer)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 6).

이제까지 현행규정의 주요 골자를 요약해 보았듯이 서독측은 내독무역에 있어서 대외무역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제한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양국간에만 독특한 채무청산거래의 성격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오늘날 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적 인민경제단위 사이의 대외무역이나 일부 저개발국가의 경제단위간의 거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내독간의 양국간에만 통용되는 채무청산거래는 사실상 지금까지 감독 기관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이외에 - 이하 지불거래설명에서 더욱 상세히겠지만 - 양국간 제도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촉진하는 요인들도 있었다. 이와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의 무역이 정치적 전제조건이 마련되는 한, 특히 급작스런 관계악화를 통한 양국간 긴장상태가 유발되지 않고 동서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 양국에게 이익을 주었다.

물품 및 용역거래량의 발전추세를 (도표 1 참조) 살펴보면 1950년 이래 무역고가 거의 20배가 증가하여 전기간을 통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50년대까지 통계파악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불법무역이 자행되었기에 신빙성이 적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내독무역의 양적발전추세는 동독측은 물론 서독측으로 볼때 제 3국과의 대외무역 발전추세 보다는 훨씬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주 7). 서독은 유럽시장과 북미시장에 대외무역의 중점을 두었던 반면 동독은 대체로 공산권 시장에 통합되어 있었다.

상품과 용역의 상호교류에 관한 발전추세가 현저하게 사이클을 이루어 일정주기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일인데, 내독 경제교류의 순환성(Zyklus)은 주로 정치적인 관계에 기인한다. 특히 1951 - 1953 중에는 베를린 봉쇄와 한국전쟁 발발로 말미암아, 그리고 1960 - 1963 중에는 서독정부에 의한 “베를린 협정”의 잠정적 해약, 동독의 베를린장벽 설치 및 동독정부가 연이어 착수한 비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장애제거” 활동으로 말미암아 퇴조기와 침체기가 있었다. 끝으로 1967 - 1968 중의 내독간 경제교류는 수에즈운하 봉쇄로 인한 긴장, 소련군의 체코 침공, 1963년에 시도되었던 동독경제개혁의 실패에 따른 결과와 연계되어 다시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지난 수십년간 용역교류가 상품교류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는데 동독의 용역수지 잔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배경은 동독의 대외무역기관에게는 서독이 봉과무역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즉 동독의 서방측 산업국과의 대외무역 거래량의 대부분은 서독의 교통수단과 서독의 화물적지장을 이용했는데, 봉과항구로서 함부르크는 동독의 석탄, 원광, 곡물, 기타 농산물 수입을 위해 전략적 의미까지 갖고 있었다. 나아가 동독은 서독의 은행, 보험, 박람회, 시설조립 등의 분야에서 서독기업의 서비스와 라이선스를 대대적으로 이용하였다.

내독간 용역거래는 동독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방 산업국과 저개발국과 대외무역을 하면서 교환가능 외화인 경화를 절약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추진되었다. 동독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시 서독측 기업으로부터 운송 서비스, 보험서비스, 시설조립서비스를 받은 다음 내독 청산구좌를 봉해, 즉 결과적으로 자체상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 동독은 이를봉해 US 달러, 스위스 프랑, 프랑스 프랑과 같은 어디서나 태환가능한 경화를 절약할 수 있었다. 즉 동독은 이러한 경화를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대신 절약한 경화만큼 예컨대 경화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로부터 밀, 커피, 기계, 비철금속을 수입할 수 있었다.

결국 내독무역량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때 - 동독측으로 볼 때 만성적인 적자상태의 용역고부를 제외하면 - 무역추세가 전반적으로 매우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입과 반출은 세계경제가 국제무역의 심대한 불균형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던 몇년간에 걸쳐서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국간의 무역에서, 즉 반출과 반입에 따른 청산거래시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은 양국간에 심대한 수지불균형 상태를 방지하기는 하였지만 무역량의 역동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다. 내독무역의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양국간 결제시 무역량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파트너, 즉 동독에 의해 좌우되었다. 결국 동독은 이러한 방식으로 내독무역의 의미와 규모에 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서독측이 쌍무관계원칙(Prinzip der Bilateralitaet)에 따라 어디까지나 동독측이 물자와 용역을 반입한 후 그 대응공급을 통해 지불할 능력이 있는 만큼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양측의 내독무역에 관한 의지가 이토록 제한적이었음에도 내독무역이 나름대로 적응력과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최근 동독의 국제수지위기와 경제위기와 관련한 경험에서도 실증되었다.

동독은 경제정책적 오판, 너무나 경솔했던 채무관리, 원자재와 농산품의 급격한 국제가격 등귀, 외국차관에 대한 유럽이율의 폭등 때문에 1982년 - 1983년중 불과 수개월만에 동독이 건국된 이래 전례없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했다.

동독정부는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무원칙적이던 경제정책노선의 변경을 단행했다. 동독은 내핍정책을 추진하며 국내경제적으로 특히 소비지출, 에너지 사용과 원자재 사용의 절약을 목표로 하면서, 대외경제적으로는 고액의 국제수지결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다. OECD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격하게 거의 40% 정도 절감되었으며 대서독수출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독무역은 유연성이 있으며 안정적임이 실증되었다. 동독은 서독측이 묵인하는 가운데 OECD 수입절감에 따르는 물자공급상의 애로를 내독무역에 의존하며 반입증가를 통해 거의 완전히 메꿀 수 있었으며 (주 8), 그것도

서독에의 물자 및 용역반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즉 서독의 단기용자 (Swing)을 사용하면서, 달성했다.

동독의 이와 같은 전략과 이에 대한 서독의 동의를 다음과 같이 정치적으로 상이하게 평가해 볼수도 있다. 내독 경제교류는 결국, 최근 동독의 국제수지 위기에 대하여 소련측의 국제수지지원과 더불어 동독의 위기관리정책추진에 있어 주요 안정화 인자였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공산당 지도층에게는 폴란드사태로 인한 충격이후 유럽과 일본의 은행은 물론, 더우기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차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1982년 - 1983년중 동독의 국제적인 외환지불의무를 자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내독무역이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독이 내독무역상의 특별한 규정을 통해 동독의 경제위기해결과 궁극적으로 동독의 경제와 정치사회체제의 안정에 다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전연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양국간 상품교류의 질적 측면, 즉 무역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분석해 놓은 결과가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 9). 즉 내독무역의 상품공급과 상품수요의 구조는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반출과 반입면에서 모두, 양국의 산업화 수준에 비추어 볼때, 전형적인 것도, 걱정한 것도 아니었다. 기초소재, 생산재, 광산물(현재 서독측 반입은 50%, 서독측 반출은 60% 정도)이 대중을 이루면서 농산물(반입 10%, 반출 15% 정도)의 의미가 큰 반면, 투자재(반입 10%, 반출 20% 정도)의 의미가 적은 점 등은 사실상 개도국간의 무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미 1972년도 기본조약체결과 더불어 만족스럽지 못한 무역구조의 개선, 그리고 재화교류상 상호보완성만을 추구하는 경향(Komplementaritaet)의 극복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이래로 내독간 상품교류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 원인은 - 내륙무역이 양적제한때문에 발전될 수 없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대국인 동독이 재화교류의 질적인 구조를 거의 최우하였기 때문이었다. 동독은 어떠한 상품을 반입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했는가 하면, 어떠한 동독상품이 과연 서독시장에서 구매자를 만나게 될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동독의 국제경쟁력 (최근에는 계속해서 악화됨)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다.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그 공급능력면에 있어서 국제시장수준에 뒤져있고 제품의 질이 시장경제체제의 생산품의 우수한 품질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추세하에서 내륙무역의 질적구조의 개선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원인으로서는 내륙무역상의 불만족스런 상품구조를 설명하는 매우 포괄적 가설이 있는데, 이는 첫째 원인을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보완해 주는 것이다. 동독측 상품의 관세나 농산물 수출입 규제(Abschoepfungen)에 관한 면제요율은 생산품에 따라 구분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국가기관은 무엇보다 특혜관세율이 매우 높은 상품을 서독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이와같은 전략을 통해 무역정책상 특별한 지위를 이용한 동독의 재정상 잇점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는데, 내륙무역에 나타난 구조와 발전상태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가설은 경험상 수지와 매우 일치한다. 즉 동독은 관세면제로 인한 가격의 장점이 외국의 경쟁상품보다 훨씬 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생산품이 내륙무역을 주도하던 기초소재이자 생산제 등이었다 (주 10).

##### 5. 내륙간 지불거래

서독과 같은 경화보유 선진국에게 매우 드문 예외적 사례인 내륙교류에 따르는 거래상의 지불은 전적으로 양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청산방식(소위 “양자간 정산”: Bilaterales Clearing)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중앙은행은 각각 상대방을 위한 각종 청산구좌를 설정해 놓고 상품 및 용역교류에 따른 입금과 지출이 모두 이를 통해 정산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청산구좌는

인위적인 청산용 화폐, 소위 “청산단위”(약어:VE)로 운영되었는데, 모든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불을 수행할 때 공식환율은 1 VE = 1 DM (서독 마르크) = 1 Mark (동독 마르크)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DM을 1:1의 비율로 VE로 환산한 후, 이에 따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동·서독 무역에 참여한 기업간의 직접적인 송금교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반대로 양국의 중앙은행이 언제나 그 청산구좌를 통해 “중간역할”을 담당했다. 예컨대 서독의 한 기업체가 연방산업청이 발행한 상품송장에 따라 반출인가를 받고 동독의 한 대외무역기업체에게 강관을 공급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동독의 대외무역기업체는 강관이 도착한 다음 동독 마르크로 환산된 계산액을 동독 국립은행에게 송금하게 되는데 이때의 계산액은 실제로 계산서에 나타난 서독의 공급가격이 아니라 동독이 강관 수입시 책정해 놓은 가격이 적용된다. 동독 국립은행은 상품공급에 상당하는 VE로 환산된 금액을 대서독용 청산구좌의 대변에 가입한 후 서독의 독일연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서독의 독일연방은행은 통보된 VE 금액을 대동독용 청산구좌의 차변에 기입, 서독의 강관공급기업체에게 태환가능 DM으로 된 계산액을 지불한다.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수십년간에 걸쳐 이렇다 할 마찰없이 기능이 수행된 청산거래에 대한 대안은 내독교류가 경화, 즉 서독의 DM이나 US달러, 일본의 엔화 또는 기타 유럽 화폐로 처리되는 것이 될 것이다. 동독의 기타 서방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지불관계가 동독 마르크나 루블화로 처리된다는 것은 공산권의 화폐가 경화가 아니기 때문에 태환성이 없을뿐더러 서방측 거래 파트너 중 이러한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고려대상이 될 수 없었다. 즉 내독무역에 적용된 청산제도는 동독측에게는 지금까지 서독의 상품이나 용역제공에 대하여 외환으로 지불될 필요없이 자체의 상품공급이나 용역제공 등, 다시말해 결국 “현품”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었다. 70년대초까지 서방측과의 동독무역

대부분이 이러한 채무청산방식으로 결제되었으나, 동독은 현재 양독간 채무청산 협정에 필적할만한 관계를 서방측에서는 단지 브라질, 에쿠아도르, 핀란드, 인도, 이란과 유지하고 있다.

양국간 채무청산 파트너들은 상호 지불관계가 가능한한 최대의 균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면서, 이와같은 쌍무관계원칙(Bilateralitaetsprinzip)이 공급가능목록과 상품한도량의 현실적 조정에도 적용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쌍방간 지불관계가 단기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순전히 우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와같은 이유때문에 양국간 채무청산의 한 방편으로 각 파트너가 쌍방을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청산용 융자(Verrechnungskredit), 즉 "Swing"을 개설할 것을 요한다. Swing의 임무는 오로지 입금과 지출간의 단기적 불균형상태를 균형있게 해 줌으로써 지불교류의 연체현상을 막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Swing"은 내독간 청산거래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용은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되어 있다. 현재 청산구좌에서 최고 8억 5,000만 DM까지 "초과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융자한도는 무역고가 최고 170억 DM인 경우, 청산구좌의 지불액 중 단지 5%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약정된 "Swing"은 양국간 채무청산거래시의 국제관례에 부응하는 것이었는 바, 더 이상의 낮은 융자한도 설정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유연성이나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피했다. 1958년 서독의 연방정부는 내독간 지불교류제도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시켰는데 이는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양국간에만 봉용되는 채무청산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적절한 것이었다. 즉 독일연방은행에 소위 "현금지불 특수구좌 S"(Barzahlungssonderkonto S)가 개설되었는데, 동독은 이를 통해 경화불 지불하고 기존상품 목록에 반출입제한품목으로 되어있는 것 이외의 상품을 서독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동독은 경험적인 사례와 같이 (도표 3 참조) 이러한 가능성을 지금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였을 뿐이다. 70년대 중반, 국제시장에서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악화일로의 국제수지결손때문에

대서방무역에 상당한 제한을 받자, 동독은 특수구좌 S를 통해 그나마 일부 구매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동독은 최근 10년간 다른 서유럽국가에게 경화를 우선적으로 지불하였는 바, 내독무역은 여타가능성이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양국간에만 통용되는 재무청산거래를 이용했다는 사실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 6. 차관제금을 통한 내독간 교류

다음과 같은 3가지 형식이 내독간 경제교류에 중대한 기능을 수행했다.

- 1) 양국간 채무청산용 차관인 "Swing"
- 2) 내독무역 범주내에서의 거래시 상업대부
- 3) 서독측 은행에 의한 재정차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조건이 없음).

"Swing"은 -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 양국간 채무청산구좌에 지불연제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관의 한도액(Kreditlimit)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한 경우, Swing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기적 지불균형을 이룩하기 위하여 비교적 빠듯하게 한도가 책정된 것인데 사용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1960년부터 1968년까지 Swing 최고액은 2억 VE로 불변상태였으며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무역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2억 VE로부터 7억 5,000만 VE로 인상되었다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8억 5,000만 VE로 "동결되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다시 6억 VE로 삭감되었다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8억 5,000만 VE로 차관의 최고액을 다시 연상할 것에 합의하였다 (도표 2 참조).

Swing은 그 초기부터 동독측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지 서독측은 전연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동독은 내독간 지불교류의 처리를 위한 특별제도인 Swing이 설치된 이래, 서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서독에게 더 많이 반출하기 보다는 서독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항상 반입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부터 동독이 얻은 장점은 Swing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지금까지 외국에서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다. 첫째, 동독이 실제로 사용한 Swing은 허용 최고한계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고, 국제수지정책상 위급했던 최근 수년간에만 이러한 차관을 한도액까지 완전하게 사용하였을 뿐이다. 예컨대 1985년 동독은 연간 평균 1억 7,200만 VE의 Swing만을 사용하였다. 둘째, 동독에게 장점은 단지 Swing 차관이 무이자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동독대외무역기관은 사실상 내독간 Swing을 통해 채무청산용 차관액에 대한 유럽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를 절약하였다 (1985년도 시장기준이자는 계산상 약 1,300만 DM에 달했음).

동독기업체는 “베를린 협정”의 일환인 거래에 대하여 서독이나 서베를린에 있는 공급체나 은행으로부터 상업용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서독의 구매자도 동독의 신용대부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서독측의 관할 허가기관으로서의 독일연방은행은 이러한 상품공급용 신용대부와 조건부 재정차관을 제외한 서독은행의 대동독 조건없는 재정차관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독에 대한 동독의 부채는 오늘날까지 그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몇년전부터 유럽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던 조건없는 재정차관의 무제한 제공과 같은 현상은 내독간 경제교류에서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니다. 1985년말 현재 서독은행과 공급체에 대한 동독의 부채는 약 45억 VE(총액)이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상업용 부채는 약 10억 VE(총액)인데, 이는 주로 동독의 단기 물품공급과 관련된 신용대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독일연방은행이 동독에 대한 서독은행의 무조건부 재정차관제공을 항상 허용치 않았지만, 70년대부터 특히 서독의 대형은행들은 동독에게 중기적 유럽차관(Eurokredit)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Luxemburg, London, Paris

에 있는 외국지점을 통해 재원을 유럽금융시장에 마련해 놓고 국제은행 컨소시엄을 이용하면서 동독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유럽차관업무를 수행했다.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며 대외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동독에게 두번에 걸쳐 대형차관(소위 "Jumbos")을 제공한, 1983년과 1984년에야 비로소 장기간에 걸친 이와 같은 실무거래 행위가 준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자체가 중개한 이러한 차관 역시 Luxemburg 에 있는 서독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제공되었는데 어쨌든 오늘날까지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에 대한 서독은행의 조건없는 재정차관제공은 허가하지 않는 실무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7. 기타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양독간 협력

양독간에는 상품교류, 용역교류, 자본교류 이외에 여러분야에 걸쳐 경제적 의의가 큰 각종 공동작업이 있다. 그중 특히 동독의 권익과 관계되는 몇가지 분야와 프로젝트만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이와같은 것은 양국간에만 통용되던 청산방식을 통한 거래 다음으로 막대한 경화수입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이다 (도표 3 참조, 주 12).

서독의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베를린 통과로의 확장과 신설을 위한 투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독측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예컨대 Berlin과 Hamburg 간의 통과용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2억 DM이나 투자하였다. 또한 최근 연방정부는 외환지불의 형태로 국경하천의 정화와 같은 환경보호분야를 위한 동독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체신교류에 동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외환으로 계산되었다.

화물 및 여객수송, 화물열차와 화물적지장 임대료, 열차서비스, 손해배상과 기타 서비스와 같은 급부는 오로지 내독간 채무청산구조를 이용하여 VE로 환산된 후, 서독의 연방철도와 동독의 제국철도간에 청산되었다. 1973년부터 동독은 이와 같은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서독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

동독은 서베를린에 있는 기업체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렸는데 그와 같은 것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흙더미, 기타 폐기물의 인수; 서베를린 하수로의 연장공사와 보수; 의료서비스; 동베를린 붕과 지하철 사용료와 유지비; 동베를린 전철의 서베를린 사용료; 동베를린지역의 서베를린에 대한 매각대금.

이에 부가하여 동독은 60년대 중반부터 연방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인도주의 분야, 특히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합류로부터 많은 재정적 이득을 취했음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동독은 서독인과 서베를린 시민의 방문과 여행교류 (소위 “최소의무 환전”과 사증발급비용)에 의한 수입; Intershop, Intertank, Genex 선물 서비스와 같은 기업에 의한 수입; 서독정부가 과거 베를린 붕과여행시 개인에게 징수했던 것을 소위 “붕과일괄금”이란 형식으로 책정하여 연간 5억 2,500만 DM의 수입을 올렸다.

1976년부터 주로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독으로 흘러 들어간 경화는 연간 20억 내지 25억 DM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유입된 외화는 매우 적는데, 특별구좌 S를 통한 현금구매를 비롯하여, 연금수령인, 사회부조금 수령인, 부모가 동독을 떠나 고아가 된 자녀에게 일정한 폐쇄구좌를 통해 지불된 현금이전을 들 수 있다. 서독에 의해 제공된 이러한 외환으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였으나 결국은 주로 미국, 유럽의 여러국가와 제3세계의 여러국가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대서방무역에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관점으로 볼 때 동독에 대한 서독의 막대한 지불은 결국 서방 산업국과 개도국의 수출산업에 이익을 주었다고 하겠다.

자유로이 태환가능한 DM의 막대한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한 동독 대외무역의 활동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70년대의 내독간 경제교류가 그 독특한 역동적 요소들 갖게 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 13).

## 8. 서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의미

서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경제적 의미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 10년간 내독무역은 서독 전체 대외무역고의 약 1.5%에 지나지 않는다. 동독은 서독에게 Norway, Libya, Spain 다음 제15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서독과 서베를린 총 취업인구의 0.3%인 약 70,000 명 만이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내독무역거래의 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주 14). 비록 동독이 운수업계, 보험업계, 은행업계의 서비스거래에 있어 훌륭한 고객이기도 하나, 전체 거래량과 비교해 볼 때 단지 Hamburg 통과항 이용정도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서독의 은행과 기업의 국제적인 대출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동독은 서독측에게는 완전히 부차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1985년 말 서독의 은행과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독일연방은행은 "Swing"을 통해 동독에게 총 45억 VE를 대출하였다. 이에 비교할 때, 동일기간중 서독의 전세계 대출액은 8,200억 DM에 달했다. 즉 동독에 대한 서독의 대출은 전체 차관규모의 0.55%에 지나지 않았다.

내독경제교류가 서독에게 그토록 미미한 경제적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반면, 그 정치적 의의는 매우 컸다(주 15). 내독무역은 항상 역대 연방정부가 추진했던 독일정책의 변함없는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까지 내독무역은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이중적 기능 때문에 양독관계에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내독무역은 동서독 경제제도상의 국민경제적 연관성의 강화와 무역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인적 접촉의 증대를 통해 본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공통성이 유지되도록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의 정치적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교류와 자본교류가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전후 보수당 집권 연방정부에게는 무엇보다도 Berlin 과 서독간의 자유왕래가 보장될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였다.

이미 1966년 대연정의 출발과 함께 그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무역장애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등, 처음으로 정책목표의 중점이 바뀌어 가다가, 1969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집권과 더불어 내독간 경제교류의 정치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부터 내독간 경제교류의 중점은 특수관계하에 있던 분단된 양독일국가를 묶는 가장 안정된 장치가 되도록 하는데 두어졌다. 내독무역을 정치적 목표의 관철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던 시도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1971년말에 체결된 통과여행협정(Transitabkommen)과 더불어 서독과 베를린간의 아무 제한없는 통행은 협정내용의 핵심요소로서 확보되었으며, 이 협정으로 내독무역을 양국간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역할분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8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보수중도 연립정부 역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강조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와는 분명히 다르게 경제적 협력의 강화를 통해 재통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무역을 주로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했던 과거의 보수정부와는 반대로, 그리고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보다 훨씬 더, 내독무역을 긍정적으로 장려하면서, 그 결실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 비록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지언정 - 물품거래와 자본거래는 다시금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비단 전술한 대형유럽차관(Euro-Grosskredit)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제공뿐만 아니라 Swing 최고액을 다시 인상하자는 회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때문에 최근 동독공산당(SED) 정치국원 1명이 동독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독이 “악덕상인의 취급물건”(Schacherartikel)이 아니며, “달려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주 16).

## 9. 등독에 대한 내독경제교류의 의미

내독간 경제교류는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게 항상 막중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독의 계획경제에 대한 내독무역의 경제적 기능은 - 동독의 국제무역의 경제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회주의 계획수립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품귀상품을 비롯하여 서방측 테크놀러지와 재원을 얻고자 함에 있었다. 따라서 서방측 시장경제와의 경제교류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른 응급책 내지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략적 임무가 추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주 17).

특히 동독의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내독무역이 단지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내독무역은 지역적으로 가까웠기에 운송비가 적게 들었고, 독일어라는 공동언어사용상의 장점과 함께 이미 분단이전에 거래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역할을 차지했다. 동독의 계획경제가 필요로 했던 물질적 수요는 예측을 불허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었기에, 내독무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언제나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장기간의 운송시간이 필요없이 충족될 수 있었다”(주 18).

전술한 바와 같은 동독측이 누리는 장점으로 볼때, 오늘날까지 내독무역은 동독 GNP의 약 3%를 차지하였고 서독이 소련 다음으로 두번째 무역교역국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랄 바가 아니다. 내독간 경제교류의 훌륭한 역할은 서독과의 상품교류가 차지했던 몫을 비공산권 산업국과의 상품교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동독 대서방 무역의 36%는 내독무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40% 내지 50%나 되었다 (주 19). 또한 서독은 동독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동독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다(주 20). 동독은 섬유, 의복, 유리, 도자기와 같은 일부 생산품의 대서방수출중 3/4을 서독에게 공급했다. 화학제품, 철강 등 기타 생산품의 서독측 수입률은 약 50%나 되었다. 동독의 대서방 무역중 용역교류는 특히 서독에게 집중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서독과의 자본거래 역시 동독에게는 지대한 의미가 있었다. 비록 동독은 서독보다 기타 서방국가나 소련에게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서독측 계산에 따르면 현재 동독의 대서방 부채중 약 1/6이 내독무역 거래에 의한 지불의무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주 21). 전술한 것처럼 기타 서방측 차관에 있어서도 서독은행의 국외지점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컨대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10억 DM에 달했던 “Jumbo” 유럽차관(Eurokredit)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독측 상품공급, 서비스 공급, 차관, 비상업성 외환지불에 대한 동독의 의존성이 너무나 눈에 뵈는 정도였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지도자들은 서독측의 접근과 거리감 유지시도에 대하여 언제나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독간 경제교류가 동독에 미친 정치적 의의가 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독간 경제교류를 가능한한 부단하게 확장해 보려던 동독정권의 관심 역시 처음부터 변함없었다.

그러나 내독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동독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동독은 내독무역이라는 복수상태로부터 전략 상품과 전략원자재를 위시한 물질적 이익을 취함에 따르는 대서방 의존도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독은 “서독”과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경계를 지으면서 경제제도와 사회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분단독일의 평화적 재통일 가능성을 반동적인 유토피아라고 끊임없이 부인하였다(주 22). 동독은 경제교류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서독의 시도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반대하였다.

이에 덧붙여 동독과 소련의 공산당 지도층은 - 서방측의 오판과는 달리 - 결코 동질적인 지도집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도당(Clique)과 당파(Fraktion)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들중 어떤 지도 엘리트가 어느 시점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시점의 경제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의 형태와 양상이 각각 상이하고 철저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근거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의 공산당 지도층 교체는 급격하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정책노선의 변경을 초래하였고 결국 “지그 재그 노선”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주 23). 따라서 동독에서도 (동독이나 소련공산당 지도층이 교체될 경우) 끊임없이 외교정책과 독일정책이 불가촉적일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내독간 경제교류는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거의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내독간 경제교류는 - 서방측 정치가의 자세와는 관계없이 - 마치 지진계나 다름없이 공산진영의 정치체제 분위기를 기록하면서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 10.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지금까지 기술되었듯이 내독간 경제교류는 아무런 장애없이 균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10여년간 동서진영간 경제교류와 국제경제를 좌우했던 각종 충격은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품교류와 자본교류의 이와같은 문제점과 비교할 때 내독간 경제교류는 전반적으로 비록 침체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안정적인 것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후 잘 지속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독측은 내독간 경제교류의 유지와 발전을 주로 정치적 관심때문에, 그리고 동독측은 주로 경제적 관심때문에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이 상호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독간 경제교류가 결국 양독관계의 안정요소로서 발전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

오늘날 내독간 정산결제방식이 사실상 머나먼 과거 역사의 잔재나 다름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때 동독과 서독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토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이에 대처함으로써 태환가능화폐에 의한 지불교류와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다.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 경제체제간의 경제적 공동협력이라는 특수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가격검토, 상품교역량의 한도 설정, 채무청산 구좌의 중앙 통제, 제한적인 차관제공실부 등과 같은 서독의 기존 규정과 장치가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기능은 계속 발휘되어야 할 것이며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실험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같은 것은 내독간 경제교류가 실제로 그리고 형식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며 동서독이 무역교류국으로서, 동맹 파트너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때, 내독간 협력이라는 복수상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래의 내독간 경제교류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결단은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결단은 곧 서방측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정책상의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즉 동서간 경제교류가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그리고 더욱 큰 역동력을 갖게 되면 될수록, 서방측 민주주의가 공산블록의 독재를 더욱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은 내독간 경제교류가 서독정부 자체의 고유한 정책적 목표설정과는 반대로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점에 두드러진다. 내독간 경제교류는 분단독일의 주민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독공산정권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자유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등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오래 권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독일정책은 앞으로도 정치적 거리감 유지와 경제적 협력사이의 아주 좁은 공간속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교류는 정치적 압력수단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경제보복은 시대와 역행하는 것이자 역기능을 발휘 때가 드물지 않다(주 24). 과거 서독의 역대 연방정부 역시 60년대 중반까지 내독무역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해 보려 시도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란곤 별로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서독은 물론 동독이 내독간 경제교류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주 25).

도표 1  
 내독무역의 발전  
 (단위 100만 VE)

| 연도   | 상품교류 |      | 용역   |     | 수지<br>총액 a |
|------|------|------|------|-----|------------|
|      | 반출   | 반입   | 반출   | 반입  |            |
| 1950 | 359  | 451  | ...  | ... | -92        |
| 1960 | 927  | 988  | 103  | 19  | +23        |
| 1970 | 2218 | 1916 | 266  | 148 | +420       |
| 1971 | 2360 | 2222 | 293  | 359 | +72        |
| 1972 | 2667 | 2259 | 293  | 136 | +565       |
| 1973 | 2624 | 2527 | 314  | 161 | +250       |
| 1974 | 3164 | 3095 | 497  | 162 | +406       |
| 1975 | 3502 | 3222 | 526  | 169 | +637       |
| 1976 | 3876 | 3747 | 594  | 191 | +532       |
| 1977 | 4088 | 3815 | 575  | 256 | +592       |
| 1978 | 4197 | 3716 | 558  | 350 | +689       |
| 1979 | 4381 | 4397 | 712  | 395 | +301       |
| 1980 | 4943 | 5417 | 932  | 438 | +20        |
| 1981 | 5091 | 5863 | 1038 | 486 | -220       |
| 1982 | 5942 | 6452 | 1138 | 536 | +92        |
| 1983 | 6472 | 6695 | 1209 | 867 | +119       |
| 1984 | 5951 | 7489 | 1300 | 752 | -990       |
| 1985 | 7313 | 7335 | 1273 | 822 | +428       |

a (+) 서독에게 흑자  
 (-) 서독에게 적자

출처 : Bundesminister fuer Wirtschaft, Bonn

도표 2

내국부역에 의한 동독의 부채

(단위 100만 VE)

Swing

| 연도   | 차관의 한도 | 사용 a | 연말기준 순부채 b |
|------|--------|------|------------|
| 1960 | 200    | 104  | 103        |
| 1961 | 200    | 77   | 123        |
| 1962 | 200    | 21   | 164        |
| 1963 | 200    | 75   | 47         |
| 1964 | 200    | 42   | 128        |
| 1965 | 200    | 55   | 92         |
| 1966 | 200    | 112  | 382        |
| 1967 | 200    | 173  | 553        |
| 1968 | 200    | 135  | 492        |
| 1969 | 360    | 270  | 1043       |
| 1970 | 440    | 387  | 1352       |
| 1971 | 440    | 413  | 1202       |
| 1972 | 585    | 539  | 1751       |
| 1973 | 620    | 592  | 1747       |
| 1974 | 660    | 559  | 1914       |
| 1975 | 790    | 711  | 2391       |
| 1976 | 850    | 786  | 2575       |
| 1977 | 850    | 748  | 2969       |
| 1978 | 850    | 677  | 3681       |
| 1979 | 850    | 748  | 3906       |
| 1980 | 850    | 741  | 3885       |
| 1981 | 850    | 676  | 3651       |
| 1982 | 850    | 582  | 3800       |
| 1983 | 770    | 543  | 4100       |
| 1984 | 690    | 211  | 3030       |
| 1985 | 600    | 172  | 3500       |

a 연평균 사용액

b 누적적으로 가산된 서독의 차변잔액 (서독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동독의 부채총액)

출처 : Deutsche Bundesbank, Frankfurt/Main,  
und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Bonn

도표 3

양독간 채무청산교류 이외의 내독간 외환지불

(단위 100만 VE)

| 연도   | 서독으로부터 동독에게 지불 |      |      | 동독으로부터 서독에게 지불 a |         |     | Saldo c |
|------|----------------|------|------|------------------|---------|-----|---------|
|      | 공식             | 기타 b | 총계   | Konto S          | Konto T | 총계  |         |
| 1950 | 1              | 40   | 41   | -                | -       | -   | 41      |
| 1960 | 3              | 104  | 107  | 67               | -       | 67  | 40      |
| 1970 | 6              | 604  | 610  | 46               | -       | 46  | 564     |
| 1971 | 9              | 711  | 720  | 110              | -       | 110 | 610     |
| 1972 | 303            | 737  | 1040 | 24               | -       | 24  | 1016    |
| 1973 | 280            | 880  | 1160 | 317              | -       | 317 | 843     |
| 1974 | 262            | 1158 | 1420 | 251              | -       | 251 | 1169    |
| 1975 | 266            | 1504 | 1770 | 191              | -       | 191 | 1579    |
| 1976 | 481            | 1609 | 2090 | 514              | -       | 514 | 1576    |
| 1977 | 523            | 1667 | 2190 | 184              | -       | 184 | 2006    |
| 1978 | 512            | 1648 | 2160 | 71               | -       | 71  | 2089    |
| 1979 | 992            | 1638 | 2630 | 34               | 50      | 84  | 2546    |
| 1980 | 917            | 1553 | 2470 | 25               | 50      | 75  | 2395    |
| 1981 | 1042           | 1588 | 2630 | 19               | 50      | 69  | 2561    |
| 1982 | 998            | 1592 | 2590 | 66               | 50      | 116 | 2474    |
| 1983 | 740            | 1650 | 2390 | 73               | 60      | 133 | 2257    |

a 동독의 공식지불

b 외국인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 및 통과시 지불한 외환 포함

c 비공산권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동독의 외환수입초과

출처 : 서독으로부터 동독에게 지불한 금액은 자체 추정  
동독으로부터 서독에게 지불한 금액은 연방은행자료에 따름

주 1 : 이 논문은 필자가 1986년 7월 31일 마인츠 대학 국제하계강좌의 일환으로 행했던 강의를 보완한 것임.

주 2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Lambrecht, Horst: Die Entwicklung des Interzonenhandels von sein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DIW-Sonderheft Nr. 72, Berlin 1965.

Gross, Karl-Heinz: Entstehung und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in : Deutschlandarchiv, 11.Jg.(1978), H.11, S.480-490.

주 3 : 예컨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Biskup, Reinhold: Deutschlands offene Handelsgrenze. Die DDR als Nutzniesser des EWG-Protokolls ueber den innerdeutschen Handel, Frankfurt/Main und Berlin 1976.

주 4 : 내륙간 무역교류와 지불교류에 관한 법률규정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Ehlermann, Claus-Dieter/ Kupper, Siegfried/Lambrecht, Horst/ Ollig, Gerhard: Handelspartner DDR - 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Baden-Baden 1975.

Kupper, Siegfried: Der innerdeutsche Handel. Rechtliche Grundlagen,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eutung, Koeln 1972.

주 5 :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Schuster, Falko: Preispruefungsverfahren unter Beruecksichtigung der Vorschrifte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in: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 28.Jg.(1982). H.1, S.14-19.

Riley, Hannelore/ Schuster, Falko: Untersuchungsverfahren beim Dumping- und Niedrigpreiseinfuehren, in: Wirtschaft und Wettbewerb, 53.Jg.(1983), H.10, S.765-775.

주 6 : 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Hrsg.): Handbuch DDR-Wirtschaft, 4.Auflage, Reinbek bei Hamburg 1984, S. 319 참조.

주 7 : Volze, Armin: Zu den Besonderheiten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m Ost-West-Verhaeltnis, in: Deutsche Studien. Vierteljahreshefte, September 1983, S.187 참조.

주 8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Gross, Karl-Heinz: Die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n: Die Wirtschaft der DDR am Ende der Fuenfjahrplanperiode, FS-Analysen Heft 5, Berlin 1985, S.27-48.

주 9 : 예컨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Lambrecht, Horst: Die Entwicklung des Interzonenhandels von seinen Anfaengen bis zur Gegenwart, a.a.O.

Kupper, Siegfried: Der innerdeutsche Handel, a.a.O.

주 10 :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Nehring, Sighart: die Wirkungen von Handelspraeferenzen im Warenaustaus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Ein empirischer Beitrag zur Theorie der impliteten Transfers, Tuebingen 1978.

Kreiling, Hans-Walter/ Hedtkamp, Guenter: Niedrigpreisimpor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Staatshandelslaendern. Theoretische und ordnungspolitische Probleme, Koeln u.a. 1980, S.30 ff.

주 11 : 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Schmidt, Paul-Guenther: Internationale Wae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Theoretische Grundlegung und empirische Ueberpruefung am Beispiel der DDR, Stuttgart und New York, S. 176 ff.

주 12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Volze, Armin: Zu den Besonderheiten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m Ost-West-Verhaeltnis, a.a.O., S.188 ff.

Schmidt, Paul-Guenther: Internationale Wae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a.a.O., S.189 ff und S.304 ff.

주 13 :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Volze, Armin: Zu den Besonderheiten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m Ost-West-Verhaeltnis, a.a.O., S.188 ff.

주 14 :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세분화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Schlemper, Annemarie: Die Bedeutung der innerdeutschen Handels. Eine empirisch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sektoraler und betriebsgroessenspezifischer Aspekte, Goettingen 1978.

Lambrecht, Horst/ Wessels, H.: Produktions- und Beschaeftigungseffekte im innerdeutschen Handel, Berlin 1978.

주 15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Gross, Karl-Heinz: Entstehung und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a.a.O.

Roesch, Franz/ Homann, Fritz: Thirty Years of the Berlin Agreement - Thirty Years of inner-German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in: Zeitschrift fue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Band 137 (1981), S.525 - 555.

Volze, Armin: Zu den Besonderheiten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m Ost-West-Verhaeltnis, a.a.O.

Lambrecht, Horst: Der innerdeutsche Handel - Ein Gueteraustausch  
im Spannungsfeld zwischen Politik und Wirtschaf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Heft 40/1982.

주 16 : Handelsblatt Nr.214 vom 8.November 1982, S.9.  
Konrad Naumann 의 기고에서 인용.

주 17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Schueller, Alfred/ Wagner, Ulrich(Hrsg.): Aussenwirtschafts-  
politik und Stabilisierung von Wirtschaftssystemen, Stuttgart  
und New York 1980.

주 18 : Volze, Armin: Zu den Besonderheiten der inner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im Ost-West-Verhaeltnis, a.a.O.,  
S.190.

주 19 : 현재 정확한 점유율은 방법론적 근거때문에 불가능함.  
다음 문헌들을 참조할 것.

Haendcke-Hoppe, Maria: Die DDR-Aussenhandelsstatistik  
und ihr Informationswert, FS-Analysen, Heft 3, Berlin 1978.

Dietz, Raimund: Der Westhandel der DDR. Zwei Datensatze  
- zwei Perspektiven, in: Deutschlandarchiv, 18.Jg.(1985),  
H.3, S.294 ff.

Schmidt, Paul-Guenther: Intenationale Wae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a.a.O., S.383-396.

- 주 20 : 상세한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Cornelsen, Doris/ Lambrecht, Horst/ Melzer, Manfred/  
Schwartau, Cord: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fuer die Wirtschaft der DDR, DIW Sonderheft 138, Berlin 1983.
- 주 21 : 예컨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Schmidt, Paul-Guenther: Hard Currency Indentness of the  
Developed Socialist Countries, in: Intereconomics.  
Review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Vol.20 (1985), No.3 S.114-121.
- 주 22 : 1968년도까지 동독의 정치지도층에게 독일통일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그들의 정책목표에 따른, 즉 헌법적  
명제였음. 1969년부터 비로소 양독간의 “국제법적” 관계가 강조되고  
여하한 형태의 특수관계도 철저히 부정되는 독트린이 만연함.
- 주 23 : 공산주의 독재체제 재정활동의 경제적 이론의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Schmidt, Paul-Guenther: Internationale Waehrungspolitik im  
sozialistischen Staat, a.a.O., S.15-48.
- 주 24 : 이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Adler-Karlsson, Gunnar: Western Economic Warfare,  
Stockholm 1968.  
Ders.: The U.S. Embargo: Inefficient and Counterproductive,  
in: Aussenwirtschaft. Zeitschrift fuer internationale  
Wirtschaftsbeziehungen, 35.Jg.(1980), S.170-187.

주 25 : 내독간 경제교류는 정치적 권익관철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촉구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비판적인 논쟁에 관하여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Bolz, Klaus: Instrumentalisierungsmöglichkeit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in Wirtschaftsdienst, 66. Jg.(1986), H.9, S.446-450.

#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 1. 접경지역 (Zonenrandgebiet) 및 지원의 필요성

- o 서독은 국토의 분단으로 인해 특히 내독간 접경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져 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독일(통일)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함.
  - 서독정부는 향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살 수 밖에 없으므로 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연대의 표현으로 이 지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인 자원의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함.
  - 동독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브란트 정부는 1971.8.5 접경지역지원법 (Zonenrandfoerderungsgesetz)을 통과시켜, 이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
    - o 이 법은 1985.12.19 세법개정으로 일부 개정되었음.
- o 동 법 제9조에는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음.
  - 접경지역은 대략 내독간 국경 (1,393 Km), 체코와 국경 (356 Km)과 북동해안선 (384 Km)을 따라 서독지역쪽으로 약 40 Km 범위에 드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면적은 약 46,800 km<sup>2</sup>로 서독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며, 주민수는 1987년 기준으로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되었음.

\* 내독관계성 자료를 주독대사관이 요약 정리한 보고서임.

- 이 지역은 또한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여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원 수단인 부자보조금 혜택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25% 지원중점지역(Schwerpunktorten), 15% 지원중점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었음.
- o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자보조금 지원, 세제상 특혜, 사회간접자본 구축지원, 주택건설지원, 사회·문화시설확충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 투자시 보조금 지원

- o 우선 물품생산과 용역제공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보전케 해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주요 수단은 부자보조금 (Investitionszulage) 지급인데, 이 지역의 신설기업은 타지역에서 제공되는 기존의 부자보조금법 (Investitionszulagegesetz)에 규정된 부자보조금 지원액보다 더 높은 부자보조를 받게 됨.
  - 지원은 기업의 신설 혹은 기존기업의 부자증액이냐에 따라, 그리고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정도에 따른 중점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차이가 남.
- o 중점지원지역에서는
  - 기업의 신설시는 기존 부자보조금법이 규정한 10%에 5%의 특혜를 부여하는 총 15% 지원중점지역과, 국경에 가까워 올수록 15%의

특혜를 부여하는 총 25% 지원중점지역으로 나누어짐.

- 이미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기업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증액할 때는, 50명 혹은 기존고용인력에 비해 15%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경우 그 기업의 접경지역에서 근접성에 따라 최고 15 - 25%의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o 이 경우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고용인력은 투자개시일로부터 그 접경지역 안에 거주하는 임시고용이 아닌 장기고용 노동자수로 계산하며, 직업훈련생 1명 고용은 2명의 노동자와 같은 정도로 산정해 줌.

- o 또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개시일의 고용인력이 과거 2년간 평균 고용인력보다 적을 경우, 이것이 일시적인 고용 감소 현상임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장기고용인력의 감소가 시장에서의 수요변화에 구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입증해야 함.

o 중점지원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 기업 신설시는 그 기업이 주로 여성취업자를 장기고용한다든가, 광산물 채취와 같이 꼭 일정지역에 입지해야 할 때, 공해산업이지만 주거지역에 꼭 입지해야 할 때, 10-15%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됨.

- 기업확장일 때는 투자보조 조건으로 그 기업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취득했을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다른 조건은 기업 신설시와 같음.

- o 점경지역 내에 있는 기존기업의 합리화와 구조재편을 추진할 때도 10% 내의 부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기업은 기업의 존속과 장기고용보장을 조건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함.
  
- o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거리 운수업체의 신설이나, 기존운수업체의 기업합리화나 구조재편의 경우에는 부자액의 15%까지 부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o 기업이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총 60,000 만 DM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급 경영 및 기술 인력의 일자리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이러한 고급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기업은 부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25% 중점지역의 경우에는 25,000 DM 까지
  - 15% 중점지역의 경우는 15,000 DM 까지 이러한 부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o 기업체가 부자보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설, 확장시 또는 기업합리화 및 구조조정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채무에 대해 연방정부가 일정액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 기업을 지원함.
  - 1년에 1개 기업체에 대해 5백만 DM의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을 하는데, 보증액은 전체 채무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며, 채무상환은 15년 이내에 해야 함.

0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하는 경우에도 부자보조금이 지원됨.

- 도로건설, 에너지 및 상·하수도 공급공사, 쓰레기수거 및 정화시설 건설, 직업교육·전직훈련장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노동인력 양성소 건축 등이 그 주 대상임.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주기관인 경우 또는 어떤 법인체 또는 자산인이 영리목적으로 이를 발주할 경우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하청을 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을 받음.

0 이러한 부자보조금 신청은 해당기업이나 해당기관이 각 주정부 경제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됨.

### 3. 화물운반 운송료 보상, 세제상 특혜

0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국경가까이에 있음으로해서 원자재를 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현저하게 화물운반 운송료를 많이 지불할 경우 이에대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짐.

- 접경지역 안에 있는 기업끼리 합병하여 제품운송량을 늘이는 기업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러한 보상대상은 과거 내륙간 경계선이 생기기 전에, 동독지역으로부터 40% 이상을 반입했으나, 국경이 생김으로 인해 먼 길을 우회하여 수송될 수 밖에 없는 물품들임.

- 국경선 생성이후 새로이 생산된 제품들은 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화물운송 방법에 따라서는 철도, 수로, 국도 운송제품이 보상대상에 해당이 됨.
  - 쓰레기 폐기물이나, 부산물들 또한 보상대상이 안 됨.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화물운송료가 개별기업당 2,000 DM이 넘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0.4%가 넘어야 함.
  - 보상액은 개별기업당 1년에 4,000 DM을 넘을 수 없음.
  - 보상대상 물품, 보상액, 보상대상 수송로 등에 대해서는 각 주 경제성과 상공회의소가 기본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하였음.
- 각 기업이 이러한 보상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보상금의 5배에 달하는 액수를 신규부자 또는 기업구조 조정시 일괄 부자보조금 형식으로 보상하여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블 유도하였음.
  - 이러한 화물운송 보상액의 기업자본금화 신청은 개별기업이 신규부자시 부자보조금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
- 접경지역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접경지역에는 각종 세제상 특혜가 주어짐.
  - 연방재무성은 1978년 11월 10일 접경지역 지원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행정예규를 제정하였음.

- 동 예규에 의하면 구입 또는 제조된 후 3년이 지난 투자목적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재산의 특별 감가상각 (Sonderabschreibung)을 허용하여 세제상 특혜를 줌.
- 또한 적립재산(Ruecklagen)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자본축적률을 높이도록 지원함.

#### 4.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시 특권

- o 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 3항에는 이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시 이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음.
  - 이 지역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다른 기업이 제시한 최저입찰 제시가격보다도 행정예규에서 정한 입찰제시가격에 따른 일정한 %를 상회하지 않으면 이 지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이 되도록 함.
  - 특혜 대상은 연방정부 발주 공공사업에 한하며, 이 지역 해당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상공업 업종에 한정함.
- o 재무성은 1975년 8월 20일자 관보 제152호로 접경지역 및 서베를린지역에서 공공사업 발주시 특혜에 관한 행정예규 (Richtlinie fuer die bevorzugte Beruecksichtigung von Personen und Unternehmen aus dem Zonenrandgebiet und aus Berlin (west) bei der Vergabe oeffentlicher Auftraege vom 11. August 1975)를 공포한 바 있음.

- 이 행정예규에 의하면 다른 기업의 낙찰최저가가
  - 5천 DM 이하이면 6%,
  - 5천 - 1만 DM 이면 5%,
  - 1만 - 5만 DM 이면 4%,
  - 5만 - 10만 DM 이면 3%,
  - 10만 - 50만 DM 이면 2%,
  - 50만 - 100만 DM 이면 1%,
  - 100만 DM 이상이면 0.5% 불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 기업이 낙찰가를 제시할 경우  
이 지역 기업에게 응찰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함.

#### 5. 접경지역내 농업지원

- o 접경지역내 농가와 농업생산기반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책
  - 부자축진을 위한 영농용자
  - 산간지역 또는 오지의 농가 부자지원
  - 청소년 영농자 지원
  - 낙후지역 소득보상
- o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책
  - 농경지 정리 및 농촌 현대화
  - 수로 및 관개시설 확충
  -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 해안선 방조제 구축

- o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투자용 재산에 대해서  
접경지원법 제3조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이 허용됨.

## 6. 교통 분야 지원

- o 접경지역 지원법 제4조에는 접경지역내에 도로망이나 철도의  
개축·증축·신축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음.
  - 연방정부는 국도보수·유지의 경우 5년마다 보수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수·유지가 필요한 곳을 선정, 그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바, 접경지역내 국도의 보수·유지는 우선 순위  
결정에서 특별 보너스를 줌.
  -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건설·보수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보통 60%이나, 국경지역의 경우는 75%임.
  - 철도의 경우는 철도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구간의 선로 폐쇄 결정시, 다른 지역은 연방교통성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접경지역의 경우는 내각에서 결정토록 하여 신증을 기함.
    - o 이 경우 연방철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인구밀도가  
적은 이 지역의 경우 철도 이용보다 도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 7. 주택 분야 지원

- o 접경지역 지원법 제5조에 의하면 이 지역의 주택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신축시 그리고 국민복지주택 입주시 특혜를 주도록 되어있음.

- 주택의 신축시는 이 지역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신축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도록 주택지원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1/3 가량 높여도록 되어있음.
  - 특히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국민복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가능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의 상한선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입주가 보다 용이하도록 함.
- o 이 지역의 부자유지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으로, 특히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숙련노동자와 고급기술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짐.

#### 8.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지원

- o 접경지역 지원법 제6조에 의해 체육관, 수영장, 기타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문교성을 통해 이 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내무성은 연방내독관계성과 함께 이를 심사하고 예산을 지급함.
- o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접경지역 지원법 제6조에 의해 특별한 예산을 지원함.
- 이 지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 문교성을 통해 연방청소년성에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연방청소년성으로부터 연방청소년지원계획 (Bundesjugendplan)에 의해 지원을 받음.

- o 이 지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가족단위 휴양시설, 양로원,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받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 사회성을 통해 연방 가족·보건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 9. 문화 분야 지원

- o 이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신적인 건강유지와 이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내독관계성이 연방예산을 통해 특별 지원함.
  - 각 주 문화성을 통해 지원신청이 이루어지면, 내독관계성에서 이를 심사 예산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인건비가 아닌, 물적 경비(시설유지, 공간확보)에 한정함.
  - 연방예산으로 지원은 다른 재원수단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 o 지원 분야

- 유지원, 일반학교, 직업학교 시설구축 지원
- 성인교육기관, 도서관, 극장, 박물관, 전통문화·향토문화 전시관, 교회, 학생기숙사 신축·시설유지 지원

10. 국경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보수

- o 연방정부는 1979년 6월 7일 내륙간 국경을 이루는 수로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 등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피해보상과 시설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o 물적인 피해보상과 피해방지 조치
  - 동독지역에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여, 동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보상 요청권자에게 보상함.
    - o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방지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함.
  
  - 이 경우 한가지 사례당 총 피해액이 5만 DM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 DM 이하의 소액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o 예를 들어 피해불 안 당했다면 얻을 수도 있는 이익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음.
  
  - 경찰·소방서 등의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치 않음.
  
  - 재산피해시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보상액 산정시 고려됨.
    - o 예를 들어 피해에 대한 공동책임, 피해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평소 피해방지 노력 등을 감안함.
  
  - 동독에서 피해원인을 제공한 피해임으로 피해자는 연방정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만큼, 동독지역의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요구를 포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0 국경지역 수로의 보수·유지 지원

- 국경을 이루거나, 국경을 관통하는 수로와 관리시설의 보수·유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50%까지 재정지원함.

0 피해보상 신청 기간·방법

- 피해가 발생한지 1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 1973년 9월 20일 동·서독간에 체결된 국경에서 피해방지와 국경 수로의 유지 및 개축에 관한 합의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1979년 3월 31일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보상신청은 피해지역의 해당 시·군에 하도록 함.

0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1969년 9월 30일 연방노동·사회성이 지침을 마련하여, 연방원호법에 의거한 원호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피해보상신청은 각 지방 원호청에 하도록 함.

0 국경부근의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내독관계성이 각 주정부와 합의하여 마련한 지침을 통해 보상토록 함.

11. 국경지역 견학·여행 장려

- 0 내독관계성은 국경지역과 동독의 실상에 대해 현장견학을 통해 널리 알리고, 독일정책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1~3일에 걸친 국경지역 견학·여행을 예산을 통해 지원함.

0 견학 및 여행은 20~60 정도의 그룹별로 이루어 지는데 그 대상은

- 25세 이상의 성인
- 15~25세의 학생, 청소년, 대학생
- 외국인 입.

0 견학 및 방문 주요 프로그램

- 내륙간 문제와 국경지역에 대한 강연 및 필름 상연
- 국경의 전망대 안내
- 국경지역의 문화 유적, 사회·경제적인 시설 관람

0 지원 내용

- 여행 경비 보조
  - 여행인원이 10명인 경우 1인당 1 Km당 0.9 DM,
  - 20명일 경우 1.6 DM, 30명일 경우 2.1 DM,
  - 50명일 경우 2.5 DM 입.
- 숙박비
  - 1일 1인당 5 DM
- 안내인 무료 제공
- 단순한 휴가여행, 관광여행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0 지원 신청 방법

- 출발 6주 전에 해당기관에 신청함.
  - 학생, 청소년, 대학생은 각 주정부에, 성인 및 외국인은 내륙관계성에 신청함.

- 보조금 지급 결정은 서면으로 여행 출발 전에 결정되나,  
보조금은 여행·견학 이후에 지급됨.
  - 이때는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와, 안내인의 확인서,  
참가자들의 명단 및 경비 영수증이 통보되어야 함.

## 구동독 경제의 몰락과 국가 파탄 1)

\* 한스 헤어만 헤어틀레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독일 통일 사회당(이하에서는 SED로 약칭함: 억주) 중앙 위원회(Zentralkomitee) 서기장으로 부임하여, 1989년 10월 24일 첫번째 정치국(Politbuero)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서 크렌츠는 정치국 간부 후보이자 국가 기획위 (Staatliche Plankommission) 위원장 게어하르트 쉬어러 (Gerhard Schuerer)에게 외무 장관 게어하르트 바일(Gerhard Beil), 외무 차관, 외환별이 담당 대외무역회사 Koko(Bereich Kommerzielle Koordinierung) 사장이자 국가 보위부 참모 알렉산더 샬크(Alexander Schalk), 국립 중앙 통계원 원장 아르노 돈다(Arno Donda)와 재무 장관 에른스트 웨프너(Ernst Hoefner)로 구성되는 실무 조사단과 공동으로 “국민 경제 실태 분석” (“eine Analyse der tatsaechlichen volkswirtschaftlichen Situation”)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그는 쉬어러에게 1989년 11월 8일에서 10일 에 걸쳐 개최되는 SED 중앙위 집회에서 거론될 동독 경제 개혁안 기초 작업을 또한 부과하였다.2)

물론 동독의 심각한 경제 상태를 정치국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크렌츠는 수년 전부터 샬크와 쉬어러로부터 경제 침체에 관한 보고를 소상히 받고 있었다. 이블테면, 국민을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키 위해 사용된 기구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호네커(Honecker) 시대 때 주장하던 “사회복지 정책의 위업”이 자체 경제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SED 지도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1953년의 민중 봉기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누각의 사회주의 업적을 위장 선전하지 않으면

---

\* 자유 베를린 대학 사회과학 중앙 연구소 연구원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생산잠재력의 약화, 자본축적의 저하, 전례없는 낭비 경제, 특히 서방에 대한 부채 증가 등은 따라서 정책 수립 · 진행 과정에서 있기 마련인 예상키 어려운 변수나 실책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쉬어러는 1973년부터 정치국에 동독의 월간 재정수지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는 바, 비사회주의 경제권 (Nichtsozialistische Wirtschaftsgebiet)에 대한 동독의 결제 능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말 부터였다.3) 이에 대한 공여지책으로 경제 기구 산하에 “지불 결산 실무 조사단”이 설치되었다. “지도부에만 열람이 허용된 비밀 사항”으로 취급된 본 기관 간행 보고서는 1989년 9월의 마지막 호에서, 1989년도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수출량 122억 Valutamark (이하에서는 VM 로 약칭함: 역주) 를 1995년에 가서는 240억 VM 으로 상승 조정토록 권고하였다. 판매 가능 수출 상품의 제조라는 선결 조건조차 해결지 못하는 동독의 경제 · 산업 구조가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출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수출 계획량을 달성토록 해야 함”을 고수하면서, 그 이유로 “일년 간의 수출 계획량이 미달되면 수입량 역시 그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부채 상태에서는 수출 계획량 미달은 곧 경제 불능을 의미한다”4)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 경제 · 재정 정책의 이러한 파행성에 대해 비판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 상태 전반에 관한 - 특히 정치국의 주도에 의한 - 상세하고도 총괄적인 분석은 지금까지 걸여되어 왔다.5) 크렌쯔가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따라서 제 9차 중앙위원회에서 표방한 그의 정직과 진실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서기장으로서의 책무는 나날이 증대되고, 경제 난국은 걸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발전함에 따라, 아예 이 사실을 집권 전에 밝힘으로써 그 모든 책임을 수뇌 호네커(Honecker)와 밀탁(Mittag)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경제 위기와 이러한 당 내분 조짐은 SED 행동 반경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크렌쯔의 ZK 석상에서의

“경제 실태 분석” 지시는 기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의 차원을 초월하는, 기존 동독 정치 구조에 일대 개혁을 가져 오겠다는 대권 쟁취 야욕의 제 1 단계 기반 조성으로 해석된다.

## 1. 전환(Wende)

오랜 주저 끝에 정치국은 고르바초프의 선풍적 정치 철학 - “역사에 뒤처지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 Wer zu spae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 에 힘입어 10 월 18일 마침내 호네커를 실각시키고, 그의 측근인 중앙위 경제 담당 서기 귄터 밀탁 (Guenter Mittag)과 당 선전 부장 요아힘 헤르만(Joachim Hermann)을 정치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1971 년에 있었던 울브리히트(Ulbricht) 에서 호네커로의 정권 교체와 고르바초프의 권력 인수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크렌츠는 레닌 시절부터 실시되어 온 당과 국가가 일체가 되는 일당 독재 봉지 방식을 고수하였다. 울브리히트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는 호네커의 추천을 받아 크렌츠는 10 월 18 일 SED 중앙위 서기장직에 부임하였다. 얼마 후 그는 호네커가 맡고 있던 국가 평의회 (Staatsrat) 및 국가 안보 위원회 (Nationale Verteidigungsrat) 의장직까지도 이양받게 되었으며, 또한 Koko (외환 벌이 대외 무역회사)와 동독 계획 경제의 비공식 VM 부 (inoffizielle Vatuta Sektor) 를 정치국 의결 과정을 거쳐 자신의 권력 하에 두게 되었다. 7) 물론 크렌츠는 중앙위 기구의 주요 부처에 자신의 측근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초기에는 일반 당원들의 밑에서부터의 압력 사례를 겪게 되는데, 당 총회 소집 등의 지연 작전을 펼쳐 자신에 불리한 이러한 당의 요구에 교묘히 대응하였다.

그리 순간치만은 않은 크렌츠의 권력 구축 과정은 특히 계승자 문제란 관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울브리히트와의 정권 교체시 호네커는 브레즈네프의 절대적 후원을 받은 반면, 모스크바에서는 크렌츠를 처음부터 임시미봉책으로만 간주하였다. 이를테면, 모스크바 측에서는 동독 내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추진을 위해 한스 모드로우나 마르쿠스 볼프와 같은 인물들

계승자로 내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공산 주의 권력 구조가 안고 있는 맹점으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정치국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 권력 계승 문제는 정치 혁신에 요구되는 도덕적 신뢰성과 정치적 권위 - 이는 특히 모드로우에게서 돋보였는데 -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당 서열 (Nomenklatura) 에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크렌츠의 대권 승계 배경을 분석하자면, 첫째, 그는 정치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후계자로 봉하고 있었으며, 둘째, 크렌츠는 군부 조직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고, 셋째, 중앙위 산하 자유 독일 청년단 (FDJ) 이 크렌츠의 권력 쟁취 시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주 요인으로 열거할 수 있다. 반면, 볼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드로우 역시 정치 국원 명부에 적을 얻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이들은 대권을 향한 최소한 당 서열 상의 기본 조건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모드로우는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물러야만 하였다. 하지만 모드로우가 언제든지 무시못할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는 크렌츠로 하여금 새 시대를 향한 개혁 조치 과정에서도 비밀 감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계승자 문제를 둘러 싸고서도 잘 드러나듯이, SED 중앙위는 전환기 때에도 시종일관 과거의 구태 의연한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였는 바, 크렌츠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개방 추이에 편승, 점점 대담해지는 반대 당 재야 인사들의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분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 실례로, 정치국은 국가 보위부 장관 밀케와 내부 장관 디켈의 권고로 10 월 24 일 “Neues Forum”, 사민당 또는 평화 · 인권 시민 단체와 같은 “반 사회 주의적 운동 단체의 활동에 대한 억제 대책” 수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일대 전환의 기치하에 소집된 이 회동에서도 시위 군중들에 대한 국가 보위부와 경찰의 폭력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밀케나 디켈을 즉시 파면시켜야 된다는 착상은 참석자 그 누구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른 한편 대소 관계에서도, 크렌츠와 그의 측근 밀탁, 헤르만 등은 위에서 지적된 대권 후보 문제 등을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집권 후에도 전혀 내세우지 못하였다. 9) 한 마디로, 이들은 생각하는 “전환”이란 단지 “진지한 정치적 대화의 시작”으로서, 이를 통해 SED는 “사회 주의를 독일 땅에서 계속 온존시키고 정치·이념 상의 공세”를 다시 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10) 크렌츠는 10월 18일 제 9차 ZK 총회 개최 연설에서 이러한 대화의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들었다 : “첫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은 동독에서 사회 주의를 계속 유지·확립시키고, 그 이념을 기립으로써, 우리가 이복한 위업이 붕괴됨을 막자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모임의 어떠한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의문시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복한 업적 그 자체를 의심하는 행위이다. 둘째, 우리 사회 주의 독일 공화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권 국가로 존립할 것이며, 발생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11) 그 후 SED는 정치적으로, 동독 국체를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Neues Forum과 같은 재야 모임을 공식 단체로 일단 인정해 주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경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 행사의 대목에서는 이렇다 할 재량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정치국 의사 일정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10월 17일자 쉬어러 실무 조사단의 보고서가 예견하고 있듯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복한 위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외해 요인에 대해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었다. 동독 경제의 파국은 말하자면 외적이 아닌 자생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자체 붕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동독 경제 상황의 분석과 그 대책”

쉬어러, 샬크, 바일, 폰다 및 웨프너가 정치국에 제출한 “동독 경제 분석 보고서”는 동독 경제의 실태가 어떠한 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12) (지금까지의 긍정적 평가는) 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거의가

다 그 반대임이 판명되었다. 구체적으로:

- 지금까지 찬탄해 마지 않던 “국민 소득의 급속한 성장”은 지난 몇년 간 현저히 둔화되었음.
- 5개년 계획 (1986 - 1990년)의 일환으로 실시된 자재 절약 조치는 특별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음.
- 첨단 · 전자 산업에 대한 투자는 실패로 판명되었음. 첨단 전자 제품 산업에의 투입과 그 대외 수출을 위해서 매년 30억 동독 마르크 이상이 지출되어야만 했음.
- 지난 몇년 간의 작황 부진으로 말미암아 “비사회주의 경제권”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재개되었음.
- 교통 부문에서의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민들의 실질 소득 인상은 국민 생산 소득의 성장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주택의 신축에만 전념하고, 보수 작업을 등한시함으로서 기존 주택의 폐가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기획 및 행정 업무의 비대화화 국민 경제 구조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획 및 운영 기구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 “우리 경제의 적나라한 실상”의 주 요인으로 자본 축적, 균형, 성장 속도 및 능력제 보상 원칙 등에 따른 현안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현재 동독의 노동 생산성은 서독에 비해 40 % 가량 뒤쳐져 있다.

사회 노동 재산(Arbeitsvermoegen) 형성과 사용 가능 자원의 투입 시 사회 상층 구조 (soziale Ueberbau)와 생산 기층 (Produktionsbasis) 간에 불균형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부채는 제 8차 전당대회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동독의 결제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4 쪽)라고 그 부정적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 축적률의 전반적인 감소 - 특히 제조업 부문 (1970년 : 16.1 %; 1988년 : 9.9 %)에서 - 와 이에 따른 파급 효과 (납품 산업 퇴조; 산업 장비 파손율 증가 1975년 47.1 %에서 1988년 53.8 %, 일부 분야에서는 60 % 까지 국민 소득 성장을 둔화).
2. 소비 증가로 인한 자본 주의 국가에 대한 부채 증대 (1970년 20억 UM에서 1989년 490억 UM으로 증가), 국내 신용 기관에 대한 국가의 부채 (1970년 12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8년 1천 2백 3십억 동독 마르크). 이와 관련한 초과 구매력의 상승과, 저축 예치금의 증가로 인한 국민에 대한 이자 지불액 증가 및 이에 따른 화폐 가치 저하.
3. 1986 - 1990 5 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 계획량의 미달.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독 경제 상태의 급변” (10 쪽)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한 국가의 채무 능력 측정 기준으로 간주되는 부채 상환율 - 즉 연간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수출액 - 은 25 %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설정 한계치는 수출고의 75 %를 수입품 결제 및 기타 경비에 지출해야 함을 뜻한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1989 년도 동독의 부채 상환율은 이들 국제 봉용 한계치를 훨씬 초과하여 무려 150 %에 달한다. 지불결산상태는 90년도에 들어서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 초과량이 3 - 5억 VM 에 이를 경우, 수출 지원 기금 (Sockel) 13)은 1990 년 말 5백 7십억 VM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이자는 1990년 총 80 억 VM을 넘을 것이다.

수출 지원 기금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90년도 국내 총 생산액 중 약 300 억 동독 마르크 상당 - 이는 향후 3년간의 국민 총 소득 증가액에 맞먹는 액수이다 - 이 소용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25 - 30 %의 소비 절약이 뒤따라야 한다”(11쪽).

90 - 95 년도 계획 수출 초과량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곧 닥쳐올 동독의 지불 능력 상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결제 능력의 상실은 곧 지불 유예란 결과를 초래케 하는 바, 이는 동독이 곧 세계 통화 기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머지 않았음을 뜻한다. 즉 지불 유예 국가는 비용 및 통화 안정 등과 관련하여 세계 통화 기금의 조사를 받게 되는 바, 이는 경제 정책 추진시, 기업 사유화, 가격 지원제, 수입 등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자체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사전 방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쪽).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제 개혁을 수반하는 경제 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였는데, 그 주요 과제는 “산출과 소비 간에 다시 균형을 찾는 것” (13쪽)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국내 소비 및 무자용 자본 비축에 사용되는 수출 초과량 필수 공제액을 제한 나머지만 소비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 국민소득 중 국내 소비는 비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지불 결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 부분 국민소득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13쪽)

경제 개혁의 목표는 “민주 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최상의 조건 하에서 발전시키는 가운데 사회 주의 계획 경제를 제 시장 조건에 부합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경제 개혁의 과제는 다음의 7 가지로 요약된다:

1. 수출 유망 업종에 대한 생산력 자본 축적 강화
2. 납품 문제 해결책 강구
3. 잠재 노동력 재편성을 통한 생산성 강화;  
행정 및 사회 분야에서의 비생산적 활동 감축
4. 개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통한 사회 주의 능력제 도입
5. 보건, 현대화 및 합리화 대책에 대한 투자 강화
6. 완전 보상 제도 폐지 등과 같은 가격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
7. 복합 주택 건설용 자금 감축: 기존 건축물의 유지 및 현대화

‘실태 보고서’ 제시 대책만으로는 이 막중한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기구에서부터 경제, 안보 및 군사 분야를 총괄하는 비생산적 · 초대형 정치국 관료 행정 기구의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복기할 사항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대신 중앙 행정 기획부와 관련 실무 부서의 감축, Kombinate 와 기업의 자체 책임 강화, 경제적 성패를 평가함으로써 생산성을 축적함에 있어 금전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고,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들만이 강조되었다. 설사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 · 정확하게 추진된다 할지라도” 동독의 결제 능력 확보에 필요한 수출 초과량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본 보고서도 역시 지적하였다: “1985년 즈음 총력을 기울였다면 경제 회복은 가능하였을 지도 모르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신용 차입이 중단될 경우, 1990년도의 생활 수준은 25 ~ 30 % 정도로 하락될 것이며, 이로써 동독은 더 이상 봉치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설사 국민들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수출 완제품을 계획량대로 생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쪽).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란 자본 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경제 정책의 전환뿐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동독을 서독에 대한 경제 세력으로 간주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서독에 떠 맡기고자 하는 논의 등도 있었다. 결제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신용 대부 상한선보다 20 - 30 억 VM을 상회하는 금액을 서독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되”, 1996 ~ 1999 년 간에 있을 통과여객일괄금(Transitpauschale) 을 그 담보로 제공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4) (21쪽).

본 건의의 배경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설사 부채 증가는 막지 못할지라도, 세계 통화 기금의 통제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었다.

보수적인 서독 정부로 하여금 동독에 대한 신용 대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동 · 서독 간 경제 및 학문 - 기술 상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을 새기 말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식의 국경은 철폐시킬 용의가 있음을 비치되, 통일이나 국가 연합(Konfoederation) 구성 15)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강조”(22쪽) 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경 철폐의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요약된다: “동 · 서 긴장 완화와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서독은 자발적으로 정치 · 경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독은, 동독이 국경 개방으로 인해 약 1천억 동독 마르크 상당의 피해를 - 이는 서독 경제 기관의 추산임 - 입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2쪽). 본 보고서는 “밝고 희망찬 앞날”을 예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경 철폐 시기 문제를 둘러싼 압시로서, “동독과 서독 정부는 1995 년에 동독의 수도와 서베를린을 서기 2004년 올림픽 공동 행사 개최지로 신청할 것을 검토하자”는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제안 16) 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쉬어러는 정치국 회의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 실무 조사단에서 국경 문제와 같은 국가의 주요 정책상의 사안까지 언급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 서독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정치국 간부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시위자들과나 기업체에서 이러한 요구를 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17) 라는 정치적 복안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었음을 쉬어러는 또 지적하였다.

장벽 문제를 서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결부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는 정국 상황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 난 경제 개혁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말았다. 자본 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불 결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동구권 사회 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또한 90년부터는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과 특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등에서의 개혁 조치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 위기 양상이 심화됨으로 해서 업체들과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비수익성 생산품에 대한 국가 보조의 폐지로 이들 국가와의 해당 품목 거래는 중단되었으며 인플레이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COMECON 무역에서도 경화가 결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18). 그 당시 실무 조사단이 내린 결론과 이에 따른 개혁안이 원대한 비전을 담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이상적인 성격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지 못하였음을 쉬어려도 뒤늦게 시인하였다.

파산 직전에 와 있는 동독 경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하였을런지는 너무나 자명하였다. 따라서 정치국은 10월 31일 이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은 하되 SED, ZK 의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과, 그 주요 내용은 제 10회 중앙위 회의시 “절제된 표현”을 써서 에곤 크렌쯔의 연설에 포함시키자는 데에 즉각 합의를 보았다. 19) 미화된 표현을 사용토록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쉬어려, 샬크, 바일, 돈다 및 웨프너는 “지도부에만 열람이 허용된 비밀 사항”인 동독 결제능력에 관한 추가 자료를 통해 현재 부채 상태의 심각성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은 크렌쯔를 비롯한 일부 정치국 임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20): “동독의 연간 부채 도입액은 80 ~ 100 억 VM에 달한다. 이는 동독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한 액수인 바, 그 자금 조달을 위해 400 여 은행이 동원되어야 한다. 자본 주의 국가 은행들은 개발 도상국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주의 국가 들에 대해서도 대부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상한선 이상의 대부를 제공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동독의 주요 신용 제공자인 일본과 서독 정부, 그리고 이들 국가의 은행에 대한 정치적 선전 효과;
- 동독 경제 발전 추세, 특히 무역 추세, 원가 추세, 자본 축적력, 통화 안정, 노동력 부문에서의 진전 상태;
- 동독이 외국 은행에 예치한 부자금 - 이는 공탁금 내지는 아직 투입되지 않은 신용 대금으로서 외국 은행들은 이를 동독의 순수 부자금으로 여기고 있음 - 의 실제 성격을 비밀로 함으로서, 동독은 신용있는 채무자로서의 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동독 은행들이 다시 예치시킨 공탁금 및 예치금 형태의 외국인 예금액 53억 VM ;
  - 자본 주의 은행들과 협약한 신용 대부 중 투입 전까지 동독 측에서 다시 부자해 놓은 금액 84 억 VM;
  - 상업 조정실 유동 수단 27억 VM;
  - 동독 시민들의 Valuta 예치금 3억 VM.

외국 은행 및 신용 기관에 의해 조사된 동독 예치금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들 자본들이 모두 ‘동독 예치금’으로 알려 지고 있는 바, 왜냐하면 이들 은행들은 이 자금들의 실제 출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의 채무 감당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 채무 결제에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채무 능력을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도 계획 결산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1). 정치국에 제출된 부채액과 ‘동독 예치금’의 실제 성격이 발표되었을 경우, 그것이 동독 채무 능력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 자료는 비밀에 부칠 것을 경제관료들은 권고하였다.

### 3. 고르바초프의 조언

이러한 난경에 처하여 크렌쯔는 동독 경제 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바로 그 이튿날인 1989년 11월 1일 모스크바로 고르바초프를 방문, 소련측의 자문을 구하였다. 2인 단독 회담 기록 자료에 따르면 크렌쯔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제 9차 SED - 중앙위 총회는 진실을 표방하기는 하였지만, 동독의 실제 국민 경제 상태를 중앙 위원회에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며 ...” 22) (10 쪽)

고르바초프는 크렌쯔의 말을 가로 막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소련은 이미 동독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서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듣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소상히 전해 듣고 있다. 소련은 동독에 대해 의무를 다 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어려운 국내 문제로 말마암아 200 만 톤의 석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은 펍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어쨌건 우리는 동독이 소련의 지원을 꼭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독의 실상이 어떠한지가 분명히 파악되고 있는 계제에, 이튿날 동독 경제의 성공을 위해 소련이 전폭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요청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고르바초프는, “과거에 호네커 정부와 동독의 부채 문제에 관한 상의를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부채 따위의 문제는 동독 사회는 알지 못한다’는 호네커의 완강한 거부 반응을 경험했음”을 지적하였다 (10쪽). 어느 정도 대담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크렌쯔는 그의 용건을 개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소련측에서도 동독의 경제 ·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독의 경제 상태를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까닭은 SED 지도부가 현재 급박한 정치적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13쪽). 크렌츠는 고르바초프에게 파산 상태의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생산 부자면에서의 축적률 감소, 경제 성장률 감소, 계획량 미달, 고 인플레이 위험, 연간 30 억 마르크의 첨단 전자 산업 보조 재정 지출, 대외 부채 490 억 VM, 1989년 말까지의 경화 외화 결산상의 적자 121 억불, 연간 수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외화 수익 중 62 % (약 45억불) 상당이 이자 지불 내력으로만 지출되고 있음을 털어 놓자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를 다시 물어 보았으며, “사태가 그렇게 심각할 줄은 예상치 못하였다”고 충격을 털어 놓았다 (15쪽). 이에 대해 크렌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동독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만약 현 상황에서 동독 자체 경제력만으로 국민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경우, 국민 생활 수준은 즉시 약 30 % 정도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에 따른 결과는 정치적으로 감당해 낼 수 없다 (15 쪽).

크렌츠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실제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소련 자체내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크렌츠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소련이 동독에 대해 원자재 공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온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긴 했으나, 이 약속조차도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 스스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였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소련 공화국들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화국들과의 소득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소득분배상의 균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소련 최고 인민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18, 19쪽).

이어서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고 한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크렌츠 동지와 SED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 것 같다. 아직까지 크렌츠 동지

스스로가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인 경제 분석을 먼저 발표한 다음, 차후 상황을 보아 가며 전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크렌쯔 동지는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도 시대의 변천 과정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익혀나가야 할 것이다” (16 쪽)

양측 모두 엄청난 문제에 당면해 있었기 때문에 처세 방법을 둘러싼 조언 이상의 지원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바, 두 사람의 장래는 모두 어둡기만 하였다.

#### 4. 제 10 차 중앙 위원회 총회

1989년 11월 8일 제 10차 중앙 위원회 총회 연설에서 크렌쯔는 고르바초프와 그의 경제 각료들의 조언을 다루게 되는데, 부채 대목에 가서는 - 특히 빚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공식석상에서 절대 삼가하라는 살크의 권고 23) 에 따라 - 약 200 억 불의 동독 상환 의무 (Verbindlichkeit) 24) 란 애매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곤 하였다. 문화부 장관의 부채의 원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앙 위원회 기획 및 재정 국장인 에어런 쉬페어거가 답변을 하려고 하자, 크렌쯔는 황급히 말을 가로 막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2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을 벌이지 맙시다 (...) 전체 공화국이 경약을 할 겁니다” 26) (100 쪽). 곧 이어 크렌쯔는, 볼프강 헤어거로 하여금 중앙위 조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부채 원인에 관한 중요한 안건들을 조사토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결성되지 않았다 27) (121 쪽).

#### 5. 국가의 도산

1989년 11월 13일 제 11차 인민 회의 집회에서 “재정 및 외환을 포함한 동독 경제의 실상에 관한 가차없는 진상 규명” 28) 에의 여론이 드세어지자, 쉬어러는 국가 보안 규정을 내세워 지불 결산에 관한 사항은 비밀 사항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지불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대외비에 해당  
됨을 상기시켜 보고 싶다. 따라서 이들 주권자들, 즉 국민 대표들에게 밝히기  
전에,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9).

각료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 4일 후인 89년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는 정부  
성명 발표에서 동독 경제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 주의 국가의 국민 경제는 머지 않아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30).

정부 수립시 슬직과 개방을 표방하고 나선 모드로우가 암울한 정치국 분석  
자료와 정 반대되는 낙관론을 펼친 배경은 어떠한가? 동독 부채를 마치 기적과도  
같이 감소시킨 알렉산더 샬크와 재무 장관 헤르타 쾨닉이 보낸 두 봉의 편지가  
모드로우로 하여금 동독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도록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들은 각료회 의장에게 11월 14일 다음과 같은 긴급 전문을 발송하였다:

“부채가 126억 VM 가량 감소된 것으로 국가 기획 실장은 알고 있다”. 31)  
동독의 부채가 갑자기 줄어 들게 된 이유를 샬크와 쾨닉은 모드로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권터 밀탁의 지시에 의해, 80년 초 동독에 대한 신용 대부  
보증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Koko 수입에서 매년 최고 20 억 VM을  
공공 지불 예산에 “부입”하였다. 나머지 수입 총액 126 VM 중  
일부는 (89 억 VM) 독일 무역 은행에의 국내 자본 출처 형식으로 Koko 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예치금 형성 (41 억 VM)에 지출되었다. 따라서 1989년  
말 동독의 실제 부채는 380 억 VM “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 설명의 논지였다.  
샬크와 쾨닉은 내각 의장의 흥분을 가라 앉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첨언을  
물론 잊지 않았다: “부채 액수는 줄었지만, 실제 결제 작업에 있어서 변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41억 VM 상당의 예치금의 인출이 곧 불가피해질 것이며,  
일반 은행을 통한 80 ~ 100 억 VM 상당의 연간 신용 차입 시 동독 무역 은행에  
대한 85 억 VM 자본 출자가 이미 그 담보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이러한 샬크의 부분적인 진상 공개로 인해 막대한 부채 액수가 약간은 줄어

들었으나, 이는 물론 샬크가 제시한 Koko 자금과 예치금이 아무런 채무 조항을 달지 않은 순수 자본금이란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숫자 높음으로써, 전체 실상에 대해서는 샬크나 쾨닉은 모드로우에게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 33)

1989년 11월 17일 모드로우에게 전달된 “지불 결산 불입금 출처” 및 “서독과의 협약 및 협정에 의한 수입”에 관한 개관 보고서에 의하면 납입, 인출은 특별 비밀 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 34) 1989년 12월에 구성된 특별 조사 위원회 35)에 의해, Koko는 위법적인 국제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대해 시한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드로우가 Koko의 실제를 등한시한 까닭은, 샬크가 제공한 듯 밖의 수십억 VM 선물로 인한 지나친 흥분 때문에, 닥쳐 오는 위험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은 아닐까?

동독의 신용 대부과 경제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샬크와 쾨닉의 서신으로 인해 결코 줄어들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장벽 개방 이후 몇주만에 수만 명의 동독 이주민들이 서독으로 몰려 들었으며, 이로써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일어 났으며 여행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1990년 1월 18일 각 정당들은 정부에 대해 “실제 경제 상태를 솔직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정부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제 정당 대표들은 3주 후 100 ~ 150 억 DM 상당의 서독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언대 기부금”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모드로우 정부의 제안을 승인해 주었다 37).

모드로우 정부는 지불 결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수립이나 동독 경제의 실상 규명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위부의 예와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큰 분노를 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짐으로 해서 당시 대부분의 시민 단체와 SED 및 PDS

산하 경제 기구는 경제 정책의 수정을 통해 경제 개혁을 자력으로 이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동독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있던 정치국에서는 장벽 개방 3개월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SED 지도부는 11월 9일 밤 장벽이 개방됨으로 해서 서독으로부터의 신용 대부분을 위한 마지막 담보물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독일 국민과 서독 정부에게는 파산 경제라는 SED 유산을 이어 받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하였다. 고르바초프가 경고하던 본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11월 1일에 있었던 동독과 서독 간의 여행 교류 문제를 두고서 “적극적인 검토”를 권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일정한 의무 조항과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었다”. 38) 그러나 서독 측으로서는 이미 장벽이 개방된 마당에 SED 정권을 위해 계속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서방의 어느 나라도 동독의 부채를 탕감시켜줄 생각이 없었으며, 연대 의식을 부르짖던 동맹 국가들은 지원을 할려고 해도 그럴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동독의 경제적 · 정치적 종말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historische Ereignis)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며칠 간의 정치적 사건으로 말마암아, 제출된 경제 분석 보고서와 그 대책 사항들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루어진 장벽 개방으로 해서 동독 국가의 존립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았다” 라고 게어하르트 쉬어러는 결론지었다.

- 주 : 1) 이 글은 베를린 대학 사회 학과 중앙 연구소의 《regulative Funktionen intermediaerer Institutionen》 본과위의 연구 일환으로 작성됨.
- 주 : 2) 1989년 10월 24일자 SED 중앙위 정치국 회의 기록서 45번 참조.
- 주 : 3) Hans-Hermann Hertle: “동독 경제의 몰락 과정”, Deutschland Archiv, 1992/2. 참조.
- 주 : 4) Gerhard Schuerer, Gerhard Beil, Alexander Schalk, Herta Koenig, Werner Polze, 지휘부 비밀 사항 b 5 - 1111/89. 1989.9.28. 4 쪽.
- 주 : 5) Schalk 역시 심무단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조정실 “비공식” VM - 경제는 “국민 경제 실태 분석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음. 5절 참조.
- 주 : 6) 고르바초프의 비공식 언설 안에는 이 밖에도 SED 지도부에 대해 노선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일련의 귀절들이 포함되어 있음:  
 “사람은 멈춰서는 안 되며, 시대의 움직임에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 보다 가까워 질 것이다. (...) 우리 자신외에도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듯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 못하는 당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 우리의 길은 하나뿐이다: 굳건히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패배한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1989년 10월 7일 토요일 Berlin - Niederschoenhausen 에서의 SED 정치국 간부들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련 최고 위원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간의 대담 기록서 참조. Guenther Mittag: Um jeden Preis. Berlin/Weimar 1991. 359 쪽부터.

- 주 : 7) 정치국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샬크 동지가 운영하는 Koko는 SED 중앙위 서기장의 관할이다. 중앙위 서기장에 보고 되는 결정 사항은 동독 내각 위원회 의장에게도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1989년 10월 24일자 SED 중앙위 정치국 회의 기록서 45번 참조.
- 주 : 8) “반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베를린. 1989.10.23 (국가 보위부, ZAIG, Nr. 471/89), “Neues Forum 과 기타 운동 단체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문제점” Berlin. 1989.11.7 (국가 보위부, ZAIG, Nr. 496/89). 발행자: Armin Mitter/ Stefan Wolle. “나는 여러분들 모두를 아킵니다 ... ” 1989년 1월 에서 11월까지의 국가 보위부 지시 사항 및 실태. Berlin. 1990.
- 주 : 9) 크렌츠와 샤보브스키 스스로도 그들의 글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gon Krenz: 장벽이 무너지면; 1990. Wien. Guenther Schabowski: 파멸; 1991. Berlin.
- 주 : 10) “1989년 10월 18일 SED 중앙위 제 9차 총회에서 SED 중앙위 서기장에 곤 크렌츠 동지의 연설”에서 인용. In: 전환의 시작과 갱생. Berlin. 1989.
- 주 : 11) 주 10)과 동일함. 20쪽.
- 주 : 12) Gerhard Schuerer, Gerhard Beil, Alexander Schalk, Ernst Hoefner, Arno Donda, SED 중앙위 정치국 제출 보고서: 동독 경제 실태의 분석 및 그 대책, 1989.10월 27일. 이 보고서는 국가 기획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Gerhard Schuerer의 서명하에 정치국에 제출되었음. 정치국은 이 기초안을 수정없이 받아 들였음; 이 보고서는 1989년 10월 31일자 정치국 기록서 부록에 전문 기록되었음 (ZPA-SED J IV 2/2 2356).

- 주 : 13) 원래 견고한 받침대란 의미의 “Sockel”이란 개념이 정치국에서는 정반대로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주 : 14) 1991 ~ 1995년도 일괄 봉과비 수입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되기로 내정되어 있음.
- 주 : 15) 이러한 자극적인 반 서독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음에는, 게어하르트 쉬어러가 제시하는 이유 외에도, 친소 입장을 지지하며 대 서독 경제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일련의 정치 국원들의 동의가지도 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주 : 16) 1987년 6월 31일자 ‘Tagesspiegel’ 지의 Brandenburger Tor에서 행한 로날드 레이건의 연설 참조.
- 주 : 17) Gerhard Schuerer: “동독 경제 실태에 대한 분석 및 그 대책” 보고서에 대한 근거. Berlin. 1989.10.30.
- 주 : 18) “소련 및 기타 사회 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조건의 근본적 변화”는 “1989년 라이프찌히 가을 전시회 결과에 관한 결의’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이 보고는 1989년 9월 19일 정치국에 제출되었음. 1989년 9월 19일 SED 중앙위 정치국 회의 기록서 37번에 관한 부록 2 참조.
- 주 : 19) 결의 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음:
1. 동독 경제의 실태 분석에 대해 보고가 있었음.  
결론 사항은 기초 자료로 승인됨.
  2. 보고서 내용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제 10회 ZK 회의에서 있을 에곤 크렌츠 동지의 연설문에 포함시키기로 함.”

1989년 10월 31일자 SED 중앙위 정치국 회의 기록서

47번 참조.

- 주 : 20) 게어하르트 쉬어러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추가 자료 내용은 10월 31일 정치국에 보고되었다고 함. Gerhard Schuerer: “동독 경제 실태에 대한 분석 및 그 대책” 보고서에 대한 근거. Berlin. 1989.10.30. Berlin. (6)쪽 참조.
- 주 : 21) Gerhard Schuerer: 동독의 결제 능력 일람  
(“동독 경제의 분석 및 그 대책”에 대한 추가 사항).  
지휘부 비밀 사항 b 5 - 1156/89. 1989.10.27. Berlin.
- 주 : 22) 1989년 11월 1일에 있었던 동독 SED 중앙위 서기장이자 국가 이사회의장 예곤 크렌쯔와 소련 최고 위원장이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간의 대담 기록서. 1989.11.1. Moskau. Berlin.
- 주 : 23) “친애하는 쉬어러 동지! 헤어터 쿨닉 동지와 베어너 쾰제 동지가 작성한 제 10차 중앙위 총회 서기장 연설문을 동봉합니다(...)  
빛이라는 용어 대신 상환 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점에 특히 주의를 바랍니다. 외국에서는 본 연설문에 언급된 채무액 만큼의 예탁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는 실제 부채액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의 실제 빛은 외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우리의 결제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1989년 10월 30일자 게어하르트 쉬어러에 대한 살크의 편지 중에서).
- 주 : 24) 이 구절은 “신 독일”지와 중앙위 총회 기록서,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음.

- 주 : 25) 에어런쉬페어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 지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한 마디로 말해 우리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수천 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으며, 잘사는 양 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빛을 갠기 위해 빛을 냈으므로 해서, 빛도 늘고 이자도 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간 힘들게 일해야 하며,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야 한다” (Guenter Ehrensperger의 말로 1989년 8 ~ 10 일 간의 제 10차 중앙위 총회 기록서에서 인용. 발행자: 정치국 Berlin/Ost. 1989). 중앙위 총회에서 있는 Ehrensperger 의 보고는 집단 항의로 인해 중단되었음. 중앙국 임원들은 SED 중앙 국원 Guenter Mittag의 측근이자 계획 및 재정 국장인 Ehrensperger에게 동독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그의 언설을 선동 행위라고 몰아 부쳤다.
- 주 : 26) Egon Krenz: SED 제 10회 중앙위 총회 기록서 100 쪽.
- 주 : 27) 위와 동일함. 121 쪽.
- 주 : 28) 동독 인민 회의 제 9차 선거 기간, 11차 회의.  
1989.11월 13일 월요일. 234 쪽.
- 주 : 29) Gerhard Schuerer : 위와 같음. 260 쪽.  
1988년 1월 15일자 국가 비밀 보안 규정 - 국가 비밀 규정 (SGAO) 제 4조 (VVS B 430 - 1918/87)에 따르면 “국가 비밀의 공개는 금지되어 있다.”
- 주 : 30) 동독 인민 회의 제 9차 선거 기간, 12차 회의. 1989. 11월 17/18.
- 주 : 31) 내각 의장 Hans Modrow 에게 보내는 Alexander Schalk 및 Herta Koenig의 서신. Berlin. 1989. 11월 14일.

- 주 : 32) 위와 같음.
- 주 : 33) Koko 임시 기관장의 90년 3월 12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12월 31일자 구좌상으로는 예입금 83억 VM에 대해  
83억 VM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일부는 1996년까지  
상환되도록 되어 있었다 (Gerstenberger 교수: Koko 및  
관계 기업과 동독 국민 경제에 관하여. 1990. 3. 12일. Berlin.  
19 쪽). Koko 청산 계정은 아직 종결되고 있지 않음.
- 주 : 34) 내각 의장 Hans Modrow 에게 보내는 Alexander Schalk 및  
Herta Koenig 의 서신, Berlin. 1989. 11. 17.
- 주 : 35) Koko 활동 사항과 관련된 직권 남용 및 부정 행위  
특별 내각 조사 위원회 보고서 참조. Berlin. 1990.3.12.
- 주 : 36) 1990년 1월 18일 원탁 대담 결과 (12 쪽)
- 주 : 37) 1990년 2월 12일 제 12차 원탁 회의 결과.  
1990년 2월 13/14일 Bonn에서의 협상을 위한 원탁 회의 1차 입장.
- 주 : 38) 1989년 11월 1일에 있었던 동독 SED 중앙위 서기장이자 국가 이사회  
의장 에곤 크렌츠와 소련 최고 위원장이자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간의 대담 기록서. 1989. 11. 1일. Moskau. Berlin.

## 구동독 경제의 파국적 실태

\* 게어하르트 쉬어러와의 대담

저자 : Hans - Hermann Hertle, 베를린

헤어블레 : SED 주요 당직과 국가 원수직이 호네커로부터 에곤 크렌츠로 이양됨과 관련하여, 1989년 10월 24일 정치국은 국가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치국 후보 위원인 당신에게 두 가지 임무를 부과하였다.

첫째, “동독 국민 경제 실태 분석” 반을 조직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정치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과제와,

둘째는, 1989년 11월 8 ~ 10일에 걸쳐 제 10차 중앙 위원회에 거론될 “동독 경제 개혁안”의 기초 자료 작성 임무가 그것이다. 그러한 과제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쉬어러 : 10월 18일 에곤 크렌츠가 SED 서기장으로 부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동독의 경제 상태를 숨김없이 밝히는 일이었다. 종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보고는 미화되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경제 발전 상태만이 강조되었지, 동독이 산더미처럼 지고 있던 부채와 같은 부정적인 면은 “비밀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경제 실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알려준 바가 전혀 없었다.

제 10 차 중앙 위원회는 에곤 크렌츠가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그의 주관 하에 열린 첫 번째 중앙위 회의였는 바, 크렌츠는 과거의 비밀비재하였던 허위 경제 상황 보고를 이제는 솔직히

---

\* 구동독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털어 놓으려고 했으며, 또한, 이 동독의 경제 실태를 곧 있을 회담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도 알리고자 하였다. 요컨대 ‘실태 보고서’는 크렌츠의 모스크바 방문과 중앙 위원회 소집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 땅 (동독: 억주)에서의 사태 변화는 너무도 급격히 진전되었는가 하면, 전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겠다는 실천적 의지는 반면에 너무도 뒤 늦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 보고서 작성시 1988년 5월 호네커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많이 참고하였다. 이번 실태 보고서의 주요 경제 정책 및 경제 개혁 방안의 요체는 이미 그 “의견서”에서 소개된 내용으로서, 당시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를 지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자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개혁 방안을 실현시킬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는데, 하나 이제는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다!

헤어블레 : 바로 일주일 후인 10월 31일, 당신은 정치국에 충격적인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때 당신은 동독 현존 사회 주의의 대명사로 봉하는 ‘1971년 이래의 SED 사회 복지 정책’은 자력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본 주의 국가로부터 대부분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결제 불능 사태가 눈 앞에 닥쳐 와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당신이 크렌츠 앞으로 제출한 이 보고서의 “지도부에게만 열람이 허용된 비밀 사항”에는 외국 금융 기관 내 동독의 “에치금”이란 것도 ‘불확실’한 것으로 지칭되어 있다. 전환 당시인 1989년 10월의 실제 지불 결산 상황과 동독의 결제 능력은 어떠하였으며, 그 전에는 어떤 “수법”을 사용하여 이를 처리하였으며, 어떤 식으로 미화시켰는가?

쉬어러 : 경제관료인 우리들로서는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기본 사항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그렇게 칭찬해 마지 않던 첨단 전자 산업은 세계 시장 비용 평균 비용보다 몇배나 높은 재정 지원을 요한다는 사실, 수년 전부터 동독 내에서는 소비가 생산력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생산 자본 축적율이 1970년의 16.1 % 에서 1988년에는 9.9 % 감소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로써 우리는 의지하고 있던 나무 등치를 스스로 갹아 먹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일반 자본 축적률이 줄어 든다는 말은 산업 설비 투자 자원에서는, 특히, 첨단 기술 과학에 대한 투자의 부족을 의미하였으며, 둘째, 1970년에 20억 VM에 달했던 대외 부채는 1989년 들어 490억 VM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1970년에 120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던 국내 부채가 1988년에는 1천 2백 3십억 동독 마르크로 대폭 증가한 사실 등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전반적인 지불 결산 상태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전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국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당치 않다. 단 한 가지 과거 보고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 보고서는 결제 능력 상실로 인하여 야기될 국제 무역 거래상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지불 결산 시 문제가 될 "예치금"의 실제 성격을 분명히 밝힌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지불 이행 능력이 있는 국가와의 무역에 의한 수출 초과 예탁금은 실제로 인출 가능한 예치금인 반면, 지불 이행 능력이 없는

개발 도상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한 수출 초과 “예탁금”은 실제 인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탁금은 원칙대로 하자면, 지불 결산에서도 취급을 달리 했어야 마땅했다. 이밖에도 예탁금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은행과 기업 단체들이 동독에 단기성 정기 예금조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 역시 예탁금에 포함시켰었다. 물론 이는 차후에 다 되돌려 주어야 할 돈이었다. 또 다른 예로서, 무자용으로 차입한 대부금 중, 해당 사업에 즉시 투입되지 않은 금액은 이자 수익을 노려 투입 전까지 외국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 이 예치금 역시 빚으로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외국 은행은 이를 예탁금으로 간주하였다. 시민들의 VH 예치금 역시도 언젠가는 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될 예탁금이였다.

이러한 내막을 들추어 냄으로써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동독의 경제 실태란 다름 아닌 파국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엄청난 빚더미가 가장 심각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것이 동독의 지불 능력 상실로 직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불 능력 상실이란 말은 빚을 제 때에 갚지 못함을 의미한다면, 동독은 결코 이러한 상태에 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부채 상환율이 25 % 정도만 되었더라도, 이는 동독과 같은 산업 국가의 형편에 비추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참고로, 부채 상환율은 연간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수출 액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실제 동독이 안고 있던 부채 상환율 수치를 살펴 보면, 이는 무려 150 %에나 달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일년 전체의 수출액을 갖고서도, 동년 상환 의무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지불 능력은 단지 ‘불안정한’ 것으로만 정의되었지, 완전 상실의 상태로까지는 평가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사항은, 기존 경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고, 부채를 제 기간 내에 갚기 위해서는 매년 80 억에서 100억 DM 상당의 신용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동독은 400 여개 이상의 은행과 거래를 맺었어야 했다.

헤어블레 : 당신은 전 영역에 걸친 일반 경제 정책의 개혁과 더불어 동구권과의 무역 거래 개선을 비롯한 개별 경제 정책의 대 수정까지도 도한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다시 말해 생활 수준의 하락을 통해 자본축적을 - 특히 생산 부분에서의 부자 - 의 증대가 실제 가능했었겠는지의 여부는 일단 차치하자면, 당신이 구상한 개혁 방안이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 주기 바란다.

쉬어러 : 물론 많은 경제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착상과 의견이 대두되었지만, 경제 개혁을 위한 종합적 대처 방안 따위는 마련된 것이 없었다. “서랍 보관용 자료”(Tischkastenmaterial), 즉 금기 사항으로 묶여 있던 자료를 차후 활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 뿐으로써, 가격 개혁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은 원대하기는 하였으나, 돌이켜 보건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으며, 도 부분적으로는 이상적이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

10월 27일자 정치국 보고서의 기본 입장은, “민주 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최상의 조건 하에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회 주의 계획 경제를 제 시장 조건에 부합시켜 나가는 것"이었는데, 본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기본 사회 정책과 무관한 대규모 사회 사업은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불과 소비 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동력과 자원을 이러한 불균형의 제거 작업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수출 유망 업종은 계속 육성시켜 나가는, 특히 서방과의 대외 무역에서 수익성이 높은 제조 기계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었다. 또한 사회 상층 구조 전반에 대한 지출 내력을 축소 · 조정하고, 사회 조직 기구에 대한 자원도 삭감할 예정이었다. 물론 당 조직 기구도 이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 신축 및 신설에 대한 부자는 기존 시설의 효율화를 통해 대치시키도록 하였다. 기획 기구와 관련, 대형화된 행정 기구와 중앙 집권제는 개편하고, Kombinate 와 업체의 권리는 확대시키며, Kombinate 로부터 중소 기업을 분리시켜 총 경제 구조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들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업무 능력에 따른 현금 보상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정부의 보조금은 사회 복지 사업 분야에 제한하여 계속 지불하도록 하며, 기타 보조금의 지원은 전면 폐지시킨다는 방안도 있었다. 구매력에 따라 가격 조정을 실시하여, 과다 유통 통화 물량의 가치 하락을 막아 보자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우리는 서독 및 기타 서방 산업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금기 사항으로 봉해 오던 합작 기업 설립 등의 입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헤어블레 : 학술 기관이나 대학으로부터의 제시된 방안은 얼마나  
참작되었는가?

쉬어러 : 그쪽으로부터는 구체적 방안이나, 경제 모델 따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야당측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나는  
“구동독 대변혁 당시” 제반 정책 상의 차원에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들로부터 아무런 개혁  
입안을 받아 보지 못하였다.

헤어블레 : 당신은 사회 상층부 내에서의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행정 기구에 대한 국민 경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불 알고  
있었는가?

쉬어러 : 우리 실무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재무 장관 Ernst Hoefner 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이는 그 당시 비밀 사항에  
속하였었다. 총 인구 1천 7백 만에 비하면 행정 인력이  
과다했음은 불림없었다.

헤어블레 : 분석 보고서는 동구권과의 무역에서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COMECON 국가들은 자체 내 경제 위기로 인해  
물품 반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동독 경제의  
붕괴 이후 대 동구권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

쉬어러 : 대 동구권 무역은 동독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다. 국제 경제 관계에서의 고립으로 인해 동독은 총국민  
소득의 50 %를 - 그 사용 효용도를 십분 감안하여 - 수출과 수입  
사업에 분배 · 재 지출하여야만 했다. 대외 무역의 70 % 가

사회 주의 국가와, 나머지 30 % 는 자본 주의 및 개발 도상  
 국가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구권 무역은 동독의 경제 생활  
 문제와 관련, 보조 역할 이상의 노릇을 다 하였다. 소련과의  
 무역은 사회 주의 국가와의 무역 중 그 절반을 차지하였다.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없이는 동독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었다. 총 무역 거래의 30 % 를 차지하는 서방국  
 들과의 무역 또한 과소 평가할 수 만은 없다. 그 중 절반 가량이  
 서독과의 교역이었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유지되어 왔다. 1989년 5월 자료에서 나는 원자재,  
 특히 석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동구권과의 무역 장애를 지적한  
 바 있다: “1971/72년부터 원자재, 특히 석유값의 폭등이  
 있었다. 소련의 석유 가격은, 1979년 일본 당 13.28 루블이었던  
 것이 1985년에는 168.18 루블, 이어 1989년에는 112.34 루블에  
 달하였다. 이러한 가격 인상의 추이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1989년까지 245 % 정도가 상승한 반면, 자재 생산 가격은  
 107 %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이는 대 소련 수출 계획량의  
 상승 조정을 초래하였는데, 이로 인해 비로소 소련과의  
 지불결산상의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동시에 1986 ~  
 1990 년 간 장기 무역 협정에 따라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 합의를 볼 수 없었는데, 5 개년 (1986 ~ 1990년) 계획  
 기간 동안 그 총액이 10억 VM 에 달하는 납, 아연, 인화석  
 용액, Ammoniumphosphat, 황인산염, 페놀, 카본-블랙, 장작,  
 섬유질 목재, 베니어 판 및 펄프가 그것이다. 동시에 소련은  
 매년 약 50 억 루블 어치 (240 억 동독 마르크 VGW)의 원자재를  
 동독에 제공키로 하였던 바, 이는 동독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다.”4)

1981년에 발생하였던 폴랜드의 결제능력 상실 문제는 국제 자본 시장에 커다란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80년대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야기시킨 주 원인이었는데, 동독에까지도 큰 타격을 미쳤다. 그러나 동구권과의 무역은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단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물론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였고, 폴랜드는 황산 및 석탄 납품을, 헝가리는 특정 식품 수출을 제한하였다. 반대로 이들 국가들 역시 동독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물품들이 있었는데, 이들 물품은 Valuta 마르크로 서방 측에 수출되었다. 불확실한 가격 구조로 인해 전문화와 쌍무 협력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과의 무역 거래는 전환 전까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헤어블레 : 경제 실태 분석 보고서가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원래 연간 신용 차입금 80 ~ 100 억 DM 외에도 최소 20 ~ 30억 DM 를 추가로 신용 대부분 받아야만 일단 경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더 이상 신용 대부분 받지 못할 경우, 1990년도의 생활 수준은 25 ~ 30 % 정도가 하락될 것이며, 이로써 동독은 더 이상 봉지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당국은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는 바, 이 말은 SED 권력의 종말을 경고하는 진단으로 해석되고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 보고서는, 동독을 서독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간주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을 신용 대부 제공자로서 업무에 두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서독도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그

관계가 어떠했었는가? 동독에 대한 신용 대부분 제공자로서의 이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나?

쉬어러 : 당시 중요하던 국제 정세는 동독에 그 진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그 기점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관계로, 우리는 그 당시 건설하고 믿을만한 고객으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구체적 실례로 동독은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대 사업을 벌였다. 오스트리아에게는 동부 연합 제철 확장 사업을 맡겼고, 일본은 동독 내 전체 석유 가공 산업 현대화 작업을 청탁받았다. 철강 부문 및 화학 비료 산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주요 경제 상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나라들의 동구 시장 진출 계획과 관련하여 동독은 그들이 불색하던 적격 대상으로 지목을 받았다.

헤어블레 : 이 사업 관계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동독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었는가?

쉬어러 : 이들 각 나라들은 물론 동독이 주권 국가로 남아 있는데 대해 각기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치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독일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다행하게도 그런 선망의 대상이 둘 씩이나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세계는 오랫동안 양 독일 국가가 결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일단은, 경쟁자가 강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으며, 약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독일 제국의 재출현이란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변혁이 진행되던 중에도 세계가 독일의 통일을 꼭 원했던 것은 아니다.

헤어블레 : 서독이 동독에 새로운 신용 대부을 제공하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당신의 과거 언급 사항과는 달리, 보고서는 서독과의 통일이나 국가연합 구성 등의 제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쉬어러 : 나는 결코 통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89년 서독과의 국가연합 구성 필요성에 대해 샬크와 의견을 나눌 적에도 통일에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블테만 국경 개방 조치는 사전 허가 조치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그 당시 샬크는 쇼이블레 (Schaeble)와 자이터스 (Seiters)와의 협상에서 서독측의 반응을 살피려고만 하였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1989년 대변혁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우리는 국가연합의 구성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확신도 갖지 않았었다. 국가연합 구성만이 서독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 낼 수 없었음을 그 당시 이미 알았으며, 또한 서독은 공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와 자리블 같이 하기 전에 동독 내부에서의 변화를 요구해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과감한 제안을 하였다: “현 상태의 국경을 올 세기 말까지 철폐시킬 여건을 사전 조성토록 한다”. 이는 장벽을 없앨 생각을 우리가 실제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동독이 장벽의 존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장벽은 일 백년을 더 존재할 것이다”라는 호네커의 말이 일상 격언처럼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 상대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가 불가피 함을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에곤 크렌츠가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처음 있었던 1989년 11월 7일 정치국 회의에서, “신” 정치국 - 호네커와 밀탁, 그리고 헤르만이 빠지고, 에곤 크렌츠가 서기장 직무를 맡았다는 점을 굳이 “새롭다”로 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 정치국의 본체는 여전히 변한 바가 전혀 없었다 - 에 동독 임시 정부 구성안을 인민 회의에 제출할 것을 구두로 제안하였는 바, 이 임시 내각으로 하여금 정부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자유, 비밀, 민주 선거에 의한 모든 정당과 그 당시 시민권 운동 단체까지를 포함하는 과도정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미 그 당시 나는 더 이상 국가연합의 구성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으며, 반면 내부 변화의 필수성 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척시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만은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었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장벽을 - 물론 일정 기한 동안 - 임시 개방한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었다.

헤어블레 : 이러한 당신의 제안은 정치국 의사 일정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물어 보는데, 이에 대한 참석 정치 국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쉬어러 : 정치 국원들은 아예 이 제안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찬성 지지도 없었으며, 거부 반응도 없었다. 의사 결의 과정에서 더 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국 회의록에는 결의된 사항만을 기입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제안은 결의전에 이미 무효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헤어블레 : 국경을 자츨 개방할 경우, 동독의 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는가?

쉬어러 : 동독의 주권이 완전 보장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독 측이 아무런 정치적 대가없이 우리에게 80 ~ 100 억 DM 상당의 지원을 해 줄 리는 만무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서독 측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수지스러운 사실였지만,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자본을 마련하는, 요컨대 동독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이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란 없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유일한 해결 방안이란 서독으로 합병해 들어 가는 길이 고작이었다.

헤어블레 : 1989년 10월 31일 정치국 회의 내용을 기억하나?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는 어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치국 위원들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였는가?

쉬어러 :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보고서는 제출된 그대로 받아들여 졌으며, 또한 수정없이 그대로 결의되었다.

헤어블레 : 그 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 10 차 중앙위 회의에서 있을 예곤 크렌쯔의 연설문에도 포함시키기로 하되, 그 단서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치국 위원들이 당신이 제시한 엄청난 사실에 너무 놀라 드러나 사실을 다시 위장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은 아닌지?

쉬어러 : 예곤 크렌쯔가 이끄는 지도부는, 동독의 실상이 완전히 드러날 경우, 이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켜 과도 정부

업무 조차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그 후 크렌츠는 11월 1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동독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11월 7일 크렌츠가 정치국에 제출한 고르바초프와의 회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미 많은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채가 2백 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은 소련도 몰랐었다고 한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소련 측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 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는 충고를 하였다. 아마도 이 때문에 정치국에서 “절제”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다.

헤어블레 : “쇄신”을 표방한 정치국은 중앙위 회의를 통해 동독의 실상을 밝히고, 장벽의 점진적 철폐를 대가로 한 서독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 마련의 장이 될 수는 없었던가?

쉬어러 : 나도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또한 분명히 알고 있다. 어쨌건, 우리는 그 당시 모두 대범하지 못하였으며, 신속히 대응하지도 못하였다. 이 밖에도 때는 이미 지나가고 말아 버렸다. 관계관으로서 그 당시의 일을 직접 겪어 본 사람이라면, 중앙 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과거의 구태 의연한 중앙위 그대로였다. 젊은이들이 차고 올라 왔으며 구 세력에 대해 반항도 있었지만 구 세력을 지지하는 입김도 만만치 않았다.

헤어블레 :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제 개혁 기초 작업안을 중앙위에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쉬어러 : 경제 개혁 기초 작업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 안에 이미 그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예로써, “경제 개혁 실행을 위한 장기 대책”을 제안하였다. 정치국은 그 대책 내용을 기초 작업 자료로 승인하였으며, 그 근본 취지는 제 10차 중앙 위원회 서기장 연설문 내용에도 수록되었다. 이로써 경제 개혁 방안은 이미 중앙위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헤어블레 : 정치국은 10월 31일 당신이 주관하는 실무 조사단의 동독 경제 실태 분석과 그 대책을 “기초 작업 자료”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국경의 점진적 개방을 조건으로 서독으로부터 새로운 신용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당신의 계산은 1989년 11월 9/10일에 있었던 장벽 개방에 의해 무산되었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장벽을 개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동독의 부채 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정치국이, 당신이 제시한 보고서의 기본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아닌지?

쉬어러 : 며칠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사태는 경제 실태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장벽 개방으로 인해 동독은 주권 국가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과도기 경제 기구의 형성이나 양 국가의 점진적 통합을 통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더 이상 모색할 수 없었다. 나의 개인적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는 한 역사적 사건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정치국에서 결정하여 에곤 크렌츠가 중앙 위원회에 제시, 이를 권터 샤보브스키가 발표한 여행 규정은 물론 이런 식의 국경 개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규정의 원래 취지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서독 대사관을 통해 서방으로 탈주하려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으며, 그 대책으로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단체 이주를 가능케 하려는 입안을 강구하였다. 둘째는, 관계 여행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여행 자유화를 완화하자는 안을 들 수 있다. 당연히, 이주와 여행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샤보브스키의 발표를 전해 듣고서 곧장 국경으로 몰려 들어, 결국 이들의 압력이 국경 개방의 결정적 동인이 되었으며, 이로써 하룻 밤 사이에 국경이 아무런 대가없이 철폐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일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흐름에 뒤처지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Wer zu spae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라는 말은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장벽 문제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 자연히 정리되고 말아 버렸다.

헤어블레 : 국경 개방이 정치국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역사적 실수”를 마치 개인의 업적인 양 선전한다는 항간의 비난에 대해 그 당사자인 에곤 크렌츠는 이 주장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는데 ...

쉬어러 : 그것은 크렌츠가 잘한 처사이다. 11월 9일 밤 주민들이 대거 국경 초소, 특히 베를린 국경 초소에 군집하여, 자유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에곤 크렌츠는 본인에게도 알려 주었다. 주민들은, 중앙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히는

기자 회견에서 '새 여행 규정이 즉시 적용'된다는 권터 샬보브스키의 발언을 근거로 국경 통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결국 에곤 크렌츠와 군부는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 권력을 쥐었던 자들이 이성과 책임감을 상실하였던 들, 상황은 완전히 뒤 바뀌어 졌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 -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고 부채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 서독으로부터 80 ~ 100 억 DM 상당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임을 깨우쳐야만 했다.

헤어블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 개방 이후 샬크로 하여금 서독 정부와 협상을 벌여 '건설 수 있는 것은 건지라'는 임부가 부과되었지 않는가?

쉬어러 : 그건 사실이다. 샬크는 처음에는 서베블린으로 후에는 서독으로 -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 이주하기 바로 직전까지 서독 정부 측의 쇼이블레와 자이터스와 교섭을 벌였었다. 그리고 교섭의 결과도 정치국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서독측으로서는 이러한 교섭 시도에 대해 별다른 대응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혀 가고 있었다. 제 10차 중앙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볼프강 헤어거 - 그는 사려깊고 선견지명 있는 사상가이다 - 는 우리가 지금 서독 측에 국가연합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할 경우, 서독 측이 이에 어떻게 응해올 지에 대해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서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 때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서독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일이

자동적으로 그쪽 편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사태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한스 모드로우에게 150 억 DM를 맡겨 동독에서 그의 권력이 확보되는 것을 서독 측이 바란 적은 결코 없다.

헤어블레 :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정치국이나 중앙 위원회에서도 그들이 체결한 개인 여행 규정이나 이주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장벽 개방은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는 말인가?

쉬어러 : 정치국에서는 앞으로 서독으로의 대거 여행 움직임이 급격히 활발해 질 것이며, 여행 규정이 조정되는 대로 이주 신청 또한 쇄도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 위원회에 이 새 규정이 보고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바로 그 다음 날 장벽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이들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그들이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 규정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이주를 원하는 자는 이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하려는 자는 -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 신분 증명서에 여행 허가서를 첨부토록 하였는 바, 이는 국경 초소에서 직접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 경찰 산하 여행 신고처에서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에 의해 왜곡되고 말아 버렸다.

헤어블레 : 저당물인 "장벽"이 없어짐으로써 당신이 1990년 1월 까지 속해 있던 모드로우 정부는 어떤 타격을 입었으며, 서독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 그리고 모드로우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정치 행동 반경은 어느 정도나 되었나?

쉬어러 : 한스 모드로우도 사태가 그런 식으로 변해 가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가와 하지는 않았다. 그가 11월 13일 정권을 넘겨 받았을 때는 이미 저당물은 없어져 버린 후였다. 그건 그렇고 장벽을 “저당물”로 표현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선 망서여질 뿐 아니라, 유쾌하게 느껴지지도 않음을 분명히 말해 두고 싶다. 어쨌건 국경 검문 초소가 있다는 것과 국경이 아예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40년간 두 국가를 가르고 있던 국경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동 · 서독 간에 아무도 주체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 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드로우가 취할 수 있었던 정치적 행동 반경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서독으로부터 수백 억 상당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헤어블러 : 그러나 모드로우 정부는 초기까지만 해도 주권 국가로서의 동독 존립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 측의 지지를 계속 받지 않았었는가?

쉬어러 : 사실 소련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동독에 대해 Valuta 상의 재정적 지원은 결코 해줄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그들 자체 내의 상태가 너무나도 지리멸렬하였다.

헤어블러 : 대답에 응해 주어서 감사드린다.

# 통독직전 구동독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보고서

관련사항 : 동독 경제 상황의 분석과 그 대책

- 결의안: 1. 동독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대책은 승인되었음.
2. 분석 내용과 대책 방안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서기장  
에곤 크렌츠의 제 10차 중앙위 회의 연설문의 기초자료로  
사용함.

(서명)

게어하르트 쉬어러 (Gerhard Schuerer)

보고서 토의 초청인 : 게어하르트 쉬어러 (Gerhard Schuerer)

게어하르트 바일 (Gerhard Beil)

알렉산더 샬크 (Alexander Schalk)

에른스트 뢰프너 (Ernst Hoefner)

아르노 돈다 (Arno Donda)

보고서 작성에 따른

근거: 1989년 10월 24일자 정치국 결의안 1번

배포: 1 ~ 30부 SED 중앙위 정치국

31.부 쉬어러 동지

32.부 에어런 쉬페어거 동지

33.부 바일 동지

34.부 샬크 동지

35.부 뢰프너 동지

36.부 돈다 동지

비밀사항 b5 / 158 / 89

\* 1989년 10월 호네커 실각후 SED 중앙위 정치국에 제출한 보고서임.

동독 경제의 실태를 가식없이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SED 중앙위 서기장 에곤 크렌쯔 동지의 지시에 입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함.

## I.

동독은 진보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지대한 성과를 과시하였다.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동독의 경제발전에서 이룩된 주요 성과는 제 12차 당 대회를 위해 준비한 분석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기에, 이하에서는 그 요체만을 간략히 재론토록 하겠다.

지난 17년간 연평균 4% 씩 역동적으로 총국민소득이 상승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의 성장 속도는 생산용 자본 축적량의 감퇴와 더불어 둔화되고 있다.

원자재와 생산자재 부문에서의 특별 소비는 1980년 대비 74% 수준에 달하여 1986 ~ 1990년 5개년 계획에서 목표하였던 특수자재 소비감소량에 못 미치고 있다.

기간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은 팔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우리는 최첨단 전자산업분야에서 마이크로 전자부품과 이와 관련된 특수 생산장비를 자체 개발한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분업화 미비로 인해 다종의 마이크로 전자제품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개발·생산되었다. 이들 제품의 비용은 현재 국제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자산업에의 투자와 그 대외 수출은 연간 30억 동독 마르크의 특별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특히, 소련과의 협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농업 분야에서의 곡류 및 육류 생산력 증대로 점점 늘어나는 국민들의 식량 소비가 충당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과 89년 연이어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는 흉작으로 말미암아 비사회주의 국가 (NSW)로부터의 곡물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통부문에서는 도로 운송보다 철도 운송에 역점을 둔 결과로 기차의 전동화율이 20%에서 40%로 확충되었다. 반면 전반적인 축적량 감소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특히 도로부문이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망의 파손도가 매우 심하다.

1980년에서 1988년 간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 다른 국가들에서의 취약한 근로자 생활수준과는 달리 - 연 평균 4.4%씩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총국민소득의 4.2% 성장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1970년 이래로 약 3백만 채 이상의 주택 및 아파트들이 신축되거나 개수되었는 바, 이로써 900만명의 주민들, 즉 동독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질적으로 향상된 주거환경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금을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관계로, 동 기간동안 시급한 보수작업이 다 실시될 수는 없었다. 이로써 라이프찌히와 괴어릿쯔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수천여 주택들이 폐가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계획제도를 기반으로 일련의 주요 개혁안을 입안·추진할 수 있었는데, 특히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그 실례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계획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대규모의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기획 및 행정력의 과대 소모현상이 야기되었고, 콤비나트와 단위 업체 및 지역산업체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간의 불균형과 하청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간의 물품생산 속도차이는 해소할 수 없었다.

콤비나트의 건립과 이의 확충사업은 경제기획과 운영상의 차원에 있어서 현명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콤비나트에 전권이 주어짐으로 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경제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파생되었다.

이는 현재, 생산 비용의 상승을 야기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만든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의 기획 운영제도는 “갖가지 일용품”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운영 및 기획 그리고 지역간 조달경제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앙 본부와 지역기구로부터의 지대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와 가격구조가 뒷 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사정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금자족 경제원칙의 제공과 개발 또한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조건으로 실행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경제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독에는 과소비로 인해 물자 및 재정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경제의 상태를 숨김없이 밝히기 위해선 긍정적인 발전상 뿐만 아니라, 축적량 확보, 균형, 성장속도 및 능력제 실시에 따른 문제들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현재 서독에 비해 40% 정도 뒤쳐져 있다. 사회적으로 분배되는 노동재산과 사용가능한 자본의 투입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상층구조와 생산기층간에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부채는 제8차 당 대회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동독의 결제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독의 경제 상태는 다음 사실들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1. 1970년만 해도 29%에 달하던 축적률이 1989년에는 21%로 줄어 들었다.

그 피해는 생산업종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금까지의 예측과는 달리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생산투자부문에서의 축적률은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떨어졌으며,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 생산분야 축적량 비율은 70년대 이래 9%에 머물고 있다. 생산투자분야에서의 축적률은 1970 ~ 1988년간 120%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는 200%를 넘어서고 있다.

이때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자본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 의료보건분야는 등한시되었다.

선별업종에 대한 투자집중은 다른 산업분야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 예로서 납품산업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투자산업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산업분야에 고도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최신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첨단 전자산업, 공구 및 가공 기계건설, 일부 경공업부문, 가구업, 유리 및 도자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전반적인 시설 마모율은 1975년 47.1% 였던 것이 1988년에는 53%로 상승하였으며, 건축업에서는 49%에서 67%로, 교통업에서는 48.4%에서 52.1%로, 농·임·식품업에서는 50.2%에서 61.3%로 각각 상승하였다. 몇몇 특정 경제분야에서의 시설물 마모율은 매우 심각해 보수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체에서의 수공업종사자 비율이 1980년 이후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40%로 유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련의 학술 연구 성과들이 실제 생산에 적용될 수 없었다. 1981 ~ 1985년도에는 난방유 수입중단을 통해 30 ~ 35%의 소비감축을 달성하였는데, 1985년 이후로는 이러한 생산용 소비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증가율은 예상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생산용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8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생산성 및 국민소득 성장속도 둔화의 주 원인은 생산용 자본 축적을 감퇴에 주어져 있다.

약 3.6%에 그친 1986 ~ 1990년도 총국민소득 성장률은 계속 줄어들 추세인 바, 이는 1985년도에 이룩한 성장률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민소득 성장률 저하로 인한 고질적인 생산용 자본축적을 감퇴현상은 1990년 이후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8차 당 대회 이후로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생산보다 소비가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액은 비사회주의 경제권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채에 의해 충당되어 왔다. 1970년만 해도 20억 VM(Valuta-Mark)이었던 부채가 1989년에는 490억 VM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제8차 당 대회 이후 실시된 사회복지정책이 자체 생산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비사회주의 경제권으로부터의 부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뜻한다.

또한 국민의 현금 수입 (Geldeinnahme)이 생활필수품 공급을 위한 물품기금 (Warenfonds)보다 더 높아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생필품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까닭으로 제품부족과 구매력 초과현상이 발생하였다.

1986 ~ 1989년을 향후 5년간 경제 향방의 척도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 1986 ~ 1989년도 연 평균 생산과 소비 추세:

|                 |      |
|-----------------|------|
| 총국민소득 성장률       | 3.6% |
| 생필품 공급을 위한 물품기금 | 4.0% |
| 실제적인 현금수입       | 4.3% |
| 일인당 실질국민소득      | 4.5% |

성장 부문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반면, 소비부문, 주택건설 및 사회복지 정책 부문은 목표를 초과하였다.

1986 ~ 1990년도 5개년 계획에서는 연 평균 국민소득 성장률 목표를 4.8%로 책정했으나, 현재 예상 성장률은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로써, 원래 계획목표와는 달리 1986 ~ 1990년도 완제품 생산에서는 360억 동독 마르크, 산업제품 생산에서는 880억 동독 마르크 가량의 결손이 발생되었다.

산출부문에서의 목표미달과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과다지출은 자본축적량 감퇴, 국내 외 부채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구매력과 물품기금간의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실제 현금 수입은 연 평균 4.3%로써, 이는 4%의 성장을 보인 물품기금보다 높은 수치이다. 1980 ~ 1989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 현금 수입은 138.9%, 물품기금은 131.4%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초과 구매력은 점점 더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 노동생산성은 감퇴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7년에는 여러 불리한 여건들 (이상 한파, 저조한 작황)까지 겹쳐 급기야는 노동생산성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86~1989년도 연 평균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균 임금에 대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계획목표            1    :    1,54

달성                1    :    1,20

개인의 소비와 사회 전체의 소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당의 기본 방침은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한 소비구조의 발전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86 ~ 1989년도 국민의 현금 수입증가율은 연 평균 4.3%인 반면, 소위 제2의 월급봉투로 불리워지는 사회기금으로부터의 간접 수입은 연 평균 4.9%에 달하였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보조금과 주거, 물가안정, 임금, 교육, 보건, 문화, 체육 및 휴가 지원비는 1986 ~ 1989년 연 평균 7%에 달하였다.

실제 현금 수입이 물품기금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국내시장에서의 초과구매력은 약 60억 동독마르크에 달하였다. 이는 1년간 국민 실제 현금 수입 증가액에 상응하는 것이다.

보험 불입금을 포함한 저축예금은 1989년 136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9년 말 1750억 동독 마르크 (연 평균 6.5%)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이자지불은 1989년 약 5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9년도 연간 물품기금 증가액에 상응하는 액수이다. 저축예금의 증가는, 한편으론, 사회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표시인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인 재산을 마련코자 하는 소망의 표시이다. 다른 한편으론, 승용차, 하이-파이 전축과 같은 고가 소비물품의 구매가 어려웠다는 사실에서도 그 원인이 발견되고 있다.

-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부채는 1970년 120억 동독 마르크였던 것이, 1980년에는 430억 동독마르크, 1988년에는 1,230억 동독 마르크로 상승하였다.

1989년과 90년도 과다지출에 대한 비용은 200억 동독 마르크 상당의 부채를 추가로 제공받아 충당할 수 있었다. 이로써 1990년도 총 부채는 1,440억 동독 마르크로 늘어났다. 대부분이 국민들의 저축예금으로 형성된 국가 운용 현금 통화 및 부채 도입은 국민 경제 생산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재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미비, 생산업체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 이에 따른 국가의 부채 증가는 동독 마르크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3.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1986 ~ 1989년도 제5개년 수출목표량은 계획 목표에 훨씬 미달하였다. 1971 ~ 1980년도 무역수지적자는 210억 VM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신용 차입 및 이자 지불과 더불어 동독의 경제가 산더미같은 부채를 짊어지게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81년부터는 지불결산상의 부담을 수입제한을 통해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1981 ~ 1985년에는 난방유를 갈탄 및 천연가스로 대체시키고, 석유제품을 수출하여, 수출초과를 이룩하였다.

이와같은 수출초과를 통해 1980 ~ 1986년도 “수출지원기금”(“Sockel”)을 예년 수준인 280억 VM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석유 제품 가격인하로 수출초과량이 감소하여, 1986 ~ 1989년도 수출초과액은

약 10억 VM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신용차입에 따른 소요 경비와 이자상환에만 130억 VM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동독 경제상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6 ~ 1990년도 5개년 계획에서의 수출목표량은 생산능력 미비와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예상 목표액보다 140억 VM이나 낮은 실적을 보인 반면, 수입은 약 150억 VM의 초과상승을 기록하였다. 이 초과 액수 안에는 금속 가공업과 첨단전자산업 분야에서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기계 및 시설비용 69억 VM 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231억 VM의) 1986 ~ 1990년도 수출초과목표액은 달성될 수 없었고 대신 60억 VM 상당의 수입초과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수입이 초과한 이유중의 하나는 1989년 말 수출지원기금이 490억 VM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8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89년 말 수출지원기금의 증가율은 190%에 달한다. 이같이 급증한 “수출지원기금” 액수는 89년도 수출고의 4배에 상응한다.

1985년도 Valuta 수입만으로는 부채 상환, 이자 지불 및 수입품 결제에 필요한 총 Valuta 지출액의 35% 밖에 충당할 수 없었다. 나머지 65%는 은행융자와 기타 지급 출처를 통해 결제되었다. 이는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을 위해 추가로 빚을 내야 했음을 뜻한다. 이자지불에만 국가예산 상응액의 절반이 투입되었다.

한 국가의 부채 상환능력 측정 기준으로 간주되는 부채상환률 - 즉 연간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한 수출액의 관계 - 은 25%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설정 한계치는 수출고의 75%를 수입품 결제 및 기타 경비에 지출해야 함을 뜻한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1989년도 동독의 부채상환율은 이 국제 통용 한계치를 훨씬 초과한 150%선에 달하고 있다. 90년도에 들어서면 지불결산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초과량이 3~5억 VM에 그칠 경우

1990년말 수출지원기금은 약 570억 VM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이자는 총 80억 VM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지원기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1990년도 국내총생산액 중 약 300억 동독 마르크 - 이는 향후 3년간의 국민총소득 증가액에 상응함 - 를 소요 경비로 지출해야 하며, 동시에 25~30%의 소비절약이 뒤 따라야 한다.

결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초과량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한다:

|                           | 1990 | 91  | 92  | 93  | 94   | 95   |
|---------------------------|------|-----|-----|-----|------|------|
| 수출초과액<br>(단위 :<br>10억 VM) | 2.0  | 4.6 | 6.7 | 9.2 | 10.2 | 11.3 |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수출지원기금” 증가액:

|                            | 1990 | 91   | 92   | 93   | 94   | 95   |
|----------------------------|------|------|------|------|------|------|
| 수출지원기금<br>(단위 :<br>10억 VM) | 55.5 | 62.0 | 63.0 | 62.0 | 60.0 | 57.0 |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출초과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결제능력의 상실은 곧 지불유예란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동독이 머지않아 세계통화기금의 봉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한다. 지불유예 국가는 비용 및 통화 안정 등과 관련하여 세계 통화 기금의 조사를 받게 되는 바, 이는 경제 정책 추진시, 기업 사유화, 가격 지원제, 수입 등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자체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사전 방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II.

이러한 경제난경에 대한 타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앞으로의 사회복지 정책 목표는 당면 경제 상황과 경제적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설정토록 한다.

동독 경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된다.

새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국내 소비 및 투자용 자본축적에 사용되는 수출초과량 필수공제액을 제한 나머지만 소비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 국민 소득 중 국내소비는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지불결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국민소득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새 경제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주력해야 한다:

- 동독의 기존 생산력을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 생산력 축적을 철저히 강화하여,
  -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목표량을 달성하고,
  - 이를 통해 결제력을 확보토록 하는데,
  - 비생산분야에 대한 불가피한 투자감축은 90년을 기점으로 추진토록 한다.
- 기존의 인력과 자원은
  - 생산성과 노동창출력 증대의 기본조건인 납품문제 해결 및 국민경제 제 분야간의 밀접한 상호 연계성 확보,
  -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 강화,
  - 비 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 증대 및
  - 일반 주민들에 대한 생필품 공급의 원활화 등에 집중시킨다.

- 전체 경제와 사회 상층부에 내재하는 생산인력과 비생산인력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재 노동력의 재편성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행정 및 일반 사무직 인력과 기타 사회정책 담당인원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 사회주의적 능력제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수입증대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목표 미달, 개인의 불찰에 의한 피해,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는 임금과 봉급에서 소정액을 공제토록 한다.
- 보전, 현대화 및 합리화 사업에 투자를 집중시켜,
  - 비생산적 직장은 폐쇄하며,
  - 노동력의 과잉상태를 조정하고,
  - 노동인력을 유망업종에 투입시키도록 한다.
- 내수 시장을 안정시키고, 비사회주의 통화권 수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가격지원 및 재정보조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
 

능력제에 위배되거나 소비 및 투기를 유발하는 국가의 보조 및 가격지원 정책요인은 제거토록 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조금 지불 중지에도 따른 완전 보상은 불가능하다. 능력제를 확립하고 구매력을 억제하는 기타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구매력의 억제를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소비품의 생산 증대와 우유, 육류 등 농산물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공 처리, 서비스업 장려, 그리고 대규모 주택 건설 및 이를 통한 개인 아파트 구입의 허가제를 마련하여 재산형성을 가능토록 하는 일련의 계획입안이 요청된다.
- 생산력 축적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생산부문에서의 투자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연립주택 건설 자금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역의 인력과 자금을 이용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도록 한다. 이는 주거공간 활용과 주택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실현되어야 전체국민경제의 재생산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비용절감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구조를 과감히 수정·보완할 때 비로소 외화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국민소득이 향상될 것이다.

## 2. 중·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 제1단계로서 다음 사항을 실시토록 한다:

- 전 분야에 걸친 기획·행정 비용 절감,
  - 콤비나트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
  - 중앙 기획 행정부서내 불필요한 부서 폐지;
- 구체적으로,
- 중앙 일간 및 월간 기획·회계부의 폐지,
  - 국가 기획부서 내 과학·기술직은 3,800명에서 600 - 800명으로 감축,
  - 국가의 위촉 연구 사업을 40에서 25건으로 축소
- 생산제품 결산은 주 생산자인 콤비나트에 위임,
  - 국가차원에서 소련 및 기타 국가들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조성,
  - 콤비나트로 통합되었거나 중앙기획기구의 통제를 받았던 중소기업의 재 분리·검토,
  - 중소기업 및 수공업 분야에 대한 육성책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완제품 생산목표달성을 지원. 특히,
    -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한 가격구조 형성 등 가격구조의 일대 개혁,
    - 수공업 및 제조공장에 대한 조세법 개정,
    - 노동력 조정과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 콤비나트, 기업, 조합 그리고 수공업체들의 자금 운영 자율성 확보지원 · 이들의 추가 Valuta 수입사업을 장려하고, Valuta 수익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장치 마련

- 능력 및 사업 성공 여부의 척도로 화폐의 역할을 확대,
- 전 분야에 걸친 통계자료와 보고자료의 진실성 보장.

동독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를 최상의 조건하에서 발전시키는 가운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제 시장조건에 부합시켜 나가도록 한다.

### III.

동독과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구축한다.

이를 위해선 양 국가간의 협력이 유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련의 변혁과정에 대한 동독의 이중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결제토록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앞으로는 전자기술, 전자산업 그리고 기계설비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와 업무분업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첨단 전자산업 분야와 계측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시급하다. 동독의 제품생산 및 납품은 변화하는 소련내 투자수요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 업체의 일반업체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은 비용과 수익의 문제이다. 이때 합작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는 국가간 정책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계속 유지토록 한다. 원자재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호혜성 (Gegenseitigkeit)을 확대시킨다. 그 밖에 금속가공 산업분야에서는 기존의 동독 잠재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업화를 꾀한다.

#### IV.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실시된다 하더라도 동독의 결제 능력 확보에 필요한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수출초과량 달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1985년쯤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경제회복은 가능하였을지도 모르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신용차입이 중단될 경우, 1990년도의 생활수준은 25~30%로 하락될 것이며, 이로써 동독은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설사 국민들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수출 완제품을 계획량대로 생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상에서 언급한 대책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안한다:

#### 4. 서독과는 물론이며 동독을 서독의 견제세력으로 간주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 a) 생산용 자본축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독 및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대기업 및 회사들과도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제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b) 동독은 경비와 이윤을 고려하여 서독 및 기타 서방국가들의 대기업 및 회사들과도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어, 기술을 이전받고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토록 하며, leasing 사업도 실시한다.
- c) 생산제품의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수공업, 특히 의류, 신발, 유리·도자기업 및 생필품과 식품산업에 대한 현대화 계획은 신용차입을 통해서라도 지원토록하되, 차입부채는 각 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한 내에 자체적으로 청산토록 한다.
- d) 동독은 에너지, 환경보호, 화학 및 기타 대규모 협력사업과 관련한 상담 업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 대 자본주의 국가 관광 산업의 육성책으로 기존 리파이낸스 (Refinanzierung) 장치 외에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일반 주민들과 관광산업기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시설·자본·인력을 자본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산업의 육성책으로 이전·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난경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대책들은 정치·경제 정책상의 수정 없이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장과 III장에서 언급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서독 및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방안은 실행불가능하다. 서방과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제능력 불능상태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이 실현되어야만 92년도에 가서 Valuta 수입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외에도 91년도 결제능력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신용차입 외에도 20 ~ 30 억 VM 상당의 추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두고서 서독 정부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986 ~ 1999년도 통과여행일괄금 (Transitpauschale)을 담보로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채가 계속 증가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 부채들은 장기에 걸쳐 상환토록 처리하며 동독 경제 정책의 개혁이 실시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세계통화기금의 봉제를 피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서독 및 기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 및 학술·기술상의 협력을 위해 국가기획위원회는 91 ~ 95년도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2월 정치국에 제출토록 한다.

V.

사회주의 국가이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 및 상임위원인 동독은 평화 공존의 대 원칙에 입각하는 이성과 화해의 대화 정치를 통하여 상이한 사회질서를 표방하는 국가들과 이상에서 언급한 상호간 경제협력을 모색토록 한다.

동독은 서독과의 통일이나 국가연합구성에의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초프의 이념에 상응하는 우리의 제안들이 양 독일국가가 우방국이라는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유럽통합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제시하였음을 상기시켜 본다.

서독측에게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동·서독간 광범위한 경제 및 학문기술상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올 세기말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식의 국경은 철폐시킬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서독은 동·서 긴장완화와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정치·경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독은, 동독이 국경 개방으로 인해 약 1천억 동독 마르크 상당의 피해를 - 이는 서독 경제기관의 추산임 - 입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밝고 희망찬 앞날을 약속하는 표시로서, 동독과 서독 정부는 1995년에 동독의 수도와 서베를린을 서기 2004년 올림픽 공동행사 개최지로 신청할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90. 7)

## 1. 서 문

1990년 7월 1일 발효된 독일연방공화국(이하에서는 서독으로 약칭 : 역주)과 독일민주공화국(이하에서는 동독으로 약칭 : 역주) 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동독은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독 마르크화가 동독의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이 되며, 금융 및 통화정책은 연방은행의 관할사항으로 이양되었다. 중앙은행(이는 곧 연방은행을 지칭함)과 일반 시중 은행으로의 분리를 통해 동독은행은 2원화 제도를 갖추었으며, 동독의 은행체제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 조직을 개편하고 국제여신업무를 개시하였다.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 신용법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연방신용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동독은 대부분의 주요 현행 서독 경제법을 넘겨 받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기존 동독 경제법을 관련 서독법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응시켜 나가고 있다. 동독은 현물시장·노동시장·자본시장을 자유화 하였으며, 조세제도 역시 서독법에 맞추어 가고 있는 등 서독을 모범으로 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풀려난 동독경제는 폐쇄일로의 대서방 문호를 -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 활짝 열어 놓았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은 희망찬 미래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유럽평화질서의 일환으로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맥을 같이하여 통합조약 발효란 역사적 산물을 낳게 된 것이다.

\*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독일연방은행 보고서임.

현재 동독은, 통합조약이 체결된지 불과 몇개월 만에 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때의 정치·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일반 사회 분위기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가득찼었다. 89년 10월에서 90년 1월까지 4개월 사이에만 30만명을 해아리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이주물결이 계속 되었을 경우, 양독이 겪게될 경제·사회적 혼란이 어떠한 것인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 90년 1월에 예상국면의 심각성이 사실화되자, 국가연합방안이나, 단계별 방안과(1) 같은 “점진적 정책(Politik des kleinen Schritten)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콜 수상은 90년 2월 6일 동독정부에 대해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구축에 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모드로우 정부와 시작한 이 협상이 90년 3월 18일 출범한 민선정부와는 예상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은 동년 5월 18일에 조기 조인될 수 있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처음부터 - 전문가 회동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위원회와 개별 장관 및 내각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 양 정부간의 회담과 조약협상 과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독일연방은행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동·서독 화폐통합의 대목을 다음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2)

- 
- 주) (1) 장벽이 허물어지고 난뒤 취해진 조치중의 한 예로 89년 12월 5일 여행자 외환기금 설정에 관한 동독과 서독과의 합의를 들 수 있는 바, 이로써 동독 여행자도 환불조치를 받게 되었다. 부록 1 참조
- (2) 경제 및 화폐통합 이전의 동독과 서독간의 2원화 경제구조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부록5의 “89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 결산” 참조

## 2. 교환비율 책정

화폐통합 실시전까지 동독에는 실제 경제여건과 금융관계에 관한 자료라고는 아예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공식 환시세가 일정치 않았으며,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또한 매우 유동적이었다.(3) 따라서 화폐통합의 사활이 걸린 “적정” 교환비율의 책정은 부득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약준비상의 과제는 정치·경제·사회 제분야에 걸친 주요 난제를 서로간에 큰 마찰없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어졌다. 실례로,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레이 위험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동독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의 책정이라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한 첫 대처방안으로 flow(Stromgroesse)와 stock(Bestandsgroesse)의 분리를 들 수 있다. flow - 특히 임금 및 봉급 - 의 교환실시를 목적에 두고서 화폐통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해진 동독지역내 명목소득의 기초액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예상대로 용이치가 않았다. 또한 이제부터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은 -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방지를 위해 - 총경제 생산력에 맞게 책정되어야 했다. 동독경제의 생산성은 -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기준자료의 부족문제에도 불구하고 - 서독수준의 40% 정도로 추정되었다. 구동독 경제체제하 총임금 평균치가 서독과는 비교할 바가 없었음은 - 가격제도의 차이와 공과금 부담의 편차 등의 이유로 비교가 힘들긴 했지만 - 이러한 생산성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동독의 가격 및 원가구조가 항상 왜곡·조작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화폐통합 이후에도 한동안 임금격차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둘러싸고서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첫째로 격심한 가격조작, 특히 주요 소비물품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가격지원을 화폐통합 실시 전에 미리 제거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

주) (3) “동독 마르크 외환시장 발전상황”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부록 2 참조

이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그 파급효과로 무엇보다 식료품 가격의 앙등이 예상되었다. 달리말해 이는 지불 임금 및 봉급, 연금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그 차액의 보전지출(Ostmark-Ausgleichszahlungen)은 결국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공과금(Sozierversicherungsabgabe) 인상에 따라 임금보조비라는 추가수요가 증대되었을 것인 바, 이로 인해 상승되게 될 총임금을 1:1로 등가 교환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기업체의 경쟁력이 보다 더 약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환비율 책정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해 연방은행은, 화폐통합 실시 전에 가격구조의 개혁과 이에 따른 소득향상 문제를 조정하고나서 임금 및 봉급따위의 flow를 2:1 비율로 교환시켜 주도록 권고하였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교환비율을 처음부터 동독의 경제생산성에 걸맞게 책정함으로써, 통합후 불가피한 임금 및 봉급의 시장경제적 재조정과 획일적 임금구조의 개편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으리란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양독간의 조약협상은 "5월 1일자 노사임금 협약"에 준하여 flow를 1:1로 교환한다는 안을 채택하였는 바, 그 이유중의 하나는 대규모의 가격개혁은 화폐통합 전에는 실시되어 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연금은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산정과정을 통해 종전과는 달리 현저히 인상되었다. 이때 종전 동독 마르크로 받던 연금액 만큼은 계속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되며, 그 액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동독 국고로부터 사회보조비 명목으로 월 495 DM이 추가 지불된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국가의 가격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의 보전지출을 국고에서 넘겨받자는 동독측의 방안은 채택치 않기로 하였으며, 물가 상승과 공과금 인상에 따른 일반 임금보조비 지급 역시 동독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동독내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조약 당사자들은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연방은행이 제시한 교환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교환율이 1:1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계속적인 임금·봉급 상승을 내세웠다. 주로 이들은 일상용품 가격지원 중단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해 차액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때 이들은 집세 및 일련의 공공 수급업무

수수료와 비매품 가격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계로 동독내에서 DM의 구매력은 서독에서 보다는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독산 소비재 가격 폭락과 서독제 물품의 구입가능은 동독 소비자의 실제 구매력 상승을 야기하였다.

stock의 교환, 즉 동독의 금융 및 용자제도에 따른 결산상의 채권·채무를 교환하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었다. 그중의 하나로 동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행예치금의 1:1 교환 제안은 동독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구매력 증대를 의미하였으며, 실행시 걸잡을 수 없는 구매소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제안은 은행 예치금이 원래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는데, 동독에서는 기업과 주택 산업부문의 은행채무가 대변란의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그 까닭으로 들 수 있다 (부록 4의 대차대조표 참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 회사들의 경쟁력을 이자부담 증대로 보다 더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 동독 계획 경제의 결과인 - 이들 부채를 빠른 시일내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였다. 기업부채의 삭감과 개인 은행예치금의 1:1 교환이란 “불균형” 조처를 충당키 위해 신용기관이 국가에 대해 요구했을 차액청구액 (Ausgleichsforderung)은 -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 1조 DM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국가조약은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모든 stock의 교환비율은 원칙적으로 2:1로 하되, 저축예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을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화폐 교환 자격이 있는 동독시민들은 연령에 따라 일인당 2천, 4천 내지는 6천 동독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주택사업, 국가 및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권면액수의 절반을 삭감해 주기로 하였다. 개인명의로 이전된 업체가 조약규정에 따른 DM 개시 대차대조표 마감후에 어느정도의 “결산보조(Bilanzhilfe)” 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동독 금융 및 용자기관의 결산상 전체 채권·채무에 대한 태환율은 평균 약 1.8:1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은행이 국가조약 협상중 제시하였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4)

이로써 stock의 교환비율은 종전 동독에서 DM과의 교환시 적용하였던 환율보다는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차원의 대서독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 DM이 4.40 동독 마르크로 교환되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민간차원에 대한 공식환율은 1:3으로 적용되었으며, 5월초부터는 1:2로 수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저축예금과 현금의 교환비율을 예외적으로 높이 책정할 수 있었음은 동독에서는 다른 중·동구라파 국가들에 비해 인플레이성 “화폐 공급 초과량”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태환이 가능한 DM을 동독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

주) (4) 화폐교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 90년 6월호  
42쪽 및 본 보고서 부록 4 참조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DM으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 대 변                      | 실역 동독마르크 | 실역 DM | 차 변   | 실역 동독마르크 | 실역 DM |
|--------------------------|----------|-------|---|----------|-------|
| 1. 국내 채무자에 대한<br>신용대부 합계 | 397.4    | 180.7 | 1. 국내 비금융기관의<br>예치금 합계  | 249.9    | 156.6 |
| 이 중 :                    |          |       | 이 중 :   |          |       |
| - 기업                     | 231.7    | 115.8 | - 기업  | 57.0     | 27.8  |
| - 주택부문                   | 102.6    | 51.3  | - 민간인   | 182.1    | 123.4 |
| 2. 대외 채권                 | 45.0     | 36.3  | 2. 대외 부채  | 152.5    | 55.6  |
|                          |          |       | 이 중 :   |          |       |
|                          |          |       | - 대외부채 청산<br>준비금(1)   | 96.4     | —     |
| 3. 자본 출자                 | 1.1      | 1.1   | 3. 유동 현금<br>(은행잔고 제외)   | 13.6     | 6.8   |
|                          |          |       | 4. 누적수익<br>(accumulated profits)/<br>준비금(reserve funds)/<br>보증금(guarantee fund) | 23.4     | 23.4  |
| 4. 기타 대변                 | 3.1      | 1.5   | 5. 기타 차변  | 7.2      | 3.6   |
| 합 계                      | 446.6    | 219.6 |   | 446.6    | 246.0 |

|         |       |       |         |       |       |
|---------|-------|-------|---------|-------|-------|
| 대변 조정항목 | —     | 26.4  | 차변 조정항목 | —     | —     |
| 총 계     | 446.6 | 246.0 |         | 446.6 | 246.0 |

주) \*) 상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4 참조.

(1)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차변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가치조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연방은행

### 3. 금융정책의 개편과업

#### 가. 동독은행의 이원화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 이후로 연방은행이 “연방은행법” 제12조에 따라 통화안정을 목표로 전체독일의 화폐유동과 여신업무를 규제하는 바, 이때 본 기관은 “조약체결 양 정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보유수단을 동원하며, 그 과업을 이행한다” (통합조약 10조 3항). 통합조약이 명시하는 화폐 및 신용창조과정에 대한 금융정책의 확대적용 과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안정정책이 사전에 성립되어져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방은행의 고유업무인 금리 및 유동성 정책이, 이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선결조치로 자율적이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중은행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과거 동독의 금융기관은 중앙계획경제의 지시에 따른 자금배정, 대출규제, 청산업무를 통괄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예치금은 - 이는 주로 저축예금(Sparguthaben)과 대체예금(Spargiroguthaben)으로 구성되는데 - 저축은행(Sparkasse)이나 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 (16쪽 도표 참조)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다시 동독의 국립은행으로 남입되어야 했다(부록 3 비교). 반면 국내업체간 거래는 주로 국립은행에서 담당하였다. 올 4월초에 있었던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 DKB)의 설립과 더불어 이 사업분야는 DKB로 이관되었는 바, 이때 독일신용은행은 국립은행으로부터 광범위한 리파이낸스 신용대부(Refinanzierungskredit)를 이양받았다. 이로써 국립은행은 통화단일화 이후부터는 거의 “금융시장은행”(Geldmarktbank)의 역할만 하게되었다 : 국립은행은 수신업무를 주로 하고, 자체 여신업무는 보지 않는 저축은행 및 조합금고와, 민간수신업무는 보지 않음으로 해서, 국립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하여 여신업무를 보는 독일신용은행 간에 연결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은행이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금융체제 내에서도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동독의 원시적 금융체제가 경쟁원칙에 입각한

금융조직으로 과감히 재편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바, 동독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서독 신용기관과 이들 단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금융, 신용, 자본시장은 서독 및 다른 선진국의 그 상황과는 아직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 나. 동독에서의 리파이낸스 정책(Refinanzierungspolitik)

연방은행은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독의 구식 신용제도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실제 운용이 가능한 리파이낸스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신용기관들은 연방은행 전담 재할인 무역어음(bundesbankfaehige Handelswechsel)이나, 자금유동화 목적 유가증권 매입사업(Pensionsgeschaeft) 및 Lombard-대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이들에게 90년 7월 1일부터 리파이낸스 할당금(Refinanzierungskontingente)을 제공하였는 바, 이는 종래의 재할인대부(Rediskontkredit)와는 달리 잠정적으로 해당 무역어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은행 약속어음에 의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통합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연방은행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 리파이낸스 대부는 연방은행의 할인률(Diskontsatz)로 청산된다. 배정 리파이낸스 할당금 외에도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의 신용기관에 적용되는 Lombard 금리로 Lombard-대부를 받을 수도 있다. 동독 은행들은 이에 대한 임시담보로써 은행약속어음(Bank-Solarwechsel)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독일 연방은행은 동독 차액 보전기금에 대한 은행들의 채권을 - 이들이 저당물으로써 충분한 체현성을 띄게 될 경우에 한해 - Lombard-대부에 대한 담보로 인정해 줄 수 있다.(5) 배정 리파이낸스 할당금 총액은 2백 50억 DM으로써, 이는 서독은행의 재할인 할당금

---

주) (5) 이는 - 화폐통합의 일환으로 - 결산상의 차액 보전용으로 은행들에 배정된 채권들로서, 국가가 이의 지불을 보장하며,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차액 보전금의 구성요소와 (이의 동독은행제도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는 부록 4 참조

5백 9십억 DM과 비교했을때 높게 설정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 동독의 신용기관들은 관련 유가증권 재고의 결핍으로 연방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금유동화 목적 유가증권 재매입사업에 참여할 처지가 못된다는 사실이다(서독에서의 중앙은행 자금조달은 주로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리파이낸스 할당금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이를 다시 “정상적인” 제한인 할당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때 이 제한인금은 원래대로 최고의 신용을 보장하는 무역어음을 담보로만 제공될 수 있다. 리파이낸스 할당금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8월에 처음으로 있었던 최저지불준비금 마련 외에도 동독경제와 주민들에 대한 “일시불 기초자금(Erstausstattung)이 전액 현금으로 동독의 신용기관에 조달되었으며, 이들은 이 자금을 대해 연방은행으로부터 리파이낸스 결재를 받았어야 했다는 점이다. 국가조약에 명시된 화폐 교환방안에 따르면, 동독마르크는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서독 DM으로 교환될 수 있다. 동독화폐의 서독화폐로의 직접 현금교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교환비율 이유 한가지 때문에라도 허락될 수 없었다. 현금으로 지불되는 “일시불 기초자금”을 위해 동독 신용기관들이 어느정도의 리파이낸스 할당금을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는 미리 예측키 어려웠다. 왜냐하면 동독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차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화폐교환 실시후 주민들의 초기 현금인출액은 원래 동독 마르크화 예치액을 하회하는 안정현상을 보였다. 물론 리파이낸스성 현금유통액은(은행의 잔고 포함) 7월 초반에 들어서는 예상대로 증가하였다. 90년 7월 13일 현재 이 액수는 150억 DM이 조금 못된다. 동시에 동독 신용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연방은행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이들에 적용되는 리파이낸스 할당금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개별신용기관에 대한 리파이낸스 할당금 배정시, 연방은행은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였다.(부록3 참조) 이때 서독에서 적용하던 기준(예를 들어 은행자기자산, 각 은행별 단기 대부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어음잔고 등)은 동독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정 적용하였는데, 만약 전체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용시켰을 경우 일방적인 결과를 자아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리파이낸스 할당액을 각 기관의 결산총액이 제시된 다음 일괄적으로 책정하였다. 이 규정 역시 임시조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신용기관의 결산구조가 서독의 그것과 유사해지는데로, 연방은행은 동독에도 위에서 언급한 서독식 할당금 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행으로의 이원화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동독의 신용기관을 조약발효시부터 연방은행 관할 “유동성 규제” (Liquiditätsregel)와 “리파이낸스 조건” (Refinanzierungskondition)의 귀속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연방은행의 조직문제는 특별과도규정을 제정하여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은행은 통합조약에 따라 베를린에 독일연방은행이사회 산하로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내 15개의 지점망을 거느리는 “임시 관리국”을 신설하였는 바, 이들은 동독의 금융기관들 및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공공행정 부서와의 거래를 관할한다.

#### 다. 단일 통화권역내 금융정책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서, DM 통화권역의 확대는 기존 통화관리 과정에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통계에서 수치가 단절된 점이다.(6) 이 밖에 통화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

주) (6) 동독 신용기관은 화폐통합과 더불어 서독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방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독은행들의 초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방은행은 일단 중요한 통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한다. 동독 신용기관은 처음부터 월간 결산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동독내에서의 신용대부 및 통화량 팽창의 추세와 변수에 대해 신빙성 있는 평가를 작성하는 일이 상당기간 어려운데, 이는 자유경제제도 및 신용제도에 의해 새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이 일단 적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90년 7월까지에 대해 이용할만한 신빙성 있는 사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화량과 전체경제 지출액 - 초반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 - 간의 연관성 문제 역시 재년명되어야 하는 바, 이는 통화관리상의 목표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관리를 연방은행 화폐정책의 중간목표로 간주하여 이미 15년 이상 잘 유지되어온 통화관리정책 자체가 통화권역 확대에 의해 변경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간의 경제적 균형(GNP에 따른 비율은 약 10:1)을 비교해 보았을대, 동독을 DM 통화권역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존의 통화체계가 - 단기간 내에는 안되겠지만 -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5월 30일자 동독 금융체제의 임시 통합 대차대조표 - 국립은행의 최근 자료 - 를 근거로 했을대, 화폐교환시 총통화량 M3은 약 1,600억 DM에 약간 못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 6월말/7월초의 교환액 추계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화교환 당시에는 모든 비은행 예치금도 - 형식상 - 현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준화폐로) 간주되었는 바, 이는 금년 7월말까지만해도 동독 저축인과 예금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부자형태라고는 - 생명보험을 제외하고는 -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은행예치금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상 화폐잔고로 간주되는 지불수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대폭 줄어들었다. 저금리 저축예금 분액은 총통화량 M3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투자로 재입금 되었다. 화폐교환 이후 서독 총통화고에 포함될 동독의 총통화량 M3는 아마 얼마가지 않아 1,200 DM으로 증가할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자 통계에 따른 통화량 증가폭만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통화량은 동독의 참여로 인해 전체독일의 총생산성이 증가한 것 만큼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수치의 정확한 추정은, 앞으로 기업의 도산사태가 어느정도나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계 및 분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에 따른 금융정책상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독내의 통화량 추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독과의 화폐통합 이후로 연방은행은 새로운 금융정책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는 바, 금융시장에 대한 연방은행의 영향력 행사 문제가 그것이다. 동독 경제와 동독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용대부 수요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이에

대한 일 반은행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성 및 안정성의 척도가 동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동독기업체에 대한 청산대부를 위해 신탁청과 국가가 담당하는 신용보증은 따라서 일시적인 금융뒤틀림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보조방안으로 그쳐야지, 항구적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공고한 시장질서가 흔들림과 동시에 금리의 자동조정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보유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초반에는 충분히 보였던 동독 신용기관의 유동성 자금은 8월초부터 최저지불 준비금 확보 의무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동독의 신용기관들이 연방은행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 놓음으로써 한때 금융시장에 일시적 자금 부족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이는 금융시장 자체내 조정에 의해 해결되었다. 불가피할 경우 연방은행은 동독 신용기관의 회계구조가 제기능을 할때까지 단기적이거나 금융시장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을 수 없다.

#### 라. 확대 통화권역 내에서의 금융정책 및 공공재정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제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에 통합조약은 동독정부가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시,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이전 동독에서는 정부부채를 발권은행인 국립은행으로부터 직접 신용대출을 받아 탕감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화폐통합의 실시와 더불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연방은행은(연방은행법 제20조 1항 1절에 따라) 동독에 대해 최고 8억 DM까지의 현금 선급대부를 보장하며, 본 기관은 서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독정부 및 그 공공 행정부서와도 지로 예치금 수령, 지불위탁업무 수행 등의 금융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다. 동시에 동독의 공공기관은 연방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연방은행에 의무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예치시켜야 하며, 국채의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는 독일연방은행을 그 발행주체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은행과 협의를 거쳐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동독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용대부 상한선을 90년 하반기에는 100억 DM, 91년에는 140억 DM으로 제한하고 있는 통합조약상의 명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초과신용대부는 급격한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연방재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이같이 예산정책상의 자율성을 제한시키는 이유로, 동독 국가법인단체의 신용대부 수요를 서독의 자본시장에서 주로 충당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자에 따른 추가수요는 서독에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연방을 포함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실제신용대부 총액(“독일 통일” 기금 및 유럽부흥계획(ERP) 특별자금 포함)은 현재 정보에 의하면, 90년에 약 800억 DM, 91년에는 약 1,000억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91년의 실제 신용대부 총액은 동·서독 통합 명목 총국민생산(das gemeinsame nominale sozialprodukt/the common nominal national product)의 3.5%에 해당된다.

실제신용대출 총액은 그전 몇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액수인데, 이는 동독의 세수입원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일 뿐더러 동독내 연금 및 실업자보험 그리고 구조적응대책 등을 위한 기초재정공급의 불가피성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서독의 경기호황으로 사회전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에서까지 재정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이는 물가안정 및 금리에 부정적인 작용을 함은 자명하다. 이에 중앙은행이사회는 금년 5월말 연방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지출제한과 예산긴축 및 재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 신용대부 수요의 제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7) (동독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신용대부를 연방정부의 신설 특별기금으로 이전시키고,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하는 이행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시킬 수 있는) “독일통일” 기금이라는 재정지원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예산긴축의 필요성이 제거됐다는 잘못된 해석을 내려서는 안된다. 예산규모상 동독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경제안정을 위해선 연방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주) (7) 공공 지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48)쪽 참조

공공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국가의 신용대부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는 동독의 재정지원을 위해 공여되는 신용대부가 현재로서는 거의 소비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용대부를 보통 투자지출비 한도액 내에서 허용토록하는 예산 법령(연방에 대해서는 기본법 115조 참조)의 기본원칙을 “독일통일” 기금 적자와 동독정부 예산에 적용시키기에는 당분간은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은 앞으로 있을 통일독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가능한한 국가의 회계수입으로 충당하여 신용대부에 의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정책의 성공을 돕는 방안이다.

“독일통일” 기금

단위 : 10억 D-마르크

| 항 목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90~94년<br>합 계 |
|---------------|------|------|------|------|------|---------------|
| 동독지원 지출금      | 22   | 35   | 28   | 20   | 10   | 115           |
| 재원출처 :        |      |      |      |      |      |               |
| - 기금의 신용대부    | 20   | 31   | 24   | 15   | 5    | 95            |
| - 연방정부로부터 배당금 | 2    | 4    | 4    | 5    | 5    | 20            |
| 부채 상환 비용      |      | 2.0  | 5.1  | 7.5  | 9.0  | (1)23.6       |
| 부담자           |      |      |      |      |      |               |
| - 연방정부        |      | 1.0  | 2.6  | 3.8  | 4.5  | 11.8          |
| - 주정부         |      | 0.6  | 1.5  | 2.3  | 2.7  | 7.1           |
| - 지방자치단체      |      | 0.4  | 1.0  | 1.5  | 1.8  | 4.7           |

(1) 나머지 부채상환은 금리추세에 맞춰 94년후 15~25년간에 걸쳐 이행됨.

#### 마. 동독경제의 적응

전체독일에 대한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은, 동독이 서방 시장경제체제에 빨리 적응하면 할수록 보다 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할 점은, 유통부문에서의 독점구조 탈피와 가격형성의 자율화를 통해 건설한 경쟁력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구조는 수요공급의 시장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필수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의 폐지, 생산품 관련 공과금, 특히 내구 소비재에 대한 공과금의 폐지(집세, 공공교통요금, 급수시설 등은 당분간 가격이 동결되어 있음) 등은 이틀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밖의 조치로서 서독을 비롯한 서구라파 시장에 대한 동독시장의 문호개방을 들 수 있다. DM의 도입과 더불어 동독주민들에 대한 물품 수급 상황은 서방제품들의 진출로 인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방과 더불어 동독경제의 효율성 문제가 작금 부각되고 있는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임금수준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이에 따른 취업상황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앞으로 동독이 임금구조 적응과정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상호관계를 화폐교환율 결정시 목표로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동시에 현재상황과는 다른 뚜렷한 임금 차등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바, 이는 특히 생산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로 동독 노사임금 협약으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서독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1:1로 교환되는 총소득중 실질소득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나, 대신 소비자 가격은 공산품 관련 공과금 폐지로 인해 인하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산품 가격 인하(7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에 의해 물가인상을 보전해온 정책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준하지 않은 임금인상은 대내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과대 임금상승의 결과는 임시취업보장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취업이전 교육과 기능 향상을 위해 국가와 기업측에서 지원하는 단축조업 수당 따위는 근로자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없다.

## 부록 1 : 동독 여행환기금 (Reisedevisenfonds)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된 것은 1989년 11월 동·서독간의 국경이 개방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서 1년에 한번씩 교환받는 15 DM과 서독측 연방과 지방단체가 지불하는 “환영비”(Begrüßungsgeld)가 고작이었다. 일년을 기준으로하여 첫번째 방문일 경우,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일인당 100 DM을 지불하였으며, 지방단체도 보조지원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89년 12월초 동독주민들의 서독방문을 돕기 위해 여행환기금을 서독에 설치하기로 동독정부와 합의하였다. 90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 장치로 말미암아 “환영비”는 철폐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90년 성탄절부터 서독여행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최소환전의무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90년 1월 2일부터는 서독인에 대해 종전의 1:1 교환비율 대신 1 DM 대 3 동독 마르크란 비율을 적용하였다.

여행환기금은 29억 DM을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되었는 바, 그중 15억 DM은 연방과 동독이 나누어 부담기로 하였으며, 90년도 환영비로 예정된 14억 DM을 연방에서 추가로 지급하였다. 여행환기금을 근거로하여 동독주민들은 최고 200 DM(14세까지는 100 DM)까지를 동·서독 신용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때 100 DM(어린이 50 DM)까지는 1 DM : 1 동독마르크로, 나머지는 1:5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이를테면 이들 차등교환비율의 산술평균은 1:3 정도가 된다.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환전 동독마르크는 차후 동독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양 정부는 합의를 보았다.

90년 7월 1일 통화교환이 실시됨에 따라 여행환기금은 폐지되었다. 통화교환 전까지 기금을 근거로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천만 DM에 달하였는 바, 이 중 연방이 16억 1천 DM, 동독이 5억 6천만 DM을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90년 1월과 2월 두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1: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될 조짐이 보이자 101 DM(어린이의 경우 51 DM)부터 적용되던 1:5 교환비율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총 50억 3천만 동독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독 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교통, 환경보호, 관광, 도시건설 및 모범마을 운영, 우편 및 체신업무,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액수는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DM으로 교환하여 90년 하반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부록 2 : 동독의 외환시장

90년 6월 30일까지 동독내에서 유통되던 동독마르크는 내국통화로써, 외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화로 교환될 수도 없었다. 동독정부는 - 특히 - 여행자들에게 대해 동독마르크의 반입·반출을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특히 서베를린과 서독에서는 일찍부터 대동독마르크 환전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노천시장” (Strassenmarkt)에서 특히 동독마르크 거래가 성행하였는데, 액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었다.

동독마르크 환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지는 양독 여행자들의 지참현금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물론 이는 동독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87~89년) 동독마르크의 평균 매입시세는 100 동독마르크 대 12.50 DM 정도에 달하였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 DM을 서방 또는 동독내 특별 허가업소와 암시장에서 서구제품을 구매하는데 거의 모두 지출하였다. 동독마르크의 수요자는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규정 강제환전금액(89년 당시 취업자의 경우 1인당 1일 25 DM, 퇴직자의 경우 1인당 1일 15 DM) 이상의 동독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동독법에 의하면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였다. 87년에서 89년까지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DM 대 100 동독마르크의 비율로 매출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소환전 의무액에 대해서만큼은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토록 요구한 바 있다.

89년 11월초에 있는 국경개방과 더불어 동독마르크 거래는 활기를 띄게 되었다. 동독내 예금구좌를 청산하고서 서독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과 서방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동독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증하게 되자, 89년

11월 중순까지 동독마르크화는 100 동독마르크 대 7 DM이란 덤핑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90년 1월부터 불기 시작한 수요증대 현상은 동독마르크 시세를 한동안이나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마르크의 매입자로는 특정 동독 물품이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을 유리하게 구입하려는 서독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차후 마련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투기성” 동독마르크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에게 1월부터 1:3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의 무제한 매입을 허용함에 따라, 비공식 환전시장에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90년 5월 2일 화폐통합에 따른 교환방식이 공표되자 환율은 1:3로 폭등하였다. 금융기관 측에서는 판매가와 매입가 간의 15% 편차에도 불구하고 동독마르크를 화폐통합 실시전까지 제때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5월부터는 환전거래를 중단하였다. 동독마르크 환전시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으며, 환전시세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환전시장에서의 환율이 화폐통합시 교환비율 책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부속시장(Nebenmarkt)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전시장이라 할 것 같으면 대규모 외환시장의 일부분에 속하고, 이 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정자산의 거래(Leistungs-u. Kapitaltransaktionen)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동독마르크는 외환시장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동독의 국제교역은 주로 상호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 다른 서방국들과도 마찬가지로 - 이루어져 왔는데, 이때 서독과의 물물 교역은 청산단위(VE)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동독내에서의 조치로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란 존재할 수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치 않는 현금 반입, 이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 및 용역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동독마르크화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해 장기간 과소평가 되어왔다.

| 환전시장에서의 동독마르크 시세 및 거래액 |                                   |       |        |            |
|------------------------|-----------------------------------|-------|--------|------------|
|                        | 외환거래소 시세<br>100 동독마르크에 대한 DM(월평균) |       |        | 거래합계(2)    |
|                        | 매 입 가                             | 판 매 가 | 평 균(1) | 단위 : 백만 DM |
| 1985. 12월              | 18.00                             | 21.00 | 19.50  | -          |
| 1986. 12월              | 14.80                             | 17.60 | 16.20  | -          |
| 1987. 12월              | 12.00                             | 14.60 | 13.30  | -          |
| 1988. 12월              | 11.60                             | 14.10 | 12.80  | -          |
| 1989. 6월               | 10.50                             | 13.00 | 11.70  | -          |
| 10월                    | 9.60                              | 12.10 | 10.90  | -          |
| 11월                    | 10.50                             | 13.60 | 12.00  | 33         |
| 12월                    | 12.30                             | 15.70 | 14.00  | 26         |
| 1990. 1월               | 12.80                             | 15.70 | 14.20  | 31         |
| 2월                     | 15.90                             | 18.90 | 17.40  | 70         |
| 3월                     | 18.00                             | 21.80 | 19.90  | 80         |
| 4월                     | 23.00                             | 27.10 | 25.00  | 82         |
| 5월                     | 25.90                             | 30.10 | 28.00  | 78         |
| 6월                     | 32.60                             | 37.40 | 35.00  | -          |

1. 매입 및 매도 시세의 평균  
2. 서베를린 및 서독내 일부 신용기관과 주요 외환거래소의 매입 및 매도 합계  
출처 : 베를린 외환거래소

### 부록 3 :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제도는 현재까지도 이전의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를 반영하고 있다(42 P. 도표 참조). 1990년 3월말까지 동독의 금융체제는 국립은행과 그 지점 그리고 소수의 특수기관(독일 무역은행, 독일 상업은행, 식품·농업은행(현재 베를린 조합은행))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이들 역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외에 저축은행, 농민·상업조합금고를 포함하고 있는 조합금고와 국민은행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국립은행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립은행의 행정규제를 받아왔다.

국가통제경제의 재정문제는 오래전부터 동독 국립은행에서 담당하였다. 금년 4월초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이 이 분야의 사업을 국립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신용대부와 기업 및 보험업체의 예치금은 국립은행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용은행의 대변란은 종전의 산업-Kombinat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차변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소규모 예치금과 국립은행에 대한 은행간 부채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국립은행에 의한 리파이낸스는 필연적이었는데, 이는 독일신용은행이 인수받은 신용대부가 이양된 비은행 예치금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 조합금고와 마찬가지로 -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국립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도맡아왔다. 저축은행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신용대부를 제공한 것은 금융사업상의 수익성이나 대부희망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처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수단을 단순히 집행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신용대부가 제공되었으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건축융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두번째로 중요한 국립은행의 “자금출처”는 특수금융기관의 의무예치에 주어졌다. 이들 기관은 서방과 CMEA-회원국들 간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무역은행, 독일상업은행 그리고 무역업체들을 들 수 있다. 외국과의 지불 및 청산업무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다른 특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업은행을 들 수 있다. 이 은행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농민 상업조합의 “중앙기관” 역할을 맡았었다. 이들 역시 결산상의 잔고를 국립은행에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독 은행구조는 현재(9 P. 부터의 특별보고서 본문 참조) 계획경제 시절의 상황과는 달리 서방은행의 제도를 본따가고 있다. 이는 이미 실현된 2원화 제도에서 잘 드러나는 바, 이때 독일 연방은행은 발전은행인 동시에 은행의 은행이자 국가은행(Hausbank des Staates)이기도 하였던 동독 국립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이양받았으며, 독일신용은행과 현 베를린 국립은행(예전의 동독 국립은행) 간의 업무는 분할되었다. 이 밖에도 독일 신용은행과 서부 독일의 대은행들에 의해 공동으로 창설된 Joint Ventures의 활동사항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첫째 서독정부의 인가를 받아 90년 7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사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와, 둘째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독 금융기관들이 서방은행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 부록 4 : 동독-은행 대차대조표상의 교환과 결산상의 차액보전 항목

###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교환

동독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90년 7월 1일부터 통합조약에 명시된 화폐교환 방식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화폐교환이 통합 대차대조표에 가져올 양적 지수와 대변란의 차액보상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 다음에서는 90년 5월 31일자 동독 신용기관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보충 근거자료로 하여 결산상의 가상 교환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때 통합 대차대조표상 차변 및 대변란의 첫번째 단에는 동독마르크가 십억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두번째 단에는 적용교환비율 내지는 주요 교환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산술상의 평균 교환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에는 교환금액을 십억 DM 단위로 표기하였다.

동독마르크화로 지칭되는 부채와 채권(대변란의 제1번과 4번 내지는 차변란의 제1, 3, 5번)은 모두 교환되었다. 제2번에 표기된 대외채권 및 대외부채는 주로 외화관계(Fremdwährungsbeziehungen/foreign currency operations)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이는 교환 대신 적정선에서 DM으로 평가토록만 하였다. 이들이 이미 DM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고 DM 대차대조표로 이전 기입된다. 제3통화로 표기되어 있는 부채와 채권은 각 시세에 맞추어 DM으로 환산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내유통 동독마르크와 외환시장 유통마르크(Valutamarkkreislauf)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한 "가치조정" (Wertberichtigung/value adjustments)은 결산기술상 가능한한 차감계정을 하였다. 이 중 특히 차변란의 2번 C 및 대변란 1번 명기 국가에 대한 신용대부 항목이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DM으로 환전되었을 경우, 소위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1)(Richtungskoeffizient/the provisions for external liabilities)은 사전에 국가에 대한 가치조정 신용대부(2)가 차감계정되지 않는한 이전 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MEA - 국가들에 대한 부채와 채권(대변 및 차변란의 제2번 a)은 대체루블(Transferrubel) 시세에 맞춰 대 마르크 환산가치의 절반만 DM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였다. 이 채권의 가치가 이로써 적절히 평가되었는지는 장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

주) (1) 대외부채 준비금은 한편으론 과거 동독 신용제도 하에서 발생한 DM과 동독마르크 간의 1:1 관계라는 명목 교환율과, 다른 한편으론 동독기업이 무역사업에 따른 결제시 실제 적용한 1 DM 대 4.40 동독 마르크라는 사실 결산 환시세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제 결제시 지급액은 환전시장 시세에 따른 1 DM : 4.4 동독마르크 교환율과 1 DM : 3.40 동독마르크의 청산준비금 항목으로 분리 처리되었다. 외환시장 시세 관계는 독일무역은행이, 청산준비금 관계는 국립은행이 담당하였다. 국립은행에는 동독기업들의 수입대금 지불관계로 인해 고액의 예치금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독제 물품이 서방으로 수출될시, 수출가 1 동독마르크당 3.40 마르크의 프리미엄을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으로부터 지불했어야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M에 대한 동독 마르크 가치가 절하됨으로 해서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은 증가하였는데, 이를테면 대외부채는 국내유용 동독마르크화로 평가했을때 그 절하폭 만큼 상승 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은행 대차대조표에 국가에 대한 무이자 부채가 설정되었다. 이리하여 국가에 대한 "가치수정 신용대부"(Neubewertungskredit)액 만큼 줄어든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은 그 자체로는 화폐교환으로 인한 "가치인상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계산상으로는 동독 은행제도의 통합 대차대조표로 포함되었다. 통합조약의 규정(부록 1의 제8조 4항 5절)에 따라 국립은행의 재산 잔액은 동독이 신설하게 될 차액보전기금으로 이양토록 하는데, 이 기금이 은행의 차액

보상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동독국가가 부담해야 할 차액보상 할당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주) (2) 1948년 화폐개혁과 관련한 지폐 및 동전 등의 장비마련에 따른 국가에 대한 국립은행의 채권을 포함함.

### 대차대조표 상의 조정항목

은행의 차액보상권(Ausgleichsforderung)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90년 5월말 대차대조표의 대변 조정항목에 포함된 265억 DM은 잔금으로 처리되었다. 화폐통합조약에 의거(통합조약 부록1의 8장 4조 2항) 신용기관들은 대차대조표상 결산총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자기자본(Mindesteigenkapital)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폐통합후 각 신용기관들이 어느정도로 최저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이 잔금처리 결산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용기관이 규정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자기자본 마련을 위해 추가 차액보상을 허가해 주도록 통합조약은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액보전기금의 수요가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화시세의 변동,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DM화의 강세로 대변상의 조정항목 금액은 감소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 달러 채무 및 부채는 지금까지 실제 시장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환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앞으로 작성해야할 “임시 화폐교환 결산”(통합조약 부록1, 7장 1조)에는 대변·차변상에서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이는 최종 DM 게시 대차대조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를 대비하여 동독은 차액보전기금을 신설하였다. 이 기금은 화폐교환으로 인해 은행과 무역업체에 발생하는(차변-대변상의) 조정항목에 대해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의 역할을 한다.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상의 차액보상 청구액은 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조합금고 분야의 경우 화폐교환시 불균형(대변 2:1 ; 일인당 일정액에 대한 차변 1:1, 기타 2:1)으로 인해 제기될 차액보상 청구액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8쪽 도표 참조). 또한 외국과 상거래 내지는 재정거래 청산을 해야 하였던 기관들의 대외부채는 - 이에 대응되는 국가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 교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전 국내회사들을 담당하는 독일신용은행의 경우, 차변·대변란의 교환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액수의 차액보상금을

지출해야 되는 까닭은, 가상 결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되어지지 않은 본기관 출자 자본금의 액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은 금전상의 채권에는 부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되지 않았음. 이 밖에도 최저자기자본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신용기관이 제시하게 될 추가 차액보상청구가 고려되어야 함).

대차대조표상의 차액보상 문제와 관련, 국립은행은 다른 모든 은행들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차변상의 조정항목이, 즉 차액보전 기금에 대해 부채가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은행 대차대조표에서의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이 화폐교환시 일정 결산한도 내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7 P. 주(1) 참조). 요컨대, 화폐교환시 발생한 “가치상향조정 수익금”(Aufwertungsgewinn)은 국립은행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액보전기금으로 흡수되어, 이는 다시 다른 은행들의 결산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의미한다.

가상결산에 따르면, 차변 및 대변상의 불균형 교환으로 인한 차액보전기금에 대해 은행들이 (국립은행 포함) 청구하게 될 차액보상금액은 총 5백 7십만 D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요는 대외부채 청산준비금 항목의 해체와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등록예산의 지원으로 충당될 것이다.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은행의 청구권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연방은행 전담 대변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차액보상 청구권은 금융시장사업에 대한 해당은행의 기금 출자로서, 연방은행에 대한 리파이낸스 요청시 담보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 대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차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
| 1. 국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부 합계                | 397.4    | —      | 180.7 | 1. 국내 비은행기관의 예치금 합계 | 249.9    | —         | 156.6 |
| 이 중 :                                |          |        |       | 이 중 :               |          |           |       |
| - 국 가                                | 60.6     | a) 2:1 | 12.3  | - 국 가               | 10.8     | 2:1       | 5.4   |
| 이 중 :                                |          |        |       |                     |          |           |       |
| · 대외부채 가치수정 신용대부                     | 31.2     | —      | —     |                     |          |           |       |
| · 1948년 화폐개혁시 기초자금 마련에 따른 국가에 대한 청구권 | 4.9      | —      | —     |                     |          |           |       |
| - 기 업                                | 231.7    | 2:1    | 115.8 | - 기 업               | 57.0     | c) 2.05:1 | 27.8  |
| - 주택부문                               | 102.6    | 2:1    | 51.3  | - 민간인               |          |           |       |
| - 민간인(주택건축 신용대부 제외)                  | 2.5      | 2:1    | 1.3   | 이 중 :               |          |           |       |
|                                      |          |        |       | · 민간인의 지로 및 저축예금중   |          |           |       |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 대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차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
|                    |          |      |       | ..내국인 예치 외화            | 165.6    | d)1.44:1 | 115.0 |
|                    |          |      |       | ..외국인 예치 외화            | 2.3      | e)2.05:1 | 1.1   |
|                    |          |      |       | · 생명보험                 | 14.2     | 2:1      | 7.1   |
| 2. 대외 채권           | 45.0     | —    | 36.3  | 2. 대외 부채               | 152.5    | —        | 55.0  |
| a) CMEA 회원국        | 17.4     | —    | 8.7   | a) CMEA 회원국            | 1.1      | —        | 0.6   |
| b) 서방산업국과<br>개발도상국 | 27.6     | b)   | 27.6  | b) 서방산업국과<br>개발도상국     | 55.0     | b)       | 55.0  |
|                    |          |      |       | c) 대외부채 청산<br>준비금(1)   | 96.4     | f)       | —     |
| 3. 자본 출자           | 1.1      | 1:1  | 1.1   | 3. 유동 현금<br>(은행 잔고 제외) | 13.6     | 2:1      | 6.8   |
| 4. 기타 대변           | 3.1      | 2:1  | 1.5   | 4. 누적 수익/준비기금/<br>보증금  | 23.4     | 1:1      | 23.4  |
|                    |          |      |       | 5. 기타 차변               | 7.2      | 2:1      | 3.6   |

|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          |        |       |          |          |        |       |
|---|----------|--------|-------|----------|----------|--------|-------|
|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          |        |       |          |          |        |       |
| 대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차 변      | 십억 동독마르크 | 교환비율   | 십억 DM |
| 합 계                                       | 446.6    | —      | 219.6 | 합 계      | 446.6    | —      | 246.0 |
| 대변 조정 항목                                  | —        | —      | 26.4  | 차변 조정 항목 | —        | —      | —     |
| 총 계                                       | 446.6    | 1.81:1 | 446.0 | 총 계      | 446.6    | 1.18:1 | 246.0 |

주) (1)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차변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가치조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 a) 245억 마르크의 잔고에 대한 교환으로서, 이 잔고는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을 거친 신용대부 (312억 동독마르크)와 1948년 화폐개혁시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9억 마르크)을 차감계정 하였을때 대외부채 청산준비금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게 됨.
- b) 본 도표의 대외채권(대변 2b)과 대외부채(차변 2b)는 89년말 시세로 평가됨. 최종 교환시에는 90년 6월 30일의 시장시세가 적용됨. 이때 명시된 금액은 약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차변 2b에는 내국인의 외화 예치금도 포함됨).
- c) 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외국인 예치금 외화에 대한 교환비율은 3:1, 그 밖에는 2:1이 적용됨.

- d) 2천 동독마르크×3백 2십만=64억 DM, 4천 동독마르크×1천만=404억 DM, 6천 동독마르크×3백만=180십억 DM의 합계인 648억 DM이 1:1의 비율로 교환됨 : 나머지 1천 8억 동독마르크는 2:1 비율로 교환됨.
- e) 89년 말일자 예치금 총액 2십 1억 동독마르크는 2:1의 비율로, 나머지는 3:1의 비율로 교환됨.
- f) 대외부채의 가치수정에 따른 신용대부(3백 12억 동독마르크)와 1948년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9억 동독마르크) 중 일부는 차감계정됨 : 수치상으로 남게 되는 잔액(6백 1억 동독마르크)은 조정항목의 삭감명목으로 처리됨.

## 부록 5 : 1989년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양독간의 용역 및 자본거래 총결산은 1989년을 그 마지막으로 한다.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과 더불어 이러한 내독관계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1989년도 양독간 용역 및 자본거래는 서독이 12억 DM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로써 차변잔고는 전년과 동일하다. 동독내 정치구조의 변화 및 경제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총지불 거래 결산은 전년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89년 11월, 12월 두달간의 추이변화는 지불결산구조에 현저한 영향을 가져왔다.

89년도 동독과의 물품 및 용역거래 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서독이 현저한 우세를 보였다. 88년만해도 차변잔고가 4억 DM에 달하였으나, 89년에는 20억 DM의 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큰 격차는 동독과의 용역사업, 특히 여행사업 분야의 신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동·서독 경계가 개방되자 동독 여행객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에 따라 여행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독인들은 연방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환영비”의 대부분을 서독에서의 상품구입에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입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대응항목으로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동독 여행객들에 대한 지원비와 그 결과 증가된 여행수입으로 인해 재정거래 규모가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대차대조표상의 균형이 깨어지는 결과 따위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지불통화” 면에서도 89년에 들어서 실제 변화한 것은 거의 없다. 89년도에 있었던 청산단위 지불거래(베를린협정의 일환인 “고정지불거래”(gebundene Zahlungsverkehr))는 소위 “자유통화”로는 13억 DM이 동독으로 유출되었는 바, 동독여행객들에 대한 실제 지불금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공공비용 지불금(통과료 및 기타 도로사용료)이 여기에 포함된다.

## 내독교역

지난 3년간 부진했던 내독교역은 89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89년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반출은 전년에 비해 12%, 반입은 약 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서독의 흑자는 88년 2억 DM/VE에서 89년 6억 DM/VE로 증가하였다.

89년도 대동독 반출량 증가는 89년 가을부터의 정세변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교역구조의 발전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90년 1/4분기에 들어서서는 대동독 반출량이 - 계절과 관계된 사항을 배제하였을때 - 다소 부진세를 보였다. 90년 4월과 5월중 이 추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2월과 3월에 비해 반출량이 약 60%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90년 초부터 서독회사들은 베를린협정 지역 외에서도 물품을 동독으로 반출하였는 바, 이로써 국경개방 후의 양 국가간 - 특히 베를린협정 지역 외에서의 - 교역량 증가치는 내독교역 통계에 전부 포착될 수 없었다.

동독으로 반출되는 총물품중 원자재와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와는 달리 매우 높은 편이다(38%). 특히 지난해에 들어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비철금속(+38%), 제철 및 강철(+10%) 그리고 화학제품(+7%)들을 대량 구입하였다. 자본재 중에서는 전기제품(+22%)과 기계공업제품(+13%)의 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독산업이 루자품목을 절실히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동독으로의 총 반출량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38%라는 비율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종전과 다름없이 중앙통제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동독의 무역정책은 일반 경제 재분야에서 드러나는 수요불충족 현상만을 주로 서독으로부터의 반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일반 소비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 지난해 소비품목 반입량이 3.5% 감소됨에 따라, 이 품목이 전종목 총 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채 못되었다. 90년 초반 동독으로의 소비품 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동독정부의 물품 반입정책이 동독내 잠재수요를 얼마나 억눌러 왔던가를 여실히 입증해 보였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반입·반출이

이루어지게 된 90년 초부터는 소비품목 부문에서 현저한 신장이 엿보이고 있다. 90년 4, 5월간 식품 및 기호제품 판매는 전년에 비해 4배, 소비품목 판매는 2.5배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재의 증가는 24%에 머물렀다. 현재 동독에 내재하는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대 추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서 현저한 반출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은 6% 정도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동독으로의 반출 증가폭의 절반에 해당된다. 반입·반출 품목의 불균형 구조는 89년에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반출증가폭이 10.5%를 기록함으로써, 이 사업부문이 전체 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자본재(특히 전자제품) 부문에서도 증가가 있었으나(+13%), 이는 서독으로의 총 반입량의 16% 정도에도 채 못미치는 수치이다. 동독 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물품의 공급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들이 질과 가격면에서도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독이 경기호황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시장세를 탈 수 없었다. 심지어 89년도 소비품 생산업체의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 현상을 보였다(-1%).

작년의 경우, 양독간의 통과무역에서는 현저한 교역량 증가가 있었는데, 이들 사업은 "자유통화"로 지불되었다. 서독측은 서독거래처가 외국으로 중개 판매한 동독제품에 대해 약 10억 DM를 지불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동독제 강철제품 및 식품들이었다. 반면 동독은 서독 통과무역상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해 11억 DM의 반입비를 서독에 지불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곡물, 화학제품, 비철금속 및 기계제품 등이다. 이로써 결산상으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1억 DM 정도가 유입된 셈이다.

#### 용역사업 및 이전지출 결산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89년도 용역사업 부문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6억 DM의 적자를 내보였던 88년에 비해 89년도 동독과의 용역사업에서는 서독이

13억 DM의 흑자를 보였다. 청산단위로 지불결제된 용역사업 거래(Service transaction/Dienstleistungstransaktionen)에서는 약 2억 DM/VE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88년과 비교했을때 (3억 DM/VE) 큰 변화가 없었다. 위탁 가공 수수료와 운송사업 및 금리지불 등에 따른 서독의 실수익은 수수료(Provision/Comission), 전시비용, 동독체신부와의 차액비용 조정을 위한 연방체신부의 지불금 그리고 서베를린과 관계된 지불금(오물 및 하수제거, 지하철 및 전철 협정) 등의 총 실제지출비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상호간의 용역사업 거래에서 서독이 흑자를 보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자유통화”에 의한 지불 때문인데, 특히 서독측이 얻은 여행수입이 그 주를 이루었다. 이 수익금은 88년도에 5억 DM 였다가, 89년에는 27억 DM으로 급증하였는 바, 그중 24억 DM가 동년 제4분기 안에 획득한 금액이었다. 서독방문객들의 소비물품 구매가 동인으로 작용한 이 여행수입은 원칙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의 물품거래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응하는 결산상의 항목은 동독으로의 이전지출로 정리되어 있다. 그 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방단체에서 동독 방문객들에게 지불한 지원금은 88년도에는 4억 DM에 불과하였으나, 89년에는 약 24억 D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작년 “자유통화”로 일괄 통과비 5억 2천 5백만 DM, 도로 사용료 5천만 DM, 체류허가 수수료 4천 5백만 DM이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이 밖에도 동독은 Genex-선물판매점에서만도 2억 5천만 DM의 수입을 거두었다. 반면 서독에 거주지가 있는 자들은 적립금 봉쇄-협정(Sperrguthaben-Vereinbarung)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동독내 은행구좌로부터 4천 7백만 DM를 서독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다. 89년도 전체 이전지출 결산에서 서독은 전체 33억 DM의 적자를 보았는데, 전년에는 13억 DM이었다(일괄적으로 계산된 동독에 대한 특별지불금은 화폐 경제 사회통합과 더불어 그 시효가 만료된다. 예를 들어 90년도에 8억 6천만 DM으로 인상된 일괄 통과비와 적립금 봉쇄 협정이 이에 해당된다).

동독과의 지불거래

통계에 나타난 89년도 동독과의 자본거래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88년에는 6억 DM이 유출됨). 서독측이 이용한 연방은행의 Swing 신용대부는 9천 7백만 DM 정도에 그쳤으나, 90년 상반기에 가서는 큰 변화될 치루게 된다. 90년 6월말 동독은 약 5억 DM의 Swing 신용대부를 제공받았다. 통합조약내 협정에 따라, 이 최종결산 잔액은 고정지불 거래 종료와 함께 동독측에 의해 정산되었다.

|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      |       |  |                             |
|----------------------|------|-------|--|-----------------------------|
| 단위 : 10억 DM/정산단위(VE) |      |       |  |                             |
| 항 목                  | 1988 | 1989. |  |                             |
|                      |      | 이 중 : |  |                             |
|                      |      | 총 액   | 고정지불거래<br>(gebundene<br>Zahlungsverkehr) | 자유화폐<br>(freie<br>Waehrung) |
| I. 경상수지              |      |       |  |                             |
| 1. 물품 및 용역사업 거래      |      |       |  |                             |
| a) 물품교역(보충품목 포함) :   |      |       |  |                             |
| - 동독으로의 반출           | 6.5  | 7.3   | 6.4                                      | 1.0                         |
| - 동독으로부터의 반입         | 6.4  | 6.7   | 6.7                                      | 0.0                         |
| - 결 산                | 0.2  | 0.6   | -0.3                                     | 1.0                         |
| b) 용역사업 :            |      |       |  |                             |
| - 수 입                | 1.9  | 4.2   | 1.3                                      | 2.9                         |
| - 지 출                | 2.5  | 2.9   | 1.1                                      | 1.8                         |
| - 결 산                | -0.6 | 1.3   | 0.2                                      | 1.1                         |
| 이 중 :                |      |       |  |                             |
| - 운송사업 :             |      |       |  |                             |
| · 수 입                | 0.6  | 0.7   | 0.7                                      | —                           |
| · 지 출                | 0.2  | 0.2   | 0.2                                      | —                           |

|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      |       |  |                             |
|----------------------|------|-------|--|-----------------------------|
| 단위 : 10억 DM/청산단위(VE) |      |       |  |                             |
| 항 목                  | 1988 | 1989  |  |                             |
|                      |      | 이 중 : |  |                             |
|                      |      | 총 액   | 고정지불거래<br>(gebundene<br>Zahlungsverkehr) | 자유화폐<br>(freie<br>Waehrung) |
| - 여 행(1) :           |      |       |  |                             |
| · 수 입                | 0.5  | 2.7   | —  | 2.7                         |
| · 지 출                | 1.2  | 1.4   | —  | 1.4                         |
| - 일괄지불 우편요금 :        |      |       |  |                             |
| · 지 출                | 0.2  | 0.2   | 0.2                                      | —                           |
| 물품 및 용역사업 거래의 결산     | -0.4 | 2.0   | -0.1                                     | 2.1                         |
| 2. 이전 지출(무보상)        |      |       |  |                             |
| a) 민간 부문 :           |      |       |  |                             |
| - 서독으로의 이전           | 0.1  | 0.1   | —  | 0.1                         |
| - 동독으로의 이전           | 0.3  | 0.4   | 0.0                                      | 0.4                         |
| - 결 산                | -0.2 | -0.2  | -0.0                                     | -0.2                        |
| b) 공공 부문 :           |      |       |  |                             |
| - 서독으로의 이전           | —    | —     | —  | —                           |
| - 동독으로의 이전           | 1.2  | 3.0   | 0.1                                      | 3.0                         |
| - 결 산                | -1.2 | -3.0  | -0.1                                     | -3.0                        |
| 이 중 :                |      |       |  |                             |
| - 일괄 통과금             | 0.5  | 0.5   | —  | 0.5                         |
| - 방문 동독인에 대한 지불(1)   | 0.4  | 2.4   | —  | 2.4                         |
| 이전지출금 합계 :           |      |       |  |                             |
| - 서독으로의 이전           | 0.1  | 0.1   | —  | 0.1                         |
| - 동독으로의 이전           | 1.5  | 3.4   | 0.1                                      | 3.3                         |
| - 결 산                | -1.3 | -3.3  | -0.1                                     | -3.2                        |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단위 : 10억 DM/청산단위(VE)

| 항 목                                   | 1988 | 1989  |  |                             |
|---------------------------------------|------|-------|--|-----------------------------|
|                                       |      | 이 중 : |  |                             |
|                                       |      | 총 액   | 고정지불거래<br>(gebundene<br>Zahlungsverkehr) | 자유화폐<br>(freie<br>Waehrung) |
| 경상수지<br>(서독의 적자 : —)                  | -1.8 | -1.3  | -0.1                                     | -1.1                        |
| Ⅱ. 자본수지<br>(자본 반출 : —)                | 0.6  | 0.1   | 0.2                                      | -0.1                        |
| 이 중 :                                 |      |       |  |                             |
| 독일연방은행의 Swing 대부                      | 0.4  | -0.0  | -0.0                                     | —                           |
| Ⅲ.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결산<br>(동독으로의 자금유출 : —) | -1.2 | -1.2  | 0.1                                      | -1.3                        |

주) (1) 일부는 추정액임.

합계상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함.

연방은행

## '92~'93 재정현황과 통독이후 재정정책상 문제점

- 0 통독이후 양독지역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정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우선 어떤 재원을 동원해야만 독일 전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구 동독지역의 재건과 구조개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근 논란이 되었음.
  - 현재 연방정부는 통독이후 '91.7.1 - '92.6.30 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에 7.5 % 추가과세를 했고, 석유세, 보험세, 담배세를 인상했으며, '93.1.1 부터는 부가가치세를 1 % 인상(14 % 에서 15 % 로) 할 계획이나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연방정부는 재정정책의 기초를 추가적인 세금인상보다는, 예산절감에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예산절감조치는 구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구 서독지역 특정부문과 계층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 예산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대화는 구 동독의 재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구 동독지역 재건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출 자체를 줄일 수는 없음.
- 0 예상되는 '92 과 '93 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92년 현재 주민 1 인당 세출예산액은 구 서독지역이 7,100 DM, 구 동독 지역이 6,100 DM 인데 반해, 주민 1 인당 세입액은 구 서독지역이 4,600 DM, 구 동독지역이 1,300 DM 임.

\* 통독비용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한 독일경제연구소(DIW)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이로 인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총적자액은 '91 에 1,230 억 DM 이었으며, '92 에 1,140 억 DM, '93 에는 1,010 억 DM 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연방정부의 경우 '93 정부 제출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액이 4,350 억 DM 으로 '92 에 비해 2.5 % 가 인상되었으며, 연방적자액은 '91 과 '92 에 비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 \* 연방정부 예산안중 세입부문에서는 서독지역 경기호황으로 연방정부 주 세입원인 소득세 세입이 늘어 났으나, 세출부문에 독일통일 기금이 '92 에는 280 억 DM 에서 340 억 DM 으로, '93 에는 200 억 DM 에서 315 억 DM 으로 각각 늘어 났고, 구 동독지역 교통망 정비 계획에 돈이 많이 들어 가 적자가 예상됨.
  - 구 서독지역 주 예산의 경우는 '92 재정적자가 190 억 DM 에서 130 억 DM 으로 줄어들었고, '93 에는 100 억 DM 이 예상됨.
    - \* 구 서독지역 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50 - 65 억 DM 의 적자가 '92 와 '93 에 각각 예상됨.
  - 구 동독지역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세입원이 여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독일통일기금이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92 적자액이 구 동독지역 주의 경우 150 - 190 억 DM,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0 - 60 억 DM 이 예상됨.
- 0 상기와 같은 재정현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매년 1,000 억 DM 의 정부기관 (연방, 주, 지자체) 적자가 예상됨.
- 아울러 구 동독으로 부터 승계한 재정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특별자산계정)로 "채무청산기금" (Kreditabwicklungsfond) 과 신탁청

인수기업의 재정부담분 이자액에 계상되어야 하는 바, 매년 500 억 DM 이 예상됨.

- 0 지속적인 적자재정정책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므로 상기의 지출액들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세입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DIW 경제연구소의 결론에 의하면, 추가적인 세금인상이나 특별부과금의 인상없이 안정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DIW 연구소는 그러나 세금인상으로 인한 구 동독지역에 대한 부자 위축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소득세 인상을 제의했음.
  - 지난 1 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소득세에 대한 추가과세는 석유세와 같은 소비세의 인상보다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또 구 동독지역 경기활성화에 따라 세입이 증대되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봄.

#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연방재정건실화 방안”

## 1. 개요

- o 1993.1.20 집권연정인 기민, 기사, 자민당은 최근 수개월동안 야당, 기업가, 노조측과 협의해 온 통일비용 조달 (구동독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한 “연대협정”(Solidarpakt)의 일환인 “연방 재정건실화 방안”(Foederales Konsolidierungsprogramm)을 의결함.
- o 동 방안은 구동독으로부터 승계한 부채상환 방안, 연방과 각주 간의 재정 균형화 방안, 공공지출 삭감 계획, 세금감면혜택 축소, 연대부과금 제도의 1995년 재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를 통해 1995년부터 연간 약 1,100억 DM의 재원을 마련
- o 집권연정은 야당인 사민당, 기업가, 노조측과 동 방안에 관해 계속 협상해 나갈 계획임.

※ 각계반응은 통일과정 주간동향(800-43) 참조

## 2. 주요내용

### 가. 구동독 채무 청산 방안

#### (1) 구채변제기금설치

- o 1995.1.1 부터 구채변제기금 (Erblastentilgungsfonds)을 설치, 구채원리상환부담을 연방으로부터 인수, 신용청산기금 및 신탁청과 약 4천억 DM의 구채 청산 의무를 분담

#### (2) 신용청산기금 (KAF)

- o (93년말 해산될 예정이었던) 신용청산기금을 1994년말까지 연장 운용
  - 연방정부 및 신탁청으로부터 각각 반씩 인수할 1994년 이자 부담액은 약 120억 DM 임.

\* 연대협정 (Solidarpakt)의 일환으로 의결한 “연방재정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3) 신탁청

- o 1994년말 신탁청 해체 시점까지 신탁청 소유로 남은 기업체는 연방산업재산으로 정비하여 사유화시킴.
  - 이로인한 추가부담은 1995년부터 매년 30억 DM 씩 연방예산에서 충당

(4) 주택산업의 구채 문제

- o 약 510억 DM의 구채에 대한 상환유예기간이 94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자체 수익으로 구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지원대책이 불가피함.
  - 연방과 신설 5개주가 주택건설부채 일부에 대한 이자지불을 인수하고, 일정기간동안 나머지 부채에 대한 시한부 이자부담을 자치단체와 분담함.

※ 이자분담계획

단위 : 십억 DM

|           | 1994 | 1995 | 1996 |
|-----------|------|------|------|
| 연방        | 1.5  | 1.1  | 0.7  |
| 동독지역주     | 1.5  | 1.1  | 0.7  |
| 동독지역 자치단체 | 1.3  | 0.7  | 0.4  |

나. 연방 각주간 재정형평 및 연방과 주 간의 공정한 부담조정

통일조약에 의거 1994년말까지 유보한 신설 5개주에 대한 주정부간의 재정형평원칙을 1995년부터 적용, 이를 위해 1995년부터 연방정부가 매년 약 600억 DM을 신설주에 지원

- (1)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균형
  - o 기본법 (제 107조)에 의거, 1995년에 약 210억 DM의 재정지원으로 신설주의 재정자립능력을 평균 85%로 제고
- (2) 적자 보전 대책
  - o 연방정부가 주정부간의 재정균형화를 위한 적자보전을 위해 1995년 70억 DM을 지원
    - 이를 통해 16개 주는 최소한 평균 95% 이상의 재정자립능력을 갖게 됨.
- (3) 연방특별부담
  - o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을 위한 재정보조를 위해 베를린을 포함한 신설주에 대해 1995년 325억 DM을 지원함.
    - 이 중 3분의 2는 “특별수요보전액” (Sonderbedarfs-Ergaenzungs-zuweisungen), 나머지 3분의 1은 “재정지원”으로부터 충당
- (4) 과도기 연방보전자금 (Uebergangs- Bundesergaenzungszuweisungen)
  - o 재정상태가 취약한 서독지역주 (자블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들은 5년간의 과도기 동안, 연방보전자금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함.
    - 이를 위해 1995년에 25억 DM을 배정하고 그후로 점차 줄어 나감.
- (5) 브레멘 및 자블란트주를 위한 배정
  - o 브레멘과 자블란트주의 정비를 위해 95년부터 5년간 매년 총 25억 DM을 배정하여 3:2 비율로 분배함.
- (6) 철도 - 승객 교통사업의 주정부 이관
  - o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지방 철도 - 승객교통 사업을 주로 이관

- (7) 공공 승객 수송업부의 주정부이관
- (8) 주정부의 EC 재정 부담 참가
  - o 1995년부터 주 EC 재정부담금을 부가가치세 본배비율로 연방과 주정부가 분담
    - 1995년 연방부담금 중 20억 DM을 주들이 부담
- (9) 부가가치세 수입분배율의 조정
  - o 연방과 주간의 총부가가치세 수입 분배율을 현행 63:37 (연방:주)에서 67:33으로 변경

#### 다. 공공지출 삭감

- (1) 공공분야
  - o 연방단위 부서에서의 인원감축: 1994, 1995 매년 약 1%,
    - ※ 94년 1억 천만 DM, 95~96년 2억 2천만 DM씩 절감
  - o 봉급 및 세제상의 특별수당 축소
    - ※ 93년 4억 3천만 DM, 94년 4억 4천만, 95년 4억 5천만, 96년 4억 6,500만 DM 절감
  - o 후생복지비 및 직책수당 관련 법규 재검토
- (2) 국방
  - ※ 전체적으로 93년 3억, 94년 7억, 95년 7억 절감
  - o <sup>인간분야 근무자의</sup> 의무 군복무기간 을 15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함에 따라 추가된 예산을 연장이전 수준으로 삭감.
  - o 계약직 군인 및 직업군인에게 4개월제부터 본봉(Besoldung) 지급 (3개월까지는 낮은 급료 지급)
  - o 육군 및 민간분야 병역의무수행자 (종교적,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전역금 감축 (2,500 DM → 2,000)

- o 의무병 휴가비 축소 (2회 → 1회 지급)
  - o 육군의 연방철도 및 제국철도 이용권 축소
- (3) 농업보조금
- o GATT 협상 및 EC 농업개혁에 의거하여 농업보조금 축소
    - ※ 93 ~ 95년 매년 3억 6천만 DM 씩 절감
- (4) 석탄산업
- o 1995 ~ 97 간 석탄산업 기금 축소
    - ※ 95년 2억 8천만, 96년 4억 5천만 절감
  - o 석탄산업 특별 보조금을 재검토, 1996년까지 연방예산지출에서 2억 5천만 DM 절감
  - o 광부주택 건설용 부지를 사유화, 수익금을 연방예산으로 편입, 다른 사업에 전용
- (5) 경쟁력 제고 보조금
- o 경쟁력 보조금 계획의 확대·개편 범위를 축소
    - ※ 93년 6천만, 94년 7천만, 95년 3천만 DM 절감
- (6) 임금
- o 임금협상당사자들은 산업분야 및 경제상황을 고려, 임금보조금 인상 요구를 자제
- (7) 자녀양육비
- o 생후부터 월 600DM 씩 지급하는 자녀양육비를 94년부터 첫달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금까지는 생후 7개월부터 소득수준과 연계 차등 지급 -
    - ※ 93년 1억 4천만, 94 ~ 96년 각 5억 DM 씩 절감

(8) 연방교육촉진법

- o 94년에 있을 교육보조금 및 관련세금공제에 대한 수정을 96년까지 2년간 연기
- o 학생수료보조금 (졸업증명서를 받는 학생 대상)을 93.9.31 이후 폐지
- ※ 94년 1억 5천만, 95년 4억 5천만, 96년 3억 DM 절감

(9) 주택수당

- o 주택수당 신청대상에서 고소득층 제외
- o 소득 - 주택임대료 비율에 따른 주택수당 조정 범위 재검토
- ※ 93년 1억 8천만, 94년 4억, 95 ~ 96년 각 6억 DM 절감

(10) 임금보상

- o 노동촉진법에 따른 임금보상금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녀 1명 이상) 실직자의 경우 1%, 그외의 실직자는 3% 씩 삭감
  - 실업부조금 을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는 최종 본봉의 58%에서 57%로, 여타 실직자는 56%에서 53%로 삭감
  - 실업수당 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68%에서 67%로, 여타 실직자의 경우 63%에서 60%로 삭감
  - 약천후수당 (11월 1일 ~ 3월 31간 날씨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된 건설노동자 등에게 일을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해 지급)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경우 본봉의 68%에서 67%로 기타의 경우 63%에서 60%로 삭감
  - 단축조업수당 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68%에서 67%로 여타의 경우 63%에서 60%로 삭감
  - 노인 존연금 (구동독지역의 55세 이상 노인에게 1991.7.1이후 실직할 경우 5년 동안, 또는 길어도 연금수혜시까지 지급)을 최종 본봉의 65%에서 62%로 삭감

- 상기 실업관련 수당삭감은 실직신고의무제 도입 및 남용방지 대책수립을 통해 구체적 절감 계획이 확정되는 1993.5.15 이후에 실시

- 생계보조금 및 존연금을 실업수당수준으로 삭감

※ 93년 9억 5천만, 94년 32억 5천만, 95년 32억, 96년 33억 DM  
절감

(11) 불법취업 및 사회보장남용 방지

- o 연방고용청이 불법 취업 및 사회보장기여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2) 망명신청자 사회부조금

- o 망명신청중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부조금을 25% (만 7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10%) 삭감

(13) 일반 사회부조금 조정

- o 최근 수년간 사회부조금이 임금보상수당 또는 저소득층의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되어,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

- 1980 ~ 1991년간 주요기준지표가 다음과 같이 상승함

- o 물가: 약 30 %

- o 4인 가계기준 사회부조금 및 생계보조금: 각각 54 %, 58 %

- o 평균 본봉급: 42 %

※ 93년 7억, 94년 1억 4천만, 95년, 96년 각각 1억 6천만  
DM 절감

(14) 기타

- o 구서독지역의 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개선 3단계 계획을 연장실시

- 93년 5억, 94 ~ 96년 매년 10억 DM 절감

- o 주택쓰레기 처리기술 대체 계획을 8년에서 중기계획으로 변경
  - 93년 2억, 94 ~ 96년간 약 6억 DM씩 절감
- o 수영장 용수처리 시설 의무 조항을 공공수영장에만 적용
  - 94 ~ 96년간 약 3억 DM씩 절감
- o 건축가,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수당 제한
- o 국가독점 측량 사업의 민영화 검토
- o 연방 및 주의 통계사업 축소
- o 사회보장 관련행정, 소송비용, 벌금, 부동산등기 수수료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 라. 세금감면혜택 축소

- ※ 세금감면범위 축소 및 세율인상을 통해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1995년까지 68억 DM 증가
- o 외국인 투자기금에 대한 이자세 부과
- o 1995.1.1부터 사유재산세 0.5% 인상
- o 보험세를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인상
  - 1993.7.1부터 현행 10% 내에서 12%로 인상
  - 1995.1.1부터 15%로 인상

#### 마. 연대부과금 (Solidaritaetszuschlag) 재도입

- o 1995부터 임금, 봉급, 법인세에 대한 초과부과금 도입, 효율 및 소득수준연계문제는 추후 검토
  - 1991.7.1 ~ 1995.6.30 간 실시된 연대부과금의 경우 자녀 2명인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연 총임금 36,000 DM 이하는 면제됨.

바. 도로사용료 부과

- o 철도분야 구채청산 자원 (매년 120 - 140억 DM) 마련을 위해  
1994 부터 자가용 및 화물차에 대해 도로사용료 부과
  - 부족할 경우 유류세 인상

## 통일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

서 언

경제정책의 핵심은 두가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첫째는 경제를 다시 성장 코스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동부독일(Ostdeutschland)의 경제체제를 신속히 개조하여 경쟁체제하에서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전례없는 하나의 도전이다. 이 과제는 새시대를 향한 약진의 흥분을 자아내었으며 새힘을 솟아나게 하였다. 물론 통일은 설부른 기대와 희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신설5개주내 사회간접시설과 경제재정 구조는 너무도 취약했으며, 세계시장과의 격차 또한 컸다. 지시경제(Kommando-wirtschaft)에 의해 개인 주도사업과 책임있는 사업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유 재산제도는 말살되었으며 민주·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행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야 비로소 밝혀지기 시작했다.

통화개혁은 현금 및 예금소지자나 서독 DM으로 금여를 지불받는 근로자와 퇴직자들에게 희망찬 새출발을 의미하였으나 경제계로 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어지는 연 20%의 임금인상률은 - 아무리 건설한 경제구조체제라도 이러한 임금 인상폭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인 바 - 경쟁력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생산 특히 국제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서의 생산을 퇴조시켰다.

연방정부는 신설 5개주와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초적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서부 독일의 사회보장망의 이전 적용, 구동독 잔재의 인수, 행정조직구축에의 참여외에 경쟁상의 불이익을 조정하고 경제부흥을 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일보 경제성과가 있긴 했지만, 신설 5개주가 자율적인 성장과정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 독일연방 경제성 장관(Moellemann)이 92년 9월 발표한 독일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임. (부제 :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전략)

## 시 련 기

경제·화폐·사회통합과 통합조약 체결 2년이 지난 오늘 독일경제는 난국을 겪고 있다. 동부독일의 성장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건축 호경기는 아직도 대부분이 재정지원(Transferleistung)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이후 급격한 성장이 있었던 후로 서부독일에서는 경제가 현재 침체상태에 빠져 있고, 대부분의 경기 지표는 하향선을 보이고 있다.

전체경제력에 계속적인 무리가 가해질 위험이 있다. 통일과정과 함께 본배분제를 둘러싸고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출요구액수가 분배한도선, 즉 산업생산 및 용역 생산고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신설 5개주에서의 요구사항은 경제생산력과는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 서부독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임금수준으로의 신속한 형편개선은 서에서 동으로의 재정이전과 동시에, 서부독일내에서의 요구사항의 억제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데 후자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반대로 서부독일에서도 임금상승율은 생산성 증가폭을 현저히 상회하였다. 신설 5개주를 위한 정부지원은, 서부독일내에서의 지출감축이라는 부분적인 재정수단의 조정을 통해서만 이행되어 오고 있는 데, 이는 결국 부채의 추가증대를 의미한다.

생산력에 준하여 분배를 해야한다는 단순원리를 인정치 않으려는 끈질긴 시도들로 인해 불가상승, 임금상승 및 고용의 이윤이란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서부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서독경기가 계속 하향선을 굽게 될 경우 서에서 동으로의 지원은 힘들어 질 것이며, 또한 동부독일내 투자 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 것인 바, 왜냐하면 투자란 항상 경제확장 국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서독시장으로의 동부독일업체들의 진출이 어려워 질 것이다. 이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갈 파국을 의미하며, 나아가 경제·사회·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경고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악순환을 방지하고 성장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다. 자기파괴적 분배투쟁은 경기침체의 조속한

극복, 신설 5개주 재건, 통독의 경제잠재력 심분활용을 통한 사회환경조건의 개선을 하자는 공동의 의지에 의해 대체되어져야 한다.

독일을 산업입지로 구축하고 주변의 투자관심을 더욱 끌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과거 사례

80년대초 실업자수는 90만(80년)에서 2백 30만(83년)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써 정부부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양상을 보였다. 82년 가을 신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쓰라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연금인상을 당분간 중지했으며, 공공 업무분야에서의 임금상승 억제, 양육비와 학자금 융자폭 삭감 등의 조치를 실행시킬 수 있다. 반면 기업체는 조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극복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전후 독일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견줄데가 없는 지속적 경제부흥에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73년에서 82년까지 성장율이 15.1%에 그쳤던 GNP는 82~91년의 동 기간동안에는 28.5%의 현격한 실질성장율을 보였다. 91년까지 3백만을 헤아리는 일자리가 확충되었다. 임금억제정책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대효과를 가져왔다. 즉 근로자들은 실업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속적 경제성장은 다양한 법적규제의 간소화와 자율화 및 광범위한 세제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었다. 중요한 경험으로, 세제인하 조치가 세수의 감소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수증대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90년대의 정책을 구체화함에 있어 현 상황이 이러한 80년대초의 그것과 직접 비교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 구동동 경기부흥정책

신설 5개주내 건축, 수공업, 상업 및 여타 서비스업 구조가 나날이 개선되고 국가 기업의 사기업화 및 이에 따른 신규설립 조치가 긍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회전체발전 정도는 아직 불만족스런 실정이다. 그간 취업인구수가 약

4백만이나 줄었다. 해고사태가 신규채용수보다 아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종의 생산고는 1/3이나 줄어들었다. 작년 국내총지출은 3천 5백억 DM으로 1천 9백 5십억 DM인 GNP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폭은 오히려 - 특히 임금 및 언급상승으로 인해 - 커질 것이다. 서부독일에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정확충면에서도 격차는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91년 신설 5개주 취업자 일인당 부자액은 서독지역의 그것과 비교 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경제성장력이 서독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설 5개주내 취업, 생산 및 생산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구동독이란 경제입지가 국내외 부자가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의 실현에는 모든 사회책임 계층과 신설 5개 주민들의 막대한 노력 및 서부독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서독 법체계의 적용, 단일화폐 및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따라 다음 3가지 사항이 국가차원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공공행정체제의 조속한 개선 및 경제구조 개편의 가속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환경오염분야의 정화사업은 앞으로도 수년간에 걸쳐 서부독일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과 서독 각주들은 추가적 재정수단을 확보하고 재정균등원칙에 의해 신설 5개주들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독일의 주들과 지방단체들은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분야로 이전해야 될 것인 바, 그중 특히 상하수 분야, 쓰레기 처리 및 공공단거리 대중교통 수단 분야 등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재정의 충당 능력이 곧 그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방안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점과 관련 신설 5개주와 지방단체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부자가 지연되거나 좌절된다든지, 재산이전 및 토지측량이 안된다든지, 건축계획이 빠진다든지, 입안 및 인·허가 절차가 오랜 시일을 요한다든지의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구동독내 지방단체와 주들은 통합조약에 예정된 건축계획절차의 간소화계획을 활용해야 하며, 건축규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연방과 서부독일 주들의 인력지원을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 지원책은 확충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각 주·부자가·노사협정 담당자들 및 신탁청과의 공동작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개편을 지원하는데 있다. 입지확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추가지원방안, 유럽개발계획용자 및 사유재산 형성지원방안 등의 부자장력책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되어야 함은 불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동독은 잠정적이거나 조세혜택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공제조처나 영업자산 및 재산세 따위와 같은 수입과 무관한 세금들의 한시적 유보조치는 94년 이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특수공제조치는 곧 있을 조세 개혁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각 분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추가인상 방안을 우선시 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우려가 - 특히 필수적인 재정 상쇄책을 근거로 -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규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

핵심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지원이 요청된다. 산업분야에서는 장기적인 취업저조 현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세무자의 과중부담과 장기재정지원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영기업의 만들자는 정치적 압력 또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정책 및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최소한도의 근로자와 재건이 가능한 업체 일부는 산업구조 재편 달성시까지 생존토록 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신속히 사기업화 해나가는 작업은 정당한 처사이다. 이때 신탁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업체의 재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탁청은 시간 및 재정상 실효성이 있는 업체재정비 방안만을 승인하되, 끊임없이 경영진의 사업정책에 간섭을 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일자리 하나를 확충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며, 이로 인한 신탁청의 적자는 - 현재 추정에 따르면 - 95년까지 2천 5백억DM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높은 생산성에 따른 고임금 및 예상되는 임금인상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산업제 인수자들은 인수가격의 대폭적인 인하와 재고부담 및 종업원 해고제약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줄 비용을 신탁청이 전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사유화와 더불어 곧바로 경쟁력을 띄게 될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이다. 신탁청에서 손실을 인수해야 할 경과가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서,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이겨낼 것인지의 본제가 판가름 날 것이다. 물론 이미 사기업화된 업체들의 현상향과 미래에의 전망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체 독일에서의 경기침체 및 부자감소는 기업사유화에 드는 비용과 사업체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비용을 계속 증대시킬 것이다. 이로써 신탁청은 곧 재정부담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바, 이는 납세자 및 국가제정에의 추가부담을 뜻한다. 경제·사회적으로 위험요인이 되는 이러한 사태발전은 방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순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기의 진전상황, 노사협약정책, 특수생산품에 대한 수요 및 기타요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실업보장 비용에 대한 근로자의 부분 부담을 들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 서부 독일에서도 -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이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해결책은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경제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장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 나은 방법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불가피한 구조변화를 위한 창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 노사협약정책

현재 독일의 실업자수는 약 5백만명에 달한다. 개방된 경제체제가 가져오는 취업 문제는 신설 5개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장거리 통근자, 서부지역으로의 취업이전, 생산지 이전 및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취업을 저조현상은 전체 독일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실업율의 주책임은 노사협약 당사자들에게 있다. 노사협약 당사자들은 다년간에 걸쳐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난 2년간의 임금협정은 이러한 원칙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신설 5개주에서는 임금을 서부독일의 수준으로 대폭 상승조정하려는 방침을 추진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임금과 생산성간의 차이는 64%에 달하게 되었다. 서부독일에서의 임금인상을 또한 생산성의 성장폭을 웃돌고

있다. 임금이 수익에 과중부담을 끼치면서까지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그사이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걸맞지 않는 처사이다. 붕독과 더불어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현저한 자본결핍현상을 초래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시장경제 조건하에서는 고금리 추세를 야기시키는데, 이에 따라 임금인상에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서부독일에서도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어질 수 있다. 급속한 임금상승은 판매 감소, 부진한 투자, 불확실한 고용상황 외에 개별업체나 심지어는 해당사업분야 전체의 해고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보수, 교통망 및 통신망의 현대화, 산업건물 개선 및 확장, 재고청산, 병원·양로원의 현대화 및 재설비작업 등 신설 5개주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 특히 여성실업자 - 수가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하겠다.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방안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지들이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가는 현상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증대하고 있다. 노사협약 당사자들과 지방자치단체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정책의 재고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서부독일 근로자들은 붕독과 더불어 실수입증가의 여지가 축소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부독일에서도 다시 투자가 활발해지고 새일자리 및 보충일자리 마련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금인상율은 일시적으로 생산성 상승율보다 낮아야 한다.

신설 5개주에서는 91년 일인당 임금비용은 서부독일보다 약 70% 가량 높다. 따라서 동부독일의 임금인상 및 업무능력은 점차 단계적으로 서부독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별 해당업종별 및 개별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임금자등제의 도입을 들 수 있겠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 업체 및 직종의 임금은 평균치를 넘어설 수 없다. 개편과정상 시간이 요구되며 취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임금인상은 평균치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이러한 차등제 임금정책은 근로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제 성장 및 취업기회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

- 부자성 임금(Investivloehne) 및 이익배분에의 참여는, 고용보장책의 일환으로 임금상승률을 경영의 실행편에 맞게끔 조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수익배당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폭을 넓혀주기도 한다.
- 일부 노사협약안이 명시하고 있는 수정조항은, 앞으로 있을 임금인상 추이를 고용정책상의 현실여건과 가급적 일치시켜 나가는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 재정난에 처한 기업은, 근로자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와의 상의하에 현재 적용되는 노사협약을 기한부로 변경시킴으로써 폐업사태를 막도록 해야 한다.
- 가을에 초안이 의결될 새근로시간법에는 개인별 근무시간제를 유동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막중한 신설5개주 부흥과제와도 관련하여 기업체는 공장조업시간과 기타 사무운영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계속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의 진전 때문에 생산, 기계가동시간과 개인별 근무시간은 서로간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간의 의견규합과정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첫번째로 주당근무시간이 원래 규정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이를 다음 기회에 상쇄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주중 근무시간제의 수정방안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술상의 이유로 쉬지않고 제조·생산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밀요일 및 휴일근무를 용인토록 해야 한다. 노사협약내에 관련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는 업체별로 노사자율규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처리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동적 근무시간제는 많은 근로자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예산정책

통독으로 인한 급격한 정부부채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예산상의 위험 요인(보상법, 연방철도 / 구동독철도, Hermes 보증, EC-기금, 신설 5개주의 환경 개선사업, 사회보장지원금)과 준예산(통독기금, 부채정산기금, 신탁청)에 따른 부담을 종합해 보면 부채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됨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연방경제성 소속 자문위원회는, 공공예산의 이자부담 증대가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다 더 좁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것이 결국은 신설 5개주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또한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부채총액의 과도한 증대는 자본시장에 큰 부담을 끼칠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여건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가중되는 부채를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없다. 차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 현시점까지만 계산하여 -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신탁청을 일례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모드르우정부는 구동독 소유 국가재산을 1조억에서 16조억 DM으로, 서부독일기관은 반면에 6천억에서 1조억 DM으로 산정한 바 있다. 후자 역시 실제보다 높이 측정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 형편으로는 기업제와 토지의 정산 대변액이 수천억 DM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작금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제재산 매각후 신탁청과 정부예산이 오히려 2천 5백억 DM 상당의 재정적자를 입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구자본의 가치 전하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실로서, 매각수입의 상당부분이 경제성 없는 일자리의 확보를 위해, 다시 말해 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축내가며(Substanzverzehr) 지급되는, 그럼으로써 후세대에 많은 채무(Kreditaufnahme)를 안겨주게 되는 임금지불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방, 주 및 지방단체들은 본 예산에서뿐만 아니라 부속예산에 걸쳐서도

- 동부독일 경제부흥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마련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어야 한다.

- 현재 급선무는 지출증가를 제한하는 일이다. 세금 및 기타 공과금 인상은 성장, 취업 및 안정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다. 연방경제성 소속 자문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세금인상 없이도 긴축재정은 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물론 예산에 부담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의 공과금 재편성 작업이 포함된다. 지출을 줄이고, 지원을 삭감하고, 공공업체를 사유화하고, 국가소유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설 5개주에 대한 재정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경기변동에 따른 다시 말해 일시적인 수요 증대인지 아니면 장기성을 띠게 될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경기성 수요 증대로 판명될 경우는 실세 채무총액이 원래 책정폭을 약간 웃돌게 됨을 용인할 수 있다. 세금인상은 최후대책으로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조처이어야 한다. 붕독을 위한 재정엄출은 전체 독일의 경제성장 및 취업상황을 저해시켜가면서까지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 93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결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금번 회기말까지로 연장된 예산지출 유보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기타 지출 및 보조비 삭감은 필수적이다. 이는 예산구조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룩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지출비용과 조세혜택조치는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장기예산지원 상황이 동부독일에서도 또한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 사유화가 이미 결정된 국가참여지분의 매각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계획중인 독일연방제신부 사업의 사유화에 필요한 기본법 변경은 야당과의 협력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주와 지방단체들은 그들의 사유화 잠재력의 십분 발휘를 서슴치 말아야 한다. 각주는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주은행의 사유화를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
  - 연방예산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부자성 지출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약 2/3가 소비성으로 지출되고 있는 동부독일의 이전 재정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 각주와 지방단체 지출비 상승은 재정계획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서부독일주와 지방단체는 + 3%, 신설5개주와 지방단체는 + 7~+8%까지) 서부독일주에서도 예산구조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곧 확정될 신규재정 조정방침은 - 각주 및 연방의 능력을 고려하여 - 신설5개주에 대해서는 실수요액만큼 재정을 충당시켜 주도록 한다. 재정조정에 관한 협상은 더이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결말이 맺어져야 한다.

### 조 세 정 책

거의 전산업국가들이 세금폭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해서 독일은 부자가들에게 불리한 고세금국이 되었다. 독일이, 높은 임금과 취업율을 유지하면서도 부자유지에 적절한 입지가 되려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물론 이는 세수의 자동적 감소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경기위험 조짐을 감안할때, 법인세의 개혁이 가장 절실한 정부과제임을 지적한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공과금 내지는 세금부과는 환경보호상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원리에 부합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만 환경보호사업은 보다 값싼 비용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따른 공과금과 조세제도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때 공과금 부담액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져서는 안될 것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세금인하조치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실제수입이 증가되지 않음으로 해서 가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늘어날 것이며 또한 수입에서 차지하는 공과금 비율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자가와 소비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의 증대는 성장·고용·안정정책상 불안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 조세편성과정에서의 일시적 과중부담은 이러한 전체경제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서부독일 전체경제의 세금 및 공과금 부담은 약 43%(BSP에 의한 측정)로서, 이는 80년대 초반 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직접세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부자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열기에 가득찬 성취욕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된다. 또한 간접세 인상(특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은 세금-가격-임금으로 이어지는 연쇄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며, 독일연방은행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욱 심화된 긴축노선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 개인부자와 관련된 조세여건은 독일을 산업입지로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장과 고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조세여건에 관한 명백한 태도를 밝히고 국가역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2년 가을에는 법인세 개혁법 초안을 마련, 이를 가능한한 연말까지 의결토록 해야 한다.

조세개혁이 포괄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

- o 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내 최고세율은 44%로, 이익배당에 대한 세율은 30%로 인하
- o 기초공제액의 단계적 인상이다.

법인세 개혁에 따른 재정충당방안으로 degressive 감가상각을 제한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강구중인 모든 조세개편안은, 막상 그 법이 적용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을 늘려버리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 추가 감세조치의 일환으로, 전 독일에 걸쳐 수익과 무관한 세금(특히 영업자본세와 기업재산세)들의 감축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시의회(Stadttag)는 지방단체가 부가가치세 수익할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대응조치로 영업자본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용용성을 보였다. 이밖에도 지방단체의 석유세 수익할당 참여와 임금세 및 소득세에 대한 지방단체 독자규정의 추가징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체의 경우, 세대간 경영권 이전시 상속세 과중부과로 인해 폐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조세제도는 특히 환경보존사업을 감안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는 바, 이때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o2/에너지세나 석유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이 업체와 일반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다른 조세감면 조치를 통해 그 폭만큼 상쇄시켜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보호 공과금 도입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직접세를 인하하자는 방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존용 제품생산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세제개혁이 역진소득세의 방향으로 발전될 경우,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동시에 사업위험 요인에 따른 개인의 책임의식을 진작시켜 줄 것이다.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EC에서 합의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금융정책

불가안정은 시장경제질서의 정상화, 지속성장과 고용, 막대한 정부예산 절약을 위해 중요한 구실을 한다.

금융정책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정책과 임금정책이 전체 경제력에 과중부담을 가려오지 않도록 하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유동적 경제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임금정책이 안정과도를 찾아 조속한 시일내에 고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주안점이 된다.

### 기업민영화 및 규제완화(Deregulation)

사유화 및 비경제적 조처들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은 결국 국가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며,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 사유화는 이를 통한 수입과 진행중인 지원금을 절약함으로써 해서 공공예산의 부담을 덜어준다. 독점위원회(Monopolkommission)는 사유화를 통한 수익이 1조DM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

- 소유지분을 사유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결의는 보다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연방

철도와 구동복의 제국철도의 사유화와 체신사업의 부분적 사유화를 위한 기본법의 수정 및 고속도로의 사유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작업은 전체 경제에 각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독점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각 주와 지자체들도 각별한 사유화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산업체 지분이나 에너지 업체, 지방단위의 일반서비스업체, 지방금융기관 및 Radio/TV 방송망 등을 들 수 있다. 은행과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사유화로 해서 생기는 수익금만도 수천억 DM에 달할 것이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증대와 공공재정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공사회간접시설 건설은 민간부자에 의해 건설·운영되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례로 고속도로, 철도(Transrapid), 항구, 공항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그쳐서 될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사기업화의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특히 신설 5개주내 상·하천 분야 사회간접시설의 구축은 개인부자가들에 의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립내각내 "규제완화" 활동본과위의 작업을 기초로 연방정부가 발표한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30개항의 구체적 조치들은 93년초까지 해당 장관들에 의해 이행되어져야 한다.

후속 행정규제완화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은 이밖에도 EC 내수시장의 상황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바, 예를 들면 에너지 서비스 사업분야에서의 경쟁강화 추세와, 교통운수 분야에서의 서비스 및 영업소의 자율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위안 및 허가절차

관료적이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검사·허가 절차는 부자를 지먼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부자가들로 하여금 기피현상을 사게 한다. 한 예로, 대규모 화학단지를 설립하는데 벨지움의 경우 13개월, 일본은 20여개월, 서부독일의 경우는 무려 70개월의 허가·절차 시일이 소요된다. 복잡한 절차과정은 신설5개주의 새로이 구축중인 행정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절실히 요청되는 부자들을 막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입안 및 허가절차를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독일에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

- 교통부장관은, 교통망의 확충계획을 전독일에 걸쳐 행정적·법률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실질조처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 건설부장관은 92년 가을까지 주택지 증명 및 조성을 간편화해 줄 새로운 주택관계법을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행정법원상의 절차를 간소화해 줄 일련의 법률조치를 입안·제시해야 한다.
- 내부부산하 "법률 및 행정업무 간소화 전담 자율위원회"는 현재 신설 5개주를 대상으로 업체설립의 용이문제를 둘러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2년 가을에 제출되게 될 조사결과는 연방과 주정부의 참여하에 검토될 것이다. 이때 주와 지자체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가동하여 부자장애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모범으로서, 입안 및 허가절차를 6개월내로 끝마치도록 한다는 신설 5개주 경제장관의 성명을 지적할 수 있다.
- 연방정부는 92년 가을에 환경오염물질 방출억제법의 간소화 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금번 회기중 다음의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

- 유전공학관계법과 해당법령은 세계시장에서 드러나는 독일생명공학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전공학 설비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 경제부는 현재, 에너지 설비의 허가절차를 줄이고 동시에 110kv 이상의 고압선에 관한 일률적인 허가절차를 가능케 할 에너지 경제법을 보완·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환경관계조처들(예 : 오물관계법, 열사용법령, 환경적합성 심사 행정지침 등)로 인해 새로운 부자장애와 부수적 허가절차의 지연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적 안정정책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원칙은 취업율과 소득이 증가되도록 하는데 있는 바,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경제정책을 통해 예컨대 실업이나 불충분한 소득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의 발생을 막게 되고 또한 특수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망은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특수한 사회복지 대책은 사회복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해 책임감있게 수행되어야 하고, 이로써 "복지만능국가"(Fuersorgestaat) 때문에 개인의 이니셔티브나 능력창출태세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안정에 필요한 비용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능력창출태세와 능력발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취업과 실업 또는 연금 사이에 있는 엄격한 구분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생활로부터 연금생활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도 갑작스런 단절을 막아줄수도 있는 여러가지 신축성이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부대비용(Lohnzusatzkosten)은 대체로 독일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금보조비가 고유한 총액임금보다 단지 약간 낮기 때문이며 독일은 선진 산업국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적 급부제공을 확대 적용한다면 이는 지난날보다 국제경쟁력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노동비용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노약자 간호보험 제도, 질병보험제도, 연금보험제도, 실직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경제 창출력과 조화를 맞추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래의 인구학적 발전상태(연령피라미트)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드러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중압감은 도처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불법노동과 같은 변칙상태를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임금보조비가 추가노동에 대한 일종의 세금과 같아서 안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지출은 가능한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 할 것인바, 예컨대 근로자들의 해당보험료를 공제한후 보험금부능력에 대한 신청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연립정부는 노약자 간호보험실시에 따르는 위험부담 (Pflegerisiko)이 보험료 부담의 장기적이고 확고한 보상 (eine dauerhafte und verlässliche Kompensation der Beitragsbelastung)을 통해 모색된다는 조건하에 분담금에 의한 재원의 확보를 도입할 것에 합의하였는 바, 이로써 임금부대비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부대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시도는 실패하고 그 반대로 경쟁력 약화와 직장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상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계획된 노약자간호보험제도는 근로자들에게는 공식 노동에 대한 일종의 세금과 같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바, 그 이유는 추가적인 보험료 (예컨대 노동시간의 연장) 지불과 더불어 보험금부 능력이 더욱 개선되지 않는 때문이다. 만일 보험료가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력과 고용에 부담이 따르거나 또는 지하경제로 향하는 돌변반응과 같은 추가적인 압박이 일어날 수 있다.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분담금에 의한 재원확보 모델 (Umlagemodell)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대신 예컨대 개인보험과 같은 다른 해결방안이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연방정부는 1993년도 보건제도구조법 (Gesundheitsstrukturgesetz) 초안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무엇보다도 병원제도의 개혁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률과 더불어 닥아올 수년간 괄목할만한 비용절감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물론 이것만으로서 지병보험료의 장기적 안정이 이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장된 구조에 적절한 다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병원개혁 분야에는 일원적 재원조달과 같은 구조변경이 필요한데, 그 부자와 노약자간호비용은 개인 병원 소유자의 시장진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로지 노약자 간호요율을 통해서만 충당되도록 한다. 응급치료에 있어서는 비용변제원칙과 환자자체의 비용 부담과 같은 것이 책임감있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가격에 있어서는 불변가격제의 탈피, 유럽의약품시장의 개방과 재조정과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다. 질병보험은

효율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선택의 자유가 개선되어야 한다.

- 연금개혁법(Reuteureformgesetz)과 연금과도법(Reuteueberleitungsgesetz)은 1992년초에 그 효력을 발생했다. 독일연방 노동사회부의 계산에 따르면 보험요율(현재 17.7%)은 1994년에 연간 0.5%,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연간 0.1%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구학적으로 불리하게 될 시기 2010년부터 연금생활인들의 실질소득이 확보되는 가운데 안정되고 전체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개혁조치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1990년중에는 2명의 보험료 지불인이 1명의 연금을 재원조달했음에 비해 현상태를 감안한다면 2030년에는 1명의보험료 지불인이 1명의 연금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현재잔금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효력발생기간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조치는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후보장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는 가입자에게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 가능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때 될수 있으면 장기간에 걸친 근속 노동시간에 대한 매력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상 연금연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근속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계산상의 할증금과 할인금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상연금연령(연금생활 돌입연령)이 약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여성의 취업활동 증가 역시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연금신청시 자녀양육기간을 강력하게 배려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보험제도를 안정시키는 또다른 착안점이기도 하다. 현행 보험료와 보험급부는 이와 무관하며 그 반대로 미래의 보험급부는 달리 분배될 것인 바, 예컨대 자녀를 양육시킨 연금생활자는 앞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된 부분만큼 수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부분을 수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개인적 노후보장대책을 적시에 취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연금보험제도가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여 공고히 형성된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이나 독신 양육자의 형편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다.

### 주택 정책

주택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간접적으로는 구동독지역의 고용기회를 증대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대부분의 조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사정이 개선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대책이 긴급한 것들이다 :

- 지자체내에서는 더 많은 대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개발비용은 즉시 대지 소유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토지세가 순수한 대지세로 변경되고 과세근거는 시기에 적절하게 확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민간투자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보다 수월하게 대처토록 하고, 60년 내지 그 이상에 달하는 오랜기간동안 보다 많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초당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대료 결정과 같은 사항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주택부자는 임대차 권리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주택건설이 가속되기 위하여서는 건축규제법(Bauordnungsgesetz)이 단순화되어야 할 것인 바, 예컨대 일가족용 주택과 2가족용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사회복지주택건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주택의 부적각 임대자에 대한 임대공과금(Fehlbelegungsabgabe)은 철저히 비교임대료에 기준하여 책정되도록 해야한다. 이에 병행하여 임대공과금은 동시에 인하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이 원칙은 그 효력이 만료되는 사회복지주택 구입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거비용의 절감은 임대자와 소유자 모두에게(물론 사회복지주택 이외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주택보조금(Wohngeld)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보조금으로의 재원의 목적전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신연방주에 있어서 건설업, 수공업, 가구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sup>건축의</sup> 현대화 및 수리를 촉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부대비용에 있어 수리비용의 5.5%(현대화의 경우 11%)와 기본임대료의 최고 30%까지라는 제한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구나 임대자가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기업의 민영화가 확고한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칙적으로 자본제공은 서독에서처럼 평균적인 이자부담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그 부담이 높을 경우에는 규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지자체의 조합(Kommun)이나 기타 개인회사를 대상으로한 민영화 1단계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민영화의 2단계, 즉 임대자에 대한 개별주택 매각이 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위험이나 불안이 따르지 않도록 확고한 준비과정 및 부수과정이 병행되어 원만하며 장점이 많은 소유권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직업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직업연수교육의 질은 개인의 취업기회와 소득증가기회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과 전체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 교육을 위한 지출은 현상태에서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기적 투자이다. 대학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 대표들은 닥아올 10여년간 대학 졸업자의 인력공급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때 독일의 대학졸업자 비중은 단지 중급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훈련교육과 직업연수교육을 위해 더많은 노력은 물론, 동시에 그 조직을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개별 교육과정 사이에는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지 않으며 교육의 질도 경제의 요구 수준에 더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 더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2원제도(Dual System)의 우수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이에 연장하여 기능장이나 장인이 될 수 있는 연수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부녀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데 그들이 기술직종에 진출할 기회를 강력하게 재정지원하여 사회적 장애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교육으로 돌입시키는 동기유발은 언젠가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계시켜 개선되어야 한다. 자질있는 직장인에 대한 전문직종과 연관된 전문대학에의 입학자격은 모든 연방주를 통해 단일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대학진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시험은 단지 대학입학자격증 Abitur 만을 평가절하시킬 것이며 오로지 새로운 사무행정만을 추가시켜줄 뿐일 것이다. 그러나 고교졸업생을 위한 2원적 직업훈련교육은 대학교육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서, 중퇴자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생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초중고교의 교육기간과 대학교육기간은 단축되어야 하며 대학연구 과목은 단순화 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25세에 취업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효율적인 대학교육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은 예컨대 연방직업훈련교육촉진법을 통해 강력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전체에 걸쳐 2년후에 중간시험, 4년후에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문과 연구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은 이와 같은 대학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 70년대 중반이래 국민총생산에 대한 대학교육지출비는 줄어들고 있다. 연방정부의 약 50억 DM에 달하는 3대 대학교육향상 특별프로그램도 주정부예산을 보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학에 대한 추가부자가 매우 긴급히 요구된다. 대학교육 확장의 중점은 우선 전문대학을 겨냥해야 될 것이다.

- 앞으로는 대학교수의 훌륭한 연구능력 뿐만 아니라 강의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수의 자질과 능력이 강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고 초빙과 급료책정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 취업의 기회와 소득증대의 기회를 개선코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연수교육 가능성과 직업전환교육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와 노동조합과 기업체는 그들의 기회제공시 능력과 성향은 물론 노동시장의 수요와 더불어 특히 전문직 결핍현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정책

경제, 봉화, 사회통합의 달성이래 노동시장정책은 신언방주에서의 근원적인 구조변화가 사회적으로 조화있게 완성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언방주의 주민들에게는 새롭고 경쟁력이 있는 직장이 제공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특히 노동자의 질적향상 조치와 직장조성대책(ABM)을 통해 문제성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직장조성대책과 고용회사는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인간성을 띤 대안임은 물론, 이와 더불어 과거의 채무가 청산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면서 근로자의 능력을 유지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정책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됨에 따라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 직장조성대책이 경쟁력 있는 고정직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 노동시장정책적 대책은 유능한 노동력으로 하여금 제2의 노동시장에만 제한시켜서는 안되며 새로운 고정직장이 생겨나는 것을 제약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 연방고용청에 의한 기능향상대책은 근로자의 진취성에 따라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실제로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기업이 요구하는 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직장조성대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고용정책이다. ABM 과정에 있는 노동자에게 완전한 단체협약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상적 직장을

갖고자 하는 의욕을 줄이게 한다. 이 단체협약임금은 사회복지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재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ABM 직장수는 40만밖에 달하지 못함에 비해 120만이라는 근로자는 ABM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단체협약임금과 실직수당 사이에서 보수수준이 합의된다면 동일한 재원으로 더많은 실직자들에게 ABM 직장을 갖도록 재정지원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제결 당사자들은 낮은 보수수준의 특수 ABM 단체협약 임금계약을 체결토록 합의해야 될 것이다.

- 앞으로 새로운 제도(구동독지역 환경보호와 고용촉진 : Arbeitsfoerderung Umwelt-Ost)가 도입될 것인 데, 이에 의하면 환경개선과 환경정비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시 적립 실직수당과 적립 실직보조금을 일괄하여 임금 보조금(Lohnkostenzuschuesse)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실직자나 취업인이 진행중인 ABM 프로젝트에 따라 채용되었으며 특수한 ABM 단체협약 임금을 합의 했거나 또는 단체협약상 합의된 노동시간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와 같은 것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단체협약 임금정책의 일환으로서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부녀자의 기회가 배려되어야 한다.
- 대대적인 사설직업소개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선결사항들이 금년중에 조성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정책

산업 최적지로서의 독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 개발은 성장과 풍요를 위한 원동력이다. 오로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상의 부단한 혁신만이 소득의 지속적 증대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가능토록 해준다. 아울러 연구 개발을 통해 생태학적 여건이 보다 훌륭하게 경제활동에 응화될 수 있다. 국가의 임무는 충분한 연구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여 간접적 촉진대책을 통해 혁신과정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산업체의 연구개발에 접목하여 산업계, 중소기업의 기업혁신을 촉진하고 학술후진을 양성함에 있다.

- 이미 착수된 기초과학연구는 연방정부에 의해 정치적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주어져야 한다. 연구부자는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이다. 연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한 우선적으로, 계속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개발구조의 유지보다는 미래지향적 구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 프로젝트성 연구개발진흥은 줄이는 동시에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전체의 기술혁신과정이 가속화되고 정부지원상의 사무행정도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정보와 자본제공, 그리고 기술개발과 기술응용의 용이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산·학간의 밀접한 관계는 특히 전문대학 쪽에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 신연방주에 있어서 보다 시장성이 있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 환경정책

환경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정책의 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생태학과 경제학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경제생활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생태학적 고려가 경제정책적 결정과정에 포함될때에만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환경정책상의 목표도 시장경제체제의 능력을 활용할 때에만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가격과 비용개념을 생태학적 목표에도 도입하는 것은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위해 주요한 착안점이 될 것이다. 환경부담 내지 생태학적으로 환산한 환경비용은 원인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병행하여 위험 방지와 건강보호라는 이유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규정, 즉 작위 또는 부작위 명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입지 결정시에나 투자결정시 이미 결정이 취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정부에 의해 잘못된 결정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기본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의 높은 환경기준은 생산구조와 생산공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미래에 전망이 밝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기업체가 조성되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에 걸쳐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동원된 노동력과 자본재는 더이상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버린다.

신속한 환경개선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고려(모순된 관계)는 특히 신연방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잔재의 척결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오로지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생산만이 값비싼 사후비용을 방지하고 고객들로부터 더 많이 선호되며 국가의 간여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책임감있는 기업활동이 기업경쟁에서 강점이 되고 있다.

더우기 정부는 - EC 회원국과 다른 국가들과 합의 하에서 - 지구의 환경위험에 대처하여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란 탄산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부담을 지게 하고 다른 부문에서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주는 방법이다. 우리는 EC내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과 특수공해물질(예 전자산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기업체가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아 책임을 질 수 없는 생산방법이나 유통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은 경제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에너지 정책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안전하고 비용이 값싼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는 또한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독일을 위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안은 1991년 12월에 제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골격이 마련되었다. 독일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신연방주의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면서 유럽공동체의 진정한 역내시장 실현을 위해 함께 진력하고 대기권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은 오로지 폭넓고,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합의의 부재는 곧 부자의 불확실성과 무차지연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연방주의 서유럽 에너지 종합공급망에의 연결이 지연되고, 원자력발전소나 석탄용 화력발전소는 물론 자원에 손상을 주지 않는 풍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지하가스용 배관공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지리멸렬한 허가절차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적 이기주의를 극복시켜줄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어야 하며 그 중요한 단계로서는 초당적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점 모색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신연방주에서는 무엇보다도 갈탄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력공급망이 서유럽 종합공급망에 신속하게 연결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공급이 확보되며 이는 곧 현대적 산업생산(에 컴퓨터 지원을 받는 생산방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 진정한 유럽단일시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공급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에너지에 관한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EC 회원국간의 진정한 공급경쟁을 위한 전제조건은 구조적 기본조건(수입독점과 수출독점의 폐기)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가간의 조화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독일의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에너지생산비용과 에너지유통비용(예 : 환경보호세, 환경보호공과금, 석탄정책의 재원조달, 오랜 허가절차)이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 대기권 보호와 한정된 에너지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걸쳐 감당할 수 있는 한 에너지절약 및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용의 기술혁신에 에너지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대기권 보호는 남북협력과 동서간 협력이 없는 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를 최대로 절약하는 기술, 그리고 탄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공급원을 갖춘 그러한 에너지 공급의 전세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지구의 남반부는 거대하고 무궁무진한 수자원과 기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북반부의 선진 산업국들은 그러한 자원의 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노우하우와 자본을 갖추고 있다. 효율적인 대기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의 단일된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즉 탄산가스세와 에너지세에 관한 EC 기본지침이 조속하게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 유럽 정책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경제적 제조조건은 유럽 단일시장과 유럽경제권역에 걸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통합이 가속됨으로써 보다 더 큰 성장과 풍요가 결실 맺게 될 것이다.

- 유럽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결단은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모든 회원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 Maastricht조약에 명기된 모든 회원국이 추구해야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기준은 아무런 삭제없이 달성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유럽공동체와 회원국간의 관할을 규정하는 보조규정(Subsidiaritaetsprinzip)은 더욱 구체화되고 책임감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복 규정, 무용규정, 보다 세분화 되어야 할 규정과 같은 것은 개발국가의 핵심관장사항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통해 통합유럽은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유럽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 차량운행자의 혈중 알콜 허가함량, 동물원의 동물사육과 같은 것을 EC 기본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예상 할 수 없는 일이다.
- EC의 세출정책은 각국의 예산정책처럼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유럽공동체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개방적 시장경제라는 조약에 명기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산업정책을 위한 우리의 방안은 오로지 산업입지조건의 개선과 관련한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

자유경쟁은 번영을 촉진하며, 개방경제에서의 경쟁은 부자와 기술혁신의 주요 원동력이다. 오로지 개방된 시장만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경제와 높은 고용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개방된 시장은 기업체로 하여금 국제적인 판매시장에의 진출은 물론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유리한 구매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관되고, 신뢰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대외투자정책은 절대적인 신뢰를 조성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제무역 참여자는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게 되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스럽게 국제시장에 진출함은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 우부과이라운드 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이는 곧 무역 장애와 불균형이 배제되고 시장진입을 보장함은 물론 무역마찰이 적게 될 것임을 뜻한다.

나아가 앞으로 GATT체제는 국제적 경쟁질서를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GATT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또다른 주요임무 분야는 바로 Rio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문제 국제회의에 따라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결함에 있어 분쟁이 따르지 않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이 실현된 이후 EC 무역정책은 대외무역이 더욱 수월하게 되도록 하는 발전형태를 취해야 한다.
- 수출통제조항(전략물자)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대외무역이 심한 정치 쟁점화 되었음을 감안해 볼때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의 경제는 수출통제정책과 그 수행이 상이한 형태를 취할때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기업체는 독일연방정부와 경제기구 (예 : 독일해외상공회의소에 의한 지역경제 세미나, 독일과 일본의 경제 심포지엄)가 추진하는 조치들을 통해 주요 미래시장의 개척, 특히 동아시아권 지역시장의 개척과 더불어 이러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수월해져야 할 것이다.
- 대외무역진흥정책은 앞으로도 지역적 중점을 감안하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예 : 박람회진흥, 해외상공회의소, 연방대외무역정보센터) 연방정부와 각주의 대외경제활동이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가 창설될 것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아직도 구동독지역 경제가 구소련지역 시장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핵심은 Hermes 수출보험에 의한 지불 보증을 제공하는 것인데 CIS 각 공화국 특히 러시아는 외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활용을 망서리고 있다. 나아가 Barter무역, Joint Venture를 통한 수출가능성의 활용, 독일연방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중동부 유럽제국과 CIS공화국내 독일경제 파견관실, 베를린에 있는 조정관실과 같은 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연방주의 수출업체가 아직도 동구시장에 일방적으로 예속당하는 것으로 부터 탈피하고 서방세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동독 지역기업체의 조건에 특수하게 알맞도록 만들어진 무역진흥제도(예 : 박람회 참가촉진, 연방대외무역정보센터 BFAI의 정보제공 개선, 해외상공회의소의 특수 프로그램 등)를 활용할 수 있다.
- 독일연방정부는 CIS공화국들의 수입능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세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발전추세에 알맞게 무역진흥제도를 부단하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핵심은 현재 진행중인 대외무역진흥제도의 조화, 특히 Hermes보증과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동구권무역에 의존하던 기업체 - 특히 신탁청 산하 기업체 - 가 서구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구조변경이 시급하다. 공공발주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대책, 그리고 기술혁신과 마케팅에 대한 지원과 같은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 경제정책을 위한 확고한 방향

90년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경기와 관련된 위험부담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극복되어야 하며 경제는 다시금 안정된 성장노선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오로지 이러한 기초위에서만 신연방주의 구조변경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체제의 안정과 환경문제의 점진적 개선이 달성될 수 있다.

경제성장, 취업기회 증대, 사회복지적 안정, 생활기초의 개선과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의 산업생산여건이 성공적으로 개선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세제개혁과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대책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가는 급격한 정부채무의 증가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것은 예산책정에 있어서 단호한 세출삭감과 용도 전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는 바, 그 이유는 신연방주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아직도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전체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은 계속 증대되는 재정 수요, 그리고들 부자의욕과 실제능력 사이에 있는 좁디좁은 산등성이 때문에 그 운용영역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산업최적지로서의 독일을 강화시켜주는 대책이라든가 (자랑세 대신 석유에 대한 할증료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체임금협약 당사자들은 현 노동시장의 경직된 상황조건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써 일자리를 유지하고 조성시킴에 있어 어려움을 덜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연방은행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보다 완화된 긴축금융정책으로도 그 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재정정책과 소득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사이에 있는 상반된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것들은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지금부터 단호히 실천하고, 차기 수년간을 위한 분명한 정책기조가 설정될때 독일통일에 따르는 도전은 정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책방안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사회 각 부분의 이해관계 집단이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때는 바야흐로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장경제의 제원칙에 관한 기본적 콘센서스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독일의 전망에 대한 평가에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나, 책임감 있는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정책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현 상황조건에 관한 명확한 분석과 공개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호이해될 수 있는 사회복지계약(Sozialpakt)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다. 사회복지계약은 금년말까지 그 기본골격에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금세기의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계약의 완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구동독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전환

- Der Spiegel지 92.12.14일자 -

Ludwig Erhard의(경제정책이) 과거지사에 지나지 않자 Kohl 정부는 마침내 안식처를 바꿔쳐 버렸다. 즉 이제부터 구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산업체는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살아 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작스런 노선변경에 대한 저항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자는 단 한명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은 산업적 황무지로 전락해 버렸고, 공장들은 막대한 손실만을 생산해 내고 있다.

시장경제가 불발탄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자 독일정부는 국가가 개입하여 구동독지역 산업의 완전붕괴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급기사함은 더이상 없고, 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능력이 완전 고갈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동독지역에 있는 최현대식 일자리가 구서독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파괴해 버리고 있으니까!

구동독지역 최대의 고용주로서 178,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동독 국영철도 Reichsbahn의 사장 Heinz Duerr는 시장의 자체 치유력에 관한 확신을 상실해 버렸다. 그는 자본주의의 원조인 "Adam Schmith가 구동독지역에서는 전적으로 지나친 과욕" 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오래전부터 당원이기도 한 Heinz Duerr는 Bonn의 기민당측에게 1947년도의 기본 원칙을 다시한번 연구해 볼 것을 권장하면서 Leipzig에서 개최되었던 신탁청 심포지엄에서 정부측을 향해 "Ahlemer Programm에 모든 것이 들어 있으니, 다시한번 들쳐보라"고 역설하였다. (Ahlemer Programm이란 1947년 기민당이 서방점령지역에서 수행된 주의회 구성 선거에서 최다득표 정당이 되면서 영·미

---

\* 약화일로의 구동독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자유방임 대신 국가개입의 길을 택한 독일연방정부의 산업정책을 평가한 기사임.

점령지역인 Bizone에 설치된 통합경제지역 VWG의 전신이자 후일 서독정부의 모체였던 경제평의회 Wirtschaftsrat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사간 공동결정을 주장하는 등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Ahlerner Programm을 수립하여 방향전환을 모색한 이래 Ludwig Erhard의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라는 방안으로 당의 경제정책 노선을 새로 설정함 : 역자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기민당원들은 만인의 풍요를 위해 독일의 재건을 이룩하려던 독일 콘체른의 총수들의 능력과 의지를 박탈해 버렸다.

당시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독일민족의 생존의 권익에 적합치 않은 것이다”라고 이 프로그램에 못박았다. 당시의 기민당 정치가들은 오늘날의 Manager인 Duerr가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 재건에의 지원자”가 되도록 하였다.

Duerr가 유별난 사람은 아니다. Leipzig에 있는 크레인 제작회사 Takraf의 감사 위원장인 Klaus von Dohnanyi 역시 시장경제가 너무 급박하게 곡해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열차 제작사인 Deutsche Wagonbau AG의 Peter Witt 이사장도 “등등이 경제적으로 출혈을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으로서 VW사의 이사인 Daniel Goeudevert는 국가적 과업에 너무 평생원처럼 소심하지 말라고 독일인들은 격려하면서 “만일 당신네들이 이 조그만 구동독지역이라는 가난한 땅조각을 재건하는데 성공치 못한다면 유럽전체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산업이 안고 있는 재난의 규모가 더이상 측정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버리자 경제 엘리트들은 관대하기 그지 없는 자유방임주의(laisser-faire)를 더이상 고수하지 않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란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신봉자에게조차 즐길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사장들이 군림하는 고층건물의 사장전용층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의문을 품는자가 비전이나 갖고 있는양 축하의 대상이 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국가적 산업정책의 장식품이나 다름없다고 처신하는 자들은 시류를 꽤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과거의 캐치프레이즈에 얽매인 질서유지 정치가들은 오늘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의심을 받는다 하면 심지어 고집쟁이, 명예심 때문에 장님이 되어 버린자, 순박하게 유행으로부터 뒤쳐진 자로 통한다.

굴수 교조주의자들은 Helmut Kohl 총리의 독일연방정부에 대해서도 신뢰하려 들지 않고 있다. Ludwig Erhard는 지나간 옛말이 되어 버렸고, 지금까지 유효하던 “시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Der Markt macht's moeglich)라는 주장 대신 70년대의 급기사항이었던 산업정책, 투자유도, 구조방안, 지역회의 같은 용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10년전에 보수적인 질서유지 정치가로 총리가 된 Kohl은 바로 집정 10년째가 되는 금년에 안식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 즉 Kohl 총리는 시장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향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주일전 Leuna사를 방문했을때 Kohl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훨씬 초월하여 행동을 취할 것과, 산업 핵심지역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사민당은 Kohl 총리가 “실직 대신 노동”(Arbeit statt Arbeitslosigkeit)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고 비아냥 거렸다.

Bitterfeld에 있는 화학공장들, Gorlitz와 Dessau에 있는 열차 제작공장, Chemnitz와 Erfurt에 있는 기계제작소, Berlin 주변의 전자산업체들은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산해도 좋게 되었다. 즉 Kohl 총리는 발전된 자본주의 독일에서 병든 거대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 당분간 만이라도 안주권(Bleiberecht)을 보장해 주었다.

국가는 법률과 더불어 단지 경제활동의 범위만을 계획할 뿐이라는 낡은 신조는 드디어 그 임무를 다해버렸다. Kohl 총리는 Fuergen Moellemann 경제장관(자민당)과 Theo Waigel 재무장관(기사당)과 더불어 “탈산업화 방지방안”에 관한 내적합의에 도달했다. 9 페이지에 달하는 견해표명서의 핵심은 기업성이 없는 국영기업의 정비가 장차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되어 있다.

Kohl 총리와 그 일행은 황량하기 그지 없는 현실에 대한 환상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견해표명서에는 수많은 기업체가 대대적인 판로문제에 부딪쳐 있어, 당분간 개인 구매자의 관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신탁청 관리하에 있는 기업체의 70%가 아직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onn 당국자들은 국영기업의 “조직상의 통폐합”을 더이상 Berlin의 신탁청에게만 일임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급규모의 기업체들은 “더이상 10개의 기업체”를 한데 묶어 하나의 합자회사(KG)라는 지붕밑에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정비자인 국가에게 돌아오는 장점으로는 소규모 국영 홀딩(Mini-Staatsholdings)이라는 KG와 같은 기업의 법률형태는 노사간 공동결정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규모의 투명성 때문에 manager의 결정 하나하나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견해표명서에는 “수개의 소규모 KG가 하나의 거대한 KG보다 훨씬 좋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KG 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믿지는 않는다. 즉 정부는 기능이 우수한 Konzern이 될 수 있는 국영홀딩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 목표는 “개별 지분회사 간의 상승효과(Synergieeffekt)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Bonn 당국자들은 대규모 기업체에 관한 국가의 참여가 될 수 있는한 50% 미만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와 같은 모델이 곧 지난주 목요일(12월 11일)에 공표된 바 있는 동·서독지역에 있는 Kali 공장 병합이 대표적이다.

국가는 칼리 광산에 대해 단지 49%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써 얻어지는 Bonn 정부의 장점으로서 서독측 manager가 칼리 공장의 정비를 담당하되 지불 관계만은 중전처럼 담세자의 소관사항으로 변함이 없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구동독지역 Konzern은 철철 넘치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제 불능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hl, Waigel, Moellemann 이라는 3총사는 이러한 나머지 기업체들을 애지중지 키워보려고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측 Konzern의 manager들은 “그들의 봉급을 구동독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부동한 목표의식을 갖어야 할 것”이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다. 즉 “모든 서독기업체는 반제품중 20%를 구동독지역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연립내각의 목표이다.

독일이라는 연방국가가 정비자로서, 지배인으로서, 인력소개자로서 이토록 대대적으로 경제생활에 개입해 본적은 없었다.

(“시장만이 대답해준다”라고 주장하던) 통독 최초의 경제장관 Helmut Gausmann의 중도민주적 가설은 오로지 그것이 진부한 농담일 때에만 효험이 있다. 대변역의 해 1990년에 공표된 기민당 경제대변인 Mathias Wissmann의 환호에 넘쳤던 구호 (“제2의 경제기적을 위한 올바른 진로용 전차가 이제 마련되었다”)는 오늘날 돌팔이 의사가 만든 귀찮은 처방이 되어 버렸다.

Kohl 이라는 산업정책가는 사민당과 노조로 하여금 어안이 병병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정부를 사실상 비판해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 있는가”라고 금속노조 위원장 Franz Steinkuehler의 측근자는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사민당 경제대변인 Wolfgang Roth는 “Kohl은 1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촉구했던 것을 해내고 있다”고 경멸과 당혹을 표시하는 어깨를 움츠리는 몸짓을 지었다.

신탁청장 Birgit Breuel 여사 자신도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기민당원으로서 강인하고 과단성 있게 일약 신탁청장으로 취임한 Breuel 여사는 우울증에 빠져든 것 같은데 최근들어 “신탁청의 끊임없는 업무과중”을 들먹일 정도가 되었다.

한때 순수 시장이론의 신봉자이기도 했던 Breuel 여사의 주장에 따르자면, 질서 유지정책가의 학설(Lehrsätze)은 그러한 근본명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안착되는 곳, 즉 전문가의 논문(Aufsätze) 속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어식 표현 Laissez faire, laissez passer의 독일식 표현인 gelassen : 역자주)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 노정은 기나길었고 구동독지역 근로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신탁청은 장장 2년반 동안이나 (경제학자 Harry Meier의 주장대로) “완전 사유화 전략”을 고수해 오면서 구동독의 전지역을 황폐화 시켜 버렸다.

12월초 Leipzig에서 개최된 신탁청 전시회에는 매각될 수 없는 잔재만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Breuel 여사는 생산품 전시 개회사에서 “여러분께서는 ‘made in Germany’ 라는 개념을 새로이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슬픈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전시장 입구 바깥에서는 아직 국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노동, 무기회, 무인격”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Sachsen 주의 금속노조 회원 출신인 연설자는 “만일 당신네들이 우리들중 마지막 사람을 해고한 후에는 드디어 구동독지역은 당신네들의 총수판이 될 것이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쳤다.

한때 동독의 산업계에는 360만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오늘날 무작위인이라는 천벌 아닌 저주를 받고 있다. 구동독 공산정권이 붕괴한 이래 구동독지역 산업노동자 비율은 구서독 수준의 절반정도로 떨어져 버렸다. 오늘날 공장 근로자 수는 약 750,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Breuel 여사가 이끄는 신탁청은 과거 Kombinat의 기업정비가 신탁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탁청의 임무를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 이 임무를 회피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투자는 진귀한 것이 되어 버렸다. 독일경제연구소 DIW의 Heiner Flassbeck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중재기능으로부터 남는 결론이란 오늘날까지 일종의 기업정비라는 기회주의적 눈치작전(Attentismus) 일뿐”이라는 것이다.

신탁청이 기업정비기금으로 방출하는 수십억 마르크와 더불어 대중은 기만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출액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목적이란 다름아닌 신속한 손실보상과 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제출되었던 기업정비 방안은 한장의 종지쪽지 이상이 결코 아니었다”고 신탁청 이사를 역임했던 한사람은 토로하고 있다.

Sachsen 주의 Freital에 있는 귀금속 공장의 새주인이 된 Ruediger Winterhager는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신탁청의 금액이 어디어디로 새어나가 버렸는지 똑바로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서독에서도 동일규모의 귀금속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인이 전화비 계산란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 공장의 전화 사용료는 서독 공장보다 6배나 많았던 것이다. 주민이 반으로 줄어든 촌인 Freital은 공장 전화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전화를 공동사용해 버렸는데 신탁청은 검색도 못채고 지불만 했던 것이다.

Freital 공장의 수력사용료 역시 서독공장의 66배나 되었다. 장장 2년동안에 걸친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땅 어디인가에 아마도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소”라고 Winterhager는 말하고 있다.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시 2,500억 마르크의 플러스였던 이 기업체는 현재 고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Winterhager에게는 “도대체 이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란”이라고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Freital 공장 사례는 예외가 아니다(“기업정비 보다는 기업사유화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Breuel 여사는 의식적으로 기업의 현대화를 사양해 버렸다. 신탁청 대변인 Wolf Schoede의 말에 따르면) Breuel 여사는 그와 같은 중재금과 더불어 “시간을 벌어들이고자” 했는데 사실상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서독지역의 기업체들은 금년도 2/4분기에 매 근로자당 5,500 마르크를 투자하였다. 신탁청은 기업체를 위해 매 근로자당 서독지역의 1/4만 투자했을 뿐이다.

따라서 동·서독 지역의 기업체 간에 있는 간격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경제적 따라잡기 작전은 아직도 시작되지 못했다.

다만, 휘황찬란한 신탁청 소개책자에만 신탁청이라는 세계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최근에 발간된 소개책자에서 신탁청의 고위급들은 Dessau 소재 개스처리 유한회사를 “적극적 기업정비”의 성공사례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 회사는 주방용구 생산기업인데 최종적 신규투자는 1989년 늦가을 구동독 공산당 활성화 대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라 정전기 에나멜 도장이 새로 설치되었다. 신 소유권자가 된 신탁청은 지금까지 Dessau의 이 공장에 돈은 고사하고 거의 투자한 것이라곤 없다.

전통에 빛나는 이 공장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이 났어야 할 자본축적을 이용하여 생산을 계속하고있다. 변전시설은 15년이나 되었고 단순 청공기는 금년에 25주년을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Dessau 시립박물관이 관심을 표시하자 “그들이 우리기계를 몽땅 뜯어가 버리려 한다”고 한때 기술부장이었던 Peter Ozegowski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Ozegowski에 따르면, 이 공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흑자계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탁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덕분에 아니라, 우연일 뿐이라는 것이다. 구동독지역 도처에서는 도시가스 시설이 지하가스 시설로 변경되고 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제 주방용구는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변경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공급공백을 저렴한 가격의 Dessau 생산품이 메꾸어 주고 있다. 신탁청 산하 이 기업의 금년도 매출고는 폭발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에 가득찬 사례가 구동독지역에서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국영기업 상태에 있는 약 3,000개의 공장은 거의 모두 적자생산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중 적자액이 수백억 마르크를 상회하는 공장도 많다.

타이어 생산업체 Continental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Horst Urban은 여하한 모순을 극복하더라도 기업정비가로서의 시금석을 세워보려 애쓰고 있다. 그는 17명에 달하는 팀과 함께 구동독지역 최초의 국영홀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Bonn과 Berlin에서는 조심스레 "Management KG"라 명명되고 있다.

Urban씨는 8개의 기업체와 함께 7,000명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는데 신탁청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가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감원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우터 난방기와 리사이클링용 콘테이너를 생산하는 이 소규모 Konzern는 공해방지 기술 제공자로서 입지해 보려 하고 있다.

급격한 매각이나 기업청산은 노동계약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운영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

Urban씨는 신탁청과는 달리 Waigel 재무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모실 필요는 없다. 그는 "만일 내가 연방정부의 직원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차라리 골프나 치는게 나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다.

기업정비의 위험부담은 담세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 신탁청은 Urban씨에게 일정한 전권을 위임했는데, 그는 이로써 매우 유리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이 KG의 직원으로서, 그 노동계약은 신탁청의 Hero Brahm 부청장과 함께 서명했기 때문에 기업정비가 자신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가 공장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가 만일 3년후에 이 공장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버릴 경우, 6자리 수의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것이야 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지! 라고 했다.

이제 곧 4개의 Management KG가 더 설립될 예정이다. Urban씨는 이러한 Mini-Holding이 총 50개 정도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아이디어는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기 그지 없는 기업정비를 신탁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관청은 기업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정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Urban씨의 확신이다.

국가차원의 재건활동은 많은 노력과 금액을 요하며, 그 성공율은 의문스럽다. 경제학자 Meinhard Miegel은 “우리는 사실상 추가적인 자본축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서독산업계가 동독산업계를 독식해 버리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서독의 생산능력은 고객이 추가되었지만 아직까지 83%만이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각 정당의 정치가들에는 이러한 생산능력의 불균형 분배상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Sachsen주의 Biedenkopf 지사와 Kajo Schommer 경제장관은 “우리는 구동독지역의 위기일로의 기업군을 유지하면서 모든 지역이 산업적 활성화 상태에 이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산업이 죽어버리게 되면 곧이어 중산층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증이 결국 무역과 서비스업계의 직장을 없애 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과거의 Kombinat 경제는 사망, 구동독지역은 하루아침에 무인지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구동독지역에 수십억 마르크를 투자했다. 이제부터 Bonn 당국은 일자리도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Heinz Duerr는 독일이 통일과정의 새로운 단계의 초기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면서 “이제부터는 직장의 원상복구식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열차 생산업체로서 최대의 발주자인 Duerr씨는 훌륭한 선례를 내세우면서 동Berlin에 있는 독일열차생산 주식회사에게 처음으로 최대의 수주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서독에서 열차를 발주할 수도 있었지만...” 이라고 했다.

최근들어 일자리의 폐기 역시 전국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Kali 공장의 융합의 경우 당사회사 쌍방이 서로 군살을 뺀다는 원칙적 방안이 전제되었는데, 즉 구동독지역이나 구서독지역에서 공히 광산과 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사항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동독지역 광산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구서독지역의 광산근로자들이 감원과 더불어 그 지불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Bonn 당국은 이러한 선례와 함께 여타의 대기업도 펼쳐내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때 돈이 장애요소가 아닌듯 아무런 기능을 발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국가 간섭이라는 정책에 반대하는 양심의 가책은 캉그리 사라졌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모든걸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Kohl 총리의 고문은 말하고 있다.

산업정책가의 독무대인 새로운 독일에서 유일하게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름아닌 독일산업연맹(BDI) 회장 Tyll Necker이다.

Necker 회장이 11월말 총리실에서 Kohl 총리와 만났을때 그는 총리와 그 팀을 전연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국가의 보조는 당분간만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던 급조된 약속에 대해 Necker 회장은 더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Necker 회장은 “ 사회의 각계각층에 걸쳐 국가가 모든 방향을 설정하게 되리라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했다” 고 악담을 퍼부었다.

Necker 회장은 기업주들과 산업별 기업연맹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 그들과 싸울자는 더이상 없다” 라고 우유부단한 추세에 대해 질책을 삼가지 않았다.

## 1991년 현재 신탁청 산하 제조업 분야의 매출고 이율

|                    |        |
|--------------------|--------|
| 기계공업, 철강업          | - 10.9 |
| 화학, 플라스틱, 토석 및 골재  | - 29.6 |
| 목재, 제지, 잠난감, 철판가공업 | - 38.5 |
| 전기, 전자, 정밀공업       | - 55.1 |
| 섬유, 의복, 피혁         | - 72.1 |

## 구동독지역 실질실업 및 은폐 실업자수

(단위 : 1,000명)

|       | 신고된 실업자수 | 직업연수교육<br>참가자 | 고용창출조치<br>참가자 | 조기정년퇴직금<br>수령자 및 연금<br>과세대책에 처한<br>사람 |
|-------|----------|---------------|---------------|---------------------------------------|
| 90.12 | 642      | 53            | 20            | 460                                   |
| 91.12 | 1,038    | 360           | 390           | 705                                   |
| 92.11 | 1,086    | 495           | 363           | 836                                   |

# 신연방주 재건지원 실무기획단 중간보고 및 건의안

- 1992.10.21 Friedrich Bohl 수상실 장관 발표 -

- 1992년 9월 11일 독일 연방 각의는 “신연방주 재건 지원”을 위한 10대 실무 기획단을 구성, 각각 해당 소관 부서가 이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10대 기획단은 신연방주 재건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건의안을 검토하였다. 10대 기획단은 연방 부서를 비롯하여 독일 연방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획단은 1993년 연방 예산안에 계획되어 있는 지출 규모와 현행 지출 금지 항목을 토대로 연구해왔다. 동 보고서는 그동안 기획단이 수차례 가진 회의를 토대로 작성한 중간 보고서이다.

연방 수상실 장관과 주 정부 수상실 장관과의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신연방주에게 보고되었는 바, 각 실무 기획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기획단 : 투자 장애 해소 벌률 규정/ 행정 계획 입안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주관 부서 : 연방 경제부, 연방 내무부, 연방 법무부 -

- 건설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분야의 각종 규정은 잠정적으로 폐지시키든지,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든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든지, 다른 부처의 참여를 억제시킨다.

- 신언방주를 위한 주택 용지 조성법(Wohnbaulandgesetz)이 현재 마련 중이다. 그 내용은 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주택 용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의 공익 담당 기구의 청문 기간을 단축시키며, 단순한 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 의무를 면제시켜주도록 되어 있다.

건축 법규와 자연 보호 법규 간의 조화 역시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한다. 건축법과 관련하여 행정 법원의 검토 가능성은 5년 동안 중지한다. 다만 무자 우선법 제 18 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토 계획법에 있어서도 5 개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다 (국토 계획법 제 6a 조).

연방 공해 방지 보호법에 따라 인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 수질 관리법 제 18c 조에 의한 폐수 정화 시설, 초지역적 의미가 있는 배관 시설, 연방 광산법에 의한 광산시설에 대하여서는 계획 검토 절차를 유보하고 그 대신 간단한 인가절차만을 거치도록 제안한다. 지자체의 동의는 청문회를 통해 대치되도록 한다. 연방 건설부는 이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 영역에 있어서 도시 건설 규정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자체의 계획 입안권 (기본법 제 28 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 보호법에 있어서는 공해 방지 보호법과 폐기물 처리법에 따른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가능하다. 특정 시설 (예컨대 풍력 발전소, 자동 세차장) 은 허가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고, 기타 시설은 간소화 절차로 위임될 수 있다. (예컨대 가스 터빈 시설, 냉각탑, 제지 기계, 자연 아스팔트의 용해 및 증류 시설). 표준화된 시설에 대하여서는 구조 방식 허가가 적용될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 변경에 대하여서는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 절차 수행 기간을 규정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서는 계획 수립 단계가 생략됨과 동시에 설치 장소 검토를 간소화 할 수 있다.

건설 계획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자연 경관을 해칠 때, 해당 지역과 개발 계획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자연 보호법에 명기된 배상을 5 년간 유예할 수 있다.

도로 계획 수립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건의된 바 있다.

- 이미 신연방주에서 유효한 도로 계획 수립 신속화법이 연방 지역 전체에 확대 적용되도록 함 (계획 수립 간소화법 초안)

기타 건의 사항:

- 행정 조치 분야에 있어서 계획 수립 준칙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며 계획 제출 한계를 (각 주가 연방 교통부에 제출시) 연방 장거리 도로까지로 한다.
- 철도 계획 수립, 연방 도로의 노선 규정, 국토 계획 절차의 기간 설정 계획 검토 절차의 신속화, 행정 법원에서의 절차 단축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안 역시 매우 시급하다.

- 물권법을 수정하여 토지에 대한 불확실한 사용 관계를 해결
- 토지 대장 절차에 있어서의 간소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제 2 차 재산법 개정에 따른 토지 대장 수정
- 측량되지 않은 도시 중심지 대지에 대한 담보 설정 대부 가능성 부여
- 행정법적 수속의 간소화와 통제

이상과 같은 각종 제안은 각 주의 대책과 더불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각 주는 건축 규정과 기술 규정의 준수를 자유업 활동 건축가의 책임 하에

두도록 대대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이며, 인가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현대화된 행정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자기 사용 건물에 대한 열 손실 보호 규정과 요구 조건을 건설 인허가 절차에 2년간 심의하지 않는다. 각 주는 주립 문화재 보호법의 관할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참여 절차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며, 수리권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하천 사용이 최대로 조기에 허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허가가 필요없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대기 정화 유지를 위한 기술 지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 기획단 : 구조 변경 촉진, 중소기업 진흥과 경쟁력 제고

- 주관 부서 : 연방 경제부, 연방 재무성 -

신탁청은 사용 임대차 매입(Miet-/Pachtkauf)의 가능성도 있다는 적극적 홍보 활동과 함께 사유화가 더욱 수월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부자자에게 부동산 매입보다 유리할 경우에 권장되어야 한다. 신탁청은 현재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이용하게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가능성은 적절한 경우, 매각 가격 동결 내지 매각 후 임대 (Sale and Lease back) 모델로 보완되어야 한다.

재사유화의 경우, 구체 인수는 각 해당 사안에 따라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 양도 대차 대조표의 평가 가능성은 재사유화 수혜자의 권익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채권 은행측에 의한 채무 소멸 규정과 함께 재사유화 수혜자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유화 수혜자와 재사유화 수혜자에게 대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992년 7월 1일자 연방 각의 결정). 신탁청은 재사유화의 속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것을 촉구한다. 계획 중인 보상법에 따른 재산 반환 때문에 재사유화된 기업체의 기업 개시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 정부의 각종 대책은 산업 핵심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부자의 촉진과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부단하게 계속해야 한다. 신탁청은 사유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되, 혁신적 사유화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기획단은 정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유화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신연방주의 광역적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서 정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본 기획단은 기업체로 하여금 구조 변경 능력이 있도록 적절한 경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자체의 책임으로 경쟁 능력을 갖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신탁청에게 촉구한다.

부가 가치세 특혜 조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행정 수행상의 커다란 문제점, EC 내에서의 문제점 제기, 엄청난 세수 결손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현성이 없는 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독 지역 생산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조세 수입 결손은 약 110 억 DM (그 중 연방 70 억 DM)이 될 것이다.

각 연방 부처는 공공 사업 발주에 있어서 구동독 지역에 대한 발주 규모를 2 배 증가시키고 이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구연방주는 연방 정부가 도입한 특혜 규정을 점진적으로 활용하고 신연방주는 이를 더욱 집중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

본 기획단은 신연방주 중소 기업의 자기 자본 형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부 연방 의회 의원은 신연방주 중소 기업 부자자를 위한 부자 보조금의 시한부 확대가 복수 감가 상각비 계상 중지와 동시에 수행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견해는 부자 보조금이 25 % 에 달해야 하며 건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20 명의 근로자가 있는 동독 지역 기업체의 설비와 건물에 대한 부자 보조금이 25 % 가 될 경우, 1933 년부터 1996 년간

국가적 세수 결손은 약 300 억 DM (그중 연방 140 억 DM) 에 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특혜가 따른다 할지라도 세수 결손은 160 억 DM (그중 연방 73억 DM)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제조업에 대한 현행 투자보조금의 제한 (총 91억 DM의 절약, 그중 연방 44 억 DM)을 비롯하여, 건의 중에 있는 투자 보조금 25 %에 대한 투자 지원액과 적용 분야의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투자 보조금 인상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서 자기 자본 보조 프로그램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연구 촉진을 위한 수단은 원칙적으로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나, 그 재원이 발주 규모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에 필요한 자원 5 억 DM의 축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절약 또는 목적 변경을 통한 재정 충당책은 모색될 수 없다.

### 제 3 기획단: 주택 건설/ 부동산

- 주관 부서 : 연방 건설부, 연방 재무부 -

구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용자에 대한 원리상환 부담의 (연방 정부/ 주 정부의) 각종 공공 차원과 관련 기구들의 분담 문제는 다른 부처가 결정을 취해야 한다. 수상실은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채와 기존 주택을 연방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의 사유화는 법적·행정적 장애 때문에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구동복 재건 경기 부양 공동 대책"의 재원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이 확보되는데, 지금까지 이 재원의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다. 주택 구입 보조금을 통한 사유화 촉진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93년도에는 1억 5,000 만 DM, 1994년에는 5,000 만 DM이 필요하다.

주택의 현대화와 수리를 위해서 현재 주택 현대화 및 수리 프로그램에 의한 3%로 이율이 인하된 용자가 확보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150 억 DM, 1993년에 200 억 DM의 용자 규모가 설정되었다. 재원이 이토록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를 위한 재원은 이미 고갈되었다. 이미 (1992년 10월 5일 현재) 200억 9,530만 DM에 상당하는 발주액이 신청되어 있다. 따라서 50억 DM의 신규 재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규 축적 재원은 2%의 호조건 이율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약 10억 DM을 10년간 분할 부담). 만일 150억 DM에 대한 이율이 2%의 유리한 조건일 경우, 5억 7,500만 DM의 추가 비용을 10년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본 기획단은 복지 주택 건설을 통한 자기집 마련 촉진을 위해 축적 의무액을 연간 2억으로부터 12억으로 증액시킬 것을 건의한다.

1994년말에 완료될 주택 건설 투자를 위한 특수 감가 상각비와 공제액은 2년간 더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변경 내용은 산업 부지 확보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택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과 1994년도에 각각 10억 DM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계획 수립 지원비와 개발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각 주 정부도 이와 동일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본 기획단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 건설 개발을 위해 1993년과 1994년도에 각각 1억 5,000만 DM의 연방 재원이 조성될 것이다. 이 재원은 각 주 정부의 동일한 재원으로 보완될 것이다.

이상의 건의 대책과 프로그램의 재정 규모는 구채 정리를 포함 연간 27 억 DM에서 52 억 DM에 이룰 것이다. 이룰 위한 재정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본 기획단은 (연방, 주 정부, 지자 단체) 공유 대지의 신속한 활용 문제에 관하여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방 재무부는 1992년 10월 18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지 가격 인하에 관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본 기획단은 연방 소유 및 신탁청 소유 대지의 신속한 정리에 관한 제안을 곧 제시할 것이다.

본 기획단은 과거 균용지 처분에 관하여 이미 현실적 절차 간소화 (간소화된 가격 결정, 현지에 있는 관할 세무 당국의 권한 강화, 대형 부동산에 관한한 사설 부동산 업체와 컨설팅 업체의 동원, 특히 주택 용지에 대한 가격 인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신속 처리 대책이 건의되었다.

- 신속한 처리 규정 (소련군 점령 재산에 대한 보상)
- 시가가 3,000 만 DM (현재 1,000 만 DM) 이상일 경우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의 동의를 필요
- 현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비행 위원회”(fliegende Kommissionen)를 운영

본 기획단은 신탁청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서도 (1992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주택 사유화 프로그램, 개별 매각을 통한 재산의 신속한 공공기관 위임 등) 이미 착수된 대책을 인정하고 있다. 본 기획단은 신탁청 소유 부동산의 공공기관에의 위임시, 연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격 인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신탁청은 실례를 들어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대지의 매각시, 법적으로 자립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하 가격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구동독의 독일 제국 철도는 앞으로 기업 운영상 긴요하지 않은 대지를 우선적으로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제국 철도의 재정 수요에 비추어 가격이 인하된 매각은 기업 정비상 바람직하지 않다.

#### 제 4 기획단 : 노동 시장/ 교육

- 주관 부서 : 연방 노동부, 연방 교육부 -

부동산 등기소와 미해결 재산권 처리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문인력 결핍은 인력이 초과 배치되어 있는 다른 행정 분야 인력의 직업 전환 교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주 정부와 지자체가 자체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단기적으로 적합한 교육 방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 구조가 이제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요구 조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방 고용청은 동업 조합, 상공 회의소, 기타 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교육 대책의 노동 정책적 목적 부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 고용청 역시 연수 교육의 질에 더욱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다.

직업 연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은 기업에 의한 연수 교육이 신속하게 확보되어야 함을 뜻한다. 대부분 기업체는 그 재정 형편상 연수 교육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직장에서의 교육과 일을 연계시키되 직장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자질 향상 방안을 권유하고 있다.

여성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촉진 및 직장 조성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연방 정부는 연방 고용청이 금년말까지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망한다.

기타 자질 인정 대책에 있어서는 여성을 더욱 배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적 조치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창설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 조성 대책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기업 창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주요 기관 (상공회 등)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실직자를 위한 임금 지급과 임금 보상 지급은 앞으로 환경 정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이 계획되어 있는 노동 촉진법에 제 249 h 조를 삽입). 현재 해당 부서를 비롯하여 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보충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농경 관계 근로자 중 일부는 특수한 직업 훈련 교육과 고용 관계 때문에 농경업 재개 활동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 식량 농림부 장관이 촉진하고 있는 직업 훈련 교육 대책과 연수 교육 대책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배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구권 출신 근로자의 고용은 신연방주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계획 중인 노동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고용이나 단체 임금 체결 수준 이하의 조건에 의한 고용 상태에 대한 감독 가능성이 개선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해당 지역의 특수 상황은 고려된다.

고용 창출 조처에 의한 고용 관계에서 연금 수혜 가능한 고용으로의 전환을 적극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고용 창출 조처 지원을 정상적 근무 시간의 80 %로 제한한다. 직업 교육 훈련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 훈련 교육 경험이 없는 기업체는 앞으로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할 때, 적극적인 상담 지원을 받는다.

신연방주의 직업 훈련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 구 연방주의 발전 상태에 부응하여 - 지역적으로 형평을 이루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기업적 직업 훈련장의 개설이 요구된다. 촉진 재원의 수요 (현재 신청 금액은 약 6억 5,000 만 DM)는 사용 가능 재원인 2 억 5,000 만 DM 을 상회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재원 축적이 긴급하다고 판단 되는데, 그렇다고 이를 위한 재원 충당안은 설정될 수 없다.

구동독 대졸자와 전문대 출신에 대한 추가 자질 인정 및 직업 전환 교육을 위하여 각종 연수 교육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다. 더 이상의 국가적 촉진 대책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제 5 기획단 : 문화, 스포츠, 교회의 유지

- 주관 부서 : 연방 내무부 -

연방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 신연방주의 현재 재정 수요를 대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93 년도 연방 예산중에 6 억 5,000 만 DM, 1994 년도 예산 중에 5 억 DM 이 책정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점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문화 분야가 주 정부의 관할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지원은 단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본 기획단은 연방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의의가 있는 문화 시설과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체코간의 국경 프로그램을 국가적 수준 내지 유럽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문화재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각 건조물에 대한 복수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위해 1993년에 5,000 만 DM 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중기적으로 약간 인상시킨 수준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1994년도 재정 수요 6,000 만 DM, 1995 년도 재정 수요 7,000 만 DM).

도시 건축과 관계되는 문화재 보호 역시 중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전담반은 1993 년도에 3 억 2,000 만 DM 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착수된 대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1993년 중 2 억 4,000 만 DM 의 추가 수요가 충당될 수 없을 경우이다 (1994 년도 재정 수요 3 억 7,500 만 DM, 1995 년도 재정 수요 4 억 5,000 만 DM, 1996 년도 재정 수요 5 억 7,500 만 DM)

구동독에서 교회는 교회 건물, 목사관, 기타 시설을 자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뚱상 없었다. 이미 50 년대부터 이를 위한 재원이 연방 내독 관계성에 의해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못했다. 즉 독일 통일과 함께 추가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991년도를 위한 8,170 만 DM 과 1992 년도를 위한 8,000 만 DM 은 거의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1994 년도를 위해 최종적으로 1,500 만 DM 이 계획되어 있다. 본 전담반은 1994 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청은 주 정부와 지자체에게 스포츠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있다. 본 전담반은 이러한 스포츠 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광역 스포츠의 기저와 장애인 스포츠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연간 6,000 만 DM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 스포츠와 청소년 스포츠에 있어서 트레이너는 고용 창출 조치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진은 1992 년 말에 끝이 난다. 트레이너에 대한 계속 지원이 매우 긴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전담반은 트레이너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1,400 만 DM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6 기획단 : 대 동구 수출

- 주관 부서 : 연방 경제부 -

이미 1992년 9월 23일 연방 각의는 대 동구 수출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한 사유화
- 신탁청 산하 기업의 정비 능력과 구조 변경 능력 제고
- Hermes 수출 보증 50억 DM 추가 확보
- 개별적 사안 결정을 통한 50억 DM 수출 보증을 통한 수출 보장
- Hermes 수출 보증 보험에 의한 프로젝트 재원 지원에 구동독 기업의 참여 확대
- 구상 무역
- 구동독 지역으로부터의 수출 대가로 CIS의 에너지와 원자재 보유고를 이용
- 구동독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업간 협력 강화
- CIS와 중동부 유럽 제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와 산업 현대화를 위한 공급시 구동독 기업체에게 저리 용자 제공
- 대 CIS 수출을 위해 생산된 상품 중 재고품을 유능 수출업계를 통해 판매

제 7 기획단 : 재원 조달/인프라스트럭처

- 주관 부서 : 연방 재무부 -

본 기획단은 1992년도 신연방주를 위한 재정 이전이 당초 요구된 규모보다 훨씬 높은 독일 GNP의 5%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 예산에서

신연방주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향후 수년간 중기적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재정 이전 규모는 GNP의 5% 이상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의 인프라스트럭처 부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일인당 지출은 구 연방주와 비교할 때 2 배에 달한다. 이러한 비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자원 전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 단체 소유 도로와 공공 여객 운송 교통의 확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현재, 신연방주에 대해서는 24%, 그리고 구 연방주에 대해서는 76%로 분배되어 있다. 연방 장거리 도로의 분배율은 35 : 65 이다. 본 기획단은 이러한 도로의 2 대 분야에 걸쳐 각각 10 억 DM 이 전용될 것을 건의하는 바, 그렇지만 실행에는 난제가 따를 것임을 언급한다. 지자 단체 교통 자원 조달법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방 교통부는 연방 재무부의 동의하에 해당 법률안을 준비할 것인데, 이 법률안은 연방 상원의 동의불 요한다.

부자 공채에 의한 자원 조달 방법은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본 기획단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방안이 신연방주의 추가적 공공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민간 자원 조달을 위하여 각 주 정부와 지자 단체 연합회가 비용 조달을 위한 추진 모델과 협력 모델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주 법률은 사법적 조직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지자 단체 감독 기관은 이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본 기획단은 지자 단체 부자 일괄금의 신규 도입에 대하여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주 정부 자원 이외에 연방 정부의 보충 자원과 같은 )  
형태를 갖춘 지자 단체 부자 일괄금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 역시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의 부담이 전용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 제 8 기획단 : 농업

- 주관 부서 : 연방 농림부 -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농경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는 바, 그 자원 규모는 5 억 4,430 만 DM 에  
달한다.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2 억 DM 을 부담한다.

농업 적응법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 생산 조합 후속 기업체 간에 재산권  
분쟁이 대두된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는 정보 안내를 통해 줄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 적응법 안내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용은  
재산권 소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약 20 만동의 자기 집과 7 만동의 농경용 건물이  
건설되었다. 대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은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경지  
재조정 기관의 임무이다. 경지 조정 기관의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의 결합을 처리하기 위한 현실적 권고 사항이  
마련되었다. 경지 조정 기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측량 사무소와  
농경 기업체에게 더 많은 발주가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경지 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주 정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실 측량 사무소와 사립 농경 기업체에게 대규모 발주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 조합 후속 기업체를 통한 과거 자영 농가에 대한 재고량의 완전 반환 또는 일부 반환은 이와 같은 기업체의 부채 초과 상태 또는 이미 진행 중인 민사상의 완전 강제 집행/ 기업 청산으로 인하여 불가능 할 때가 잦다. 이 경우 상실된 재고량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연방 정부는 1993 년도와 1994 년도 예산 계획에 총 3 억 DM을 설정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연방 환경부와 신연방주는 특히 자연 보호를 위한 신탁청 소유 대지를 각 주 정부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는 법적 여건때문에 이러한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러한 대지가 자연 보호 상태에 저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거의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독일 농산물 중앙 마케팅 회사 (CMA)를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의회는 농경 분야 이외의 고용 가능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 년도용 재원을 증액시켰다. 이에 관계없이 관광 (농촌에서 휴가 보내기)과 같은 농경 관련 고용 가능성도 있다. 농촌 개발용 프로그램을 위해 1991 년부터 1994 년까지 4 억 6,500 만 DM 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 모델 (예: 재생 원자재, 촌락 관광을 통한 소득 증대)을 비롯하여 EC 의 각종 계획은 신연방주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부응하는 촉진 대책과 조성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 제 9 기획단 : 행정 체계 구축

- 주관 부서 : 연방 내무부 -

신연방주와 지자 단체를 위한 연방 정부의 인적 행정 지원은 1993년과 199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더 많은 연방 정부 근무

공무원들이 신언방주의 행정 기관에서 출장 시보 근무를 하도록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다. 연방 정부에 의한 인적 행정 지원을 위해 이미 마련된 자원(1993 년도 예산안: 7,500 만 DM)은 연방 내무부가 집계한 2 억 6,000 만 DM 이라는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 부족하다. 연방 재무부는 최고 2 억 DM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기획단은 연방 정부에 의한 인적 행정 지원이 1993 년과 1994 년에도 계속될 것과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연방 재무부는 이 점에 관하여 지불 동결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관리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300 명의 변호사가 연방 정부의 인력 지원 대책으로 확보되어 있다. 이로써 각 재산 관리소마다 1 명 내지 2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와 군은 이러한 호조건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촉구한다. 지자 단체 소유 재산의 신속한 이전 및 부자 우선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서도 200 명의 법조인 또는 유능 인력의 한시적 채용 (고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다.

측량 행정과 등기 행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력이 강화된다.

특히 재산 관리소 직원들은 오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신속한 판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적 상황이 철저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권 분야나 부자 분야의 상황이 난처할 경우의 반환 청구에 관한 검토시 적정한 판정 기준에 의한 법원 판결이 따라야 될 것이다.

등기소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하여 등기 대장 관리 사법 보조관 파견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처리 지원 (이동식 연제 상황 처리반) 을 강화할 것을 구 연방주에게 촉구한다.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정부의 파견관, 신연방주와 지자체 단체 연합체의 파견관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이 구성될 것인 바, 행정 구축 문제와 부자 장애 제거를 그 고유 임무로서 수행하게 한다.

## 제 10 기획단 : 환경 분야의 잔재

- 주관 부서 : 연방 환경부 -

현재 환경 잔재의 해당 면적은 이미 5 만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 23,000 여개소는 폐기물 적치소이다. 신연방주들은 피해도 추정 비용, 공해 잔재의 제 1 차 검사, 위험 방지에 필요한 비용이 약 70 억 DM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잔재 정리를 위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볼 때 수십억 내지 수백억 DM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은 매우 부정확한 것이고 군사적 환경 잔재와 군수 산업적 환경 잔재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 잔재 처리에는 수십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순위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 잔재 정리는 기본법 (제 30, 83, 104 a 조)에 따라 각 주 정부의 소관 사항이다. 이와 같은 관할권과는 관계없이 연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책임은 지속된다.

현재 환경 잔재 정리의 임무는 해당 관할 부서에 의해 최대한 수행되고 있다. 연방 차원은 물론 주 정부 차원에 걸친 상호간 경험 교환과 정보 교환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전담반은 환경 잔재 정리를 원활하게 협력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대형 프로젝트와 산업 핵심 분야에 걸친 환경 잔재 정리 임무 해결을 위한 사무소의 개설 (환경 잔재 정리 회사)과 같은 일련의 행정 조직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이점에 관하여 연방 재무부는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사무소의 주된 임무는 환경 잔재 처리에 필요한 자원 조달 규정에 관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합의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잔재 처리”의 투자 장애를 제거하고 직장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신탁청과 신폴방주들은 일단 구매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는 한 60 : 40 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예, 갈탄 광산 기업, 대형 화학 단지)에 대한 비율은 75 : 25 로 하기로 확정하였다.

환경 잔재 정리는 매우 상이한 여건 하에서 전문적 지식과 융통성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 잔재 정리는 특히 중규모 기업에게 적합한 사안이다. 가능한한 이러한 발주는 신폴방주에 있는 기업체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연대협약(Solidarpakt) 합의문

1. 이 자료는 1993. 3. 11 ~ 13 간 Bonn 수상실에서 개최된 연방수상, 16개주 주지사,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의장들 간의 비공개협상에서 타결된 연대협약 합의문을 전문 번역한 것임.

- 0 독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독일통일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이는 정부가 경제계에 신뢰할만한 기본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함. 이는 아울러 모든 독일인들의 연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0 협약 당사자들은 1995년부터 장기적으로 통독비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1995년 558억 DM의 재정이전을 통해 신설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개선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함.
  2. 환경오염잔재를 해소하고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경주함. 이를 위해 신탁청의 재정차입규모를 확대함.
  3. 신설주의 생산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적극적 방안과 광범위한 재정 수단을 모색함.
  4. 연방철도개혁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5. 신설주의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함.

- 주택건설분야의 구채문제를 해결

- 부채를 1 평방미터 당 150 DM 수준으로 탕감하며, 이를 위한 재원 310억 DM은 구채변제기금 (Erblastfond) 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함.
- 주택사유화를 통한 수익을 구채변제기금 부담에 충당
- 주택분야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액을 1994년 47억 DM, 1995년 23억 5,000 DM 으로 연방과 신설주가 반반씩 부담.

- 지금까지 소유주로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주택건설회사는 은행융자에 애로가 있으므로, 정부가 잠정적으로 융자를 보증해 줌.

- 연방의 주택신용대부금을 현행 300 억 DM 에서 600 억 DM 으로 증액, 이중 10 억 DM을 이자를 3 % 포인트 낮게 적용, 조립식주택 개선사업에 투입, 나머지 200억 DM은 2 % 포인트 이자인하를 위해 사용

- 동독지역 도시건설촉진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 개인소유 대지위에 주택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0 % 특별면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6. 1993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20억 DM의 추가자금을 지원

7. 사회보장혜택은 축소하지 않음.

그 대신 사회보장비 지급 및 경제분야에서의 남용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감.

8. 정부지출삭감 및 세금보조혜택 축소를 통해 90억 DM을 절감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감조치는 연방재무장관과 4개주 재무장관이 실무위원 구성,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결정함.
9. 1995. 1. 1 부터 7.5 % 연대부과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소득액이 기존공제액을 넘는 담세자들의 사회적 구조 (가족, 결혼 등)를 고려하기로 합의함.
- 면세점을 7만 DM에서 12만 DM으로 조정함에 따라 개인소유재산세를 인상함.
- 이를 통해 연방은 1995년에 280억 DM의 추가재원을 마련
10. 1993년 신설주의 자금소요를 감안, 연방과 서독지역주가 이자소득세법 (Zinsabschlaggesetz)에 의한 각각 8억 5,500만 DM 와 13억 DM 의 추가세수에 15억 5,000 DM 를 추가 (연방과 서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총 37억 DM을 독일통일기금에 추가 지원
- 1994년 독일통일기금 증액을 위해 연방과 서독지역주가 추가재원을 마련
    - 이와 관련 재무장관들이 협의, 연방수상과 주지사들간에 결정토록 함.
    - 연방정부는 연방재무장관과 협의, 53억 5천만 DM을 추가 지원하고, 서독 주정부는 약속한 35억 DM을 추가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나감.

# 연대협약(Solidarpakt) 관련 논평

## (I) 위험스런 협약

이번에 결정된 연대협약을 실제 대단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최소한 하나쯤은 마무리지워 보이겠다는 정치가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협약은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협약의 재정이 대부분 세수증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들은 이제 1995년 이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연대부과금 (Solidarzuschlag)이 예상 외로 7.5%로 높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려를 자아낸다. 이로 인해 아무런 탈이 없을런지?

동부독일의 경제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지연과 퇴보상태에 있는 경제통합이 진전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가들이 만족해 하며, 보기 드문 결과 또는 정치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털어 놓음은 그들의 솔직한 심정일지는 몰라도, 이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1995년에는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인상으로 인한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계산방식이다. 세금인상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

만약 그렇다면 이 협약은 사상누각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신설주 지원을 위해 마련된 10개 협약 사항들, 즉 장기적 재정 개선 방안, 독일 통일기금의 즉각 인상, 주택건설 및 일자리 마련 방안 등은 경기가 회복·강화되어 적정 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이제 과중한 세금인상이란 부담을 견어내야만 하는데, 정당들 간의 의견규합이 예산항목 중 소비성 지출부문에 대한 삭감 포기불 전제로 하여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돈이 실제 세무당국으로 들어올 지는 물론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곧 호전되지 않으면 추가인상에 의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 Franlfirter Allgemeine Zeitung, '93.3.15.

때분이다. 이럴 경우 막손환은 눈에 보이듯이 자명하게 된다: 국가 예산적자가 보다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자는 늘어나고, 부자는 줄어 들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이 다시 안정을 찾는 데에는 가혹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연방은행에서부터 최고 경제협회들에 이르기까지 예산 절약을 요청하고, 또 다른 조세부담을 경고하였던 자들은 이를 벌써 내다보고 있다.

이 연대협약에는 절약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사회보장지급비의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 지출 절약보다는 감독경비가 더 많이 될 것이다. “보조비 삭감”(Subventionsabbau)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영업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조치일 뿐이다. 일부 삭제되어야 마땅한 규정들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단 수익이 줄어들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약간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댓가를 치르는 가격, 그것도 하필이면 경기가 부진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비싼 값을 치르는 우둔한 처사이다.

이 연대협약은 조세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는 결코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조세문제가 연대협약이 처음부터 안고 있던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수확은 무엇인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별로 없다. 왜냐하면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계산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협약의 결정적 약점이 있다.

연방 수상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이 연대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과찬을 마지 않았던 연대협약은 -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 이제 확정되었다. 콜 수상이 앵홀름 사민당 당수와 악수하는 모습은 국가 과제를 주정부, 야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정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동부독일 경제 부흥 방안을 둘러싼 시비는 이제 본 협약의 체결로 인해 내년도 선거전의 주요 안건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제 통일 수상은 그의 명성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였다 - 적어도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1994년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콜 수상의 입장에서는

이 협약을 “94년도 연대협약”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마무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계에서 성공으로 간주된다.

연방과 주정부 간의 협정사항들은 이제 확대·보완되어야 한다. 연방과 주정부간의 새로운 재정균등화를 위한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정부들간에 구체적인 조정항목들이 협상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 - 주정부간의 전선이 없어진 이제 각 주정부들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하고 조정하는 것이 연방국가제도가 맡은 기능 중의 하나이다.

연방 - 주정부간의 협약을 진정한 연대협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노사협약 당사자들도 개별 배분 요구사항을 전체 경제의 수요와 생산에 걸맞춰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때 특히 절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조의 역할이 중시된다. 이 추가 과세 부담이 가진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인해 노조측의 업무도 용이해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되지 않는다면 사용가능한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이 이 점도 엄두에 주었는지 ?

## (Ⅱ) 좋은 기회를 놓치다

- Wilfried Herz -

협약 당사자들은 떠돌이처럼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알맹이없는 빈소리일 뿐이다.

연방, 주, 정부, 야당 간에 합의점을 찾게 된 본 연대협약은 그 정치적 협상력을 입증해 보일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증전과 다름없이) 동부독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부독일의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여전히 걸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력있게 행동하였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가장 시급한 요청에 대해서조차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헬무트 콜이나 소심스런 도전자 비온 앵홀름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무언가가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에 만족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는 말이 된다. 연대부과금 (Solidarzuschlag)이 1995년 1월 1일부터, 다시 말해 경기침체를 벗어난 시점에 도입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연대협약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연방정부와, 사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당장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부독일의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을 쳤을 것이다. 조세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1994년에 줄지어 있을 주의회 및 연방의회 선거가 지난 뒤에야 유권자들이 느낄 것이라는 계산이 연대 협약 결정을 둘러싼 정치가들의 공공이 속이었던성 싶다. 따라서, 일례로, 연방과 주가 새로운 재정균등화에 일치불 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진정어린 정책 수립에의 의지의 구체적 발현이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렵다. 진실은, 1995년도 세수분배에 신설주들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기본법과 통합조약으로 인해 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지?

\* Die Zeit, '93.3.19.

신설 5개주 내 주택건설방안과 같은 주요 안건의 재정분제를 다루는 정치가들 모임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채에 또 부채를 지는 방법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절약과 재편성이라는 바람직했던 목표가 본 연대협약에는 흔적만을 간신히 남기고 있을 뿐이다. 테오 바이겔의 작년도 건축재정 운영계획서는 파지로나 쓰여질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제 사민당이 동의했다고 해서 당장 재정정책이 건설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조속한 경기회복의 선결조건인 건설한 경제 여건들이 그 구축과정에서 좌절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연대협약이란 절대 필수적 프로젝트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 명칭에 불과하다. 수상이 경제계로부터 얻어낸 부자승인은 곁핍기 미봉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독일이라는 경제입지와 경쟁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이다. 작년 초가을 연대협약 준비 첫번째 모임에서 수상이 내걸었던 당시의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신설주의 경제와 행정구축을 어떤 수단으로 이룩하겠다는 말인지? 이에 대해서도 이 찬사어린 협약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도, 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독의 경제부흥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콜 수상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책을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소유권 문제와 관련, 기본원칙인 '보상에 앞서 반환' (Rueckgabe vor Entschädigung)이라는 명제의 앞·뒤를 바꿀 수 없다면, 이들 신청건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나마 보완·개선시켜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왜냐하면 신청사례들의 처리부진 상태가 부자를 어렵게 만드는 제 1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부독일로의 무분별 과다 보조금더미 - 이 역시 부자저해요소로서 - 를 감별·축소시킬 경우, 이 역시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의 기본적 과오는 연방과 주정부 지도자들, 특히 해당 재무장관들이 각자의 호주머니 사정에만 전전긍긍하였지, 다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정부들은 조세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물론 연방과 주들의 금고가 서로 걸맞게 조정되었다고 해서 공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의 연대협약으로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

### (Ⅲ) 공동 합의 하에 과세 부과

- Thomas Hanke -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는 작센주 수상 부르트 비덴코프가 연대협약 회의결과를 두고 일컬은 "Bonn의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여당들과 사민당 수뇌부 간에 가까스로 합의를 성사시킨 다음 주말의 흥분에서 깨어나 그 협상결과를 차분히 살펴보자. 이 협약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그리 온전치 않다는 의구심이 일게 되었다. 수상관저에서의 초당 대규모 회동이 있는 다음 36 시간도 채 못되어 회의 참석 오스카 라퐁텐과 사민당 사회문제 전문가 부돌프 드레스러가 협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사 사민당 당수 비운 앵홀름이 체결안 거부 시도에 완강히 반대할지라도, 그리고 사민당 의원들은 당수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사민당 원내 사무총장인 페터 슈트록크가 호언장담을 해올지라도 사라진 열광을 되살려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연방과 주들이 이들간에 가로놓여 있던 장벽을 극복 - 경제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라고 간주하고 있다 -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결방안 자체가 밀대 해결책이 되리란 보장은 없다.

이 재정협약이 안고 있는 두가지 결정적 취약점으로, 첫째는, 국가 재정의 긴축운영 대신 새로운 부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기민당 정치가들도 탄핵하여 마지않는 통일 재정 분담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재가 정상화 대신 앞으로 1년 6개월 간에 걸쳐 그 도를 더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는데, 후자는, 특히 동부독일산업의 와해가 가져오는 부담을 그 주요인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다른 문제점으로는, 본 연대협약이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

\* Die Zeit, '93.3.19.

연방과 주 간의 재무관계가, 그것도 해당시한 2년전에 이미 그 새로운 불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모든 국립 기관들, 다시 말해 연방을 비롯한 동·서부의 주,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기할만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경제 정책 노선을 은밀히 변경시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부독일 주택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막대한 신용대부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의 재정계획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원래 올해 신규부채액을 380억 DM으로 예정하였으나, 최근의 추경예산안에 의해 그 수치가 510억 DM 선으로 쾅쾅 뛰어 올랐다. 주 초에 자민당 당수 쾨토 그라프 랑스도르프가 '600 ~ 650억 DM' 선이 현실적인 수치라고 예시적 진단을 내렸을 때, 테오 바이겔은 이에, "그라프로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계산도 할 수 없다" 라고 무뚝뚝하게 쏘아 부쳤다.

그 말은 옳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발언에 의하면 바이겔 자신도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이번 주 화요일 그는 어이없어 하는 기자들 앞에서 이번 연대협약으로 인해 1993년도 연방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나 더 상승하게 될지는 연방 재무부 전문가들도 아직 계산해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정보결핍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년전부터 바이겔은 예산증가율 3%의 상한선을 그의 긴축재정운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 이미 그 한도치를 지킬 수 없었으며, 1992년도에는 거의 이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연방 예산 지출 증가율은 3%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주말의 합의로 인해 고용창출대책으로 20억, 신설주들에 대해 16억 마르크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예산 지출액은 예상폭보다 1% 정도 웃돌고 있다. 연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90억 규모의 절약금은 이번 회기와는 상관없이

1995년부터 적용되는 바, 이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를 위해선 4개주 재무장관들과 바이겔로 구성된 실무단간의 합의가 아직 필요하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항상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부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다. 람스도르프가 제시한 600 ~ 650억 마르크는 오히려 낙관적인 수치이다. 6월에 새 세수추정이 있을 예정이다. 라인란트 팔츠의 주정부 수상 루돌프 샤프 (사민당)은 말하기를, 연대협약 협상회의에서 바이겔이 끈질긴 추궁에 못이겨, 국가 총 세수감소액이 약 3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며, 이 중 150억은 연방이 부담해야 될 것임을 실토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연방고용청 역시 수십억원 상당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연방의 총 신규부채는 700억 마르크를 현저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지불에 사용되어질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연방정부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기부진에 의한 세수감소를 지출삭감을 통해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말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대협약 협상자들은 (이 대신에 예산재편성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삭감을 담보로 하지 않은) 추가지출을 결정함으로써 불균형만 보다 더 첨예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연립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연대부과금을 올해 또는 내년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국가 재정의 긴축 운영은 - 이 역시 원래 연대협약의 목표였는 바 - 이로써 점점 더 요원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경기침체라는 압박때문에 연방정부는 점점 증가하는 국가부채란 부담은 뒷전으로 제쳐 놓은 것 같다. 주택건설문제가 이를 다시 입증해 주고 있다.

동부독일 주택의 현대화는 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저금리 신용대부방안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결정을 보았다. 이에 대해 연방 수상의 측근조차 당혹을 감지 못한 채 시인하기를,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민당이 요청하였던 것 이상이다”. 국가 부자 방안에 대한 사민당의 강력한 요구를 7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비웃었던 테오 바이겔이 이제 스스로 그 조소거리가 되게 되었다. 요컨대 Bonn 정부는, 대부분이 신용대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대한 경기부양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연대협약의 결과라면 옛날에도 이는 이미 가능했었다”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견해이다. 어쨌든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연방측으로서는 당초 계획한 사회복지수당 삭감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에 따라 여전히 저소득층이 통일로 인한 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될 것이다. 동부독일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민당측이 제시했던 노동시장 부과금(Arbeitsmarktabgabe)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부독일 대변혁의 결과는 - 부당하게도 - 모두 실업보험금의 지출로 재정 충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1995년부터 도입될 연대부과금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요인들’(soziale Komponente)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사민당 측은 소득하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는 부과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이 소득하한선은 어차피 이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최소생계비 수준보다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 한계가 이 보다 높아질 경우, 연대부과금을 협정에 따라 연방에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280억 마르크의 자금은 엄출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한가지 방법으로, 추가금 징수폭을 지금까지의 7.5% 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바이겔은 매우 교활한 변형모델을 착안해 내었다. 그 골자는,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사민당이 요구하는 사회계층간의 형평성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민당의 반응은, 만약 바이겔의 이러한 착상이 진정이라면, 의견 조정은 절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히 맞서고 있다.

이 밖의 다른 협약 사항들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동부독일의 기간 산업 구제를 위해 신탁청은 원래 예정 액수 이상의 신용대부를 제공받도록 결정되었었다. 이와 관련 사민당 정부 지도자들이 주말에 발표한 숫자는 300 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에 달한다. 비덴코프의 발언에 의하면 환경대책 자원자금까지 포함시켜 450 억 마르크가 거론되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상실 관계자들이나 바이겔도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였다. “신탁청의 신용대부 한도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이겔의 고정입장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미 내정된 연간 80억 마르크 상당 추가 신용대부권의 구체화문제와 관련 1995년에 설립될 구동독 구제 청산기금(Erblastfonds) 방안으로 별도 내정해 놓았다고 하였다. 요컨대, 현 시점으로서 신탁청 사업관계로 부채를 확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로서 밝혀지게 된 사실은, 이 기금이란 다름아닌 - 지금까지 대부분이 읍지에 가려져있던 - 동독 마르크의 D - 마르크로의 화폐교환에 따른 비용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은 1995년까지 적어도 4천억 마르크에 달하게 될 신탁청과 신용청산기금의 부채를 인수토록 되어 있다. 1994년에 해제될 신탁청이 기간 산업 구제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신규부채를 지게될지에 대해서는 바이겔도 분명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동부독일의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할지 이 역시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으나, 항상 그렇듯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연대협약의 주요 사안들은 증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부독일 주들은 이번에 부사히 화를 면했다는 것 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인다. 주로서는 연방이 부담해야 할 액수의 1/10 정도만 감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라인란드 팔쯔주 재무장관 에드가 마이스터는 “늦어도 내주까지는 주들도 절약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주와 비교하여 가난한 편인 라인란드 팔쯔주의 추가부담은 1995년 약 7억 마르크 정도에 달하게 될 것이며, 잘사는 주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경우는 약 43억 마르크가 될 것이다.

연방과 주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시민들에게 절약과 공과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주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절약조치와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연대 협약의 합의 사항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비덴코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 사회 · 복지분야

# 과거 양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 1. 이산가족 재회 추진

- o 제네바 국제적십자협정(1949. 8. 12) 제 24 조 - 제 26 조 및 국제 적십자총회 결의에 의하면 이산가족 재회 추진업무는 각국 적십자사의 본연의 임무에 속함.
- o 그러나 구 동독 적십자사와 구 서독 적십자사 간에는 분단이후부터 양독간 교류 . 협력 기간동안에도 이러한 이산가족 재회문제가 다루어지지 못했음.
  - 1952년 재조직된 구 동독 적십자사는 상기와 같이 국제적으로 부여된 가족 재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음.
    - \*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구 동독 적십자사는 당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당 외곽기구였으며, 적십자사의 주요 간부는 동시에 공산당의 고급당원이었기 때문에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1963년부터 내독관계성을 통해 동독과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고, 특별사업으로서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부옥된 정치범 석방을 위해 물건으로 댓가를 지불하면서 이산가족의 재합류를 추진하게 됨.
    - \* 1963 - 1989 동안 서독정부는 35 억 DM을 동독측에 지불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하며, 3 만 4 천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25 만명의 이주를 도와 이산가족 재회를 성사시킴.

-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지불거래는 물론 동독측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서독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양독간의 이산가족 합류사업은 전적으로 정부(내독관계성)가 수행함.
- o 그러나 서독 적십자사는 동독이외의 국가에 살고 있는 독일인 이산가족들의 재회사업을 줄곧 추진해 왔음.

## 2. 환자 수송

- o 양독 정부는 1974. 4.25 “보건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편 지역에 여행 및 방문도중 긴급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응급 또는 입원치료를 무료로 하여주고, 아울러 환자를 구급차로 국경선까지 수송해 주기로 함.
- o 이때 환자의 수송은 드레스덴(동독)과 본(서독)에 위치한 적십자사 사무국이 중앙본부가 되어 이 기관의 중계로 각 지방지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이루어졌는데 이 업무가 양독 적십자사가 내독관계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이었음.
  - 양 중앙사무국간에는 텔렉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수송환자 신상명세, 국경통과지점 장소 및 일시를 통보하고 국경통과소에서 환자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졌음.
  - 동독정부는 주로 연금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들(서독 방문도중 탈출해도 체제에 별로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층)에게만 여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독방문 도중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 서독쪽으로부터 환자 수송 횟수가 많았음.

- 원칙적으로는 국경선까지만 환자를 수송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옮겨 실기 어려운 중환자일 경우 직접 국경을 넘어 상대편 거주지까지 운송하여 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음.

### 3. 실종자 찾아주기

- o 각국 적십자사는 적십자사 고유 업무중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간 분쟁, 내전, 천재지변 등 때문에 실종된 자들을 찾아가 가족합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미미하나마 양독간에 협력이 있었음.
- o 국제적십자사는 실종자 찾기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조하에 가능한한 광범위한 수색망을 구축하여 실종자를 추적해가고, 가족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o 양독간에는 상대편 지역에서 2차 대전중 실종된 자들의 가족들이 각 적십자사에 신고를 할 경우, 이들의 신상명세를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상대편 적십자사에 심인을 의뢰하여 공동작업이 이루어짐.
  - 만약 상대편 지역에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이를 즉각 통보하여 생존하고 있을 경우 가능하면 가족재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o 그러나 양독 적십자사의 활동은 실종자의 신원파악에 한정되고 이산가족 합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협상채널을 이용함.

#### 4. 양 적십자사간 접촉

- o 양독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문제협이나 기타 예방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공식접촉은 하지 않았으며, 국제적십자사총회에서나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음.
  - 양독일은, 남북한과는 달리, 상호 왕래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본 회답이나 실무접촉 등을 갖지 않았음.
- o 양 적십자사 사무국 간에는 우리와 달리 적십자사간 전용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텔렉스만 설치되어 접촉이 극히 사무적이었음.

## 구동독 피난민 정착·지원문제

### 1. 법적인 근거마련 및 운영상의 제 문제

- o 2차대전후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의 통치를 피해 서방점령지역으로 넘어오자, 서방측은 이들을 다 수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수용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서독의 기본법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점령지역별로 피난민들이 서방측에서 확실히 인정할만한 어떤 사유로 넘어 왔으며, 이들이 어떤 기준하에 수용되는지 그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함.
    - o 영국과 미군 주둔지역 주들은 각각 1947년부터 피난민의 수용기준과 주둔지역 정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1949.8.29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웰젠의 지침서”(“Uelzener Richtlinie)라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
  - 서독정부는 기본법 제정시 11조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Freizuegigkeit)를 명시하였고, 116조에 구 동독지역 주민 또한 서독의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 동독주민중 서독으로 피난오는 자들의 수용여부에 관한 국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o 서독정부는 1950.8.22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 정식 명칭은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 Gesetz ue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임)을 제정함.

---

\* 구동독지역으로부터 밀려오는 피난민을 서독정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하였는가에 대해 주독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임.

- 이 법은 1961.6.29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인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Notaufnahmegesetzes”가 1951.6.11 제정되었으며, 이 시행령도 1965.6.14일 개정됨.
-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음.
  - 양독간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동독지역으로부터 지나친 피난민 유입을 적절하게 법적으로 통제함.
  - 각 지역 주정부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수용기로 한 피난민은 각 지역주에 적절히 배분하여,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조속히 동화되도록 함.
  - 서독의 고용시장 및 주택사정을 고려하여
    - 당시만해도 서독 또한 전후복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
    - 동독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피난민의 유입을 적절하게 줄여나감.
- o 이 법의 제정이후 실제운용과정에서, 피난민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입법취지는 달성되었으나, 피난민 유입을 줄여나가려는 세번째 입법목적은 관철시키기 어려움이 드러났음.
- 우선 긴급 수용법 제1조에 의해 체류허가 (Aufenthalterlaubnis)를 받기 위해서는 피난민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서독정부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음.
  - 직계 존·비속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피난
  - 서독에서 주택과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제시할 수 있는 피난
  -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시도한 피난
  - 피난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피난

-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체류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들이 그렇다고 동독지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민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
  - o 더구나 체류허가를 못받은 사람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피난민 담당 관청이 아닌 사회보장청이나 종교계통의 구호기관에 구호를 의탁함에 따라, 체류허가증 발급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음.
- o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긴급수용법 제1조 1항과 기본법 11조와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됨.
  - 헌법재판소는 1953.5.7 기본법 11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 지역으로부터 피난 온 독일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피난민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선별을 규정한 긴급피난수용법 제1조 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상황이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였으므로, 동독지역으로부터 오는 피난민들은 서독땅에 일단 이주한 이후부터는 차별없이 기본법상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누린다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조성되어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내에서는 구 동독의 공산정권은 점점 불법시되었고 이에따라 서독내에서의 구 동독주민들의 “체류불허”에 따르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피난민의 수용절차는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리는 “선별절차” (Ausleseverfahren)에서 단순히 “기록하는 절차” (Registerverfahren) 바뀌게 됨.
  - 동독공산정권이 점차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조하며, 국경선을 봉쇄해가고 베를린장벽을 구축한 이후부터는, 피난민의 체류허가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어졌으며, 피난민이 수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독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난민은 기본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당연히 향유하게 되었음.

- o 긴급수용법에 의거 피난민들은 베를린과 기센(Giessen)에 있는 수용소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고, 각 주정부 대표자와 협의하에 각 지방주로 배분되어 정착하게 됨.

## 2. 구 동독 피난민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역

### o 긴급수용소 제재시 제공되는 혜택

- 연방정부에 의한 일회 보조금 : 1인당 200 DM
- 주정부에 의한 보조금 : 가장 30 DM  
가족 1인당 15 DM
- 이주민에 대한 용돈 : 가장 15 DM  
(Hessen 주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재원) 가족 1인당 10 DM
- 신청자의 요청(개인의 연고관계)에 따르거나, 주정부의 사정에 따른 정착가능성(직장, 주택등)을 고려 수용될 주를 결정
- 직업정착, 사회정착, 보조, 혜택에 관한 상담
- 숙식 및 숙식비
-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 (필요시)
- 종교단체에 의한 의복제공
- 향후의 주거지나 주립입시수용소까지의 차표
- 긴급수용소 (Giessen, Friedland, Nuernberg, Unna-Massen)로부터 향후 주거지까지의 이삿짐 운송
- 대학진학상담

0 정착될 주에 도착한 이후

- 거주지 마련

-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
- 주택소개
-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연방정부는 피난민 복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주정부에 재정지원함.  
주정부는 이 예산을 자체예산과 함께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
-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택건설법 (WoBauG)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주택입주상의 혜택을 줌.

- 생활상담과 후견

-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 독신자 : 3,000 DM
-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기본액 : 4,000 DM  
기타 가족 1인당 : 1,000 DM
- 최고액 : 10,000 DM

- 연방실향민법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제92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서의 인정

- 연방교육촉진법 (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 BAFOEG) 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진학, 제한적으로 방송통신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

- 대학진학시 최고연령이 30세 (서독에서는 30세가 되면 용자를 받지 못하나 특별한 근거제출시 동법의 예외 규정 적용)에 달하더라도 장학금 용자지원
- 대졸자(30세에서 50세 사이) 사회진출을 위한 보조
  - 자격증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 정착이 가능하도록 학업추가이수시 장학금 혜택
  - 동독에서 취득한 졸업증이 완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독대학에서 추가연구를 마쳐야 적절한 직업정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학업이수에 따른 보조
- 자녀수당지급
  - 연방자녀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에 따라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는 한 이주후에도 동독,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 의료보호, 질병급부금
  - 법정질병보험에 가입한 자는 서독에서 적용되는 질병보험법에 따라 질병보험으로부터 급부금을 받음.
  - 동독에서 온 이주민으로서 서독에 도착한 지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 급부금 지원을 신청할 권한이 있음.
  - 질병급부금은 단체협약임금의 최고 80 %, 혹은 최고 최종실직수당 만큼임
- 연금보험
  - 서독에서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을 받음.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을 산정해 줌.
  - 1945.1.1. - 1949.12.31 중의 기간, 강제이주기간 내지 피난기간, 도착이후에 본인의 과실없이 질병이나 실직에 의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일반적으로 산정해 줌.
  - 과거의 자영업자도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대상으로 고려

- 실업보험

- 동독, 동베를린에서의 정치적 이유로 박해에 의한 실직기간도 취업기간에 고려
-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을 실업수당 및 실직지원금 계산시 고려
- 자영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그 가족으로서 자영업을 도왔던 기간을 고려

- 실업수당

- 자녀수가 최소 1명이상인 실직자일 경우 단체협약임금 (실수령액)의 68 %
- 독신자는 단체협약임금(실수령액)의 63 %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동독, 동베를린에서 발생했던 산재의 경우에도 서독에서 적용되는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 전쟁희생자원호

-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 : BVG) 제1조에 따라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는 신청할 경우 건강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원호를 받음.
- 1945년 5월 8일 이전에 조국을 위해 근무하다가 신체의 장애를 받았거나,  
1945년 5월 9일 이후 조국을 위한 병역의무 수행시 신체의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도 원호대상이 됨.
- 신체의 장애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할 경우 원호혜택을 받음.

- 연방사회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에 따른 지원
  - 생계비 지원
  - 주택임대료지원
  - 난방비 보조금
  -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 공공사업발주에 있어 우선적 수주 (§ 74 BVFG)
- 수공업자 협회에 가입 용이화 (§ 74 BVFG)
- 소득세법(Einkommenssteuergesetz) § 52 Abs.24, § 33a Abs.1  
에 따른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
  - 3년간 세금면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적용지역에서 주거신고불 한 해 기준 또는 피난민 수용증명서가 발급된 해 기준)
  - 의복과 가구의 구입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고려  
세금공제
  - 공장건물과 창고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허용
- 주택보조금에 대한 특별 면제액 (주택보조금법: § 16 Wohngeldgesetz)
  -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4년 이후 10년이 될때까지  
주택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 계산시 2,400 DM 까지  
공제해줌.
- 학자들에 대한 지원
  - 학자들이 학술연구경력면에서 이주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  
연방교육부장관은 서독대학에서의 직업정착을 위해 최고 2년까지  
인건비를 계약사무직 (최고급수 BAT IIa) 기준으로 지급하며  
재정지원함.
  -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은 서독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상기학자를  
계속 채용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임.

- 자영업 개업지원
  - 유럽개발계획 (ERP) 기업신설프로그램 (제조업)에 의한 유리한 조건의  
용자
  - 기업신설목적으로 체결된 저축계약을 근거로 한 저축에 대한  
저축장려보조금
  
- 농업정착(부업)을 위한 보조금과 용자금 지원
  
- 전쟁포로보상법 (Kriegsgefangenenentschaedigungsgesetz) 에 따른  
구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
  - 구 전쟁포로에 대한 귀향민재단의 지원 및 연금조정금 보상
  
- 구속자지원법 (Haftlingshilfegesetz) 에 따른 지원 (구 정치범  
지원재단의 지원 포함)
  
- 부담조정법 (Lastenausgleichsgesetz) 에 따른 지원
  - 후보상금
  - 가구보상금
  - 전쟁피해연금
  - 정착용자금

## 내독간 상속재산의 반입 · 반출

### 1.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속재산 반입

#### o 법적인 근거 (동독법령)

- 1973. 7. 14 자 제22차 관세법 시행령  
(Die Zweiundzwanzigste Durchfuehrungsbestimmung zum Zollgesetz der DDR)
- 1976. 9. 13 자 제27차 관세법 시행령
- 1987. 11. 1 자 제27차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 o 반입이 가능한 상속재산 (Erbschaftsgut)의 정의

-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법적인 상속인의 지위로서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획득되어진 재산으로서, 제3의 권리인과 소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동산만이 반입이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o 상속받은 현금으로 구입한 재산
  - o 유산을 매각한 수입으로 다시 구입한 재산
  - o 공동소유유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간에 쟁송중인 재산

#### o 반입되는 물건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상속증명 (Erbschein)이 필요한 바, 유언장 원본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사본의 제시나 동봉이 요구됨.

- \* 과거 동·서독 주민들의 왕래에 따라 발생한 상속재산의 반입과 반출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주독대사관이 정리·요약한 보고서임.

- o 상속재산의 반입은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 지 1년이내나, 상속재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지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o 상속재산의 반입시는 반드시 세관의 통관절차를 받아야 함.
  - 세관신고서 작성은 상속인 본인이나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재산 운송회사 또는 운송인이 할 수 있음.
  - 관세수수료 (Zollgebuehren)는 물지않음.
  - 세관신고서 제출시는 특정한 양식에 의한 반입물품 목록표를 2통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물품들이 동독 관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물품임을 상속인이 확인·서명해야 함.
    - o 물건을 전체로 보내지 않고, 일부분을 나누어 보내는 경우, 목록표 작성시 일일이 다 기재해야 함.
- o 상속재산을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고 소포로 보내는 경우는 상속인에 의해 확인·서명된 물품목록표와 해당관청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상속증명 사본을 동봉해야 함.
  - 소포 수취인 주소 위에 “상속재산 - 관세서류증명” 임을 명시해야 함.
  - 상속재산은 선물용 소포 발송 대상에서 제외됨.
- o 여행자들의 동독방문시 상속재산을 지참하여 반입할 수도 있으며, 국경에서 세관검색은 다른 반입절차와 같음.
  - 그러나 운송회사에 맡기지않고 개인적으로 이를 지참한 경우

화물트럭을 이용한 운송을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개인승용차나 개인승용차에 딸린 트레일러를 통한 운송만 허용했음.

0 반입 제한·금지 품목

- 상속재산으로서 승용차나 생산제 등의 반입은 대외무역성의 특별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함.
- 귀금속, 보석, 진주 또는 진주로 만든 제품의 반입은 외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관서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함.
-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입은 금지됨.
  - 총포류 및 화약 (가스총, 공기총, 공포탄 포함), 폭발물
  - 동물
  - 중고의류 중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있지 않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지도 및 측량도
  - 개인신분증명 및 신분증명 발급을 위한 양식
  - 방송용 송·수신기 및 그 부품, 조립설명서
  - 방사능 물질
  - 군사적인 색채를 띤 어린이 장난감
  - 의약품
  - 주식, 저금통장, 유가증권
  -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량물품
  - 문화적인 유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악보
  -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테이프, 정보처리 디스켓 등 (음반이나 음악용 테이프는 가능함)

- 문학서적 · 인쇄물 · 그림 · 화보 등은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파시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보복심에 가득차 있고, 외설적이고, 동독과 동독주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반입이 불허됨.
- 우표와 동전주화 등은 그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닐 때, 또는 선동적일 때 금지됨.
- 필름, 필름원판, 인화지 등은 그 내용이 사회주의 국가와 그 주민들의 권익을 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금지됨.

## 2. 동독에서 서독으로 상속재산 반출

- 법적인 근거: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속재산 반입시와 같음.
- 반출이 가능한 상속재산의 정의: 반입이 가능한 상속재산의 정의와 같음.
- 반출시도 반입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증명이 필요하며, 유언장 원본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사본이 요구됨.
- 반출도 반입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 지 1년 이내나, 상속재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상속재산의 반출시도 반드시 세관의 봉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늦어도 반출 3주일 전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제출해야 함.
- 상속재산의 반출도 반입과 같이 여행자들의 서독방문시 지침이 허용됨.

0 반출 제한 · 금지 품목은 반입 제한 · 금지 품목과 거의 같으나  
다른 반출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은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생활용품은 귀금속법에 의한 반출허가는 필요없으나, 외환관리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함.
- 과학기술 · 경제적 측면에서 신발명품으로 간주되는  
특히 · 신연구기술에 관한 자료 등은 반출이 금지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고서적 등 원문 등도  
금지됨.
- 박물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원광석 · 화석 등도 반출이 금지됨.
- 동독의 권익을 해한다고 간주되는 출판물과 원고 등도 반출이 금지됨.

## 내독간 사체 · 유골의 반입 · 반출

### 1. 동독주민이 서독 방문 도중 사망했을 때 동독으로의 반입

- o 만약 동독주민이 서독지역을 방문하다가 사망하여 이를 동독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동독이 1971. 10. 20일 제정한 “사체인도에 관한 규정”(Anordnung ueber die Ueberfuehrung von Leichen)에 따랐음.
- o 사체나 화장한 유골의 인도는 장의용 운구차, 철도,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음.
  - 화장한 유골단지는 우편(소포)를 통해서도 송부가 가능했음.
    - o 소포로 보낼 때 발송인은 반드시 화장터나 공동묘지 관리소가 되어야 하며, 수취인은 공동묘지 관리소나 매장지가 되어야 했음.
  - 사체 운반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가지 운반수단으로부터 다른 운반수단으로 무단으로 옮겨 실어서는 안 되었음.
  - 사체를 장의차로 운구하는 경우 서독측은 국경봉과소까지만 운반하고, 국경에서 동독측 장의차에 옮겨져 동독측에 의해 최종 장지까지 운구되었음.
    - o 국경봉과소에서 사체를 인도하는 일정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음.
    - o 국경을 통과한 사체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목적지로 향해야 함.

\* 양독 주민들이 상대편지역 방문도중 사망했을 경우, 사체 · 유골의 반출 · 반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주독대사관이 요약 · 정리한 것임.

- o 사체를 인도할 때는 관계서류를 지참해야 했던 바, 사체운반증명 (Leichenpass) 또는 사체운반증명에 준하는 서류와 사망신고서 (Sterbeurkunde)가 요구되었음.
  - 유골을 소포로 발송할 때도 사망신고서를 동봉하든지, 동시에 발송해야 했음.
- o 동독으로 운구된 사체의 매장이나 유골의 매장을 위해서는 동독 지방관청(시·군 내무과)에서 발행한 매장허가서가 요구되었음.
- o 사체의 운반, 사체의 화장 또는 유골의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독주민이 방문했던 서독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동묘지·매장담당부서)가 장의사나 관계인의 비용청구에 따라 이를 지불하였음.
  - 서독측은 서독지역에서 내독간 국경까지만 운구할 수 있으므로 그 관련부분만 부담했음.

## 2. 서독주민이 동독 방문 도중 사망했을 때 서독으로의 반출

- o 사체인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역시 동독이 1971. 10. 20 제정한 “사체인도에 관한 규정”임.
- o 사체나 유골의 인도는 반입서와 같이 장의용 운구차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화장된 유골은 우편으로도 가능했음.
- o 장의용 운구차를 이용할 때는 동독측은 국경까지만 운반하여 서독측에 인계했음.

- 인도에 관한 일정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음.
  
- o 사체운구를 위해서는 방문자가 사망한 지역의 지방관서 (건강·사회담당)가 해당지역 경찰서의 동의 하에 사체운반증명을 발행받아야 했음.
  - 사체운반증명의 발급은 반드시 사체의 도착지 관계인이 사체를 인도할 것이라는 서독 지방관청의 확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졌음.
  - 이러한 서독 지방관청의 확인은 동독관청이 서독측 지방관청 공동묘지·매장 담당부서에 조회했음.

## 구동독 주택의 구채청산문제

- Frankfurter Rundschau 지 92.10.13 자 -

- o Schwaetzer 연방건설장관은 통독이 된지 2년이 되었지만 구 동독지역 주택건설업은 아직도 불안정한 제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조립식 주택의 대부분이 아직도 지자체의 주택건설업체나 주택조합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통합조약의 합의사항임)
  - 연방금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택기업의 구채청산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Waigel 연방재무장관을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이에 관한 “일관성있는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
  - 현재 연방건설장관은 연방재무장관의 이해와 신연방주의 주장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음
  
- o 구 동독 주택의 구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떠맡을 것인가가 주요 논의대상인바
  - 화폐통합당시 구채는 360억 DM 이었는데 1993년말까지 원리상환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500억 DM 으로 증가될 것임
  - 신 연방주는 일정한 건물에 대한 구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구동독지역 조립식주택 약 350만동(전체의 절반해당)의 구채청산, 주택현대화·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을 둘러싼 연방재무성, 건설성, 신설주정부간의 갈등을 다룬 기사임.

- o 92.10.11 에 개최된 5대 신연방주 건설회의장관 (Magdeburg 개최) 에서는
  - 1997년부터 임대료의 일부, 즉 평방미터당 매월 0.3 DM 을 구재변제를 위해 사용키로 합의함  
(그러나 1평방미터당 실제 소요비용은 3 DM 임)
  
- o 신연방주 건설장관들은 전문감정에 근거 구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기를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실현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연방과 주정부간 합의조건으로 제시함
  - 신설주에서 조립식 주택의 보수프로그램을 수립하면 연방정부가 이를 위해 연간 10억 DM 의 재정을 조달할 것
  - 적정한 근거가 제시될 때 주택 1평방미터당 250 DM 까지 융자 지원함
  - 이렇게되면 연방정부는 융자에 대한 약 10%의 이자를 포함, 가장 큰 재정조달부담을 지게 됨
  
- o 이와 관련 Schwaetzer 장관은 수차에 걸쳐 연방재무부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매번 거절됨:
  - 동독지역 부동산회사가 구채 360억 DM을 인수하여 1997년부터 이를 갚아 나가도록 할 것
  - 이 시점까지 발생할 320억 DM의 이자는 연방과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융자처리기금(Kreditabwicklungsfonds)에서 조달함
  - Waigel 장관은 이 건의를 반대하면서 구 동독의 해당 350만동의 주택은 1994년부터 자력으로 원리상환을 시작해야 될 것인바 최근의 동독지역 주택임대료 인상은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함

- o Schwaetzer 장관은 Kohl 총리와 각주의 합의사항을 환기하고 있는 바, 1995년 중반까지 임대료 수익금은 기존주택의 현대화와 보수에 사용되어야지 이자지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Waigel 장관이 이를 어기면 연방정부의 약속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함
  
- o Schwaetzer 장관은 동독 지자체에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동독지역 전체주택의 절반인 350만동의 건물을 지자체의 부동산업체나 주택조합에 위임할 것을 호소
  - 현재 조립식 건물이 있는 대지는 봉밀조약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가 극히 적음
  - 담보없이 은행이 융자를 거절하므로 긴급수리대책에 필요한 융자가 이루어질 수 없음
  - 조립식 건물의 주택조합인계는 대부분 지자체가 대지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진척이 없음
  - 과거 구 동독은 주택조합에게 대지 사용권만 보장했지 대지 자체를 주택에게 인계하지는 않았음

##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 법적 근거
  - 1973. 6. 14자 관세법 제22차 시행령
  - 1976. 9. 13자 관세법 제27차 시행령
- 여기서 이사물품 (Umzugsgut)이란 동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의 동산에 속하는 물품만을 지칭했음.
  - 이사물품은 세관에 반출 신고시 신고자가 이미 사용하던 물품임이 세관당국에 의해 인정되어야 했으며,
  - 제3자와의 재산문제로 쟁송 중이 아닌 물품으로서 계속 신고자의 가계에서 사용되어야 했음.
- 이사물품 반출은 주민들의 이주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물품 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이주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반출이 허용되었음.
- 이사물품의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음.
  - 이사물품 반출시 늦어도 3주 전에 거주지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음.
  -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았음.
    - 물품의 정확한 명세서 2통 (이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물품임을 직접 본인이 확인·서명)

- 동독관청이 발행한 이주허가서
  - 이주자 본인이 직접 운반하지 않을 경우는 운송회사 (동독의 인민공유 운송회사에서 주로 업무를 취급했음)가 확인한 운송위임확인서
- 개인이 직접 운반할 경우는 그 수단으로 화물차는 허용되지 않고 승용차만이 허용되었음.
- 0 이사물품 운송은 서독 운송회사나 철도철 이용할 수 있었음.
- 서독 운송회사를 볼할 때는 동독 운송회사 (인민공유)의 중계를 받아야 하며, 대금은 DM으로 지불해야 했음.
    - 서독 운송회사는 신속하게, 물품의 손상없이 운송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DM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음.
  - 동독은 철도철 이용하여 서독의 목적지까지 이사물품을 운송할 수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운송비용을 동독마르크로 지불해야 했음.
- 0 이사물품 제한 · 금지품목
- 이사물품으로서 승용차나 생산재 등의 반출은 대외무역성의 특별한 허가를 득해야 가능했음.
  - 귀금속, 보석, 진주 또는 진주로 만든 제품의 반출은 외환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했음.
  -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출은 금지되었음.
    - 총포류 및 화약 (가스총, 공기총, 공포탄 포함), 폭발물
    - 동독 해당 관청이 반출을 금지한 동물

- 방송용 송·수신기 및 그 부품, 조립설명서
- 과학기술·경제적 측면에서 신발명품으로 간주되는 복허·신연구 기술에 관한 자료
- 지도 및 측량도
- 주식, 저금통장, 유가증권
- 의약품, 중독성 약품, 독극물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고서적 등 원본  
(그림, 고가구, 도자기 등은 그 물건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반출이 허용된 물품인지를 꼭 사전에 문의해 보아야 함)
- 인화나 현상이 안 된 필름, 영화 필름
-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량 물품
- 인쇄물, 우표, 동전 등의 내용이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선동적일 때
- 박물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원광석, 화석 등

## 교육 · 문화분야

# 양독간 청소년 교류문제 관련 담당자 면담록

## < 연 방 정 치 교 육 센 타 >

- 전후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동·서독간의 이념적 적대감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심했음. 그 이유는 첫째, 동독이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소련 지배체제에 극단적인 형태로 동화되어 갔기 때문이며, 둘째, 동·서독은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같은 민족의 분단이었기에 두체제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념논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반자본주의(Antikapitalismus)와 반공주의(Antikommunismus)의 형태로 적대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분단상황이 지속되자 서독 연방정부는 통일달성이라는 명확한 정치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념적인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우선 철의장막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둠.
- 동·서독간 청소년들의 교류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재정지원아래 장려되었음.
  - 1972년 통행협정에 양국간 여행교류의 기본원칙이 설정되었으나, 청소년 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음.
  - 70년대까지는, 양 청소년 단체의 간부들이 간헐적으로 합의에 의해 만나거나 교회단체간의 접촉이 주었음.
  - 단체여행은 여행사를 통해 1983년부터 본격화됨.
- 그러나 동독정부는 특히 기본조약 체결이후 서독측으로부터의 재정적·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의식하며 이러한 서독측으로부터의 청소년 교류제외에 마지 못해 응하면서도, 동독 청소년들의 사상적인 오염을 우려하며, 여러형태의 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독 청소년들간의 공개적이고 순수한 접촉은 통독 직전까지 이루어 질 수 없었음.

\* 통일연구관이 연방정치교육센터, 연방청소년연맹, 연방여성청소년성 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공산당 후계자 양성소인 동독 청소년단체(FDJ)는 국가의 통제하에 전적으로 양독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했음.
  -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으로의 여행은 체제맹종을 조건으로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었음.
  - 여행자의 구성을 살펴볼때 서독측은 중고등 학생인데 반해, 동독측은 사회와 가정에 묶여있는 26세 이상의 사람이 많았음.
- 서독의 각급학교는 동독지역 수학여행단을 조직하여 일년에 800회 여행허가를 신청을 하면 동독측은 이중 매년 80여회 정도를 허용했음.
- 10~11학년(16~17살)을 대상으로 학급전체가 교사 2~3명의 인솔하에 수학여행 형식으로 조직됨.
  - 여행 출발전에 학생들은 정부기관(전독문제연구소, 내독관계성 등)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 동독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 동독 청소년들의 특수상황, 국경통과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사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음.
  - 서독 방문단은 공산당원 후계자 양성소인 동독청소년단체(FDJ)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인사들과의 접촉을 가졌음.
  - 여행후에는 동독체제에 대한 사전지식과 여행체험을 비교하며 사후평가 시간을 가짐.
- 동독측과 달리 서독측은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동독측의 선전으로 인한 서독 청소년들의 사상적인 오염에 대해 우려한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서독 청소년들은 양독간 국경을 통과하면서 동독측이 설치한 각종 국경봉쇄 장치를 직접 목격하면서, 동독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수용소라는 인상을 받음.
    - 국경봉쇄 장치는 서독측에서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동독측에서만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우려 설치하였음.
  - 제한적인 곳만 방문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으나, 접하는 동독주민들의 일상생활조건이 서독에 비해 너무 열악하여 생활수준의 격차를 직접 체험했음.

- 동독에서 보고들은 신문과 방송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함.
- 따라서 동독에 대한 수학여행은 서독청소년들에게는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 체험을 통해 비교해 볼 수는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음.
- 따라서 연방정부는 애초 미래사회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의 인간적 만남을 장려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양독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동의식이 유지되도록 의도하였으나, 상호 이질감만 확인하는 계기가 됨.
  - 다만 동독측은 청소년교류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청소년단체 핵심간부들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를 거두기 보다는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향후 남·북간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유의점
- 명확한 정치적인 목표설정이 중요함.
    - 우선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측 청소년층의 만남을 통해 민족적인 공동의식을 상호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청소년교류는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비교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정치교육과 병행되어야 함.
  - 교류대상이 학생을 중심으로한 청소년층임을 감안, 정부가 교류에 따르는 부담의 재원을 100% 제공해야 함.
  -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정치교육용 교재가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어야 함.
    - 서독의 경험에 의하면 전독문제연구소 등이 발간한 동독의 체제를 알리는 정치교육 교재가 동독의 공식통계에 의존한 관계로, 통독이후 공개된 동독의 실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실제 서독 청소년들은 시간과 방문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동독체제의 내면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음.

## < 연 방 청 소 년 연 맹 >

- 서독 청소년단체중 구동독의 청소년단체와 가장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단체는 신교 청소년 단체였음.
  - 신교 청소년단체간 교류는 동독의 신교단체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 많은 접촉을 꺼렸기때문에,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식 접촉이었음.
  - 구교 청소년단체들은 동독지역에서 적당한 대화상대를 갖지 못해 접촉이 거의 없었음.
  - 노조산하 청소년단체들도 동·서독 노총간의 이념상 차이가 너무커서 접촉이 어려웠음.
  
- 동독정부가 신교 청소년단체들에 대해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종교활동의 범위안에서 통제위주의 동독사회에 대해 자칫 불만을 가질수도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 층에게 일정한 탈출구를 제공.
    - 아무리 완벽한 전체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사회를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장악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신교 청소년단체간의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의 물질적·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 바, 교회를 통해야만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
  - 동독정부는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려 했음.
  
- 신교단체간의 접촉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음.
  - 1985년까지는 접촉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측이 거부반응을 보여, 차후의 접촉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FDJ의 간부들이었는데, 25~30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혼자들은 부부중 1명이 꼭 동독에 남아있어야 여행이 허용되었음.
  - 1989년까지 간부급들의 접촉을 제외하고 실제 서독이 희망하던 청소년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0~300명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청소년교류에서 양측 청소년들은 매우 제한된 접촉을 통해 상대방 체제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서독측이 의도한 상호 이질감이나 적대감 해소와 같은 성과는 거둘 수 없었음.
-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TV를 보거나 서독을 방문한 연금 생활자들을 통해 서독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었으며, 서독을 방문해서는 늘 접촉과 정보취득에 여행 감시원들의 통제를 받았음.
  - 서독청소년들은 학교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방문이 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였고, 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동독체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음.
    - 당과 국가의 선전도구였던 동독 TV에 대해서 서독청소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음.
- 신교 청소년단체간 접촉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상호 전문가들의 의견교환 및 비록 일방적이기는 했으나 물자교류가 있었음.
- 청소년들의 종교문제와 성교육문제를 상호 토론하기 위한 교류가 있었으나, 동독측으로 전문서적을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했음.
    - 동독측은 신교단체간의 접촉에서도 사회과학 서적(특히 교육학, 사회학)의 반입을 불허했으며, 단지 신학책만 선별적으로 허용함.
  - 서독측은 이들 단체들의 여행시마다 동독에 대해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등 교보재를 제공했는데, 동독측은 이를 비공개적으로만 접수함.
- 서독정부(내독관계성)는 이러한 신교단체내의 접촉에 대해, 조건없이 재정 지원을 함.
- 접촉의 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해서는 신교측의 재량에 맡겼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

## < 연 방 청 소 년 성 >

- 양독일 국가의 독일문제와 관련된 청소년대책은 각각 정치적인 목표설정이 상이했음.
  - 서독측은 상반된 체제하의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상호 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적인 동질성을 상실해갈 뿐 아니라, 장래의 독일통일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함.
  - 동독측은 2개 국가·2개 민족론에 의거 철저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른체제와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둠.
  
- 동독의 청소년단체는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놓인 공산당 예비후보자 당원 교육장 이었음.
  -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은 탁아소 - junge Pionier(국민학생 중심)-FDJ(중·고등학교)-Gesellschaft fuer Sport und Technik(18세~21세)-군대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이 단체들에의 가입은 명목상 자발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런 단체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될 수 있고, 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반강제적 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서독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에 따라 또는 전문이익집단의 산하에 4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했는데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함.
  -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지원 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음.

o 분단극복을 위한 서독정부의 청소년교류 대책

- 분단직후부터 베를린장벽 구축시까지

-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오거나 이주한 청소년들이 서독에서 사회체제에 동화되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각 주정부는 지원기금(Garantiefond)을 설치하고, 연방정부의 정착 지원계획(Eingliederungsprogram)에 의거 지원함.
- 간헐적인 청소년 왕래가 특히 신교단체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내방자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도시에서 서독지역 어느 유스호스텔에서나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무료숙박권(Wandergutschein)을 발급함.

-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 동독측에서 청소년들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당국간 협상을 통해 이를 확대코자 노력함.
- 그러나 1972년 동·서독 통행조약에는 청소년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일반인의 관광 및 개인여행에 관한 규정만이 있음.
- 1981년 10월 슈미트-호네커 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청소년교류를 확대할 것에 양측이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1982년 9월 서독청소년연맹(Bundesjugendring)과 동독청소년단(FDJ) 간에 관광차원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 합의함.
- 1983년부터 6개의 선정된 청소년 여행단체(동독의 국영 "청소년여행사"와 서독의 5개 개인여행사)가 14~30세의 청소년 단체여행을 주선하여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청소년 단체여행이 이루어짐.
- 동독에서의 여행 프로그램(여행경로, 방문자, 숙소)은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고, 1명의 동독측 수행원이 늘 동행하여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음.

- 내독관계성에서는 청소년교류 지침(Grundlinie fuer Jugendaustausch)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교회단체를 중심으로한 동·서독 청소년들의 교류를 제정지원했지만, 동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 지원내용은 늘 공개되지 않았음.
- 동독 지도부에게는 청소년교류가 양독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었으므로, 교류사실 자체가 공개되면 될수록 교류의 실적은 줄어들었음.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점

### I. 서 설

동부 독일 지역의 청소년들 (이하 편의상 동독 청소년들)은 5년 동안이나 매우 불안정한 세월을 겪어왔다. 그들은 “동독이라는 기치하의” 사회주의 체제의 말기를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체험하였는데, 이미 1989년 가을 이전에 그들의 주체성, 희망, 기대를 상실해 버려 점점 더 빈번하게 저항하다가 드디어는 그들 중 일부가 야당활동에 참여하였다. 동독 공산정권이 패망한 직후 잠시나마 개혁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 특히 더 많은 정치참여 (기초 민주주의) 에의 희망이 있었으나, 곧 이어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서독”과의 통일이라는 유혹적 환희가 뒤따랐다.

그러나 그토록 열망하던 개인의 자유, 소비라는 매력, 무제한 여행가능성과 같은 장점 이외에 새로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인 실업이라는 위협, 지금까지 낯설은 복지사회의 불안정성, 시장경제사회의 극심한 경쟁, 새로운 일상생활의 불투명성과 점점 증가하는 결단에의 증압감, 동서독지역간 빈부의 격차에 따르는 복지사회적 불균형상태의 증대 등을 체험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개인의 생활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다원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어느모로 보나 후견인 행세를 하는 서독인의 우월감은 “동독놈”(Ossis), “서독놈”(Wessis) 따위의 평가절하와 긴장감을 낳게 했고, 사회의 결정과정에 관한 정치적 참여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결여, 그리고 주변사회 환경 속에 있는 물질적 위험부담, 빈곤, 걱정 등이 뒤따랐다.

오로지 구체제의 완전붕괴로 아무런 준비없이 착수된 새로운 사회에의 변화 과정이라 매우 복잡다단한 것으로서, 사회심리학적으로는 한 생존세계로부터 돌변한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독이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정치적관점과 의식구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임.

다른 생존세계로 향하는 개인의 영락(Sturz) 으로 인식되고 분석될 때라야 비로소 동독 청소년의 특성과 일상생활상 태도의 변화와 특수한 상황대처와 같은 변화된 심리적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생활조건이 너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기존가치가 모두 철저히 재평가되면서 젊은 세대는 단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그 진전상태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세대의 특성을 말하는 “형성 단계”는 고전적 방법(15세 - 18/20세) 처럼 너무 좁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령이 낮은 청소년군과 높은 청소년군이 체험한 세대의 경험을 구분하여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동독의 사회적 변화와 같은 시대사적 제 상황은 상이한 연령군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 평가되고 심리적으로 소화되기 때문에 균일하지 못한 행동양태와 생활에 상이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오늘날 15세, 20세, 25세인 청소년들의 인격구조에 불가피하게 시대사와 관련된 대단히 상이한 유형이 있다는 점은 몇년 후이나 완전히 파악될 것이겠지만 그 사실 자체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오늘날 낮은 연령의 청소년과 높은 연령의 청소년간의 커다란 차이점이 특히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들은 본 연구(주 1)를 통해 동독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추세를 환기코자 하는 바, 개별연구의 서술력의 한계를 비롯, 표본추출의 한계와 방법론적 어려움, 그리고 다른 연구와 비교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있음을 통감한다. 특히 본 기고는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극우화 경향 및 그들의 생활상태에 관한 일면도 살펴 보고자 한다.

## II.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 관점

악화일로에 있는 정치관심도 (청소년 단체에 대한 참여의식 결여, 공공사안에 대한 무관심 상태의 증가), 그리고 증가일로에 있는 극우경향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방향감각을 논할 때 등장하는 주요 사항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비록 현상을 나타내는 적절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기본관점과 의식 구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서로 무관한 개별현상으로, 아니면 구조적 맥락의 표현형태, 즉 복합적 행동양태로 존재하는가 ?

그 이면에 일종의 일반적인 정치적 무관심(아파티아)이 있어 정치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어떤 진공상태가 만연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새롭고 형식적이지 않은 구조가 존재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중이란 말인가 ?

과거의 정치적 방향감각이 붕괴되어 그에 대한 거부현상이 있는지 수년이 지나고 새로운 사회에 자리잡으려는 시도가 일어난 후 생긴 새로운 정치적 향방모색의 추세는 무엇이란 말인가 ?

저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추적함에 있어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자세 내지 기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정당 또는 정치노선에의 소속성 내지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관점, 그리고 좌우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정치적 위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좌우 스펙트럼상의 위치

지난 수십년간 정치학과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기본위치를 분석할 때 좌우를 구분하는 척도가 많이 적용되어 왔다. 저자들은 그 중 다음과 같은 척도를 받아 들었다.

수십년간에 걸쳐 “좌”와 “우”를 구분하는 정치적 위치결정 방법이 공고히 되었습니다. 귀하의 위치는 어디라고 보시겠습니까 ? (주 2)

현재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신이 좌파·우파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결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3년전까지만 해도 이와같은 범주가 거의 착상된 바 없었기 때문에 전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정치적 관점을 결정할 때 사회주의 내지 동독 공산당을 반대하는가 지지하는가 라는 차원에만 집착했다. 오늘날 좌우 구분 척도에 의한 위치결정을 할 때 단지 청소년중 1/5 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 말 현재 14 세 부터 18 세에 이르는 청소년중 약 10 %가 오늘날보다 더 많은 차이점을 보였었다. “좌파” 또는 “우파”로서의 정체성 정립은 오늘날 제 8,9,10 학년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14세로 부터 25세에 이르는 자본주의 청소년중 1/4 은 정치적으로 좌경임을 강조하는 반면, 약 18 % 가 우경 내지 중도라고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2 가지 집단은 - 본 비교연구결과 - 1990년 말부터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위치결정을 취하지 못한 청소년들 때문이었다.

양극화추세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좌경추세의 수치나 우경추세의 수치는 물론, 좌경과 우경을 동시에 표방하는 상반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비교와 더불어 오늘날 정치적 좌파나 우파는 1990년 말에 나타났던 좌경 내지 우경 세계관 내지 이데올로기와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걸쳐 훨씬 분명하고 인상적이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특히 극우적 관점,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기타 정치적 테마에 관한한 계속될 것 같다. 청소년이라는 대집단은 정치정당과 그 프로그램 및 정치노선으로부터 점점 멀리하고 그 대신 주로 좌우 스칼라와 비공식적 이데올로기 내지 세계관을 점점 더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과정이 이미 제 9 학년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었으며 제 10 학년에서는 거의 완료되었다. 양극화 과정은 학급과 여가선용분야에서의 비공식 집단, 친근감과 반발심, 학급내 분위기와 같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도표 1 을 보면 상이한 하부집단간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엿볼수 있다.

- 어린 연령층의 청소년들은 그다지 좌경은 아니며, 나이는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훨씬 우경이다. 저자들은 그 원인이 시대사적 결정인자, 즉 세대가 체험한 상이한 경험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개인의 생활연령이나 성장층의 사회적, 성격적 성숙도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14 세로 부터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19세로 부터 25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관점과 비교할 때 훨씬 극좌적 경향, 나아가 훨씬 극우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나이 어린 “극우성”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청소년들보다 이데올로기 중심적 사안에 있어서 훨씬 극단적 판단을 내린다. 이는 - 비록 약한 특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나이 어린 “극좌성”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나이 많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극단적이다. 양극화 추세는 좌경 내지 우경의 입장을 대표하는 빈도나 농도에 있어서도 모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동년배의 직업학교 학생들과 김나지움(Gymnasium) 학생들 간의 차이점도 현저한데 이는 이 두 집단의 상이한 사회적 배경때문에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아버지의 교육정도로 측정되는 사회적 출신이 갖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아버지가 전문직인 작센주와 작센 안할트주의 14 세로 부터 18 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경우 14 % 는 좌경, 25 % 는 우경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청소년들의 경우, 36 % 는 정치적으로 좌경, 그리고 단지 15 % 만이 정치적으로 우경 내지 중도적 위치를 나타냈다.
- 신자와 비신자의 경우 좌우 스칼라에 아무런 구별이 없었다.

- 성별간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드러났다. 소녀들과 나이 어린 부인들의 경우, 소년들과 나이 어린 남성들보다 우경이 덜하고 (11 % ~ 26 %), 그 대신 훨씬 좌경(27 % ~ 21 %)으로 나타났다. 14세로부터 18세에 이르는 학생들과 직업훈련생중 우경을 나타내는 소년은 단지 25 % 에 지나지 않았다.

## 2. 정치적 좌파와 정치적 우파라는 특성

저자들은 이제부터 동독 청소년들과 연계된 정치적 좌우 위치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확신감, 기타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입장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와 특정한 세계관에 그 원인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얼마나 크며 그 연관성은 얼마나 적은가?

### a) 정치적 관점

정치적으로 좌경인 청소년들이나 정치적으로 우경인 청소년들은 모두 평균이상의 높은 정치 관심도를 갖고 있다. 비록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내용에 관한 평가에 관한한 서로 매우 중복되고 있다.

독일봉밀을 비롯하여 개혁 사회주의에 관한 좌경과 우경간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

### b) 민족적 관점과 민족주의적 관점

극우적 목표와 관점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좌우간의 차이점은 무척 크다. 이는 극좌와 극우의 경우이나 예상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좌경과 우경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좌우 2 대 그룹은 그들의 정치세계관적 사고방식에 관한한 매우 상반된다. 즉 우경 청소년들은 특히

민족주의적 요구와 표어를 주창하면서 독일과 독일인을 예찬하고 독일인이라는 긍지를 일정적으로 강조한다. 좌경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중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일부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극우적 증후군의 또 다른 핵심분야이기도 한 인종차별 및 폭력사용에 관한 관점 역시 좌우간에는 상반된 관점이 있다. 그러나 폭력사용에 관한 좌경 청소년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 중 극 소수가 필요한 경우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우경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지만 좌경 청소년들은 외국인에 대한 폭력사용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도해 1 및 도해 2 참조).

도해 1, 2, 3, 4 는 좌경과 우경의 전체, 그리고 극좌와 극우를 % 로 나타낸 것이다. 괄호속에 있는 % 수치는 14세로부터 18세에 이르는 전체 인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 c) 다른 집단에 대한 견해

좌경 청소년들과 우경 청소년들은 자체집단은 물론 외부집단에 대해 평가할 때 매우 상반된 양상을 드러낸다. 우경 청소년들은 폴란드인, 터키인, 월남인, 아프리카인과 같은 "진짜" 외국인은 물론, 러시아인, 루마니아인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좌경주의자는 물론 "빨갱이" 공산주의자들도 배척한다. 좌경 청소년들은 우경 청소년들과는 전혀 전혀 반대되는 관점을 갖고 외국인이나 유대인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정치적 좌우 스펙트럼으로 위치를 결정해 본다는 것은 동독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의식, 특히 극우적 방향감과 외국인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임이 실증되었다. 좌경입장과 우경 입장간의 연계성과 그 관점간의 연계성은 매우 높다. 상관계수(Die korrigierten Kontingenz-

koeffizienten 영약 CC: 양적 특성간의 연계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 는 대체로 0.4 로부터 0.7 사이에 있다.

#### d) 생활 행태

동독 청소년들 중 정치적 좌경 입장 대변자와 정치적 우경 입장 대변자들은 정치관, 세계관, 사회관이라는 구조상에서만 극심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같은 또 다른 특징 분야에 있어서도 구별되고 있다. 우경 청소년들, 특히 극우적 입장을 지닌 청소년들은 좌경입장의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다른 생활 행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세계에 관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두들 자의식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낙천적이면서 방약무도하게 행동한다. 그들의 인생을 비롯하여 부모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생요인을 어느 누구보다 더 만족해 하며 공포심이나 위협심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드물고 신경과민증세로 고생할 때도 적다.

우경 및 극우경향의 청소년들은 배우자 관계나 성생활 관계와 같은 문제점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적게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물질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그들의 장점을 배려하면서 에타주의적 행동을 되도록 삼가는데 좌경 청소년들보다는 훨씬 이기적이다. 그들은 극우적 이데올로기가 세계관 속에 강하게 못박혀 있어 문제점을 단순화함으로써 분위기와 활동여건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문제점의 해결, 그리고 이로부터 이득되는 성취감 사이에 있는 교호작용은 기존 우경자세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아무튼 좌경 청소년들은 우경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심리적 특징면에서 훨씬 처진다. 좌경 청소년들은 성공율이 적음을 인정하면서 비록 차이점이 정치적 관점의 경우보다 매우 적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10 % 내지 30 %로서 상관계수(CC) 는 단지 0.15 - 0.35 정도이다.

도해 4 에 몇 가지 선정된 실례에 대한 이와같은 결론이 도시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좌경 청소년들과 우경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비슷한 차이점이 여타 생활분야와 가치분야, 예컨대 가족관계에 관한 판단, 자녀양육의 목표 (우경 청소년들은 가부장 중심적 가족모델을 강하게 선호), 일간지의 선정, 알코홀 섭취 등에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사회적 의식의 제 유형"이 개인과 직접 연관된 생활환경과의 갈등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점과 확고부동한 사회적 문제점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Theodor Geiger, Die soziale Schichtung des deutschen Volkes, Stuttgart 1932 참조). 정치적 좌우 스펙트럼 상의 이러저러한 입장에 관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은 정치의식의 형성과 정신상태의 형성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 3. 정당에 대한 관점

정치적 기본자세 측정에 필요한 또 다른 중요 요인이 정당의 정치노선에 관한 선호도이다. 저자들에게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술한 바 있는 정치적 양극화 추세는 상이한 정당 내지 정치노선에 대한 점증하는 친근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반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기피현상, (미래의 유권자가 될) 젊은이들에게 매우 증가추세에 있는 정당에 대한 불쾌감과 같은 일종의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 는 14세로부터 25 세에 이르는 작센주 청소년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선호도를 비롯하여 제 8, 9, 10 학년 학생들의 1990 년 말 이후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문대상자의 약 절반은 1992 년 중 하나의 정당정치노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기독교민주당(12%), 녹색주의당(10%), 사회민주당(10%)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했으며 공화주의파에 대한 친근감은 6%로 나타났다.

- 이미 좌우 위치정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나이 든 청소년들 간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19 세로부터 25 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일개 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특히 녹색주의당과 사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의 결과인지 생활언령의 결과인지는 미지수이다. 저자들은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의 결과라고 가설적으로 간주해 본다.
-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일정노선에 훨씬 더 집착하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은 기민당이나 공화파를 선호할 때가 잦는데 남자 직업 혼련생 중 17 %, 여자 직업 혼련생 중 4 %가 공화파에 동조하고 있다.
- 제 8, 9, 10 학년 학생들은 도표 2 에 나타난 것처럼 시대사적 비교가 흥미진진하다. 모든 단체에 걸쳐 대체적으로 1992년중 청소년들의 정치관심도는 1990년 보다 훨씬 낮음이 었 보인다. 1990년중 평균적으로 젊은이들의 약 2/3 가 일개의 정치노선을 지지했던 반면 1992 년초에는 약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중 기민당 노선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90 년 말 이후 기민당 지지자는 약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녹색주의 노선 역시 감소볼 면치 못했으며 그 반대로 사민당과 공화파는 특히 남자 청소년들에 의한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 정치적 기본관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 볼 때 좌파 또는 우파라는 선명성과 선호하는 정치노선간에 연계성이 있다는 경향분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3 에 변화추세가 나타나 있다.

이미 전술한 것처럼 좌우 스펙트럼에 위치를 점차로 설정해 나가던 1990년과는 대조적으로 정당에 대한 거부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좌경이나 우경에 대한 동조자에게 똑같이 관계되며 특히

정치적 중도를 주장하는 청소년들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거대집단은 어느 정당에도 동조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한 우경 청소년들이 1990 년 중에는 기민당노선에 강하게 동조하였으나 1992 년 중에는 공화파에게 심히 동조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우경 청소년들이 공화파로 간 후 더욱 더 극열화하는 피드백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만일 기성정당이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쾌감 증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라나는 언령군들을 점차 “선거거부정당” 으로 키우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 4. 정치관심도

현재 동독 젊은이들의 정치 관심도는 - 동독 말기의 심한 퇴조현상과 대변혁 기간 중의 급상승이 지난 다음 - 기성정당에 대한 불쾌감의 증가와 더불어, 그리고 심화된 사회복지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의 결과로서 새롭게 최악의 지점에 달했다. 예컨대 여자 청소년과 같은 일부 집단에 있어서는 심지어 정치 관심도가 사실상 0 점 상태가 되었다.

도표 5 는 제 8, 9, 10 학년 직업훈련생과 학생들의 정치관심도에 대한 증감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5. 독일통일과 새로운 정치제도에 관한 관점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분위기는 독일통일에 관한 관점과 더불어 그 특징이 드러났다. 1990 년 10 월 3 일 통일이 되기 직전 15 세로부터 24 세에 이르는 청소년 중 대다수 (82 %) 는 독일통일을 지지했다. 당시 청소년의 대부분은 독일통일을 환희와 희망 그리고 걱정과 공포가 교차하는 착잡한 기대감으로

대했다. 1992년 4월에 들어서자 겨우 절반정도 (53%)가 통일에 따르는 기쁨을 표현했을 뿐이며 5%라는 소수가 통일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절반도 안되는 42%의 젊은이들이 자가당착적인 개인적 체험의 표현이라 할 상반된 양립적 관점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도표 4 참조).

특히 모든 연령층과 교육과정에 걸친 여자청소년들은 독일통일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독일통일에 대하여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미 통일 이전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이 사회적 남녀평등과 자기결정이라는 권리를 내놓음이 칠 수 밖에 없는, 통일의 희생자라는 걱정을 변함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에 관한 엇갈린 관점은 대변혁이후 청소년 생활의 변화에 대한 공개 질문의 답변으로부터 나타났다. 이를 위해 약 9,000여개의 답변이 분석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상세한 것도 심급을 올려주는 것도 많았다.

약 절반정도의 청소년들이 무엇보다도 소비재 공급의 개선, 새로운 여행가능성의 증가, 개인적인 자유를 긍정적인 변화라고 일컬었다. 이와 동시에 답변자의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변화도 지적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들로서는 특히 수 많은 가정이 가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량실업 (설문에 응한 직업 훈련생과 학생들 중 1/3이 그들의 부모가 실업 또는 단축 조업과 같은 형태에 처해 있음)이 가정의 분위기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불안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폭력, 생활비 증가, 극우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팽배, “완력위주사회” (Ellenbogengesellschaft)의 등장 등등, 대체로 지금까지 낯설은 현상이다. 긍정적인 변화는 대체적으로 인정되면서 활용되고 있음이 구두진술로 알 수 있고, 그 반대로 통일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부수현상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젊은이의 일부는 새로운 위험부담을 새로운 기회포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서 체험하고 있다.

독일통일과정이 진행되는 중 통일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세 또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39%의 청소년들이 정치제도에 만족하고 1%만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동독공산정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새로운 정치제도를 비교적 빠르게 받아 들일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고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의구심이나 거리감이 구 제도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평가절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85%에 달하는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동독공산정권은 가장 적절한 때에 제거되었다는 관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지만 1/4 이나 되는 청소년들은 현 정치제도보다 인도주의적으로 개혁된 사회주의가 오히려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 6. 동독인과 서독인에 관한 평가

저자들은 본 연구와 함께 젊은 동독인들이 갖고 있는 타민족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과거 연구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파악코자 질문을 설정함으로써 연도별로 뚜렷한 관점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구 라이프치히 청소년연구소가 작센지역의 제 8, 9, 10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동일한 방법에 따라 얻은 1968년, 1989년, 1990년의 연구자료를 이용하였다. 1989년의 자료는 대변혁 직전(연초)의 상황을, 그리고 1990년 자료는 대변혁 이후(여름)의 상황을, 그리고 1992년도는 통독 1년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적 변천 및 사회적 변천과 관련된 변화에 관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선정된 국가나 민족집단(러시아인, 폴란드인, 월남인, 미국인, 서독인, 동독인)에 대해 1로부터 7에 이르는 측정스칼라를 이용하여 정해 놓은 판단기준(근면성, 지능정도, 민족적 긍지, 친근감 유무)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다. 이에 저자들은 1968년 이후 동독인의 서독인과 자신에 대한 판단자료에만 국한하였다(도표 5 참조).

서독인들은 동독에서 80 년대에 매우 높이 평가되면서 대변혁 이전까지 “이상적 인간형” 이라고 불렀는데 현재에는 다시금 현저하게 원 상태로 되돌아 왔다. 자체의 주민인 동독인 (과거에는 “동독시민” 이라 일컬었음) 에 대한 평가는 그 반대였다. 즉 대변혁 이후까지만해도 정체성 정립이 변함없이 매우 강한 추세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1990 년에 변화추세가 일어났으나 이때부터 “동독놈들”(Ossis) 이라는 기이한 평가절상이 일어났고 이로써 심지어는 “서독놈들”(Wessis) 이라는 가격등귀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독일통일의 복잡다단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반영인데 특히 “근면성”과 “친근감”과 같은 복성에 대한 관점변화가 급격함을 엿볼 수 있다.

#### 7. “서독 미디어”의 지속적 파급 효과

1987년도부터 진행되는 단면도 연구 (주 4) 를 오늘날 작센주의 19 세 청소년들에게 결합해보면 의식형성의 경향에 관한 귀납적 추론이 대변혁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서독측 전자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의 수용상태가 매우 지속적인 파급효과로 남아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치적 의식과 미디어에 대한 자세 사이에 있는 교호작용은 눈에 띄게 계속되고 있다. 단면도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변혁 이전에 서독방송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선별해가면서 이를 정보원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청소년들과 차이점이 있다. 그들은 오늘날 통일독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청소년들과 구별되고 있지만 통일된 독일시민이라고 느끼면서 독일인으로서의 긍지를 내세운다. 그렇지만 통일독일의 정치제도에 그리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도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로부터 위기일변도의 동독사회에서 가졌던 일상생활의 체험과 비교할 때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미디어의 수신을 통해 서독의 생활의 질 (생활수준, 개인의 자유) 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통일을 원하면서 성공적인

서독인의 생활의 질에 동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장기간에 걸쳐 자리잡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장기간 분석에 따르면 (그 당시 추측되던) 정치적 성격변화에 미친 “서독 방송”의 지대한 영향력을 회상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결국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 III. 평 가

오늘날 젊은 동독인들의 특징이라 할 정치적 관점과 기본자세는 시대사적 사건이라는 맥락속에 있는 그들 특유의 생활경력을 고려하여 의미있게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동독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체험을 했는데 이미 대변혁이 있기 수년전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체험하여 당시 동독 공산당의 공식정책에 대해 냉소, 저항, 거부하면서 대처하였다. 즉 정치에 대한 불쾌감은 이미 1989 이전에도 있었다! 대변혁과 더불어 그리고 대변혁 직후 더 많은 정치참여라는 일반적 돌출감이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났다. 통일독일의 제정당에 대한 과감하고 기대에 찬 관점과 연계된 - 정치활동과 민주주의 공동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태세가 존재하고 있었다. 1989년 이전의 정치에 대한 불쾌감, 숙단주의 그리고 대변혁 직후의 커다란 기대와 환상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위치 실점”이라는 크나 큰 욕구가 자라났다. 끊임없는 방향감 부재의 위기는 구심점을 부여하는 정치적 자세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체성 위기와 생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다. 비판적인 동독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정당,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동독 청소년의 대다수는 기성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일체감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최근 이러한 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독일 전체에 걸쳐 증가일로에 있는 비판과 정당에 대한 불쾌감에 비추어 볼 때 구 동독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특수상황에 심각하게 봉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방향감 상실상태나 안정된 정치적 가치관의 결핍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 대변혁이후 점점 어렵게 된 일상생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도 각종 문제점과 사태에 대해 부단하게 정치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정당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면 부득불 대안모색, 나아가 다른 정치세계관적 관점을 강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해석, 설명, 의미부여가 있는 대안).

오늘날 젊은 동독인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정치적 좌우 스펙트럼에서 위치를 정립하면서 생생하고 매력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좌경 또는 우경과 같은 정체성 확립은 일종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과정으로서 일상생활을 초월하여 성장되기 때문에 정당, 프로그램, 정치가, 청소년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가입의식이나 정관토론이나 기타 의무수행사항이 필요없다. 좌경이니 우경이니 하는 것은 이미 그 단어 속에 상반된 것으로서 대치하고 있으며 그 상극성은 끊임없고 “적과 친구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은 단지 숨겨져 있을 뿐, 비록 정치적 반대자가 인간답고 알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대체로 심한 거부상태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상생활의 이데올로기”는 애매모호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인의 관점이나 생활방식이나 개인적 욕구에 대해 넓고 넓은 자유의 여지를 부여해 준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자세를 말해주는 무엇인가 분명한 추세가 아닐까 ?

주 1.

라이프찌히 사회분석연구소 (Die Forschungsstelle Sozialanalysen Leipzig e.V. - 구 동독의 Zentralinstitut fuer Jugendforschung in Leipzig) 의 재정지원을 받아 1992년 3월/4월에 청소년연구를 실시함. 그중 중요 결론이 본론과 Harry Mueller 와 Wilfried Schubarth 의 기고에 토론대상으로 제시됨. 본 연구는 Sachsen 주의 14 세 - 25 세 청소년을 대표적으로 한 표본추출에 근거 함.

또한 Sachsen 주와 Sachsen-Anhalt 주 (서면)에 있는 제 8, 9, 10 학년생과 김나지움의 제 11, 12 학년생과 직업훈련생으로 구성된 거대한 모집단에 대해 설문이 행해짐. 이로부터 예측성과 연계성에 관한 상이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 마련됨.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주에 대한 대표성은 없음. 연구 방법 설명을 포함한 방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는 바 Freudenberg Stiftung 에 요구하면 제공될 것임. 저자들은 본 재단의 재정지원에 감사를 포함.

주 2.

이 질문은 14 세 - 25 세 청소년 전체에게 설정되었으며 응답자수는 4,300 명 이상이었음. 이로써 대단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각 문항, 예컨대 좌경/좌경 치중  $n = 920$ , 우경/우경 치중  $n = 975$  같은 대답을 함. 본문에서는 좌경 대변자들을 “좌경 입장”, “좌경 취향”, 또는 짧게 “좌경”, 그리고 우경 대변자들을 “우경 입장”, “우경 취향” 또는 짧게 “우경” 이라고 표현했음. 또한 “극좌” 또는 “극우” 같은 것으로도 표현됨.

주 3.

Theodor Geiger, Die Soziale Schichtung des deutschen Volkes, Stuttgart 1932.

주 4.

1987년부터 1989년(초)까지 본 단면도 연구 (Laengsschnittstudie) 에는 Sachsen 의 남녀학생 1,200 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제 8, 9, 10 학년으로서 수회에 걸쳐 조사에 응하면서 학습동기, 정치적 방향, 미디어에 대한 자세 등에 관하여 응답함. 제 10 학년생 중 약 600 명의 청소년들은 학교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 연구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대변척이후 지금까지 4 회에 걸친 설문설정에 각각 200 - 300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함 (이제부터 우편으로 실시함). 기존 참여자 중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서독쪽으로 이주했음을 감안해야 함. 특수 측정방법에 따르면 현재 참여자로 구성된 모집단은 당시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도표 1 : 1992년도 동독 청소년들의 좌 우 경향  
(단위 %)

|                               | 1  | 2  | 3  | 4  | 5 | 0  |
|-------------------------------|----|----|----|----|---|----|
| <i>Sachsen</i>                |    |    |    |    |   |    |
| 14 - 25 세                     | 7  | 18 | 39 | 12 | 6 | 18 |
| 대학생                           | 17 | 27 | 36 | 13 | 1 | 6  |
| 젊은 직장인                        | 6  | 20 | 38 | 10 | 5 | 21 |
| <i>Sachsen/Sachsen-Anhalt</i> |    |    |    |    |   |    |
| 8. - 10. 년생                   | 7  | 13 | 40 | 13 | 5 | 22 |
| 11./12. 년생                    | 15 | 22 | 39 | 13 | 3 | 8  |
| 직업훈련생                         | 4  | 10 | 47 | 18 | 7 | 14 |

1. 좌경
2. 우경이라기보다 오히려 좌경
3. 좌경도 우경도 아니다.
4. 좌경이라기보다 오히려 우경
5. 우경
0. (아직도) 모르겠다.

도표 2 : 작센주 청소년들 (14-25세)의 정당정치노선에 대한 관점  
(단위 %)

|                               | ①  | 2 | 3 | ④  | ⑤  | 6 | 7     | 0  |
|-------------------------------|----|---|---|----|----|---|-------|----|
| <i>Sachsen</i>                |    |   |   |    |    |   |       |    |
| 14 - 25 세                     | 10 | 4 | 5 | 12 | 10 | 6 | 3     | 50 |
| 남자                            | 9  | 4 | 6 | 15 | 11 | 9 | 4     | 42 |
| 여자                            | 10 | 5 | 4 | 9  | 9  | 3 | 2     | 58 |
| 14 - 18 세                     | 8  | 2 | 4 | 10 | 7  | 8 | 3     | 58 |
| 19 - 25 세                     | ①② | 6 | 6 | ③  | ④  | 5 | 3     | 43 |
| <i>Sachsen/Sachsen-Anhalt</i> |    |   |   |    |    |   |       |    |
| 8. - 10. 학년생                  |    |   |   |    |    |   |       |    |
| 1990                          | 10 | 2 | 6 | 23 | 5  | 4 | 5(2)* | 45 |
| 1992                          | 9  | 3 | 5 | 7  | 7  | 6 | 2     | 61 |

\* ) 1990년 답변모델로서 별도로 분리된 “민족사회주의”가 있었음. 당시 조사된 제 7 위의 평가를 비교할 목적으로 “기타”가 추가적으로 괄호속에 별도로 표현됨

“어느 방향에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가 ? ”

1. 녹색 주의
2. 사회주의 (1990년 : 사회주의 - 공산주의)
3. 중도주의
4. 기독교민주주의
5. 사회민주주의
6. 공화주의 또는 기타 우경민족주의 (1990년에는 없었음)
7. 기타
0.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도표 3 : 좌우경향과 정당정치노선의 연계성

|            | 1  | 2  | 3  | 4  | 5  | 6  | 7      | 0  |
|------------|----|----|----|----|----|----|--------|----|
| 좌경         |    |    |    |    |    |    |        |    |
| 1990       | 36 | 37 | 1  | 1  | 8  | 0  | 7(2)   | 10 |
| 1992       | 33 | 25 | 2  | 1  | 6  | 0  | 12     | 21 |
| 차라리 좌경     |    |    |    |    |    |    |        |    |
| 1990       | 40 | 3  | 5  | 7  | 11 | 1  | 3(2)   | 30 |
| 1992       | 25 | 6  | 8  | 3  | 15 | 0  | 4      | 39 |
| 좌경도 우경도 아님 |    |    |    |    |    |    |        |    |
| 1990       | 14 | 1  | 12 | 24 | 6  | 0  | 3(0)   | 40 |
| 1992       | 8  | 1  | 9  | 10 | 8  | 1  | 2      | 61 |
| 차라리 우경     |    |    |    |    |    |    |        |    |
| 1990       | 4  | 0  | 11 | 40 | 3  | 6  | 10(3)  | 26 |
| 1992       | 2  | 0  | 7  | 16 | 6  | 19 | 3      | 47 |
| 우경         |    |    |    |    |    |    |        |    |
| 1990       | 0  | 0  | 2  | 24 | 0  | 46 | 18(13) | 10 |
| 1992       | 3  | 1  | 2  | 9  | 3  | 59 | 1      | 22 |

(제 8, 9, 10 학년생으로서 동일한 분포, 단위 %)

“어느 방향에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가 ?”

1. 녹색 주의
2. 사회주의 (1990 년 : 사회주의-공산주의)
3. 중도주의
4. 기독교민주주의
5. 사회민주주의
6. 공화주의 또는 기타 우경민족주의 (1990년에는 없었음)
7. 기타 (1990년에는 “민족사회주의”가 포함되었으며 괄호속에 별도로 나타냄)
0.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도표 4 : 1992년 4월 현재 독일통일에 대한 관점  
(단위 %)

|                | 1  | 2  | (1+2) | 3  | 4  | 5  |
|----------------|----|----|-------|----|----|----|
| <i>Sachsen</i> |    |    |       |    |    |    |
| 14 - 25 세      | 25 | 28 | (53)  | 42 | 3  | 2  |
| 남자             | 34 | 30 | (64)  | 33 | 2  | 1  |
| 여자             | 17 | 26 | (43)  | 50 | 5  | 2  |
| 좌우 Spektrum,   |    |    |       |    |    |    |
| 좌경             | 1  | 6  | (7)   | 40 | 31 | 22 |
| 차라리 좌경         | 12 | 22 | (34)  | 53 | 11 | 2  |
| 좌경도 우경도 아님     | 23 | 30 | (53)  | 44 | 2  | 1  |
| 차라리 우경         | 48 | 27 | (75)  | 23 | 2  | 0  |
| 우경             | 60 | 24 | (84)  | 16 | 0  | 0  |

“독일통일이 이룩된 것을 반가워한다”

1. 아주 강하게
2. 강하게
3. 절반 정도
4. 거의 반가워하지 않음
5. 전혀 반가워하지 않음

도표 5 : 1968년부터 1992년간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인과 동독인에 관한 평가

|                | 1968 | 1989 | 1990 | 1992 |
|----------------|------|------|------|------|
| 서독인들은          |      |      |      |      |
| ○ 근면하다         | 1.97 | 2.50 | 1.72 | 2.62 |
| ○ 지능이 높다       | 2.38 | 2.15 | 1.96 | 2.44 |
| ○ 국가적 긍지가 대단하다 | 2.78 | 2.29 | 1.72 | 2.26 |
| ○ 호감이 간다       | 2.42 | 2.40 | 2.02 | 2.98 |
| 동독인들은          |      |      |      |      |
| ○ 근면하다         | 1.55 | 2.86 | 3.64 | 1.90 |
| ○ 지능이 높다       | 1.70 | 2.34 | 2.62 | 2.26 |
| ○ 국가적 긍지가 대단하다 | 1.68 | 2.84 | 3.82 | 2.50 |
| ○ 호감이 간다       | 1.74 | 2.48 | 2.86 | 2.20 |

1 로부터 7에 이르는 스칼라 중 평균치 : 1 = 매우 강한 특징

도표 6 : 대변혁이전 (1989년초) 서독 TV를 통한 정치정보의 수용빈도와  
 통독에 관한 관점 (1992년초) 사이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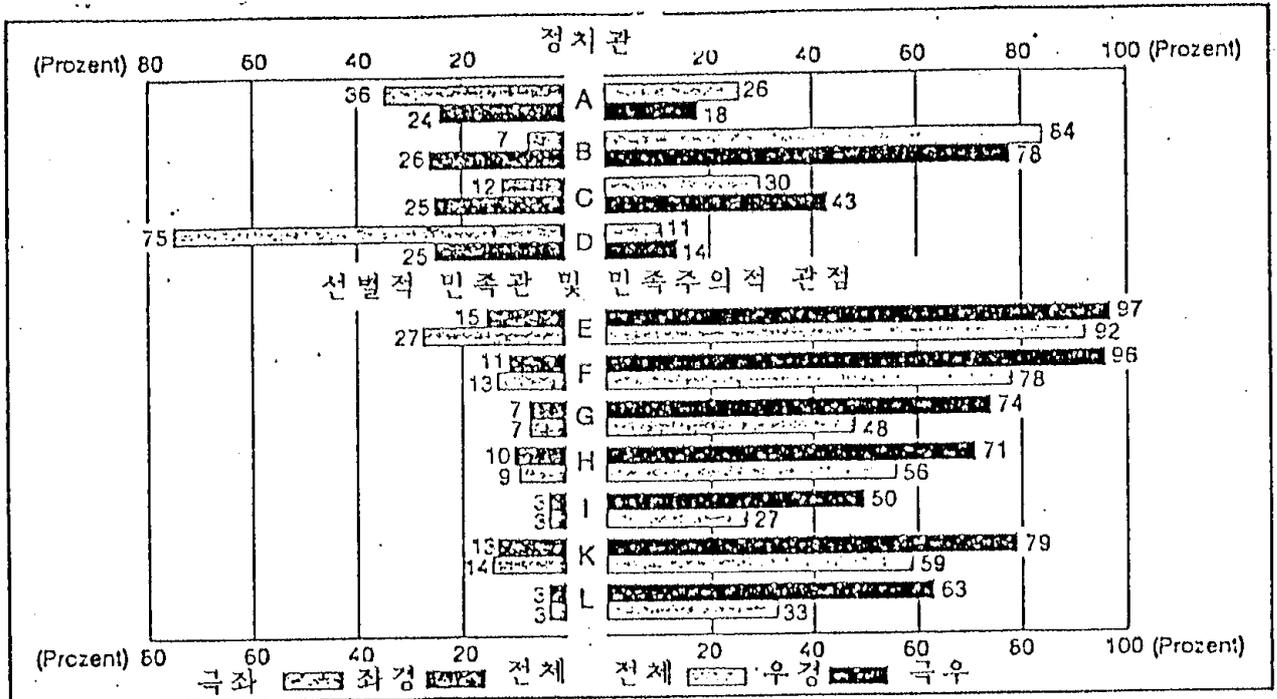
| 수용빈도 1989   | 1  | 2  | (1 + 2) | 3  | 4 + 5 |
|-------------|----|----|---------|----|-------|
| 매일          | 27 | 21 | (48)    | 45 | 7     |
| 한 주일 간 여러 번 | 8  | 17 | (25)    | 62 | 13    |
| 아주 드물게/전혀   | 5  | 5  | (10)    | 64 | 26    |

1987년부터 실시해 온 단면도 연구와 동일한 인구분포 (N = 200)

“독일통일이 이룩된 것을 반가와 하십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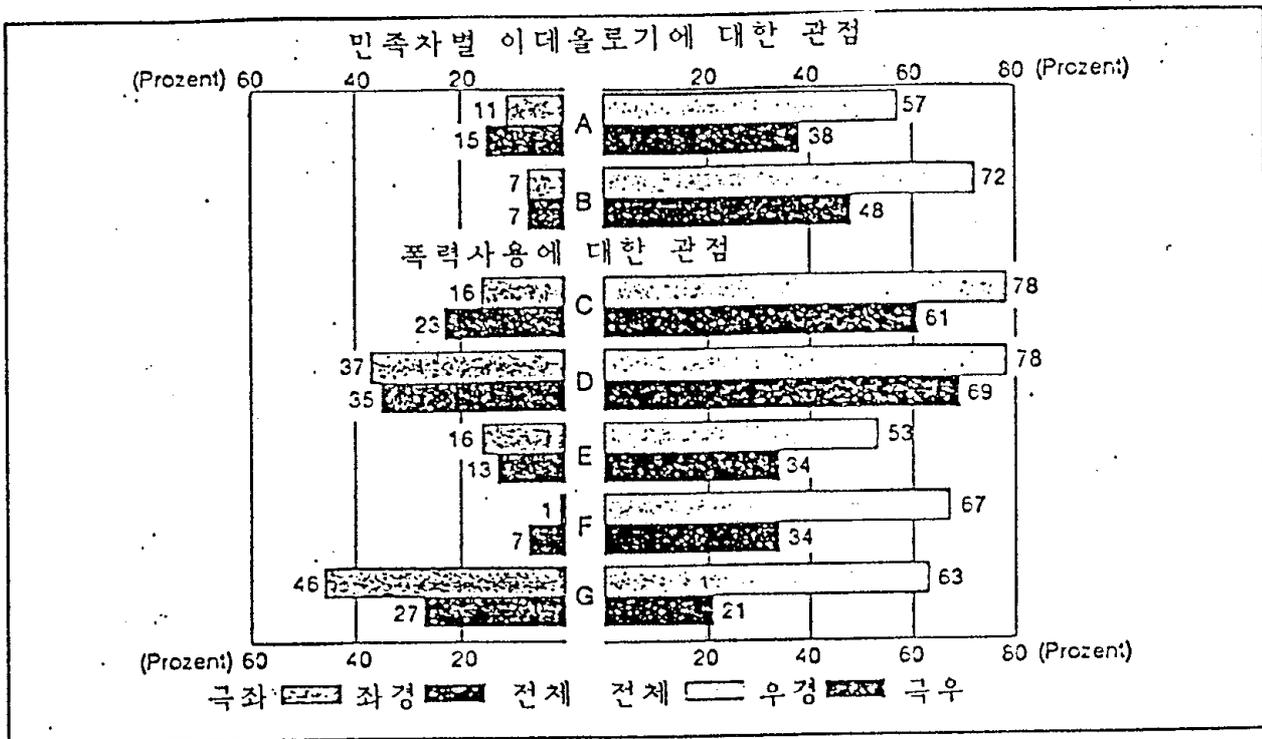
1. 아주 강하게
2. 강하게
3. 절반 정도
4. 거의 반가와 하지 않음
5. 전혀 반가와 하지 않음

도해 1 : 1992년도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관, 민족관, 민족주의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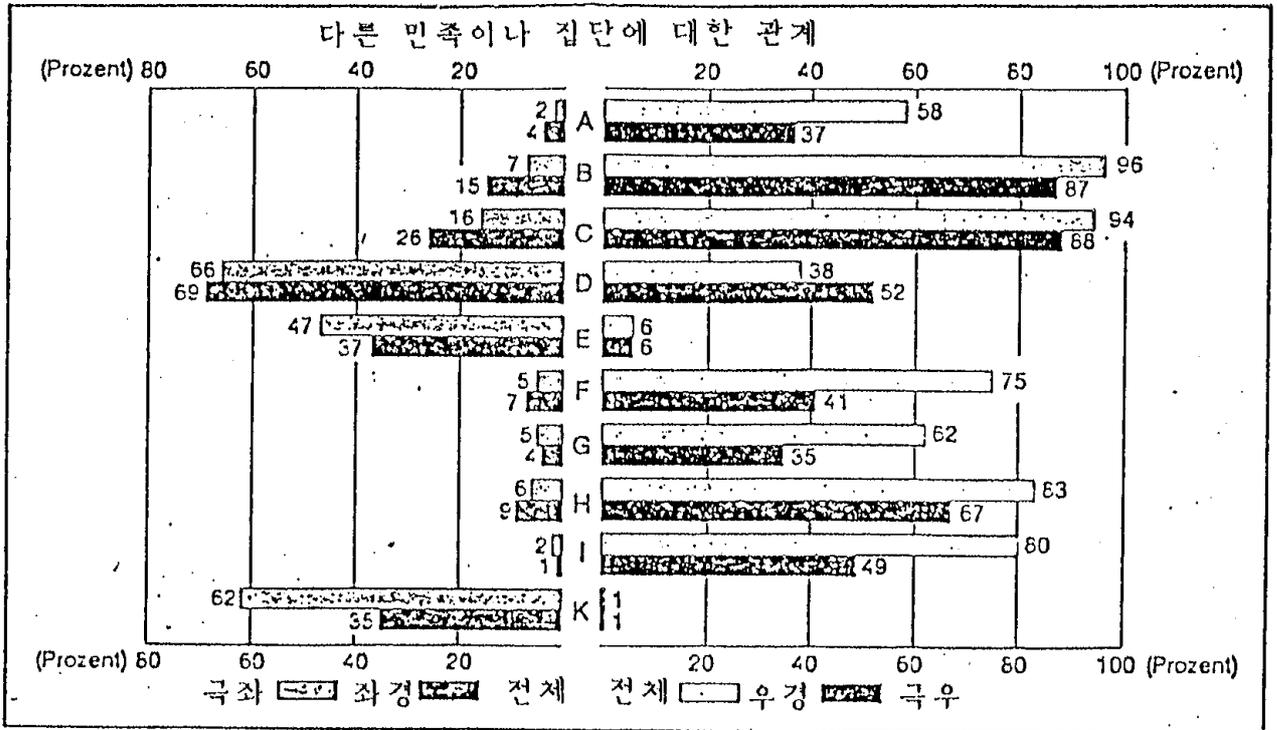
- A: 정치관심도 (매우 강함/강함 = 13 %)
- B: 붕독에 대한 만족도 (매우강함/강함 = 53 %)
- C: 독일정치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함/만족함 = 42 %)
- D: 개혁사회주의가 내게는 오히려 나올 것 같다 (동의 = 22 %)
- E: 독일인입에 대한 금지 (매우 강한 금지/금지불 갖고 있다 = 64 %)
- F: "독일은 독일인에게"라는 구호 (동의 = 40 %)
- G: 독일인이란 역사적으로 항상 위대한 민족이었다 (동의 = 34 %)
- H: 구 독일동부지역은 다시 독일로 귀속되어야 한다 (동의 = 29 %)
- I: 독일은 동구권에 대한 패권을 장악해야 한다 (동의 = 12 %)
- K: 민족사회주의(나치즘)도 좋은 면이 없지 않았다 (동의 = 29 %)
- L: 독일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다시금 필요로 한다 (동의 = 12 %)

도해 2: 1992년도 동독 청소년들의 민족차별 이데올로기와 폭력사용에 대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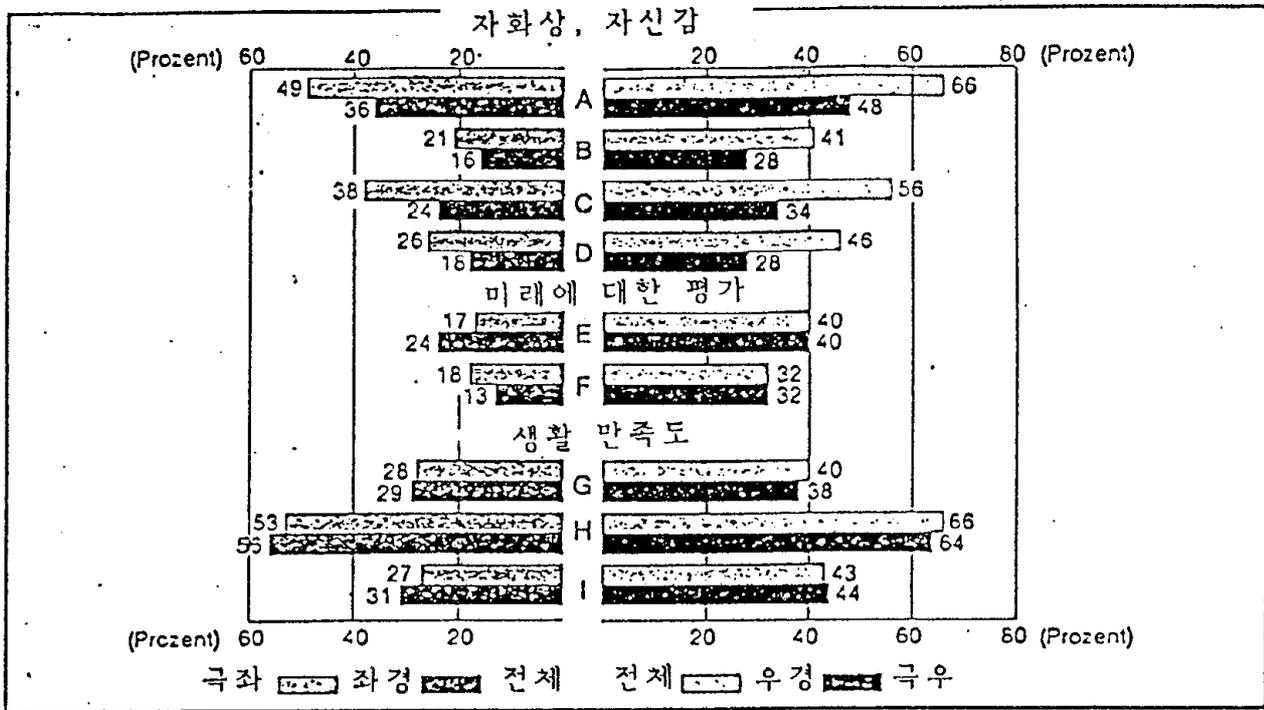
- A: 강자가 자연의 승리자이다 (동의 = 24 %)
- B: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출신 외국인들과 자녀를 낳으면 안된다 (동의 = 20 %)
- C: 필요한 경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법률과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동의 = 39 %)
- D: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사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동의 = 44 %)
- E: 자신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때때로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 (동의 = 18 %)
- F: 외국인 추적을 (해 본 적이 있다, 할 것 같다) (동의 = 9 %)
- G: 경찰이나 반대자들에게 주먹으로 대항해 (본 적이 있다, 볼 것 같다) (동의 = 17 %)

도해 3 : 1992년도 동독 청소년들의 다른 민족과 다른 집단에 대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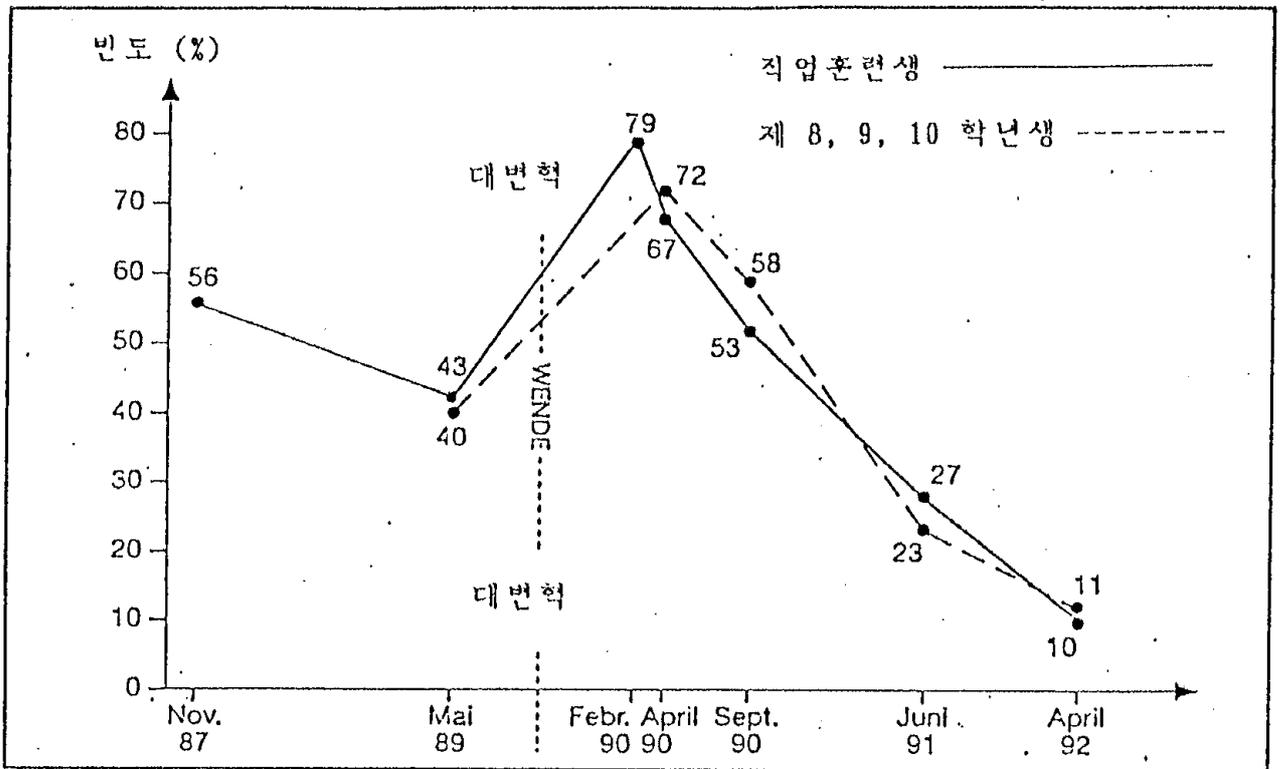
- A: 우리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 (동의 = 17 %)
- B: 나는 외국인을 위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반대하고픈 심정이다 (동의 = 39 %)
- C: 동독내 외국인 수는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동의 = 54 %)
- D: 프랑스사람에 대한 친근감 (동의 = 61 %)
- E: 러시아사람에 대한 친근감 (동의 = 17 %)
- F: 나는 유대인을 싫어한다 (동의 = 17 %)
- G: 유대인은 독일의 불행이다 (동의 = 13 %)
- H: “빨갱이 (러시아인 지칭) 물러가라” 는 구호 (동의 = 35 %)
- I: 공화주의자 회원/동조자 (동의 = 12 %)
- K: 자유투파 회원/동조자 (동의 = 8 %)

도해 4 : 1992년도 동독 청소년들의 자화상과 자신감



- A: 나는 나여야지, 다르고 싶지 않다 (완전 동의 = 52 %)
- B: 위험한 일이 재미있다 (완전 동의 = 20%)
- C: 나는 동고동락할 것을 확신한다 (완전 동의 = 28 %)
- D: 나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완전 동의 = 24 %)
- E: 개인적 장래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다 (동의 = 34 %)
- F: 장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 (동의 = 21 %)
- G: 가정의 경제 상태에 만족 (동의 = 33 %)
- H: 부모에 대한 관계의 만족 (동의 = 66 %)
- I: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 (동의 = 43 %)

도해 5 : 1987년부터 1992년간의 추세로 본 청소년들의 정치관심도



청소년들은 “매우 강함”, “전부”에 걸친 1에서 5에 이르는 스칼라에 정치관심도를 표명함. 표현된 수치는 “매우 강함”과 “전부”에 대한 답변을 %로 나타낸 번도의 종합임.

도해 6 : 민족적 고정타입 : 1968년부터 1992년간의 판단력의 전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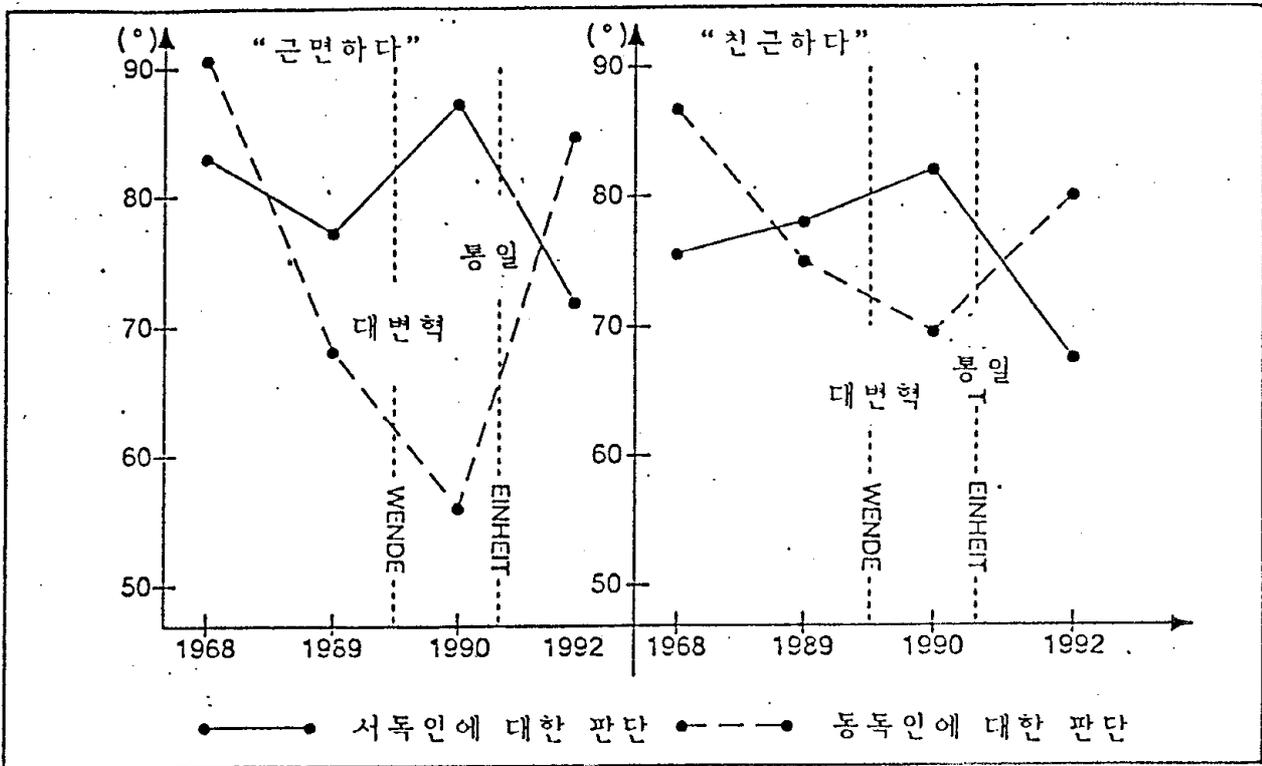


도표 5 의 평균치를 0 으로부터 100 에 이르는 스칼라에 표현

## 내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사례

### < 독일협회 >

면담자 : Renate Muth

Andreas Apelt 이사

- o 동·서독간의 교류는 1953년 동베를린 인민봉기 이후에는 정치적 교류가 어려워진 반면, 경제교류가 서서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
  - o 1961.8.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에는 경제분야 교류(교역)만 진행되다가, 양 베를린 주민간에 단절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자 1963년 동독과 서베를린 시간에 봉과사증협정을 체결, 상호 방문의 길이 열리게 됨.
  - o 구동독 주민들에게는 사람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겠으나 인적, 물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이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특히 여행의 자유화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했고, 내독간 교역 확대는 동독주민들의 소비재에 대한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함.
    - 스포츠교류, 공식·비공식 인적 접촉과 방문은 동독주민들에게 양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옴.
  - o 동독으로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서쪽으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었음.
    -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앙으로 진출해야만 했고,
    - 서독측이 내독교역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을 포함한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항상 요구하고 구동독 주민들간에 정신적 자유가 점차로 확대, 강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함.
      - o 시민적 자유인 여행,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요구
  - o 70년대 ~ 80년대 독일봉일논의는 동·서냉전의 지속으로 동서독관계개선에 많은 세월이 요구되고, 양 독일은 서로 국가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80년대 후반에 와서 다음 세가지 요인으로 동독
- \* 92년 12월에 독일협회(베를린 소재),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의 구동독 시민들과의 면담내용을 주독대사관이 정리한 것임.

체제에 위기가 닥침.

- 고르비로 상징되는 강한 자유화 물결의 유입
  - 동독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으로 사회불안 분위기가 조성
  - 서독에 대한 심한 경제적 의존
- 0 구동독 정부내에 교류·협력 및 개방에 대한 실용주의파, 즉 개혁세력이 있었으나, 이들 또한 친공산주의 세력으로 공산주의의 한 변형(variant)에 지나지 않음.
- 0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줄 수 있는 교훈은 서신교류, 가족상봉, 연문교류 등을 통해 양측 주민들간에 상호 교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서서히 통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 < 브란덴부르크주 >

면담자 : Dr.Martina Weyrauch 주지사 보좌관

- 0 동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함.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후인 1973년 동독 공산당 당대회에서 호네커는 처벌법을 완화하는 등 독재정책을 다소 풀어 주는 조치를 취함.
  - 그러나 1980년대초 경기가 후퇴하여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인권탄압기구를 강화시킴.
- 0 구동독 인권운동은 다음 세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1975년 헬싱키 협정에 인권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독내 체제비판 세력이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음.

- 1986-87 서독 사민당(SPD)과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간의 협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입장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도 거론.
  - 고르바초프에 의한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인권, 핵, 환경 문제 등 세계 공론 관심사가 거론되었고, 동독에서도 이들 문제가 논의됨.
- o 동독내 시민운동의 목표는 단순히 서독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었음.
- 1989.9. 시민운동세력 의정서는 인간주의적 사회주의를 표방했으며, 이것은 원탁회의와 '90.3.18. 자유총선에 의해 구성된 동독의회에서도 이것을 지향하는 헌법(안)을 채택함.
- o 이러한 창조적, 인간적 사회주의로의 개혁추구는 동독 경제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흡수통합으로 좌절됨.
-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개혁이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임.
- o 독일통일을 평가해보면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임
- 동서독에는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발전되어 전혀 상반된 법질서가 확립됨.  
그런데 대부분의 서독법을 그대로 동독에 적용함으로써 후유증이 심각함.
    - o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 동독에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사용권만 갖고 있었는데, 서독 소유법을 그대로 적용함.
  - 상이한 정신적, 심리적 경험과 자아인식으로 사회에 대한 수용태도가 다름. 동독인들의 심성은 상호부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데 익숙함. 그런데 서독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동독인들을 깔보는 식으로 보는 것이 문제임.

## < 착세즈 >

면답자 : Hartmut Haeckel 주 학술문화부 대변인

- o 동·서독간 문화교류에 대한 동독측의 원칙은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추진한 것이었음.
  - 예를들면 드레스덴 오케스트라의 쾰른공연과 십자가합창단의 서독공연등은 1년전부터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6개월전부터 준비해야 함.
  - 공연기간중 어떠한 개인적 접촉도 허용하지 않고, Stasi 요원이 수행함.
  - 서독악단이 동독을 방문할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인 점은 같으나, 극소수이긴 하나 개인적 접촉은 허용함.
  
- o 동독인들의 통일 갈망은 자유로운 서독방문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됨.
  - 그당시 아무도 통독후 경제체제전환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탁쳐올지를 생각하지 못했음.
  - 즉각적인 통일을 외쳤던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여행의 자유는 얻었으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됨. 이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극우파가 극성을 부리는 것임. 공산당 봉치가 풀리니까 극우파로 옮겨 간 결과가 되었음.
  - 통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으나,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생각함.
  - 통일이 안 되었으면 젊은 세대가 서독으로 이주, 서독 DM을 가질려고 했을 것임.
  
- o 동·서독 문화교류를 통한 서독교회의 지원으로 동독교회가 지어지기도 했으며, 결국 교회가 통일과업에 앞장섰음.

※ 작센주 문화 통합 현황

- o 모든 대학, 문화기관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과거 공산당 및 Stasi 경력, 인권침해경력 등을 확인, 인사개혁을 단행함.
  - '92.4. 심사불 종료, 이제는 행정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있음.
  
- o 아무런 준비없이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구동독 문화·예술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함.
  - 구동독 시대에는 국가가 문화예술을 공산주의 체제의 선전수단으로 이용, 이데올로기가 간섭한 단점이 있었으나 국가가 전적으로 재정지원한 장점도 있었음.
  - 통일후 문화·예술 기관에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재정문제도 처리할 수 없음.
  
- o 연방주의원칙에 의거 개별주가 자신의 문화·예술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나 구동독 지역 주와 자치단체는 옛날 관행에 익숙하여 자력으로 벌어들여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려 함.
  
- o 통일조약 (제35조 제7항)은 2년간의 과도기를 설정, 연방정부가 문화 시설유지와 문화예술진흥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 연방정부의 신설주 문화예술지원액은 91년 9억 DM, 92년 7억 8천만 DM, 93년에는 6억 5천만 DM
  - 신설주의 산업이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임금은 올라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이는 문화·예술기관이 존립할 수 없는 형편임.
  
- o 문화예술단체의 통합으로 초지역적인 중앙극단설립이 진행중임.  
행정단위 위주로 된 문화예술단체가 큰 지역과 합쳐서 악단/극단을 구성, 문화유산을 보호.

- 동독지역 문화재의 60 %를 보유하고 있는 작센주는 연방지원의 42%를 배정받음.
  - 문화예술예산은 91년 5억 6,755만 DM, 92년 4억 870만 DM으로 주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함.
  
- 작센주의 문화보존을 위해 작센주 출신이 아닌 문화경영인, 학자, 지휘자 등으로 문화위원회를 설치, 문화시설방문, 공연프로 및 재정, 근무상태 등을 심사하여 92년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임.

< 별첨 >

면담자 약력

o Renate Muth (여)

- 구동독 국영 TV 방송에 20년간 근무
  - o 주민들의 개인적 불만 등 사회문제 프로그램을 담당
- 현 독일협회 근무

o Andreas Apelt (남)

- 동베를린 주재 프랑스, 네델란드, 서독신문사에 동독문제에 대해 기고
- 현 베를린 주의회 의원 (CDU) 및 독일협회 대외관계 담당이사

o Dr. Martina Weyrauch (여)

- 1958년 생
- 법학전공, 청소년범죄 석사논문
- 17세 때부터 청소년 변호사 역할
- 박사논문 : 구동독 형법의 국제법 저촉부분 비교연구
- '90.3 자유총선후 드메이지에르 수상 보좌관으로 근무,  
독일통일의 국제법 관계 담당
- 현 Stolpe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보좌관

o Hartmut Haeckel (남)

- 1979년 교사로 근무중, 학생군사훈련을 거부하다 쫓겨남.
- 작센 교회신문 편집인
- 86년 교회언론인으로 하노버 방문, 하노버교회와 비공식 접촉
- 1991년부터 학술문화부 근무

## 내독관계에서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

### o 동독측의 법적인 근거

- 1980. 7. 3자 문화재 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s Kulturgutes der DDR)
- 1982. 5. 3자 문화재 보호법 3차 시행령

### o 동독으로부터 반출이 금지된 보호대상 문화재 (Kulturgut)의 범위

- 독일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에 관한 주요 문서
-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유물
- 과학기술, 예술활동, 교통·통신, 농업, 군사, 스포츠, 기타 산업용 기기분야에서 발달사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물건
- 동물과 식물의 진화를 알 수 있는 화석과 광물
- 원시시대 역사와 관련된 유적
-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
- 회화, 조형, 응용미술 작품
- 가구, 양탄자, 도자기, 유리 잔, 가죽, 돈, 광석, 나무, 예술작품 중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
- 필름, 사진, 전축판, 테이프, 역사적인 기념카드 중 수집용으로 수집된 것들

- 학자, 소설가, 시인, 작곡가 등의 최초의 작품이나 기타 기념작품 중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 고서적
  - 역사적 · 학문적 가치가 있는 필사본 · 인쇄본
  - 정치 · 예술 · 학문 · 사회활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유품
  - 유명음악가들이 연주하던 악기나, 유명 악기제조자들이 만든 악기
  - 유명한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설계도
  - 역사적이고 시대사적 의의를 가진 수집품이 있는 동전, 우표
  -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훈장, 메달, 영예수여증, 문장 등
- 0 이러한 보호대상 문화재의 반출은 동독문화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반출물품은 선물, 이사물품, 판매물품, 상속재산 등 모두에 해당됨.
  - 사전 허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신청인 주소 · 성명
    - 문화재의 명세서, 등록번호 (등록되어 있으면)
    - 반출의 목적
    - 수취인 및 그 도착지
    - 평가액 (신청인 평가액 또는 감정가)
  - 사전 허가 신청은 우선 지방관서의 문화재 관리국에 먼저 신청함.
    -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를 3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하되 2 등급과 3 등급은 지방관서가 책임지고 결정함

- 지방 문화재 관리국에서 2 등급 · 3 등급 문화재에 대한 허가를 기각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청자가 반출허가에 관한 소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방 문화재 관리국은 이를 문화성에 이첩하여 4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
    - 문화성은 1 등급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반출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소원제기를 할 수 없음.
  - 허가신청시 신청자는 허가 수수료를 늦어도 반출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바, 그 수수료액은 다음과 같음.
    - 1만 동독 마르크 상당액의 경우 3 % (최소 50 마르크)
    - 1만 ~ 50만 동독 마르크 상당액의 경우는 2 % (최소 300 마르크)
    - 50만 동독 마르크 이상일 때는 1 % (최소 1만 마르크)
  - 문화재의 반출이 동독지역에 거주지를 갖지 않는 수취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동독의 외환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함.
  - 반출허가서는 1년 동안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동독지역에 거주지를 갖지 않은, 특히 서독으로의 이주자들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독측에 의해 반출허가가 기각된 경우는 동독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독주민 서독방문시 여행안내

### 1. 기차를 이용할 경우

- o 동독 방문객은 서독의 기차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적십자사 봉사센터나 교회봉사단체에 의해 여행안내와 여행 중 발생된 질병에 대한 간단한 구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
  - 보통 기차를 갈아타는 경우 목적지까지 안내설명, 멀미나 기타 여행 관련 질병에 대한 구급약 제공, 구급차 제공 등
- o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으로 여행자가 여행경비가 없어 더 이상 목적지까지나,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할 경우, 교회나 적십자사는 여행경비와 제반 편의를 제공함.
  - o 서독측 초청인 또는 친지에게 도착 시간, 도착 열차 등과 관련한 전화 연락 등

### 2. 방문지에 도착한 경우

- o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들은 방문지에 도착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 (읍, 면 등)에 설치된 동독주민 안내센터 (Betreuungsstelle)에서 관련정보를 얻으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우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Begrüßungsgeld)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100 DM 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주정부와
- 
- \* 전독문체연구소가 작성한 것을 주독대사관이 요약·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추가 환영금을 받을 수 있음.

-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동독주민에 대해서 교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있어서도 할인혜택을 부여했음.
- 의료지원
  - 양독간 보건협정에 의해 동독주민은 서독방문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나 입원지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무료 의료지원의 대상은 급성질병이나 사고의 처치, 질병의 급작스런 재발방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악화 방지 또는 교통 경감을 위한 의료행위에 해당함.
  - 이러한 무료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대학병원에 찾아가 여권을 제시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증명서”(Berechtigungsschein)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질병으로 인해 동독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 내에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향 주소지의 경찰서나 본(Bonn)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만,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노령 연금 수령자 (여자는 60세, 남자는 65세부터), 상이용사로서 연금 수령자, 재해보험에 의한 연금수령자는 목적지에서 추가 여행을 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받음.
  - 단 1년에 2회에 한하며, 방문기간이 최소한 1주일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초청자 또는 서독 거주 친척이 사회부조금 수령자, 전쟁원호 보상 대상자,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초청자 또는 서독 거주 친척이 지방자치단체 안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사항을 증명하면, 현금증서 (Gutschein)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서독방문자가 동독으로 귀환하는 비용이 없을 경우, 그 초청자나 서독 친척이 서독의 사회보조금수령자, 전쟁 원호보상 대상자, 실업보조금수령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경비보전을 위한 현금증서를 받을 수 있음.
- 중장애자의 경우 서독에서 중장애자 증명서 (Schwerbehindertenausweis)를 발급받아 귀환시 또는 시내교통요금 지불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장애자 증명서는 연방원호법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원호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장애자는 취업시간의 50 % 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자를 말함.
  - 귀환시는 간호목적의 동행자나 길안내 개에 대한 운임을 면제해 주고, 특별좌석을 마련해 줌.
  - 서독지역에서 시내교통요금은 전부 면제됨.

### 3. 귀환시

- o 여행자의 짐은 동독철도편으로 도착지까지 별도 운송될 수 있음.
  - 탁송된 짐은 만약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거나, 열쇠를 같이 보낸 경우에 한하여 국경에서 여행자의 입회없이 봉관수속이 가능함.
  - 밀폐되었거나 열쇠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자의 입회하에서만 봉관수속이 가능함.

## 0 선물의 지참

- 여행자가 서독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선물 등의 지참은 동독 관세 규정에 의하면, 전체 금액이 1,000 동독 마르크까지, 여행 일수가 4일까지는 매 체류일당 200 동독 마르크까지만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함.
  - 물건가격의 산정은 현 동독 내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 0 현금의 지참

- DM의 지참은 동독내에서 DM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 (Intershop) 에서 선물구입을 조건으로 허용됨.
- 지참한 DM은 세관에서 외환보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함.
- 또한 동독주민으로서 동독정부에 신고를 하고 서독에 구좌를 갖고 있는 경우, 1인당 500 DM 까지 서독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한 돈은 서독에서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없고, 반드시 동독으로 지참해야 함.

# 언 론 분 야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I)

### 1. 내독간 조약상의 합의

#### 1.1. 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조약상의 합의

이 분야에 있어 동서독간 최초의 조약상 합의는 1970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명시적인 합의가 있기까지 쌍방논의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1966년말 동독은 내독간 우편 및 전화교류 분야에서 서독에 비해 동독측이 더 많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연제이자 등을 합쳐 1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지불요청을 제기하였다. 동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서독의 연방통신성장관은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라 정산하라는 동독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연방통신성장관은 만국우편연합(Weltpostverein)과 국제전화연맹(Internationale Fernmeldeunion)의 각종 조약과 의정서에 따라 동·서독은 독일이라는 단일국가로 간주되므로 국제적 기본요율에 따른 정산할 “여지가 없으며”, 동독 자체가 1966년 12월 31일까지 AWP(연합국 우편·통신 분야 정산실무위원회 : Allied Working Party)의 정산 교류제제에 가입하여 그러한 방식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승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통신성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이 제기한 지불요구에는 전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당시의 시점에 전체 계산액의 40%에 달했던 연제이자 지불요구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관례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규”에 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성은 동독에게 적정한 비용보상과 내독간 우편 및 통신분야에서 시급한 상황개선을 위해 행정적 차원의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차례 걸쳐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

\* 내독간 우편·통신분야 교류협력사례를 요약·정리한 논문임.

않았으므로 서독의 독일 연방제신청 (Deutsche Bundespost)은 비용보상을 위해 1967년도 분 1,690만 DM을, 1968년도 말에, 1968년도 전반기 분 510만 DM을 1969년 2월에 스스로 송금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액은 동독이 요구한 지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동독이 독일연방제신청에 요구한 지불액은 1948년부터 1968년말까지 11억 마르크, 서베를린시에 대한 지불요구액은 7억 마르크에 달했다.

동독이 1969년부터 협상거부자세를 포기하자, 1969년 9월 19일부터 동·서독 체신간의 회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회담의 결과 1970년 4월 29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우편 및 전화교류에서 상호 수행된 활동의 계산과 청산에 관한 합의문 (“Vereinbarung ue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verkehr zwischen der DDR und BR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이 작성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게 1967년부터 내독간 우편 및 체신교류에 있어서 동독이 수행한 초과활동분에 대하여 연간 3,000만 DM을 일괄금(Pauschale)으로 지불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 일괄금은 1976년말까지 적용되었으며 추후 결정에 따라 일괄금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서독은 연간 8,500만 DM을 지불해야만 했다.

서독이 이미 지불한 금액은 정산시 공제되었다. 1970년 4월 29일자 합의에 따라 1966년 12월 31일까지의 초과활동에 대한 보상액은 회담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었다. 동·서독 양측은 국경을 통과하는 우편 및 전화교류의 수행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해오던 범위 내에서는” (제1조)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이외에 장거리 전화회선과 텔렉스회선의 증설이 합의 되었으며 동독은 1952년부터 단절된 동·서베를린간의 전화교류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구두선언을 하였다.

동·서독 양측은 합의된대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971년 9월 3일에 “동·서독 체신성 대표회담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게 동독이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초과활동에 대해 2억 5,000만 DM을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동독은 우편 및 전화교류 분야에서 상황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통보하였다. 베를린도 이 의정서에 포함되었다. 이로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결속에 관한 전승 4대국 협정의 법적 내용이 처음으로 내륙간 합의사항에 적용되었다”.

## 1.2. 기본조약 체결 이후의 조약상 합의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5항에서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의 정관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였다. 1972년 12월 7일에 시작하여 3년간 24회의 회담을 진행한 후, 우편교류, 전화교류, 우편 및 전화교류에 수행된 활동의 정산에 관한 1개의 정부간 협정과 3개의 행정협정(우편교류, 전화교류, 우편·전화교류활동정산)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이하 우편협정이라 함)은 1976년 2월 27일에 가서명, 동년 3월 30일에 서명된 후 동년 7월 1일부로 발표하였다. 협정의 한시적 시효는 계획된 바 없었다.

동독과 체결했던 모든 협정에서처럼 이 협정 역시 서독정부에게는 동독에 대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것과 협정내용에 서베를린을 포함해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동독은 이미 기본조약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의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서독이 UN 산하 특별기구에 아무런 추가적인 특수규정없이 가입할 경우, 이는 곧 동·서독 우편 및 전화교류가 외국과의 교류임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동·서독은 이러한 특수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본조약 제7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5항 제2절에 “기존 합의사항과 양측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절차가 이 협정내용에 포함된다”고 해 놓았다.

따라서 우편협정은 바로 내륙간 복수관계의 성격을 띤 일종의 합의도출이었다. 이 협정에는 국내규정과 국제규정이 참작되었으며 양측은 회담결과, 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허용되었다. 동독은 이 협정을 일종의 국제적 우편협정으로 평가절상조차 하였다. 이에 반해 서독의 연방정부는 우편교류와 전화교류에 관한 국제규범은 어디까지나 “양국간에 적정한 규정이 없는 한,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우편협정 역시 동독과의 우편교류가 외국과의 교류로서 간주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수하였다.

동·서독간에는 우편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봉례적인 “단순규정”이 실제로 계속 적용됨으로써 외국과의 교류에 따르는 일반적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만국우편연합의 서류양식이 사용되지 않고 독일어로 된 단순화된 양식이 사용되었으며 세관신고서 (Zollinhalterklaerung)도 필요없었다. 서독은 변함없이 외국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동독에 대한 일괄금 보상조치는 “전독일적인 입장에 입각한 복수법”에 따른 것이었다. 소포의 무게는 2 kg 까지 허용되었으며 봉해진 채 배달되었으며, 소화물의 무게는 10 Kg 대신 최고 20 Kg 까지 허용되었다. 소화물표가 교환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외국과의 소포교환에서 처럼 소화물표의 사용이 필요없었기 때문이었다. 양 제신청은 요금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국제규정과 크게 다른 점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독의 독일연방제신청은 여전히 국내요금을 적용했던 반면, 동독은 1971년 7월 1일부터 “국경봉과 거래”로 간주, 외국요금에 준한 요율을 적용했다.

서베를린이 우편협정에 완전하게 수용됨으로써 서독지역으로부터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우편물은 동·서독접견지역의 Helmstedt를 통과하는 철도만을 이용하던 것을 허용된 모든 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되었다. 양측은 우편물의 분실, 압류, 손상, 절취사건이 발생할 때 서로 봉보할 것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반송의 근거를 기록하여 제시하도록 되었다. 서독으로 향하는 우편물의 우편번호 앞에 기록하는 국가표식으로서 서독과

서베를린은 D로 표시할 것과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향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DDR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서독정부가 우편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 반해, 이 협정이 수년간 수행되어 오고 있는 동·서독간 우편교류의 관행을 협정문안으로서 단지 성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은 동독의 관세실무가 동 협정과 더불어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독측이 빈번히 적용하는 반입규정때문에 선물용 소화물 교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각 분야별 교류현황

### 2.1. 서신교류

내독간 서신교류는 여행교류, 방문교류, 청소년교류 등의 인적 접촉 분야와는 반대로 동독측에 의해 완전히 단절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과거 동독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서신검열과 같은 불미스런 개입을 제외하고는 서신교류는 거의 아무런 장애없이 진행되었다. 물론 내독간 서신교류에서 상식을 벗어난 배달기간의 장기화라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70년 이래 쌍방간 합의불 통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때부터 배달기간은 보통 5일이내로 단축되었는데 국경을 통과하는 교류라는 점으로 볼 때 “그나마 수긍할만한 기간”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였다.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서신교류량은 1961년도부터 - 1962년도에 약간 침체되었으나 - 1965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5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1968년도에는 1965년도 교류량의 약 32% (1961년도의 약 34%) 밖에 되지 않았다. 1969/70년에 접어들어 약간 증가되었으나, 그 다음부터 다시 감소하였는데, 1977년중 동독으로 향하는 서신량은 5,700만봉에 불과했다 (1965년의 약 15%, 1968년의 약 47% 해당).

(도표 1)

동·서독 서신교류 (1961~1968)

단위: 백만봉

| 연 도  | 서신 교류량    |           |
|------|-----------|-----------|
|      | 서독에서 동독으로 | 동독에서 서독으로 |
| 1961 | 354.9     | 245.5     |
| 1962 | 354.1     | 249.2     |
| 1963 | 380.2     | 251.6     |
| 1964 | 379.8     | 253.5     |
| 1965 | 381.5     | 234.9     |
| 1966 | 291.6     | 198.0     |
| 1967 | 204.6     | 173.2     |
| 1968 | 122.4     | 127.1     |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서신교류량 역시 이와 비슷했다. 즉 1961년부터 증가하다가 이미 1964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였다. 1968년도의 서신교류량은 1964년도의 약 50% (1961년도의 약 52%)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증가” 하였다. 1977년중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한 편지 수는 1억 봉 이상 (1964년의 39%, 1968년의 약 79%)에 달했다.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동·서독 서신교류의 감소 추세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편지 수는 1977년까지 계속 정체되었는데 - 로부터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소외현상이 일어났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우편 교류와 특히 서신교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인간과 인간간의 접촉을 유지시켜 준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신”이라는 한분야만을 분리해서 주민들간의 접촉현황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바, 왜냐하면 전화통화에 있어서 진전상태(전화 회수)증가를 함께 고려해 볼 때, 1970년부터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한 교류에 있어서 편지수는 줄어들었던 반면 통화수는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70년대에 줄어든 서신교류를 통해 인간과 인간간의 접촉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편지대신 전화라는 의사소통 방법이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연계하여 70년대부터 방문여행교류가 급증한 점 역시 그 의미가 매우 큰데, 편지를 통한 접촉이 직접 대면 접촉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1965년부터 1968년에 이르는 기간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전화교류와 여행교류의 증가가 주로 70년대부터 비로소 나타나는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1966년부터 전화교류가 약간 증가했다는 사실, 즉 편지교류의 일부가 전화교류로 대체되었다는 점 자체를 고려해보고 1964년부터 동독이 연금수령자의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서신접촉의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대교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때문에 노년층의 서신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서신왕래의 수가 매우 감소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주민들 간에 소외현상이 일어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1964년부터 1968년에 이르는 서신을 통한 주민들간의 접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이 기간의 전화교류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전화교류의 조건보다 나을 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기간에 전화교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교류를 통한 접촉의 감소를 전화교류가 대체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향하는 서신교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 역시 실제적인 접촉감소, 즉 주민들간의 소외현상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2.2. 소포교류

60년대초부터 동독과의 소포교류는 특별한 의의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은 동독이 장벽을 구축한 후부터 발생한 물자공급의 난점이 소포교류와 더불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기초식료품이 보내지다가 1964년부터 고급소비재를 비롯하여 기호품, 열대과일 등이 접증하였으며 6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개인적 연고에 관련된 선물이 대종을 이루면서 보내졌다. 선물용 소화물, 선물용 소포, 그리고 후일 여행교류시 직접 휴대한 각종 선물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물자교류는 민간적인 접촉이라는 의의는 물론 경제적 의의가 있었다. 예컨대 1963년부터 1965년에 걸친 개인에 의한 송달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때 내독간 교역의 일환으로 공급된 상품의 가치와 맞먹는 것이었다. 여하간 동독과의 이러한 개인에 의한 상품교류가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통례적 범위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은 당시까지만 해도 동·서독인들간에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비록 소포교류가 완전 단절된 적은 결코 없었지만 동독측이 제정한 내부 규정과 조치, 그리고 동독기관에 의해 이러한 규정과 조치에 관한 “편협하고 횡포스런 해석”이 잦았기 때문에 소포교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1954년 동독이 제정한 “서독과 서베블린, 외국과 우편을 이용한 선물소포교류 및 선물소화물교류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ueber den Geschenkpaket- und -paeckchenverkehr auf dem Postwege mit Westdeutschland, West Berlin und dem Ausland)에는 무게,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아무런 보상없는 압류 또는 반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4년도의 동 시행령은 1961년 10월 17일에 보완되었는데 그때부터 “각종 의약품의 반입”(제25조)은 일체 금지되었다. 1961년 11월부터 선물용 소포교류는 또 다른 추가적인 제재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일단 사용했던 의류나 신발이 든

소화물일 경우, “관할 주립보건청”의 소독확인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 지역보건소의 확인증명이면 충분했으며, 1976년 우편협정이 체결된 다음부터야 비로소 보건기관의 소독확인증명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1978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했던 의류나 신발이 유품으로서 동독으로 보내질 때에도 보건기관의 소독확인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

특히 동독으로의 서적발송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적선물은 동독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때 그때마다 “완전히 자의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세계문학작품이나 학술간행물이 들어있는 소화물조차 반송되었다. 1973년까지 동독에서는 음반의 전면 수출입금지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금지조치는 1973년 6월 14일자 동독관세법 제20차 시행규정에 의해 폐기되었다. 이때부터 “문화유산에 속하는 작품이거나 현대창작물”인 음반일 경우에는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또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우송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시점(1978년도)까지 서적과 음반의 우송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70년대초부터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개인 물자교류분야에 있어서는 약간 상황을 개선하고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이후 관세법에 대한 각종 시행규정을 통해 선물소포교류와 소화물교류의 대상품목에 대한 반입과 반출의 제한조치와 금지조치를 해제하거나 조건을 완화하였다.

소포교류의 증감추세 역시 서신교류와 비슷한 상태였다. 1965년 내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동·서독 양방향으로 발송된 소포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도표 2 참조). 이러한 감소추세는 1969년/1970년에 멈춘 후, 이때부터 쌍방 소포교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중반부터 쌍방 소포교류의 감소추세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기간 중에 방문여행교류가 매우 증가되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편을 이용하여 선물을 발송하는 대신 직접 선물을 휴대하여 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도표 2)

## 동·서독 소포교류량 (1961~1968)

단위: 백만개

| 연 도  | 소포 교류량    |           |
|------|-----------|-----------|
|      | 서독에서 동독으로 | 동독에서 서독으로 |
| 1961 | 16.9      | 9.3       |
| 1962 | 23.5      | 8.5       |
| 1963 | 31.2      | 8.0       |
| 1964 | 31.1      | 7.8       |
| 1965 | 31.7      | 7.8       |
| 1966 | 29.6      | 8.8       |
| 1967 | 28.3      | 8.5       |
| 1968 | 25.6      | 4.3       |

동독의 관세규정과 수입규정은 감독기관이 편협하게 임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내독간 우편교류에 있어서 발송된 서신과 소포 중 엄청난 수가 압류되거나 반송되거나 이래 저래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내각은 동독과 회담하면서 이 분야의 상황개선에 주력하였다. 1970년부터 일반소포의 분실율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었다 (도표 3). 그러나 이러한 분실율 감소라는 이유로 연방체신성이 분실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도표 3).

(도표 3)

| 연 도  | 등록과의 소포왕래시<br>분실 건수 (천건) | 소포분실로 인해 연방제신청이<br>지불한 금액(백만 DM) |
|------|--------------------------|----------------------------------|
| 1963 | 22.8                     | 0.29                             |
| 1964 | 25.8                     | 0.46                             |
| 1965 | 42.0                     | 0.69                             |
| 1966 | 97.2                     | 1.24                             |
| 1967 | 95.6                     | 0.99                             |
| 1968 | 55.2                     | 0.63                             |
| 1969 | 65.3                     | 0.81                             |
| 1970 | 96.0                     | 1.47                             |
| 1971 | 54.2                     | 0.98                             |
| 1972 | 30.9                     | 0.61                             |
| 1973 | 22.8                     | 0.62                             |
| 1974 | 24.4                     | 1.31                             |
| 1975 | 22.3                     | 1.36                             |
| 1976 | 18.8                     | 1.30                             |
| 1977 | 19.3                     | 1.69                             |

전체조사 기간 중 두번째로 낮은 분실율을 나타낸 1977년의 분실물 보상액은 무려 170만 DM에 달했는데, 이는 1963년 이래 지불한 최고 보상액에 해당한다. 등기우편물(소포 포함)의 분실 역시 1970년부터 감소되다가, 1977년에는 1963년 이래 최저율을 나타냈다. 일반소포우편물의 분실보상액 지불과는 반대로 1970년 이래 등기우편물(소규모 소포 포함) 분실에 대한 연간보상금 지불은 1970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되었다(도표 4).

(도표 4)

| 연 도  | 등록과 등기우편물<br>(소규모소포포함) 왕래시<br>본실 건수 (천건) | 등기우편물 (소규모소포포함)<br>본실로 인하여 연방체신청이<br>지불한 금액(백만 DM) |
|------|--|--|
| 1963 | 8838                                     | 120  |
| 1964 | 7279                                     | 102  |
| 1965 | 9954                                     | 145  |
| 1966 | 16368                                    | 221  |
| 1967 | 21470                                    | 267  |
| 1968 | 18064                                    | 245  |
| 1969 | 19623                                    | 278  |
| 1970 | 23063                                    | 616  |
| 1971 | 17738                                    | 536  |
| 1972 | 11970                                    | 333  |
| 1973 | 7426                                     | 220  |
| 1974 | 6078                                     | 224  |
| 1975 | 6324                                     | 207  |
| 1976 | 5461                                     | 183  |
| 1977 | 3938                                     | 156  |

1969년부터 등록과 동배블린으로부터 서독으로 반송되는 소포의 수는 매우 증가되었다. 1972년에 반송된 수가 최고치를 달한 후, 그 다음부터 감소하다가 1977년 들어 최저수준에 달했다. 최근 수개년간 연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편물의 본실율과 반송률이 매우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본실율은 국제적 수준으로 보나 국내적 수준으로 보나 매우 높다. 예컨대 1976년도 등록과 이루어진 우편교류 중 소포본실율은 서독내 전체 우편교류시의

본실율보다 18배나 높았으며 등기우편물의 본실율은 11배나 높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 2.3. 전화교류

1970년까지 동·서독간의 전화회선은 단지 34회선이 있었으며 모두 수동식 교환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동·서독간의 전화회선은 70년대가 지나면서 개선되어 갔다. 전화회선수는 34회선으로부터 1978년도말 941회선으로 (도표 5)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전화회선만 단순히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기술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수동식 교환방식은 점차적으로 반자동식내지 일부 자동식 교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도표 5).

<도표 5>

동·서독간 개통 전화회선 및 (방식)

단위: 선

| 연도   | 서독에서 동독     | 서베를린에서 동독   | 전체             |
|------|-------------|-------------|----------------|
| 1969 | 34(수동)      | 없음          | 34(수동)         |
| 1970 | 74(수동)      | "           | 74(수동)         |
| 1971 | 134(부분 반자동) | 150(부분 반자동) | 284(부분 반자동)    |
| 1972 | 182(부분 반자동) | 201(부분 자동)  | 383(부분 반자동)    |
| 1973 | "           | "           | "              |
| 1974 | 278(부분 자동)  | "           | 479(부분 자동·반자동) |
| 1975 | "           | 441(거의 자동)  | 719(거의 자동·반자동) |
| 1978 | 440(자동)     | 501(자동)     | 941            |

1978년말부터 서독지역에서 다이얼식으로 통화할 수 있던 동독지역은 629개소였는데, 그와 같은 지역으로는 Leipzig, Magdeburg, Neubrandenburg, Cottbus, Dresden, Frankfurt/Oder, Halle, Postdam 과 같은 지역이었다. 동독과의 전화교류는 회선이 더 많이 증가되면서 개선되어 갔다. 연방통신성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까지 총 702 회선의 다이얼식 전화회선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동독측에 의해 1952년도에 단절되었던 서베를린과 동베를린간의 전화교류가 재개되었을뿐만 아니라 크게 개선되었다.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베를린 및 동독간에는 1978년말, 총 501회선이 있었다. 현재 동서베를린간의 전화교류는 거의 자동화되었으며 서베를린으로부터 동독간의 전화교류 역시 대체적으로 자동화되었다. 서베를린에서 다이얼식으로 통화할 수 있는 동독지역은 943개소이다.

독일연방통신청은 주민들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64년 이래 동독과의 수동식 전화교류에 대하여 국내요금에 따르는 낮은 요금을 고수해왔다. 1977년말부터 가능하게 된 동독의 일부지역에 대한 직통전화요금은 다이얼식일 경우 서독지역에서 적용되는 국내요금, 즉 100 KM가 넘는 지역일 때, 통화단위 12초의 단위요금은 23 페니히 (Pf.)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야간통화나 주말통화의 경우 할인요금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1970년초부터 전화통화의 수는 매우 증가되었다 (도표 6). 1978년도의 통화량은 1300만 통화로서 조사기간 중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도표 6>

등록과의 전화 통화수 (서독에서 등록으로)

단위: 백만 통화

| 연도   | 통화수   |
|------|-------|
| 1961 | 0.31  |
| 1962 | 0.30  |
| 1963 | 0.32  |
| 1964 | 0.39  |
| 1965 | 0.38  |
| 1966 | 0.39  |
| 1967 | 0.44  |
| 1968 | 0.52  |
| 1969 | 0.49  |
| 1970 | 0.69  |
| 1971 | 1.94  |
| 1972 | 5.43  |
| 1973 | 6.26  |
| 1974 | 6.17  |
| 1975 | 10.00 |
| 1976 | 11.34 |
| 1977 | 12.79 |

2.4. 전보교류 및 텔렉스교류

1970년까지 동독과 동베를린과 교신할 수 있던 전보교류 분야는 단지 28회선의 자동화되지 않은 고정회선밖에 없었고 텔렉스교류용 회선은 단지 46회선에

불과했다. 1971년말 현재 전보교류용 회선은 86회선의 자동화 회선, 그리고 1972년말 현재 텔렉스교류용 회선은 총 126 회선이 있다.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Ⅱ)

### - 동독지역에 대한 선물용 소포발송시 유의사항 -

-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발송하는 선물용 소포에 대해서는 동독측은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규제해 왔음.
  - 그 법적인 근거는 1973. 6. 13 자 제20차 관세법 시행령 (Zwanzigste Durchfuehrungsbestimmung zum Zollgesetz der DDR) 임.
- 동독 체신청(Deutsche Post in der DDR)은 서독지역으로부터 발송된 모든 선물 소포는 동독 관세청으로 보내, 시행령에 규정된 제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케 했음.
  -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소포는 보상없이 동독 세관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되거나, 반려되었음.
  - 이러한 동독측의 규정에 어긋나 몰수된 소포에 대해서는 서독체신청도 보상을 해 주지 않았음.
  - 따라서 서독인들은 동독지역에 소포 발송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했음.

#### 1. 수취인·발송인 및 선물용도

- 내복간 왕래하는 선물은 전적으로 개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야말로 상업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 무상의 선물제공이어야 함.

-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모두 개인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위임을 받아 선물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사, 기관, 기타 법인체의 발송은 허용되지 않음.
  - 출판사가 보낸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선물로 취급되지 않음.
- 그러나 수취인의 성명기재와 관련 개인 이름만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고, 가족 단위로 “Karl Mueller 가족” (Familie Karl Mueller) 라고 명기하는 것은 허용됨.
- o 선물내용물은 개인적인 필요 (persoenlicher Bedarf)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대량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됨.
  - 선물은 수취인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사생활에 필요한 물건이어야지,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선물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 선물 내용물은 동일품목이 대량으로 발송되어 이 물건이 수취인에 의해 재판매, 교환되어 상업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음.

## 2. 무게, 포장, 주소 기입

- o 보봉 또는 봉기의 소량 소포 (Paekchen)는 2 Kg까지, 소포 (Pakete)는 20 Kg 까지 허용되나, 그 안에 편지를 동봉할 수 없음.
- o 깨지기 쉬운 물건, 또는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보봉 포장이 아닌 복수포장이 허용됨.
- o 속달 송부도 가능하며, 봉기·소포의 경우 수령증 (Rueckschein)을 동봉할 수도 있음.

- 0 내·외포장은 반드시 인쇄가 안 된 포장지로 해야 하나, 색깔있는 포장지나 선물용으로 장식하는 것은 허용됨.
- 0 모든 소량소포 또는 소포는 반드시 소포와 소화물표의 수취인 주소 위에 “선물용임, 상업용이 아님” (Geschenksendung, keine Handelsware)을 표시해야 함.
  - 소량소포 또한 “소량소포” (Paeckchen)라고 표시해야 함.
- 0 우편번호 기입은 소포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각 우체국에서 동독지역의 우편번호를 알 수 있음.
  - 우편번호 (동·서독 모두 4 자리의 우편번호를 사용하므로), 앞에 동·서독을 구별하기 위해 서독은 “D”, 동독은 “DDR”을 표시함.
    - 예: DDR - 5300 Weimar
    - D - 5300 Bonn
- 0 소포내에는 편지나 기타 인쇄물이 동봉되어서는 안 되며, 소포내용물에 관한 목록은 허용되나, 이 목록에 개인적인 의사교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3. 허용·금지된 내용물

#### 3.1. 허용품목 및 제한된 허용품목

- 0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선물이어야 하나, 자동차 부속품, 가전제품, 음향기기 중 카세트나 녹음기, 취미용 공구, 퍼스날 컴퓨터와 프로그램 (컴퓨터와 함께만) 등도 허용됨.
- 0 기호품 특히 커피, 담배, 초코렛, 독주, 포도주, 샴페인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제한없이 허용됨.

0 의약품 및 기타 건강유지와 관련된 물품은 동독이나 서독에서 처방이 의무적으로 필요없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한하여, 동독의사들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독으로 선물이 발송될 수 있음.

- 약효가 없는 붕대와 같은 접착제 (Verbandstoffe ohne arzneiliche Zusaetze)
- 일회용 반창고 (Wundeverbandflaster)
- 영아·유아 양육 물품 (Saeuglings - und Kinderpflegemittel)
- 영아·유아용 식료품 (Saeuglings - und Kindernaehrmittel)
- 다이어트 식품 (Diaetetika, Naehrpraeparate)
- 비타민·광물성 함유 건강식품 (Vitamin - und Mineralstoffpraeparate)
- 약학적인 물질이 함유된 포도주  
(Weine mit arzneilich wirksamen Bestandteil)
- 약초로 만든 차 (Arzneipflanzen und Arzneipflanzenmischung)
- 식물성 즙 (Pflanzensaefte)
- 약초로 제조한 약 (Zubereitung auf der Grundlage von Inhaltstoffen von Arzneipflanzen)
- 의료용 목욕기구 및 비누 (Medizinische Bander - Seifen)
- 의치 보호기구 (Haft - und Pflegemittel fuer Zahnprothesen)
- 신체 보호기구 (Koerperpflegemittel zur aeussren Anwendung)
- 소염제 (Desinfektionsmittel)
- 의족·의수 등 의료 보조기구 (Homoeopathische Erzeugnisse)
- 의료기기 중 혈압측정기, 제온기, 모토가 달리지 않은 휠제어, 보청기, 흡입기, 마사지 기기, 인공자외선기, 안경테 등임.

0 귀금속은 한 번에 순금 10g, 치아용 금 12g 까지 허용되며, 이보다 더 많이 보내고자 할 때는 특별한 허가를 요함.

- 귀금속 가공품은 약혼·결혼반지, 시계, 팔찌, 목걸이 등이  
개인 선물용으로 허용됨.
- 이러한 귀금속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내용물 목록을 첨부해야 본실의  
우려가 없고, 또한 약혼·결혼반지의 경우는 이러한 선물을 보내는  
이유를 명시해야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음.
- o 어린이용의 장난감의 경우 전쟁놀이품과 같은 “군사적인 색채를 띤”  
장난감과 Monopoly - Spiel (주사위를 던져서 5대양 6대주를 점령하는  
게임)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띤” 장난감은 일체 반입이 금지됨.
- o 음반, 카세트 테이프, 마그네트 테이프 및 자료입력용 디스크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나,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것들은  
금지됨.
- o 문학서적, 인쇄물, 그림, 화보 등은 “평화지향적이 아니고, 파시즘적이고,  
근국주의적인 보복심에 가득 차 있고, 외설적이고, 동독과 동독주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반입이 불허되며,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때만 아래와 같은 종류들은 서독에서 발송이 가능함.
  - 스포츠, 모드, 취미, 여가생활, 건강, 자연과학, 과학기술, 정보,  
건축, 의학, 노인복지 분야의 정기간행물
  - 주소록, 달력, 연감, 통계집, 우표 및 동전수집 북북 등임.
- o 화초의 구근, 씨앗 등은 식물검역 증명을 첨부하여 발송해야 함.
  - 이러한 식물검역증명은 서독의 식물검역소나 주농림수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씨감자와 식물들은 포츠담소재 동독 중앙식물검역소 (Zentrale Pflanzenschutzamt Potsdam)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취인이 이곳에서 검역이 끝나야 찾아올 수 있음.
  - 식용감자의 경우는 동봉된 서독의 식물검역증만으로도 통과됨.

### 3.2. 완전 금지 품목

- o 현재 통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불수단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폐, 동전, 저축통장과 유가증권
- o 회사나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선전·판촉물 예블들어 카탈로그, 광고물, 붙편, 맥주잔, 자 등임.
- o 지도, 지구본, 필름, 사진원판, 인화지
- o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음반, 녹음용 카세트, 마그네틱 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등임.
- o 제반 개인 신분증명, 신분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 양식
- o 방송 수신기 (무선으로 조종되는 장난감 자동차 포함), TV와 그 부속품, 비디오와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부속품, 이러한 물품 사용 설명서 및 조립 설명서
- o 물품 제조기, 복제기 (복사기 포함)
- o 상속 유품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가능)
- o 우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가능)

- o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금지된 품목 (인화성 물질, 폭발물, 총기류, 독극물, 향신성 제품, 야생 동물 및 식물)
- o 기타 우편교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

#### 4. 서독 연방체신청 (Deutsche Bundespost)의 책임·변상

- o 서독 연방체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변상함.
  - 등기 우편 및 등기 소량소포의 분실시, 책임을 지고 변상하며, 그 발송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건 당 40 DM을 변상함.
    - o 일반적으로 보낸 우편 및 소량소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일반 또는 등기로 보낸 소포는 분실시 그리고 파손시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변상을 하되, 매건 당 500 DM을 초과할 수 없음.
    - o 소포에 가격표를 동봉한 경우는 직접 피해액에 대해서 변상을 하되, 그 표시된 가격까지만 변상함.
- o 동독이 제정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보상없이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연방 체신청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Ⅲ)

1. 양독간 우편·통신분야에서 협상을 통한 합의
  - 0 동·서독간 우편·통신분야 교류시 협상에 따른 주요 합의사항
    - 1970. 4. 29 합의
      - 기존 우편·통신교류 보장
      - 1967년부터 소급하여 우편일괄금 지급 (연 3,000만 DM 지급)
      - 전신·텔레кс 회선 개통
    - 1971. 9. 30 합의
      - 1966년까지의 동독측에 대한 보상액으로 2,500만 DM 결정
      - 우편배달기간, 소포 반입규정적용 간소화
      - 전화·전신·텔레кс 회선 증설, 기기의 점진적인 자동화, 칼라 TV용 지향성 방송망 구축
    - 1976. 3. 30 합의
      - 동독의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화연맹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독간 특수규정 합의
      - 동독의 국제기구 가입에도 불구하고, 양독간 우편·통신교류의 특수관계 유지 합의 (외국과의 교류가 아님, 요금청산시 국내요금 적용, 세관신고서 불사용(不使用) 등)
      - 26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1개의 정부간 협정, 3개의 행정협정 체결
      - 서독과 베를린간 봉과 우편·통신교류 개선

\* 과거 내독관계 통신교류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를 주독대사관이 정리·요약한 보고서임.

- 서독 국내 법령 개정
  - 동독과의 우편·통신교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ueber den Post- und Fernmeldeverkehr mit der deutschen Post der DDR, BGBl II 1976 S.633 = AmtsblVfg 445 / 1976)
  - 동독과의 우편·통신교류시의 기본요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ueber die Gebuehren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mit der Deutschen Post der DDR, BGBl I 1976 S 1400 = AmtsblVfg 445/ 1976, 1988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우편분야는 AmtsblVfg 967/ 1981, 전화·전보분야는 205/1988 이 있음)

- 1977. 10. 19 합의

- 우편일괄금을 8,500만 DM으로 증액 (1977 - 1982)
- 전화회선 증설, 자동화

- 1983. 11. 15 합의

- 우편일괄금 2억 DM으로 증액 (1983 - 1990)
- 우편배달기간의 단축
- 전화 회선 증설

- 1985. 3. 15 합의

- 서독 - 베를린간 디지털식 지향성 방송망 구축
- 서독 - 베를린간 광섬유 통신망 구축

- 양독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독직전까지 개선이 안 된 사항들

- 우편 배달 기간의 단축문제
- 우편 분실·반송 건수를 줄이는 문제
- 서독과 통화량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족한 전화·전신 회선수 증설 문제
- 서독과 베를린간의 통과우편·통신교류 장애문제

o 양독간 합의문 목록

- Vereinbarung vom 29.04.70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BMPT, GD POSTDIENST, im folgenden GD P genannt, GD TELEKOM, im folgenden GD T genannt)
- Vereinbarung vom 30.09.71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MPT, GD T)
- Briefwechsel vom 21.11.74 über die Koordinierung der Frequenznutzung für die Richtfunkstrecke Gartow - Berlin (West) (BMPT, GD T)
- Abkommen vom 30.03.76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BMPT, GD P, GD T)
- Verwaltungsabkommen vom 30.03.76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Postverkehr (BMPT, GD P)
- Verwaltungsabkommen vom 30.03.76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ernmeldeverkehr (BMPT, GD T)
- Verwaltungsabkommen vom 30.03.76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Abrechnung der Leistungen im Post- und Fernmeldetransit (BMPT, GD P, GD T)
- Briefwechsel vom 30.03.76 über die Beförderungsmöglichkeiten für Postsendungen zwischen dem Bundesgebiet und Berlin (West) im Transit durch die DDR (BMPT, GD P)
- Briefwechsel vom 30.03.76 betr. Transportpapier für die Beförderung von Postsendungen auf dem Straßenweg zwischen dem Bundesgebiet und Berlin (West) im Transit durch die DDR (BMPT, GD P)
- Briefwechsel vom 30.06.82 über die Änderung des Verwaltungsabkommens über die Abrechnung der Leistungen im Post- und Fernmeldetransit (Erhöhung der Pauschale für den Posttransit nach Berlin (West) auf 11,2 Mio. DM) (BMPT, GD P)

- Briefwechsel vom 15.11.83 über die Neufestsetzung der Pauschale für den gegenseitigen Post- und Fernmeldeverkehr auf 200 Mio. DM und Verbesserungen im gegenseitigen Post- und Fernmeldeverkehr (BMPT, GD P, GD T)
- Vereinbarung vom 15.03.85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MPT, GD T)
- Vereinbarung vom 15.03.85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Richtfunkverbindung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MPT, GD T)
- Briefwechsel vom 11.09.86 über die Frequenzkoordinierung im Landfunkdienst (440-470 MHz) (BMPT, GD T)
- Briefwechsel vom 31.03.87 über die Koordinierung von Richtfunk- und Weltraumfunkverbindungen (10,7 - 11,7 GHz) (BMPT, GD T)
- Briefwechsel vom 01.04.87 über Frequenzkoordinierung im Landfunkdienst (450-465 MHz) (BMPT, GD T)
- Briefwechsel vom 06.07.89 über Frequenzkoordinierung im Landfunkdienst (68,0-87,5 MHz) (BMPT, GD T)
- Briefwechsel vom 06.07.89 über UKW-Rundfunk und Fernsehen (BMPT, GD T)

## 2. 양독간 합의에 기초한 구체적인 우편분야 교류

### 0 내독간 우편교류의 구체적인 내용

- 우편물 송달 (편지, 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소량 소포)
- 유가물 동봉 편지 (Wertbrief)
- 보봉 소포 및 고가품 소포
- 등기 우편 (편지, 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소량소포, 보봉소포, 고가품소포)
- 수령증 (Rueckschein) 송부 (등기 우편물)
- 수취인이 꼭 수령하도록 보내는 등기 우편, 유가물 동봉 편지 (Eigenhaendig)
- 부피가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화물 (Sperrgut)

### 0 내독간에 실현이 되지 못했던 우편분야 교류

- 항공우편
- 우편을 통한 신문배달 (Postzeitungsdienst)
- 우편환 (Postanweisungsdienst)

### 0 우편배달기간 단축

- 동·서독 양측은 배달기간을 편지와 엽서의 경우 4일 (각각 동·서독 우체국에서 처리기간을 2일씩으로 계산함), 소량소포와 소포의 경우 6일 (동·서독 각 3일씩)로 합의했으나, 서독측 봉계에 의하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우송되는 우편물의 약 80%만이 이러한 기간 내에 전달이 되었음.
-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우송되는 우편물의 경우는 동독측이 정확한 봉계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독으로 오는 우편물의

경우보다 더 배달기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됨.

- 많은 경우 서독측 이용자들이 동독이 보낸 우편물에 대해 배달기간이 너무 길다고 이의를 빈번히 제기하였음.

0 우편물 분실 · 반송

- 서독측 발송 우편물 분실 및 반송에 관한 주요 통계

단위 : 건

| 연도   | 분 실    |        | 반 송     |
|------|--------|--------|---------|
|      | 소 포    | 등기 편지  |         |
| 1968 | 55 208 | 18 064 | 221 835 |
| 1969 | 65 320 | 19 623 | 259 014 |
| 1970 | 96 074 | 23 063 | 403 971 |
| 1971 | 54 161 | 17 738 | 346 558 |
| 1972 | 30 944 | 11 970 | 428 997 |
| 1973 | 22 843 | 7 426  | 419 074 |
| 1974 | 24 412 | 6 078  | 303 110 |
| 1975 | 22 321 | 6 324  | 121 950 |
| 1976 | 18 761 | 5 461  | 71 427  |
| 1977 | 19 272 | 3 938  | 45 383  |
| 1978 | 22 841 | 5 443  | 44 282  |
| 1979 | 22 573 | 3 921  | 37 470  |
| 1980 | 27 103 | 3 994  | 40 894  |
| 1981 | 27 246 | 5 305  | 45 549  |
| 1982 | 26 914 | 5 180  | 42 869  |
| 1983 | 27 224 | 5 756  | 41 549  |
| 1984 | 22 163 | 4 804  | 80 158  |
| 1985 | 16 947 | 3 303  | 118 669 |
| 1986 | 15 891 | 3 650  | 141 077 |
| 1987 | 15 552 | 2 973  | 156 908 |
| 1988 | 14 748 | 2 697  | 272 403 |

- 우편물 분실건수는 서독측이 협상시마다 수자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여 계속 줄어 들었음.
- 그러나 연방체신청이 다른 나라와 우편교류시 발생하는 분실율에 비하면 동독과의 우편거래의 분실율이 몇배나 높았음.
- 동독의 반입규정을 위반하여 반송되는 소포의 건수는 1984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1985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였음.

(1983년: 41 549건, 1988년: 272 403건)

- 동독지역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도 연방체신청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는 바, 그 이유는 서독측은 내독간 우편교류를 외국과의 교류로 보아, 양도증명서류 (Uebergabedokumente)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 1985년 이후 반송되는 소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동독의 관세당국이 반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임.
- 이 이외에도 발송내용물 중 일부가 훼손되어 전달되는 사례가 잦았음.
- 이러한 분실, 반송, 훼손 등의 사례에 대해 서독측은 실무자 접촉에서 오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

### 3. 전화 · 전신분야 교류

- o 내독간 전화 · 전신분야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
  - 전화 운용
  - 전신 운용
  - 텔렉스 운용

- 해상용 전파 운용
-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교환용 중계
- 입차된 회선을 통한 중계

o 그러나 국제적으로 널리 공용되고 있는 Telefax나 정보자료 운용 (Datendienst) 등은 내륙간 교류대상이 아니었음.

○ 동·서독 연결 통신망

- 동·서독 연결 회선수

단위 : 회선

| 연 도  | 전화    | 전보 | 텔레кс |
|------|-------|----|------|
| 1965 | 34    | 28 | 46   |
| 1966 | 34    | 28 | 46   |
| 1967 | 34    | 28 | 46   |
| 1968 | 34    | 28 | 46   |
| 1969 | 34    | 28 | 46   |
| 1970 | 74    | 31 | 90   |
| 1971 | 284   | 86 | 102  |
| 1972 | 383   | 86 | 126  |
| 1973 | 383   | 86 | 126  |
| 1974 | 479   | 88 | 126  |
| 1975 | 719   | 88 | 126  |
| 1976 | 719   | 88 | 126  |
| 1977 | 821   | 88 | 126  |
| 1978 | 941   | 88 | 126  |
| 1979 | 1 061 | 88 | 126  |
| 1980 | 1 181 | 88 | 126  |
| 1981 | 1 301 | 88 | 126  |
| 1982 | 1 421 | 88 | 126  |
| 1983 | 1 421 | 88 | 130  |
| 1984 | 1 517 | 88 | 130  |
| 1985 | 1 517 | 88 | 130  |
| 1986 | 1 517 | 88 | 130  |
| 1987 | 1 529 | 88 | 130  |
| 1988 | 1 529 | 88 | 130  |

- 전화의 경우 1965년의 34회선에서 1988년 1 529 회선 (서독에서 동독으로 1 314 회선, 동독에서 서독으로 215 회선)으로 늘어났으나, 내독간 전화통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음.
- 전화자동화율은 198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95% 수준이었음.
- 내독간 전화통화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동독측이 회선을 증설하거나, 노후화한 기존회선을 보수하는 일을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기피하였기 때문에 통화시 정체상태가 심했음.

#### 4. 우편일괄금 (Postpauschale)

- 서독이 동독에 매년 지불했던 우편일괄금은 동독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인 선물” (ein politisches Geschenk)이 아니었음.
- 만국우편연합 (Weltpostverein) 이나 국제전화연맹 (Internationale Fernmeldeunion)의 협약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양국간 체신교류시 일방의 우편 및 통신량이 반대방향의 우편 및 통신량보다 많아 불균형적인 서비스제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호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발송국에서 발송시 우편 및 전화요금을 다 수납했기 때문에, 상호 교류량이 불균형적일 경우 수취국에서는 우편배달과 전화연결에 다른 업무를 족주하면서도 수입은 이에 훨씬 못미칠 수 있었기 때문임.
- 동·서독 간에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향하는 우편 및 통신교류량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교류의 양보다 많았기 때문에 동독측은 서독측에게 이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서독측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했음.

- 동·서독은 1976. 3. 30 정부간 우편협정을 통해 상호정산을 하되, 그 교류량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봉계를 잡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pauschaliert) 총액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음.
  - 이 우편일괄금 (Postpauschale)은 우편·전화·전신 분야 등 전 내륙간 통신분야 교류에 따른 정산액을 전부 포함하고 있음.
  - 서독에서 동독으로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는 서독지역에서 다른 외국으로 발송되는 소포량을 전체 합친 것보다 항상 두 배 정도가 많은 양이 늘 우송될 정도로 많았음.
- 우편일괄금 총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동·서독 양측이 제시하는 기준이 달랐으나 서로 타협을 통해 결정되었음.
  - 동독측은 서독과의 우편·통신 교류를 국제간의 교류로 간주하여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맹이 제시하는 국제기준요율을 근거로 산정하여 많은 액수를 요구하였음.
  - 반면 서독측은 동독과는 국제적인 청산을 하지 않고, 국내 우편 요금에 준하여 동독측이 더 많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이었음.
  - 기간별 우편일괄금 내역

| 기 간         | 우편일괄금 (매년) | 증 가     |
|-------------|------------|---------|
| 1970 - 1976 | 30 백만 DM   |         |
| 1977 - 1982 | 85 "       | + 183 % |
| 1983 - 1990 | 200 "      | + 135 % |
| 1991 -      | 300 "      | + 50 %  |

- 1991년부터 우편일괄금에 대해서 동독측은 애초 국제요율을 기준으로 요구했으나, 서독측이 협상에서 그간 우편교류량을 감안하여 기존 우편 일괄금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자고 3억 DM을 제시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이러한 우편일괄금은 동독이 다른 외국과의 우편교류시 적용했던 기준요율보다 훨씬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결코 동독에 대한 “정치적인 선물”로 간주될 수는 없었음.
- 동독은 이 우편일괄금을 우편업무(Postdienst)와 전화·전신업무(Fernmeldedienst) 담당청 간에 7:3으로 배분하였음.

내국간 우편 · 통신분야 교류시 대동독 지불내역 (1989년 기준)

| 지불내용                             | 금액(백만 DM)             | 지불시기                        | 송금구좌                                   | 협정상 근거  | 예산항목                                   | 기 타  |
|----------------------------------|-----------------------|-----------------------------|--|---|--|--|
| 1. 우편일괄금<br>(Post-pauschale)     | 200                   | 매년 7월말, 12월말에<br>각각 1/2씩 지급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Unterkonto 3 | - '70.4.29 합의<br>- '76.3.30 정부간<br>협정 제11조<br>- '83.11.15 서신<br>교환              | Titel 2261                             | - 동액수는 1990년<br>말까지 합의<br>- 동독은 우편과<br>전화·통신분야에<br>각각 7:3으로 배분 |
| 2. 제3국에<br>대한 우편·<br>전화·통신<br>중계 | 매건<br>마다<br>정산후<br>결정 | 매분기말에<br>정산처리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Konto S      | - '76.3.30 정부간<br>협정 제12조<br>- '76.3.30 정산에<br>관한 행정협정<br>제1조                   | Postdienst<br>와 Telekom<br>국제정신용<br>항목 |  |
| 3. 서독-베를린<br>간 통과우편<br>교류 지불     | 11.2                  | 매분기말 1/4씩<br>지불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Konto S      | - '76.3.30 정산에<br>관한 행정협정<br>제2조<br>- '76.3.30 정부간<br>협정 제13조<br>- '82.6.3 서신교환 | Titel 2261                             |  |

| 지불내용  | 금액(백만 DM)       | 지불시기             | 송금구좌                              | 협정상 근거   | 예산항목       | 기 타                          |
|---|-----------------|------------------|-----------------------------------|--|------------|------------------------------|
| 4. 서독-베를린<br>간통과우편<br>료류지불                              |                 |                  |                                   |  |            |                              |
| 4.1. 동축케이블<br>증계  | 매건<br>마다<br>정산후 | 매분기말에<br>정산처리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Konto S | - '76.3.30 정산에<br>관한 행정협정<br>제3조<br>- '76.3.30 정부간<br>협정 제13조<br>- '85.9.11,<br>'85.9.24 텔렉스 | Titel 2261 |                              |
| 4.2. 지향성방송<br>(Richt-<br>funk)                          | 약 0.3           | 매분기말에<br>1/4씩 지불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Konto S | - '76.3.30 정부간<br>협정 제13조<br>- '85.3.15자<br>지향성방송<br>연결에 관한<br>합의                            | Titel 2261 | 매년 지불액은<br>가격변동에 따라<br>정산확정함 |
| 4.3. 광파인도<br>케이블<br>(Licht-<br>wellen-<br>leiter)<br>설지 | 약 8.4           | 매분기말에<br>1/4씩 지불 | 연방은행에<br>개설된<br>동독국립은행<br>Konto S | - '76.3.30 정부간<br>협정 제13조<br>- '85.3.15자<br>광파인도케이블<br>설치에 관한<br>합의                          | Titel 2261 | 매년 지불액은<br>가격변동에 따라<br>정산확정함 |

## 동독이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 1. 서문

- 서독의 국영 제 1 TV, 제 2 TV 는 드레스덴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동독 전지역에서 선명하게 수신이 되었음.
  - PAL - SECAM - Decoder 를 부착할 경우 칼라화면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서독 상업 방송도 시청할 수 있었음.
  - 서독측의 라디오 방송은 정보제공 방송인 Deutschlandfunk 를 비롯하여 각 주 라디오 방송인 BR, HR, NDR, SFB 와 베를린의 RIAS 방송이 거의 수신이 되었음.
- 내독간 국경은 사람과 물자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국경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향하는 전파매체에 의해 이미 국경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투명해진 상태나 다름 없었음.
  - 이러한 전파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치·군사·경제적인 블록이 양독간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 간의 문화·언어·역사적인 공통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은 동독 TV나 라디오를 시청하기보다는 더 많이 서독 TV와 라디오의 정보나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음.

---

\* 동독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그러나 동독주민들이 서독 TV와 라디오를 광범위하게 시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으나,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자료는 많지 않음.
- 내독관계성은 1985년 “다양한 의사소통과정의 결과로서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관점”이란 연구주제로, Bamberg 대학의 Kurt Rolf Hesse (저널리즘 연구 연구원)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며, Hesse는 1985년 8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이주민 (Uebersiedler) 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2. 연구결과

### ○ 설문대상자

- 설문에 응한 205명의 이주민 중 82%는 동독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넘어 온 사람들이고, 18%는 탈출, 추방, 정치범 석방지불거래를 통해 넘어 온 사람들임.
- 설문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50세까지이며, 동독에서 전부 직장이 있었고, 대도시 출신들로 국한하였음.
- 설문대상자의 95 %가 TV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내구재 소유 수준이 동독 주민 대다수의 수준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였음.

### ○ 시청빈도

- 설문대상자 중 3/5이 선명한 화질의 서독 TV를 시청했으며, 1/5은 화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했으며, 1/5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출신이었음.

- 시청횟수

단위 : %

|             | 서 독 TV 시청 |           |
|-------------|-----------|-----------|
|             | 가능 (162명) | 불가능 (43명) |
| 거의 매일 시청    | 82        | -         |
| 자주 시청       | 12        | -         |
| 가끔 시청       | 5         | 5         |
| 거의 시청하지 않음  | 1         | 42        |
| 한번도 시청하지 않음 | -         | 53        |

o 설문대상자 중, TV 시청가능자의 92%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시청했으며, 그 방송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려 하였음.

- 가장 선호한 TV 프로그램, 시청빈도

단위 : %

| 프로그램  | 응답률 | 시청빈도 |    |     |
|---|-----|------|----|-----|
|   |     | 정기적  | 수시 | 안 봄 |
| • “Kennzeichen D”<br>(동·서독 문제 주요<br>쟁점에 관한 리포트.<br>1달에 1번 정도<br>방영) | 37  | 67   | 28 | 5   |
| • 저녁 뉴스 (제 1 TV)  | 34  | 65   | 35 | -   |
| • 저녁 뉴스 (제 2 TV)  | 21  | 46   | 43 | 11  |
| • ZDF - Magazin<br>(주요사건특집, 수시)                                     | 20  | 42   | 37 | 21  |
| • Report<br>(주요사건특집, 수시)  | 20  | 48   | 38 | 14  |
| • Monitor<br>(주요사건특집, 수시)   | 16  | 32   | 53 | 12  |
| • 스포츠 뉴스 · 특집   | 15  | 21   | 44 | 35  |
| • Dallas (미국 TV 방송극)  | 10  | 29   | 33 | 38  |
| • Kontraste<br>(문화분야 특집)  | 10  |      |    |     |
| • Denber Clan<br>(미국 TV 방송극)  | 7   | 26   | 26 | 48  |
| • Der Grosse Preis<br>(퀴즈쇼, 오락)                                     | 6   | 22   | 47 | 31  |
| • Dalli - Dalli<br>(퀴즈쇼, 오락)  | 5   | 23   | 44 | 33  |
| • Tatort (사건 추리극)   | 3   | 37   | 54 | 9   |

- 서독 TV 프로그램 중 퀴즈나 오락 그리고 미국 TV 방영국에 비해 저녁 뉴스나 정치적인 특집 보도에 대한 시청이 빈번했음.
- “Kennzeichen D” 나 “ZDF - Magazin” 등 정치적인 사건의 특집보도에 대해 동독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음.
  -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특집에 대한 시청률은 서독주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특집극         | 시 청 륜        |            |
|---------------|--------------|------------|
|               | 서독 평균 (1985) | 동독이주민 시청빈도 |
| Kennzeichen D | 12           | 67         |
| ZDF - Magazin | 12           | 42         |
| Monitor       | 26           | 32         |
| Report        | 24           | 48         |
| Panorama      | 22           | 32         |

출처 : GfK Nuernberg

- 미국 TV 시리즈극인 “Dallas”나 “Denver-Clan”에 대한 동독인들의 반응은 즐겨 시청하는 층과 전혀 시청을 하지 않는 층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음.
  - 특히 동독 여성시청자를 중심으로 한 이 방송을 즐겨 보았던 시청자들은 이국적이고 호화스런 상류층의 생활을 묘사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동독이주민 응답자 중 Denver - Clan은 48%가, Dallas는 38%가 동독의 실제생활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과장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방송에 뚜렷한 거부감을 나타냈음.

단위 : %

| "Denver - Clan" "Dallas"<br>시청빈도 | "Denver-Clan" |             | "Dallas"    |             |
|----------------------------------|---------------|-------------|-------------|-------------|
|                                  | 남자<br>(94명)   | 여자<br>(68명) | 남자<br>(94명) | 여자<br>(68명) |
| 정기적으로 봄                          | 18            | 37          | 21          | 40          |
| 수시로 봄                            | 25            | 28          | 29          | 40          |
| 안 봄                              | 57            | 35          | 50          | 20          |

o 상업광고 시청

- 동독 주민들은 서독주민들보다도 TV 선전·광고를 즐겨 보았는데, 이는 동독에서 물자부족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o 특히 서독 기업들은 이러한 TV 광고 효과에 의한 잠재적인 동독 구매자들을 확보하여, 서독 친지를 통한 소비물자공급으로 매출액이 늘어나 시장확보에 큰 효과가 있었음.
  - o "당신은 선전·광고를 즐겨 보았습니까, 아니면 즐겨 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 즐겨 본다 : 49 %
    - 가끔 본다 : 22 %
    - 즐겨 보지 않는다 : 31 % 로 나타남.

○ 서독 TV가 시청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독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 동독 TV 시청 빈도

|           | 서독 TV 시청     |             |
|-----------|--------------|-------------|
|           | 시청 가능 (162명) | 시청 불가 (43명) |
| 아주 자주, 자주 | 10           | 49          |
| 가끔        | 18           | 28          |
| 거의 안 봄    | 72           | 23          |

- 상기 통계는 서독으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통계가 전체 국민들의 동독 TV 시청 빈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 답변자들의 94%가 다른 동독주민들도 거의 자기와 같이 동독 TV를 시청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동·서독 TV의 선별 시청

- 설문 답변자들은 동독 TV를 선별적으로 시청 (일단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TV를 껐음)한 반면, 서독 TV는 계속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단위 : %

| 선별 시청       | 서독 TV<br>(162명) | 동독 TV 수신 지역 |             |
|-------------|-----------------|-------------|-------------|
|             |                 | 서독 TV 시청 가능 | 서독 TV 수신 불능 |
| 일정 프로그램만 시청 | 17              | 92          | 63          |
| 계속해서 시청     | 83              | 8           | 37          |

0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 설문답변자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동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음.

◦ 완전 불신의 0 으로부터 완전 신뢰의 10 까지 10 단계의 스칼라로 나누어 신뢰도에 대한 점수불 매길 때, 설문자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8.0, 동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5에 불과했음.

- 동독 방송에 비한 서독 방송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 스칼라    | 신뢰도            | 답변 비율 |
|--------|----------------|-------|
| 0      | 서독 방송은 불신      | 9     |
| 1 - 3  | 서독 방송을 거의 불신   | 10    |
| 4 - 7  | 서독 방송은 많이 신뢰   | 56    |
| 8 - 10 | 서독 방송을 전적으로 신뢰 | 25    |

- 서독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예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 1978년 여름 서독 제1 TV는 저녁 뉴스 시간에 90초 짜리 뉴스를 통해 동독 재부성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동독의 외환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환상점 앞에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음.

0 내독간 주민들의 상호 의사소통과정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서독방송만이 동독주민들의 생활 방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일반적으로 미디어 매체가 주민들의 심리적인 의사형성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따라서 서독 TV 방송뿐만 아니라, 동독 TV 방송 또한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TV 시청 증독현상을 유발해서 주민들의 탈정치화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독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서독의 방송 시청에 대해 처음에는 각종 대중외곽단체를 동원하여 안테나 제거작업의 실시 등을 통해 이를 방해하려 했다가, 이를 점차 묵인하고 결국에는 서독의 오락프로그램 내용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더 많은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고, 탈정치화시켜 나간데서도 미디어의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독주민들이 동독 TV보다 서독 TV를 의식적으로 선호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는 점은, 미디어가 내독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수단이 되어 분단극복과 양독주민들간의 공통적인 의사형성 통로를 형성하는데 특정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영향력은 동독주민들이 서독 TV 프로그램 중 정치적인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는 보도특집을 주로 선호했다는 점에서 입증되 됨.

##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 '93. 1. 18자 Der Spiegel 지 -

- o “동·서독인들간에 심리적으로 새로운 장벽이 구축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단위 : %

|       | 그렇다 | 아니다 |
|-------|-----|-----|
| 서독 주민 | 64  | 36  |
| 동독 주민 | 74  | 26  |

- o “독일통일은 각자에게 기쁨과 걱정 중 어느 것을 가져다 주었나 ?”

단위 : %

|       | 기    쁨 |       | 걱    정 |       |
|-------|--------|-------|--------|-------|
|       | '91 중반 | '92 말 | '91 중반 | '92 말 |
| 서독 주민 | 48     | 39    | 48     | 59    |
| 동독 주민 | 51     | 40    | 47     | 59    |

- o “왜 구동독의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중요한 이유 7가지를 열거한다면 ”

| 서 독 주 민 |               |    | 동 독 주 민 |               |    |
|---------|---------------|----|---------|---------------|----|
| 순위      | 이 유           | 비율 | 순위      | 이 유           | 비율 |
| 1       | 구동독 공산당 실정    | 63 | 1       | 서독인들이 망쳐놨음    | 63 |
| 2       | 구동독 기업상태 낙후   | 58 | 2       | 본정부의 구제노력 미흡  | 49 |
| 3       | 구제제 경영진의 온존   | 36 | 3       | 신탁청의 오류       | 47 |
| 4       | 노동자들의 능력발휘 미흡 | 34 | 4       | 구동독 공산당의 실정   | 37 |
| 5       | 서독인들이 망쳐놨음    | 24 | 5       | 구제제 경영진의 온존   | 26 |
| 6       | 신탁청의 오류       | 21 | 6       | 구동독 기업상태 낙후   | 26 |
| 7       | 본정부의 구제노력 미흡  | 15 | 7       | 노동자들의 능력발휘 미흡 | 2  |

※ 비율은 설문자 중 해당항목이라고 답변한 비율임.

- o 월평균 소득

단위 : %

| 소 득 액          | 서 독 주 민 |     | 동 독 주 민 |     |
|----------------|---------|-----|---------|-----|
|                | 답변 비율   | 누계  | 답변 비율   | 누계  |
| 1500 DM        | 8       | 8   | 22      | 22  |
| 1500 ~ 2000 DM | 9       | 17  | 14      | 36  |
| 2000 ~ 2500 DM | 10      | 27  | 19      | 55  |
| 2500 ~ 3500 DM | 27      | 54  | 30      | 85  |
| 3500 ~ 5000 DM | 26      | 80  | 13      | 98  |
| 5000 이상        | 20      | 100 | 2       | 100 |

- o “서독놈” (“Wessi”), “동독놈” (“Ossi”) 이라는 상대편지역 사람을 경멸하는 용어를 서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단위 : %

|       | 좋다 | 나쁘다 | 관심없다 |
|-------|----|-----|------|
| 서독 주민 | 7  | 43  | 50   |
| 동독 주민 | 5  | 51  | 44   |

- o 통독이후 상대편지역에 대한 방문·여행

단위 : %

|       | 전혀 방문하지 않았음 | 1~3회 방문 | 거의 정기적 방문 |
|-------|-------------|---------|-----------|
| 서독 주민 | 7           | 43      | 50        |
| 동독 주민 | 5           | 51      | 44        |

- o 구동독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동독주민만 대상)

- “40년간의 구동독 체제는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

단위 : %

| 시점    | '90 가을 | '91 중반 | '92 말 |
|-------|--------|--------|-------|
| 답변 비율 | 23     | 38     | 49    |

- “그러나 누가 책임이 있는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

단위 : %

| 시점    | '90 가을 | '91 중반 | '92 말 |
|-------|--------|--------|-------|
| 답변 비율 | 73     | 60     | 50    |

- o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장소가 주위에 충분한가”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답변한 비율

단위 : %

|     | 서 독 주 민 | 동 독 주 민 |
|-----|---------|---------|
| 비 율 | 57      | 8       |

- o 통독에 따른 서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문제

단위 : %

| 설 문   | 답 변 비 율 |      |
|---|---------|------|
|   | 서독주민    | 동독주민 |
| - “구동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이 서독의 경제와 사회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     | 54      | 21   |
| - “서독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배분할 줄 모른다”              | 43      | 68   |
| - “통독에 따라 서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큰가?”                   |         |      |
| o 매우 작다.  | 2       | 33   |
| o 보통이다.   | 35      | 49   |
| o 아주 크다.  | 62      | 16   |
| - “통독이 되지 않았다면 서독주민들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         |      |
| o 대부분의 서독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28      | 39   |
| o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다.                            | 38      | 40   |
| o 소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34      | 20   |

○ 동독주민들의 근무의욕과 생활상태

단위 : %

| 설 문   | 답 변 비 율        |                |
|---|----------------|----------------|
|   | 서독주민           | 동독주민           |
| - “많은 동독인들은 이제까지 업무처리에서 긴장감을 갖지 않았었다.”                            | 73             | 23             |
| - “많은 동독인들은 서독인들과 같은 생활수준을 바라면서도, 일은 과거 동독에서처럼 하고 있다.”            | 70             | 30             |
| - “동독주민들은 당분간 2등 국민신세를 면할 수 없다.”                                  | 33             | 77             |
| - “동독주민들은 자기연민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 62             | 25             |
| - “통일이전과 비교한 오늘날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 조건은?<br>○ 호전됐다.<br>○ 똑같다.<br>○ 나빠졌다. | 76<br>13<br>20 | 41<br>11<br>48 |

○ 경제상황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

단위 : %

|       | 좋 다    |       | 반 · 반이다 |       | 나쁘 다   |       |
|-------|--------|-------|---------|-------|--------|-------|
|       | '90 가을 | '92 말 | '90 가을  | '92 말 | '90 가을 | '92 말 |
| 서독 주민 | 77     | 31    | 21      | 55    | 2      | 14    |
| 동독 주민 | 2      | 3     | 19      | 31    | 78     | 65    |

-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

단위 : %

|       | 좋 다    |       | 반 · 반이다 |       | 나쁘 다   |       |
|-------|--------|-------|---------|-------|--------|-------|
|       | '90 가을 | '92 말 | '90 가을  | '92 말 | '90 가을 | '92 말 |
| 서독 주민 | 65     | 53    | 30      | 39    | 5      | 8     |
| 동독 주민 | 37     | 38    | 50      | 48    | 13     | 13    |

- 기존정당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       | 전적으로 신뢰한다 | 약간 신뢰한다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서독 주민 | 11        | 54      | 34          |
| 동독 주민 | 4         | 43      | 52          |
| 전 체   | 10        | 51      | 38          |

기 타

## 통독교훈과 한반도

- 한반도 : 한국,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해 / 독일의 모형에 따른  
북한의 인수는 그 댓가가 엄청나게 클 것임.

(Die Zeit, 92. 8.14일자, 27면 전면, Christian Tenbrock 기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상하게 의기소침한 기운이 한국에서 일고 있다. 누구도 한반도가 조만간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서독이 동독을 인수했던 것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룩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북한을 인수하는 것을 타라고 있지 않다. 한국개발원의 고일동 연구원은 휴전선이 당분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40년동안 한국인들은 강경한 반공주의와 통일조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교육받아 왔다. 이후 동서독간의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자 한국에서는 우선 희열감이 팽배했으나 곧 놀라움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의 댓가가 엄청나게 클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비용을 짊어질 처지입니까?"라는 반문을 하는 것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마음속으로 한반도에서 자본주의경제가 명백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 1973년까지만해도 북한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그것보다 높았으나,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연간 북한보다 다섯배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보다 58배나 많은 자동차, 6배나 많은 선박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로 총연장길이는 북한의 2배반이나 된다. 북한은 적어도 60억 달러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1991년에는 대외무역이 4분의 1이 줄어들어 35억불이 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수출입 총액이 1,460억불이나 된다.

간간히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파탄직전에 놓여 있다. 폴란드기자 크르치스토프 다레비스키(Krzysztof Darewisczi)는 "생필품 상점들은 텅텅비어 있으며; 육류, 생선, 계란 등은 진열장에 등장하지도 않는다"고 기고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구소련이 북한을 바늘방석에 얹혀놓고, 한국과 엄청난 무역거래를 함으로써 북한은 창피한 지경에 빠져 있다. 러시아가 자국의 대북한 수출품에 대해서 경화지불을 요구한 이래 러시아의 대북한 원유공급이 격감되었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전력공급은 부족하기 이룰데 없다. 휘발유와 디젤유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공장들은 그들 가동능력의 40-60%만을 작동시키고 있다.

1991년 한국으로 망명한 전북한 외교관 고영환은 북한이 5년이내에 붕괴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한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바로 이러한 공산정권의 붕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동서진영이 과거의 숨막히는 대립에서 벗어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남북한도 화해의 약수를 나누고 있다. 북한은 동독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은 급속한 통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쉽사리 입에 담겨지곤 한다. 경제기획원의 운영대 과장은 "우리는 북한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바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끔찍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실상을 감안해 볼때 한반도통일의 경우 한국은 독일통일후 서독이 동독인수를 위해 지불했던 비용의 20배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개선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한국인의 3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만도 족히 4,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이며 이같은 비용은 작년 한국의 국민총생산과 맞먹는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이다.

더구나 외부세계와 극도로 차단되어 있는 북한인들은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원 고일동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특히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의 삶에 익숙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서독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들은 사유재산이 무엇지, 자본주의가 무엇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냉전은 유럽의 중심부에서 2차세계대전전에 이미 산업화를 경험했었던 한나라를 갈라 놓았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 현대식 경제가 도입된 것은 1950~60년대였다.

한국의 정치·경제 입안자들은 북한경제가 차분한 속도로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적응하고 이로서 경직된 정치체제가 견여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따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일성이 나름대로 번성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는가? 또한 북한도 남포항의 경우와 같이 성과가 빈약하긴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외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가? 북한의 홍콩, 대만 등과의 긴밀한 관계는 남북한간의 경제접촉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만 한반도 긴장완화가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통일전략이다 - 무역을 시발로 해서 직접투자 합작 사업, 나아가 북한의 도로, 항만, 교량건설을 위한 한국의 재정지원 등 까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이다.

한국측은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값싼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원료공급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생산현장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매월 100마르크도 안되는 임금으로도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숙련 노동력을 갖고 있다.

오래전 많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무역 및 투자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했었다. 현대는 금강산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원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려하고 있다. 금성은 북한에서 장난감을 생산하려하고 대우는 의류와 직물공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물론 이같은 계획들은 항상 하나의 현안문제 때문에 수포로 될 수도 있다 : 이는 바로 핵개발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의 연구소와 지하실험실에서 자체핵무기가 개발되고 있을까?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우려가 근거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야만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경제원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가 지지부진한 것은 또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일성과 김정일이 계속 권좌에 버티게 될 것인가? 또는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으로서는 그 공백을 메워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백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 비용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대부분의 서방관측통들은 이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동유럽이나 남동유럽의 그것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그럴싸한 이유들도 있다. 한국개발원의 고일동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당신이 북한을 서구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면 그르칠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별종이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조선인의 긍지, 땀, 투지를 자신감, 자기만족과 연계시켜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폐쇄되고 일상생활이 통제를 받는 나라는 이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북한전문가는 "북한에서의 인민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할 지도 모를 북한에서의 군의 반란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의 국경이 교류는 가능한 상태로 존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의 비밀이 해결되면 한국의 자본가들은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공산북한을 돕기위해서 휴전선을 넘어 돈과 상품을 건네 주게 될 것이다.

## 핵무기는 모든 국가들을 위한 것인가?

(Der Spiegel, 93. 3.22일, 162~165면)

외부로부터 따돌림 받은 북한정권은 핵무장을 하는데 있어 장차 성가신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탈퇴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 이제 아시아지역에서 핵강대국의 핵무기 경쟁보다 훨씬 위험한 핵군비 경쟁의 불길한 징후가 일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지 채 한달도 못되어 최초의 위기를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를 건의한 국방장관에게 "우리는 북한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고립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기시대에도 있을법한 공산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이같은 손해와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 북한정부는 지지난주 말 유엔안보리에 1985년 가입했던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이자 장수 독재자 김일성의후계자인 소위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은 공산당기관지 노동신문에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다음과 같이

늘어놓았다 : "우리는 적의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달콤한 사탕 발림식 괴임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전기불이 나갔고,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1백만이 넘는 군대에 동원령이 발해졌다. 국영방송은 즉시 "준전시상태"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제네바 소재 유엔주재 북한대사인 이철은 지난주초 공개적으로 "전쟁은 한시라도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이 이렇게 기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동기는 한·미 군사합동 훈련이었다. 한국과 그 방위력인 미국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톱스피리트' 훈련을 지난해 한차례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12만명의 병력을 동원, 재개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북한의 탈퇴선언은 북한이 조약의 규정을 어겨가며 비밀리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과거 유엔 핵무기사찰팀의 한 멤버였던 데이비드 케이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를 기피하려는 지금까지의 시도중 가장 노골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비엔나 소재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정부에 대해 최후 통첩을 발했다. 소위 북한내 민간용 핵시설에 대한 지난해의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핵기술자들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제조했다는 점이 최근 증명

되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3월 25일까지 영변 원자력센타지역에 위치한 두곳의 미개방 시설에 대해 사찰팀의 접근을 요구했다.

비엔나 소재 북한외교관들에게 문제시설에 대한 위성촬영 사진자료를 제시했을 때 "그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표정이었다고 한 미국외교관은 말한다 : "그들에게는 이 계획에 투입한 대규모의 투자가 헛되지 않아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 시간만이 문제였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핵무기 제조 실상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알고 충격을 받았던 세계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번째로 핵무기 확산 - 이는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의 악몽임 - 이 조약을 통해서도 저지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거대한 핵병기고인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은 40년 이상을 전인류를 인질로 삼아 놓고 핵무기의 투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체제는 미·소 두 경쟁국에서 보호를 의뢰한 국가들로 하여금 경직된 불력체제를 수용하도록 했고 독자노선을 걸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의 핵전문가인 케이(Kay)는 "아시아에서 동서진영간의 핵 위협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뻐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케이는 만약 북한이 조약탈퇴를 통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 생산작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몇달이 못되어" 아시아에서는 핵군비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하에 있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선진공업국들이 핵군비 경쟁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비밀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일본서부에 까지 미치는 새로운 미사일 제조를 거의 완성했다고 한다. 북한의 조약탈퇴선언이 있는 후에 한 일본 자위대 간부는 "이는 벌써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핵통제연구소의 폴 레벤탈(Paul Leventhal)소장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탈퇴 선언을 "쉽게 하나의 선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규정위반 사례가 빈번했던 핵확산 금지조약은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우크라이나공화국 국회 외교분과위원장은 자국은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위험천만한 국가들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핵위협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모든 국가들이 핵폭탄을 보유하는 사태에 이를 것인가?

예측 가능한 핵강국간의 협정이 공포의 핵무기 확산을 저지할 수 있으리라는 오랫동안 염원되어온 환상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이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1991년 10월 아주 공개적으로 자국이 핵강국이 된 것을 자축했고, 핵탄두 적재 체제의 개발을 예고했다.

1974년 처음으로 지하 원폭실험을 실시했던 파키스탄의 속적 인도는 현재 수소폭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신임 CIA국장 울시(James Woolsey)는 "인도와파키스탄간의 군비경쟁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투입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200개가 넘는 핵탄두(미국 언론인 허쉬에 의하면 심지어 300개나 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현재 원자탄 하나 정도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전임 CIA 게이츠국장은 2주전 이란의 핵무기 야욕에 대해 경고했었다. "금세기 말까지는" 이란도 자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다. 그는 이란정부가 현재와 같이 핵무기 부품 및 핵분열재를 미친듯이 계속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구입해나간다면 핵무기 제조시기는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 이미 핵무기 클럽에 속하려고 시도해 왔던 다른 국가들 - 예를 들면 시리아나 알제리 - 은 소련붕괴후 비밀통로를 통해 그 야욕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동유럽국가들로부터 나온 방사능 물질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100여건이나 적발되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핵무기 제조가능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

북한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이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기 8년전인 1977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의 대열에 끼일 새로운 멤버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 즉 북한이 "1990년 이전에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러시아인들도 오래전부터 동맹국인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 러시아 조사팀은 70년대에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 이렇게 보고했다 : "북한인들을 믿을 수 없다." 소련 외무성 전문가들은 1990년 구매국들의 우라늄 주문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정부가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우라늄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해 KGB도 당시 핵무기산업을 관장하던 중소기계 공작성에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를 요한다는 비밀경고를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GB의 후신인 러시아 비밀정보국도 북한이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작동이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전임 미국 국무장관 이글버거도 그와 같은 결론에 동감하고 있다. 그는 2주전 미의회에서 자신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신임 CIA 울시국장도 "북한이 적어도 한개의

핵무기를 제조할만한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제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으로 미움을 받는 새로운 경쟁국의 "도전" (일본 외무장관 와타나베의 표현)에 대해 전통적인 핵무기 클럽 국가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오지 못했다. UN 안보리가 지난해에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이 바로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정권의 거의 유일한 대화상대인 중국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성급한 단안을 내리는 것을 막았다.

현재 오히려 국내정치의 개혁과제에 몰두하고 싶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김일성은 조약탈퇴가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3개월이 경과하기전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클린턴의 몇몇 외교정책 브레인들은 북한의 조약탈퇴선언이 주로 북한주민을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은 가능한한 북한에 대해 탈퇴선언 철회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직후인 지난주 추가로 한국에 파견된 미군 병력이 다시 귀환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정권과의 유일한 직접 채널을 가동시켰는데, 북경주재 양국 대사관이 그것이다.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미대사관 정부담당관이 그곳에서 북한측에게 미국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은 많은 타국정부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잠정적인 협상결과는 북한인들이 아직 체면을 손상받지 않고 조약탈퇴선언을 철회할 기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조약을 위반한 북한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사찰을 받겠다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핵전문가인 레벤텔의 견해이다. 북한이 조약규정에 따라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북한이 도대체 핵확산 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되었다고 하면서, 레벤텔은 북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직껏 약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는 블릭스 사무총장에게 북한과의 사찰교섭을 계속 할 것을 위임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후 통첩기한 6일후인 3월 31일에야 사무총장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 바지끝 깃에서 우라늄

- 러시아 사찰단들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

(Der Spiegel, 93. 3.22일, 164면)

도나트 페트루닌(Donat Petrunin, 60세)은 오늘도 당시의 불쾌한 기분을 기억하고 있다. 비엔나에서 평양까지의 몇시간 비행기여행이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또한 북한인들은 그가 안내자 없이 호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1978년 독재자 김일성 왕국으로서는 벌써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달가운 손님이 아니었다. 영변소재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의 사찰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비록 북한이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제3세계에 인도된 연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통제를 해야만 했기에 1985년 이전에 북한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

사찰팀은 소련에 의해서 인도된 농축 우라늄이 실제 연소되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페트루닌과 이태리 동료는 원자로 홀을 사찰하고 수조에 저장된 연료를 일견한 바로 다음날 유럽으로 귀환했다.

꼼꼼한 성격의 핵과학자 페트루닌이 비엔나의 거처에서 여행용 가방을 풀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구두와 바지끝 깃에 방사능 폐기물 찌꺼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트루닌은 사찰여행후 방사능 감염 공포 때문에 심지어 서류가방까지 세척했고, 그의 친구에게 찌꺼기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 이 찌꺼기는 우라늄 233을 만들어 낼때 생기는 전형적인 폐기물이었다.

위험한 감마방사선인 우라늄 233은 플루토늄 239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오래전 부터 국제원자력기구는 핵개발 도상국들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재료를 얻기 위해서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었다. 고도 기술국가들은 기술자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페트루닌은 또다른 이유로 북한인들을 불신했다 :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에서 10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의 핵연료를 1년 이내에 다 소모해 버렸다는 점이 이상했다. 연구용 원자로는 한번 실험한후 다음 실험을 위해서 장시간 정비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줄곧 원자로를 작동시켰음에 틀림없다고 페트루닌은 그의 상관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연료가 짧은 시간내에 연소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연료들이 은밀히 우라늄 233이나 플루토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페트루닌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심을 사찰 공식보고서에 언급할 수 없었다(사찰보고서 사본 한통은 북한정부에게 전달).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국제

원자력기구가 "스파이기구"로 행동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페트루닌은 그의 이테리 동료가 언제나 그에게 '도나트, 왜 너는 해야할 일보다 많은 일을 하느냐?'고 말했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페트루닌이 발견한 사실들은 은밀하게 분석되었다. 핵 과학자들은 매년 어느 국가들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지 분석했다. 어느날 알렉산더 루만체프(53세) 책상위에 이 모든 자료들이 놓여지게 되었다.

핵물리학자 루만체프는 유명한 모스크바 쿠르차토프 연구소 출신이다. 쿠르차토프 연구소는 러시아 A형 핵폭탄을 개발한 이고르 쿠르차토프의 이름을 따라 만든 것이다. 루만체프는 몇번 계산을 해본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우라늄 233 흔적과 원자로의 과도사용으로 미루어 볼때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물질을 생산했음에 틀림없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에서 매년 0.5~2 kg의 우라늄 233이나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루만체프는 북한인들이 4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전력용량을 비밀리에 높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이는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 러시아인들은 추가적인 냉각기술로 동일한 형태의 원자로의 용량을 10 메가와트까지 올려 놓았었다.

오늘날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루만체프는 "북한인들의 원자로 사용방식으로 미루어 볼때 다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인 데이터들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의 연구소 동료들도 누구나 그가 내린 결론이 옳다고 동의했다. 루만체프는 "이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작동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가?

### 1. 리 트 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연대협약, 화학의약품 회사 회히스트(Hoechst)사의 사고 등 독일 국내문제 및 러시아 예친 행정부의 위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북한의 탈퇴선언이 국제적인 안보에 있어 어떠한 중대한 분기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히 와닿고 있지 않다.

북한은 국제협력·군비통제·군비공개·국제연합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서 국제안정에도달하려는 희망에 찬 시도들을 단번에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시한폭탄의 초침이 켜각거리고 있다 : 향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불길한 상황의 도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될는지 결판이 나게 된다.

### 2. 서 론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 미국은 북한이 동 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북한 영변지역의 연구용 원자로 건조사실을 발견했었고, 구소련측에게 이같은 새로운 사태발전이 핵무기 확산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설득했었다.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의 가입은 구소련이 북한과의 장기 핵협력협정 체결 및 함경도지방에 4기의 전력용 원자로를 가진 민간용 핵단지 건설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 북한공산왕조의 핵무장 배경, 현황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 헤씨쉐재단 보고서임.

북한정부는 핵시설 사찰의 근간이 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체결을 1992년까지 미루어 왔다. 북한은 우선 18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번씩이나 넘겼다 (첫번째 협정의 초안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

1989년 북한은 갑자기 핵안전 협정서명의 전제조건을 들고 나왔다. 즉,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요구였다. 만일 미국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면 북한은 1990년 2월부터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1990년 북한은 마침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정협정의 명문화 (핵확산 금지조약의 비핵무기 보유국들을 위한 표준협정을 약간 수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말 까지 미국 핵무기의 철수와 핵안전협정 서명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같이 조건을 달아 연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구소련,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협력하에 외교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같은 성화를 통해 북한측에게 핵확산 금지조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만 했다. 한편 북한은 더이상 거부할 경우 또 다른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북한이 핵재처리를 포기하고 핵재처리 시설 건설을 하지 않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예정된 대규모 경제원조를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러시아도 과거 동맹국인 북한과의 핵에 관한 협력을 동결시켰다.

1991년 10월 미국은 결정적인 양보를 했다. 즉, 미국은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150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다른 전제조건들을 새로이 고안해 냈다 : 미국이 실제 핵무기를 철수했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만 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인 보호를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한국항구 이용권 및 영공통과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비록 조약상 의무는 없지만 북한측이 한국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한국내 모든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측에게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삼 강조하고 북한측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같은 한국측의 양보행위들이 한반도의 분위기를 개선시켜 놓았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는 1992년 12월 12일 불가침 협정의 체결로 명문화 되었고,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38년만에 전쟁상태가 종식 되었다. 아울러 남북한 양측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뢰를 조성하는 조치들에도 합의했다. 1991년 12월 18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철수되었다고 선언했다.

1991년 12월말 북한은 드디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체결은 물론 한국과의

핵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상호 상대측 영토사찰권, 심지어 핵농축 및 핵재처리의 포기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물론 상호 사찰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 협정은 1992년 1월 30일 서명되었으며, 동년 4월에 비준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북한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또 하나의 매력적인 보너스를 주었다 : 즉,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의무를 따른다면 1992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 선언에 규정된 기구인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한국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위임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한국측은 상대방 시설접근에 있어 상호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내 모든 미군 시설 사찰의 댓가로 북한내 한개의 시설만을 개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1992년 2월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들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는 한국에서 미군에 의한 위협이 없어져야 한다 - 미군 철수 - 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또 소위 미국의 핵잠수함이 기항한다는 한국내 항구시설을 제거하라는 전제조건을 들고 나왔다. 1992년 여름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사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도망치듯 돌아서 버렸다.

### 3. 북한의 공식적인 핵개발 계획

북한이 1992년 5월 4일 의무규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차 동기구에 의해서 사찰을 받게 될 핵시설 및 분열재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개시목록 - 북한측은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 나열되어 있다.

- 우라늄 기술연구 및 개발, 플루토늄 기술연구 및 개발, 연수목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영변에 건설중인 "방사화학 실험실". 그간 이 실험실은 핵 재처리 시설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 평산, 병산, 함흥에 또 다른 연구시설들
- 영변에 연소봉 공장 및 저장소
- 영변 핵물리학 연구소내에 소련형의 4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 및 평양 김일성 대학내에 저온·저압 연구용 원자로. 김일성대학내 연구용 원자로는 당초부터 사찰을 받고 있음.
- 영변에 4 메가와트급(전기) 원자로가 1987년부터 작동중. 여러번 작동이 중단된 적이 있음. 이는 북한이 자력으로 건조한 것으로 아직껏 안전에 관한 사찰을 받지 않음.

- 영변에 50 메가와트급, 평안도 북부에 200 메가와트급 전력용 원자로 자력으로 건설중.
- 두곳의 우라늄 광산 (순천에 소형광산, 평산에 1990년 부터 작업중인 비교적 대형 광산)
- 박천, 평산, 영변 등 세곳에 각기 1기씩의 우라늄 가공 시설

이로써 북한이 몇년전부터 비록 소규모 실험규모라고 하지만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재처리까지 핵연료 사이클의 전 과정을 자주화 했음에 틀림없다.

북한의 모든 원자로는 가스냉각식이며 흑연감속형이다. 이들 원자로들은 흔한 중수 원자로보다 기술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은 중수원자로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약점은 특히 안정성이 적다는 것과 경제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형태의 원자로는 농축 우라늄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북한은 이점을 강조한다 ; 북한인은 외국의 농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5 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가 완전 가동되고, 특히 연료가 자주 교체되면 매년 4~7 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형태의 핵탄두 1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이다. 이 원자로는 1987년 이래 여러번 작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북한인들은 연료가 아직껏 교체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북한측 주장이 맞다면 은밀히 플루토늄이 제조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93년 4월 원자로의 핵심부분이 교체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찰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찰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이 원자로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에 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며, 북한측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제출한 최초의 개시목록이 사실인지에 관한 의문을 해결해 줄 것이다. 아울러 플루토늄의 양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1995년 완성될 50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매년 40~60 kg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0 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매년 160~20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화학 실험실"은 완전히 완성되게 되면 매년 200 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사실상 핵재처리 시설인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바로 1990년대말 벌어지게 된다. 북한측이 내세우는 플루토늄 추출의 공식적인 이유는 장차 고속증폭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인들은 통상적인 전력용 원자로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아울러 비경제적으로 알려진 증폭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핵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또 하나의 공식 이유는 값비싼 저장 조건을 필요로 하는 흑연감속형·가스냉각형 원자로의 불리한 연소저장 특성을 즉시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설이 겨우 80%가 완성되었고 기술 가동능력의 40%만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이용되었다 한다. 이는 이 시설 단지의 어디인가 플루토늄 추출은 위한 몇개의 뜨거운 밀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인도받은 뜨거운 밀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냈었다. 그간 오랫동안 더 이상의 실험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플루토늄의 추출에도 규모의 경제원칙이 적용된다고 할진대는, 보통 최초의 실험들이 행해진 시점과 산업시설들이 건설되는 시점 사이에는 실험실 규모의 중간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북한에서만 이같은 중간단계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북한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더 이상의 플루토늄이 있을 많은 곳에 더 이상의 플루토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4.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그간 북한내 핵시설에 대한 6차례의 사찰이 실시되었다. 첫번째 사찰은 1992년 6월 초였고, 마지막 사찰은 1993년 2월이었다. 최초의 사찰 결과는 북한측이 공식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사실과 일치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사람들은 북한이 신고한 목록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된 플루토늄 샘플 분석결과가 1992년말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1989, 1990, 1991년 3년간 핵재료를 재처리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루토늄 샘플의 년대를 상세히 표시해 주는 아메리시움-241 함유량이 분석에 이용

되었음). 이는 1990년 단 한번 플로토늄을 분리해 냈다는 북한측의 공식 확인과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재처리를 했다는 신고되지 않은 또 다른 의혹은 고방사능 폐기물 샘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에 의해서 굳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내 알려지지 않은 어디엔가 고방사능 핵재처리 폐기물이 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중형 크기의 신고되지 않은 시험용 핵재처리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인데, 이는 물론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영변지역에서 핵기재들과 재료들이 소거된 것이 위성관측에 의해서 포착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시한 위성사진에 의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불충분한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굳어졌다. 위성사진은 영변 핵단지내 신고되지 않은 2개의 지점에 핵재처리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6차 정기사찰시 위 두개의 의심이 가는 지점에 들어가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현되었으면 방사능 폐기물 분석에 의해서 핵재처리를 위해 원자로를 작동시킨 기간, 시점, 횟수 등에 관한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요구를 1993년 2월 8일 거부했다 : 북한의 주장인즉, 이 시설들은 평범한 군용시설이라는

것이였다(북한은 민간용 핵연구단지에 이러한 시설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는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음).

이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측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단들은 특별사찰에 의해서 신고되지 않은 시설들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북한은 이같은 요구도 거부한채, 자신의 핵관련 장관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하여 대화를 모색했다. 북한의 핵장관은 이미 1975년에 추출된 실험용 플루토늄이 재료에 의해서 오염됨으로서 이같은 모순점이 나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로써 북한은 과거의 진술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실험용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했다(핵재처리 기술 경험을 이같이 오랜기간 감추려고 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이같은 해명이 국제원자력기구를 납득시킬 수 없었으나, 북한측은 계속 특별사찰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93년 2월 25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북한내 문제의 지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는 통첩을 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이 동 이사국들에게 제시한 위성사진들은 대부분의 이사국들에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에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행위"를 구실로 삼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 5.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미국 비밀정보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적어도 한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북한내 5 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가 큰 기술적인 결함으로 계속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자주 연료교체를 해주었다면 1987년 이래 한개 혹은 몇개의 핵탄두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이 생산되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이는 비밀 핵재처리 활동이 소규모 핵확산 실험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밀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고유의 핵무기 제조의 열쇠가 되는 기술, 예컨대 핵무기 점화를 위한 기폭장치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보 소식통은 다수의 재래식 소형 폭파의 흔적을 암시해 주는 위성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비밀 군사 핵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핵무기 재료가 통상적인 (분열되지 않는) 우라늄에 의해서 대체되므로, 완전한 핵실험이 없이도 점화기술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다. 이같은 재래식 폭파분석은 점화기술이 제기능을 할 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위성관측은 이같은 실험들이 실시되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북한은 이락과 마찬가지로 군사목적에 위한 분열재 생산 이외에 "무기화", 즉 핵

폭발물 제조를 위한 기술적인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스커트 C형 또는 PIP)에 적재할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모든 정황은 북한이 조약규정을 위반해 가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 기술적인 증거들, 군사목적에 적합한 원자로 형태 채택, 큰 기술을 요하는 핵재처리로의 사전 진입, 수년간 지연전술, 상호사찰 봉쇄, 플루토늄 추출의 오랜 경험에 대한 침묵, 특별사찰의 거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이유없는 탈퇴 등이 그것이다.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그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

## 6. 국제법적인 검토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는 조약위반이 아니다. 핵안전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사찰은 해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국은 사찰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군사목적에 위해 분열재를 얻어내는 것, 즉 조약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고 처리해 버릴 수 있으며, 사무국의 선언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북한측에게 마음을 고쳐먹도록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이사회가 현재의 증거들을 근거로 북한측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즉 북한이 플루토늄 목록을 거짓으로 신고했으므로 핵확산 금지조약 제3조 2항의 규정 ("모든 재료들은 안전장치하에 있어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이 북한을 너무 강경하게 다루는데 대해서 아직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탈퇴의사를 표명했으나 핵확산 금지조약의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조약당사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탈퇴선언이 효력을 갖기 90일전에 탈퇴선언이나 탈퇴이유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조약당사국들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북한의 탈퇴사실이 안전보장이사회에는 통보되었으나 모든 조약 당사자국들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90일이라는 기한은 아직 실제로 경과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컨대 연구용 원자로 방전에 즈음하여 4월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이는 "특별사찰"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효력범위하에 있는 신고된 시설에 대한 정기사찰이므로,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따라 동 사찰을 수용해야만 한다. 만약 북한이 이 사찰을 허용치 않을 경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조약 침해가 된다.

조약침해는 여타 조약당사국들에게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타 조약 당사국들은 북한의 조약위반으로 그들의 안보가 손상받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조약당사국들은 비교형평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여타 조약당사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의 이웃국가들은 조약위반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체방위를 해야 할 정도로 자신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이 사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상테이블에 놓여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a)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면 그 이유 때문에

b) 또한 북한이 탈퇴와 그 이유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루어야만 한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의 의무는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출된 이유의 신빙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북한이 내세운 조약탈퇴 이유들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부될 것이 틀림없다. "팀스피리트" 훈련이란 결코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팀스피리트" 훈련의 기간을 1993년 초로 잡은 것이 서툰 결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결코 북한의 조약탈퇴 주장을 정당화 시켜주지 못한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군이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항공모함과 구축함내의 해군 전술 핵무기를 제거한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은

결코 핵과 관련된 성격을 갖지 않는다. 북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내세운 이유는 순전히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c)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1월 31일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고 선언하고 조약침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의 증거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제연합은 북한의 조약탈퇴를 다루어야만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경우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사안을 무시할 수 있고, 북한의 조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의제로 상정할 수도 있으며, 조약위반을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사안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7. 가능한 제재방안

향후 90일간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집중적인 외교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것이다. 핵심적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같은 외교적 영향력은 그래도 믿을건 너밖에 없다는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제재조치는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하는가에 달려 있다 ; 북한인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중대한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국,

일본, 미국의 최초의 반응으로 볼때 이들 국가들은 우선 외교적인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바로 코앞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국은 이미 북한과의 경제적인 접촉을 제한했다.

90일이라는 기한이 성과없이 끝나게 되면 세계공동체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조치의 책임있는 당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과의 모든 경제접촉을 완전히 단절하는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흔히 제재조치 불이행자에게도 최소한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북한이 비교적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같은 경제제재조치로 북한의 위태로운 경제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이미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었는지 모르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과거의 희망보다는 핵무기를 가져야겠다는 소망을 더욱 높이 평가했는지 모른다.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로는 봉쇄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출발하는 선박과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기도 나포된다. 이로써 북한의 무기거래는 제지될 수 있으며,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기구로서는 환영할 만한 부수효과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봉쇄조치가 아닌 순수한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무기거래에 의한 수입을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으로서는 무기거래가 단 하나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봉쇄조치도 중국의 협조없이 그 효과가 없다. 봉쇄조치가 취해졌다고 해서 군사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군사조치 의 가능성도 있다. 군사조치의 목적은 북한 핵개발계획을 제한하는데 있는 것이다. 공격 목표로는 현재 건조중인 핵재처리 시설, 반쯤 건설된 원자로들, 미사일공장 그리고 미사일 기지 등이 될 것이다. 핵실험실과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공격은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 - 비록 분열재의 양이 미미해서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 시켜 선량한 민간인들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플루토늄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만한다 - 일반적으로 플루토늄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다.

군사적인 개입을 꺼리는 가장 심각한 우려는 북한인들이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들은 한국의 민간용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사일 또는 항공기에 의한 공격이나 사보타지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임). 북한정권은 이러한 행위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도 눈하나 깜짝 앓을 만큼 철면피한 자 일뿐만 아니라 가미가제식의 맹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즉시 포괄적인 무장해제 공격이 시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걸프전 개시 국면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대규모

작전이 개시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한 민간인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한국측이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이 때문이다.

## 8. 파급효과

북한의 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

1) 직접적인 결과로는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위협에 처해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둔군을 줄이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 및 여타 아시아국가들과 무역정책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이 상당한 지역적 야심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은 고유의 핵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이 장차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을 새로이 갖게 될 것이 틀림없고, 일본마저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비교적 단기간(1~3년)내에 이같은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수톤의 플라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기술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한국은 카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1970년대에 이미 핵무기를 갖으려고 시도했었다.

일본의 핵무기는 아세안(ASEAN)국가들 사이에서 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이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것만이 이같은 추세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오히려 범세계적으로 주둔군을 감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으며 향후 대일정책도 안보정책상의 동맹관계라는 생각보다는 경제적인 대립관계로 보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2) 북한의 정책이 동·서간의 핵견제이론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가정은 믿을 것이 못된다. 공산왕조의 편집광적인 성격을 보건대 북한은 핵무장의 보호우산을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위해서 새삼 이용하거나, "삼손의 선택 (Samson-Option)" 과 같이 다른 국가들을 자신이 몰락하는데로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있다 ; 동아시아 지역에는 충분히 이같은 우려가 있다. 북한의 장래는 김일성의 사후 불확실하다 ; 핵무장을 한 국가의 국내적인 불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소련의 붕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3)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핵확산 금지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락의 경험을 통해 사찰제도가 강화되었다 -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은밀한 핵관련 활동을 발견해 낸 것은 이같은 사찰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다. 동시에 우리는 이락의 경우에서 하나의 국제기구가 제기능을 하려면 규정 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협을 당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구책을 강구하게 되며, 결국에는 대량 살상무기 획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4) 이란,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와 같은 불안한 후보국가들이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받게 될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알제틴 같은 조약외 국가들은 핵확산금지 외교를 우려할 이유가 별로 없다. 1995년에 연장되게 되어 있는 핵확산 금지조약은 지구상의 안보의 주요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5) 탄도미사일 수출국인 북한이 경화를 벌기 위해서 핵무기에 사용될 분열재나 기술을 팔아 넘기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할 우려가 있다.
- 6) 다른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체제들, 즉 이제 겨우 사찰제도에 관한 협상단계에 있는 생물무기회의 및 1995년에 가서야 발효되는 화학무기회의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체제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찰과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그 존립이 좌우된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거부는 생화학무기 확산금지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7) 안전보장이사회도 시험대위에 서게 될 것이다. 안보보장이사회의 명성은 끔찍한 보스니아 사태로 손상을 입었다. 걸프전쟁이후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체제의 보장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국제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안전에 대한 희망은 또 한번 장기간동안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9. 결 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중개로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남아 있게 될지도 모를 해결책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책에는 북한이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락 쇼크가 일어나기 전 같은 어정쩡한 해결책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 獨逸統一 實態 資料集 Ⅱ

---

印 刷：1993 4.26

發 行：1993. 4.30

發行處：統一院 統一政策室

第2政策官室

Tel：720-2148

725-0762

---

<비매품>